

【대 통 령 령】

○대통령령제27184호(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5
○대통령령제27185호(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6
○대통령령제27186호(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7
○대통령령제27187호(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9
○대통령령제27188호(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10
○대통령령제27189호(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14
○대통령령제27190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19
○대통령령제27191호(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20
○대통령령제27192호(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21
○대통령령제27193호(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22
○대통령령제27194호(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23
○대통령령제27195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24
○대통령령제27196호(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	25
○대통령령제27197호(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6
○대통령령제27198호(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7
○대통령령제27199호(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28
○대통령령제27200호(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31
○대통령령제27201호(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33
○대통령령제27202호(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35
○대통령령제27203호(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39
○대통령령제27204호(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55
○대통령령제27205호(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56
○대통령령제27206호(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64
○대통령령제27207호(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66
○대통령령제27208호(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68
○대통령령제27209호(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72

(이면 계속)

【부 령】

○기획재정부령제564호(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72
○보건복지부령제77호(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78
○국토교통부령제313호(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78
○국토교통부령제315호(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79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6-168호(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금액 등에 관한 기준)	83
○법무부고시제2016-169호(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지역 지정 절차)	86
○행정자치부고시제2016-16호(민원처리기준표).....	88
○환경부고시제2016-99호(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변경사항).....	91
○국토교통부고시제2016-316호(인천~김포 고속도로 도로구역결정<변경>, 입체적도로구역 지정, 지형도면<변경>, 토지세목조서)	94
○국토교통부고시제2016-317호(건축구조기준 개정).....	140
○산림청고시제2016-52호(백두대간보호지역 확대지정중정정)	141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6-109호(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C> 첨단산업클러스터<E> 관공선부두 개발계획<변경> 승인) ...	141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6-4호(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148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83호(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49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84호(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5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85호(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50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86호(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51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87호(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51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88호(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5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89호(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52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90호(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53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91호(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53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6-7호(수도사업인가<변경>)	154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87호(하천점용 허가).....	15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91호(하천구역 결정<변경·폐지>)	155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51호(하천점용 허가).....	156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52호(하천점용 연장허가).....	156
○서울지방항공청고시2016-30호(원주공항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157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16-3호(제주국제공항 주차빌딩 신축 및 주차장 확충공사 실시계획 승인).....	158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34호(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159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4호(항로표지 폐지 알림).....	159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5호(항로표지 현황변경)	160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47호(시설항로표지 현상변경)	160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46호(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160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208호(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161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209호(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일괄개정령<안> 입법예고)	170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6-53호(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74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56호(금융투자업 등록).....	175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57호(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75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58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177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59호(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78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60호(금융투자업 업무폐지).....	179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61호(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79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62호(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81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63호(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84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64호(금융투자업 인가).....	186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65호(금융투자업 인가).....	186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66호(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86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67호(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88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68호(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89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256호(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90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258호(과학기술전략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91
○행정자치부공고제2016-161호(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92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149호(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94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266호(제18회 대한민국디자인대상)	194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267호(제18회 대한민국디자인대상 포상요령)	195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6-31호(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변경지정).....	202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공고제2016-36호(사회적기업 인증취소)	203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48호(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승인).....	203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58호(시정권고 재결)	204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47호(행정처분).....	205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53호(공시송달).....	205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36호(공시송달).....	207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37호(공시송달).....	207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38호(공시송달).....	208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39호(공시송달).....	209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16호(공시송달).....	210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6-9호(공시송달)	211

【법 원】

○판결(광주지방법원)	212
-------------------	-----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6-154호(예산신소재 일반산업단지계획<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224
○경상북도고시제2016-142호(채석단지 변경지정).....	253
○천안시고시제2016-153호(풍세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253
○경기도공고제2016-624호(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258
○경기도공고제2016-625호(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258

【인 사】

○인사(인사혁신처)	259
------------------	-----

【상 훈】

○서훈(특허청)	267
----------------	-----

【기 타】

○압수물환부공고(대구가정법원)	267
○압수물환부공고(서울동부지방검찰청)	268
○압수물환부공고(인천지방검찰청)	269
○압수물환부공고(춘천지방검찰청속초지청)	271
○압수물환부공고(대전지방검찰청)	271
○압수물환부공고(창원지방검찰청)	273
○압수물환부공고(창원지방검찰청진주지청)	273
○결정(광주고등법원)	273
○배당공고(부산지방법원)	275

대 통 령 령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인

2016년 5월 31일

국 무 총 리 황 교 안

국 무 위 원
기 획 재 정 부 관 유 일 호
장 관

●대통령령 제27184호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외국환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호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해당 금융회사등에 적용되는”을 “해당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금융위원회(「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는 행정자치부장관을 말한다)가 정하는”으로 한다.

제37조제1항제5호 중 “법 제32조제1항”을 “법 제32조제1항(같은 항 제3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제8호 중 “법 제32조제1항”을 “법 제32조제1항(같은 항 제3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으로 한다.

6. 법 제32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제4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2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미화 3만달러를 말한다.

별표 4 제2호사목의 위반행위란 중 “아목”을 “자목”으로 하고, 같은 호 아목부터 리목까지를 각각 자목부터 머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비고 중 “제2호자목부터 카목까지를”을 “제2호차목부터 타목까지를”로 한다.

아. 법 제1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 를 하고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하거나 수입한 경우	법 제32조제1항 제3호의2	위반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	--------------------	---------------------------

부 칙

이 영은 2016년 6월 3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지급수단 또는 증권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때 그 사실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 이를 위반하는 경우 중전에는 모두 벌칙을 부과하도록 하였으나,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미화 2만달러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외국환거래법」이 개정(법률 제14047호, 2016. 3. 2. 공포, 6. 3. 시행)됨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기준을 미화 3만달러 이하인 경우로 하고, 과태료 금액은 신고의무를 위반한 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3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대통령령 제27185호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의 제목“(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을“(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법 제48조의2에 따른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로, “위원이”를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이”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의2(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 분쟁조정위원회의 업무 지원 및 회의의 기록 등을 위하여 분쟁조정 위원회에 간사를 두며, 간사는 보험 분쟁 업무를 담당하는 우정사업본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 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한다.

제5조의3 및 제6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8조 중 “제6조”를 “법 제48조의5”로, “분쟁조정을 하지”를 “분쟁조정 회의에 부치지”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체국보험의 이해관계인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소속으로 두는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위원의 해촉, 분쟁조정 절차 등의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여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517호, 2015. 12. 1. 공포, 2016. 6. 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 상향 규정된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관련 규정을 삭제·정비하는 한편,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의 간사를 보험 분쟁 업무를 담당하는 우정사업본부 소속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명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인

2016년 5월 31일

국 무 총 리 황 교 안

국 무 위 원
미 래 창 조 최 양 희
과 학 부 장 관

●대통령령 제27186호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의3제1항”을 “법 제22조의3제1항제2호”로 한다.

제39조의3을 삭제한다.

제51조의6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주된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시·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를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51조의7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을 “시·도지사는”으로 한다.

제51조의10 중 “법 제67조제2항”을 “법 제65조제4항 및 제67조제2항”으로 한다.

제51조의13부터 제51조의16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9조의2(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신고 현황 등의 보고) 법 제88조제4항에 따라 시·도지사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자료를 매 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1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시·도지사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제48조제1항 및 제2항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 본다.

제65조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법 제65조제4항 전단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사용정지명령 및 같은 항 후단에 따른 시·도지사에 대한 사용정지명령 사실의 통지

제65조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65조제19호 본문 중 “법 제90조”를 “법 제90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9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9의2. 법 제90조제2항에 따른 과징금(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에 대한 사용정지명령을 갈음하는 과징금에 한정한다)의 부과·징수

제65조의3제2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8 제2호의 근거 법조문란 및 별표 10 제2호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67조제2항제3호”를 각각 “법 제65조제4항 전단”으로 한다.

별표 11 제1호나목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부과권자”로 하고, 같은 표 제2호카목을 삭제한다.

부 칙

이 영은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5조제1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신고에 관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사무를 시·도지사에게 이양하고, 시·도지사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신고 등의 현황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3518호, 2015. 12. 1. 공포, 2016. 6. 2. 시행)됨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신고의 절차를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하였던 비상사태 시 통신 확보를 위한 전기통신업무 취급명령 등의 권한을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직접 행사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설비 등에 관한 자료 제출 절차 폐지(현행 제39조의3 삭제)

법률에서 전기통신사업자, 기간통신사업자 등에게 부과한 관로(管路) 등의 설비 또는 시설에 관한 자료제출 의무를 폐지함에 따라 설비 등에 관한 자료 제출 절차 규정을 삭제함.

나. 자가전기통신설비 관련 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제51조의6, 제51조의7 및 제51조의10, 제59조의2 신설)

1)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의 사무이던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 신고 및 변경 신고의 접수,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변경공사의 확인, 자가전기통신설비 설치자에 대한 사용정지처분 등의 사무가 시·도지사에게 이양됨에 따라,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신고 및 변경신고를 시·도지사에게 하도록 하고,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변경공사의 확인 절차 및 사용정지처분기준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함.

2) 시·도지사는 자가전기통신설비의 설치 신고 현황 등을 매 분기마다 그 분기가 끝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다. 전기통신설비 등의 통합운영제도 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현행 제51조의13부터 제51조의16까지 삭제)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일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한 기간통신사업자가 다른 기관의 전기통신설비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전기통신설비 등을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 사업자의 선정기준 등 관련 규정을 삭제함.

라. 비상사태 시의 통신 확보에 관한 권한의 행사(현행 제65조제11호 삭제)

전시·사변·천재지변이나 국가비상사태시 통신확보를 위하여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하였던 자가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 대한 전기통신업무의 취급명령 및 다른 전기통신설비에의 접속명령에 관한 권한을 앞으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직접 행사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인

2016년 5월 31일

국무총리 황 교 안

국무위원
미래창조
과학부장관 최 양 희

●**대통령령 제27187호**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성과관리실시계획”을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성과관리실시계획(이하 “성과관리실시계획”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성과관리기본계획 등의 추진상황 점검)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법 제12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성과관리기본계획(이하 “성과관리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성과관리실시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연구성과의 관리·활용에 관한 세부 점검사항 및 점검방법·일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추진상황 점검지침(이하 이 조에서 “추진상황 점검지침”이라 한다)을 마련하여 매년 1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에 알려주어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연구회는 추진상황 점검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의 소관 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 관리·활용에 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상황 점검결과에 따른 보완사항을 성과관리기본계획 및 해당 연도의 성과관리실시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영은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성과 관리·활용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연구성과의 관리·활용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513호, 2015. 12. 1. 공포, 2016. 6. 2. 시행)됨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해당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의 세부 점검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추진상황 점검지침을 마련하여 이를 매년 10월 31일까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추진상황 점검지침에 따라 해당 연도의 소관 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의 관리·활용에 관한 추진상황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3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홍윤식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대통령령 제27188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을 “법 제29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29조제3항에서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 1. 개인정보를 파기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파기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파기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2. 다른 이용자의 개인정보와 분리하여 개인정보를 저장·관리하는 경우: 개인정보가 분리되어 저장·관리되는 사실, 기간 만료일 및 분리·저장되어 관리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⑤ 법 제29조제3항에서 “전자우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전자우편·서면·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말한다.

제4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터넷진흥원 또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인터넷진흥원, 법 제47조제6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이라 한다) 또는 법 제47조제7항에 따라 지정된 기관(이하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터넷진흥원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법 제47조제3항에 따라”를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은 법 제47조제6항제1호에 따른 인증심사(이하 “인증심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 같은 조 제4항에 따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에 따른 심사”를 “인증심사”로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6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중 “제3항에 따른 인증심사”를 “인증심사”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③ 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은 인증심사를 하는 경우 인증 신청인이 수립한 정보보호 관리체계가 관리체계인증고시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증심사는 서면심사 또는 현장심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⑤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은 인증심사의 결과를 인터넷진흥원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8조제1항 중 “인터넷진흥원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을 “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으로 한다.

제49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제2호 및 제3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이 1,500억원 이상인 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의료법」 제3조의4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나.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으로 재학생 수가 1만명 이상인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제49조제2항제2호(중전의 제1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는 제외한다.

제49조제2항제3호(중전의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는 제외한다.

제51조제1항 중 “법 제47조제6항”을 “법 제47조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중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은 법 제47조제8항에 따라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같은 조 제10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인터넷진흥원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에 그 사후관리 실시결과를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인터넷진흥원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7조제6항에 따른 인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법 제47조제8항에 따른 사후관리를 실시한 결과 같은 조 제10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제2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으로부터 그 사후관리 실시결과를 제출받은 경우

제52조 전단 중 “제7항”을 “제9항”으로 한다.

제53조의 제목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을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3조의2의 제목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의 지정절차 등)”을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절차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으로”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으로”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지정서”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지정서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 지정서”로 한다.

법 제47조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으

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3조의3의 제목“(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을“(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을“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으로 한다.

제53조의4의 제목“(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의 사후관리)”를“(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사후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을“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으로 한다.

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및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고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전년도 인증실적 보고서
2.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 전년도 인증심사실적 보고서

별표 4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위반횟수별 처분기준		
		1차	2차	3차 이상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법 제47조의2제1항제1호	지정취소		
나. 업무정지기간 중에 인증 또는 인증심사를 한 경우	법 제47조의2제1항제2호	지정취소		
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 또는 인증심사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7조의2제1항제3호			
1)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으로 지정된 후 3년이 지나도록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실적 또는 인증심사실적이 없는 경우		지정취소		
2) 천재지변, 인증심사원의 부족 등의 사유로 인증 또는 인증심사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등 불가피한 경우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증 또는 인증심사를 거부한 경우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2개월	업무정지 3개월

<p>라. 법 제47조제11항을 위반하여 인증 또는 인증심사를 한 경우</p> <p>1) 인증심사원의 자격요건을 갖추지 않은 자가 인증심사를 수행한 경우</p> <p>2)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이 신청인과 협의 없이 인증의 범위 및 일정을 임의로 정한 경우</p> <p>3) 제51조에 따른 인증의 사후관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p>	<p>법 제47조의2제1항제4호</p>	<p>업무정지 3개월</p>	<p>업무정지 6 개월</p>	<p>업무정지 9개월</p>
<p>마. 법 제47조제12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p>	<p>법 제47조의2제1항제5호</p>	<p>업무정지 3개월</p>	<p>업무정지 6 개월</p>	<p>지정취소</p>

별표 5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한다.

별표 9 제2호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어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47조제7항”을 “법 제47조제9항”으로 한다.

<p>서. 법 제47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p>	<p>법 제76조제1항제6호의3</p>	<p>3,000</p>	<p>3,000</p>	<p>3,000</p>
--	-----------------------	--------------	--------------	--------------

부 칙

이 영은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정보통신서비스를 일정기간 동안 이용하지 아니하는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미이용자의 개인정보 파기 등의 조치의무 발생기간을 1년으로 하고,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정보를 제공하거나 정보의 제공을 매개하는 자로서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 등이 1,500억원 이상인 자 중 일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도록 하며, 정보보호 관리체계에 관한 인증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심사기관의 지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520호, 2015. 12. 1. 공포, 2016. 6. 2. 시행)됨에 따라, 개인정보 파기 등의 조치의무 발생기간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을 받아야 하는 인증대상자의 범위와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정보보호 관리체계의 인증절차 및 수수료(제47조 및 제48조)

- 1)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뿐만 아니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에도 인증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고, 신청을 받은 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은 신청인과 인증의 범위 및 일정 등에 관한 협의를 하도록 함.
- 2)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을 신청하는 자는 인터넷진흥원,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기관 또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에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함.

나.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자의 범위(제49조제2항)

연간 매출액 또는 세입이 1,500억원 이상인 자로서 상급종합병원 및 직전연도 12월 31일 기준 재학생 수가 1만명 이상인 대학교 등을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자의 범위에 포함하고, 정보통신서비스 부문 전년도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인 자 또는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명 이상인 자 중 금융회사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대상자의 범위에서 제외함.

다.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등(제53조 및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4까지)

- 1)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기준을 인증심사원을 5명 이상 보유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실시하는 업무수행 요건·능력 심사에서 적합하다고 인정받을 것으로 함.
- 2)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법인의 정관 또는 단체의 규약, 인증심사원의 보유현황 및 증명서류 등을 첨부하여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은 지정기준의 충족 여부를 심사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지정서를 발급하도록 함.
- 3)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 지정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은 전년도 인증심사실적 보고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라.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의 처분기준 마련(별표 4)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의 지정을 받은 경우 그 지정을 취소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인증심사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정취소처분 또는 업무정지명령을 하도록 하는 등 정보보호 관리체계 심사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명령의 처분기준을 정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3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장 홍윤식

●대통령령 제27189호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제6조에 따라 대테러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에 대테러센터를 둔다.
- ③ 국무조정실장의 관장사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무조정실장 소속으로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둔다.

제3장의2(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4까지) 및 제3장의3(제19조의5부터 제19조의7까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의2 대테러센터

제19조의2(직무) 대테러센터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가 대테러활동 관련 임무분담 및 협조사항 실무조정에 관한 사항
2. 장단기 국가 대테러활동 지침 작성·배포에 관한 사항
3. 테러경보 발령·조정 등에 관한 사항
4. 테러대상시설 안전대책 수립·점검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테러이용수단 안전대책 수립·점검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국가 중요행사 대테러안전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7. 관계기관 테러 대비태세 점검에 관한 사항
8. 대테러활동 국제협력 및 홍보·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
9. 테러신고 포상금·테러피해 지원금·특별위로금 지급의 지원 등에 관한 사항
10. 국가 대테러활동 관련 법령, 지침 등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11. 테러상황 관리 및 상황분석 등에 관한 사항
12. 국가테러대책위원회 및 테러대책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3. 특별시 지역테러대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사항의 처리

제19조의3(센터장) ① 대테러센터에 센터장 1명을 두고, 센터장 밑에 대테러정책관 1명을 둔다.

- ② 센터장 및 대테러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센터장은 대테러센터의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④ 대테러정책관은 대테러활동과 관련하여 센터장을 보좌한다.
-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테러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상응하는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대체하여 충원할 수 있다.

제19조의4(하부조직) ① 대테러센터에 과에 상당하는 하부조직 4개를 두며, 그 하부조직의 장은 부이사관·경무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는 국무총리의 승인을 받아 국무조정실장이 정한다.

제3장의3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제19조의5(직무)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는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구축·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19조의6(센터장) ①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센터장을 1명 둔다.

- ②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공무원으로 보한다.
- ③ 센터장은 국무조정실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총괄하고,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19조의7(하부조직) ①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기획총괄팀·정보관리팀 및 감축목표팀을 두되, 기획총괄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으로, 정보관리팀장은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환경사무관·공업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감축목표팀장은 공업연구관·시설연구관 또는 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기획총괄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운영계획의 수립 및 조정
- 2. 보안·문서·인사·관인관리·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 3. 저탄소 녹색성장 관련 국제기구·단체 및 개발도상국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 4. 그 밖에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정보관리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국가온실가스 통계의 총괄관리계획 수립·조정 등 국제기준에 따른 국가 온실가스 종합정보관리체계 운영
- 2.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 관련 등록부 관리, 명세서 보고·관리·공개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정보제공
- 3. 국가 온실가스 배출계수 검증·관리, 배출량산정방법 개선 등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보고에 관한 사항
- 4. 배출권등록부 및 상쇄등록부의 관리·운영

④ 감축목표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국가 및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설정의 지원
- 2. 국내외 온실가스 감축 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 3.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 및 국가배출권 할당계획 수립을 위한 조사·연구

제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국무조정실의 소속기관”을 “조세심판원”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대테러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의3과 같다.
- ③ 제2항 및 별표 2의3에 따른 대테러센터의 정원 중 25명(3·4급 또는 4급 중 1명, 4급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11명, 6급 2명, 5등급 또는 6등급 1명, 소방경 1명, 경무관 1명, 경정 2명, 경감 3명)은 국무조정실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국무조정실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는 대테러센터의 정원 25명 중 7명(3·4급 또는 4급 중 1명, 4급 또는 5급 2명, 5급 2명, 6급 2명)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각 직급에 상응하는 국방부 소속 현역 장교 또는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대체하여 충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무조정실장은 충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각 해당 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⑤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별표 2의4와 같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국무조정실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은 별표 2의4 제2호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외의 공무원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별표 1 중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3”을 “14”로, 서기관 “24”를 “23”으로 한다.

별표 1의2 중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3”을 “14”로, 서기관 “24”를 “23”으로 한다.

별표 2의3 및 별표 2의4를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2항, 제19조의2부터 제19조의4까지, 제2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및 별표 2의3은 2016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온실가스 감축 정책 총괄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환경부장관 소속의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소속 공무원 12명(고위공무원단 1명, 4·5급 2명, 5급 2명, 6급 1명, 연구관 4명,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9급 2.0명)은 국무조정실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무조정실로 이체한다.

[별표 2의3]

대테러센터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2항 관련)

총계	32
일반직 계	24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2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2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보건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2
행정사무관·사회복지사무관·공업사무관·농업사무관·보건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환경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방송통신사무관·방재안전사무관·해양수산사무관·항공사무관 또는 출입국관리사무관	12

행정주사·시설주사·전산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3
행정서기	1
운전서기	1
외무공무원 계	1
5등급·6등급 외교통상직공무원 또는 영사직공무원	1
소방공무원 계	1
소방경	1
경찰공무원 계	6
경무관	1
경정	2
경감	3

[별표 2의4]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공무원 정원표(제21조제5항 관련)

총계	13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11
일반직 계	11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공업연구원·농업연구원·기상연구원 · 보건연구원·임업연구원 또는 환경연구원	1
서기관·기술서기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1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보건사무관·시설사무관· 전산사무관·환경사무관·공업연구원·시설연구원 또는 환경연구원	1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전산사무관·통계사무관 또는 환경사무관	2
행정사무관·공업연구원·시설연구원 또는 환경연구원	1
행정주사·공업주사·전산주사·통계주사 또는 환경주사	2
공업연구원·시설연구원 또는 환경연구원	3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2.0
일반직 계	2.0
행정서기보·공업서기보·전산서기보·통계서기보 또는 환경서기보	2.0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대테러활동 관련 임무분담 및 협조사항 실무 조정 등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대테러센터를 두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법률 제14071호, 2016. 3. 3. 공포, 6. 4. 시행)이 제정됨에 따라, 국무조정실에 대테러센터를 설치하고, 대테러센터에 센터장 1명과 대테러정책관 1명을 각각 두며, 센터장 및 대테러정책관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도록 하고, 대테러센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정원 32명(고위공무원단 2명, 3·4급 1명, 4급 2명, 4·5급 2명, 5급 12명, 6급 3명, 8급 2명, 5등급 또는 6등급 1명, 소방경 1명, 경무관 1명, 경정 2명, 경감 3명)을 증원하되, 그 정원 중 25명은 국무조정실 외의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등으로 충원하도록 하는 한편,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의 당사자들 사이에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한 전지구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2015. 12. 12. 채택, 2016. 4. 22. 서명)됨에 따라,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 관장기관 책임제를 기반으로 하는 범정부적 정책 추진 체계 마련의 일환으로,

환경부 소속기관이던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국무조정실 소속기관으로 이관됨에 따라, 환경부의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소속 공무원 12명(고위공무원단 1명, 4·5급 2명, 5급 2명, 6급 1명, 연구관 4명,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9급 2.0명)을 국무조정실로 이체하고, 인력 1명(6급 1명)을 증원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인

2016년 5월 31일

국무총리 황 교 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장 홍 윤 식

●**대통령령 제27190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3항에 제17호부터 제2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7.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제도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 18.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19. 배출권 할당·상쇄 및 배출량 인증 관련 협의·조정
- 20. 배출권 거래소의 지정·운영 및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 등 배출권 거래시장 관리에 관한 사항
- 21. 국내 배출권 시장과 국제 탄소시장 간의 연계에 관한 사항

제19조제3항제14호 및 제15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17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7.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심층평가의 수행·관리
- 18.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심층평가 결과와 재정 운용 간의 연계에 관한 사항
- 19. 재정정책의 효과 분석

제19조의2제3항에 제16호부터 제19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6. 재정통계의 수집·분석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 17.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국가재정법」 제97조의2에 따라 개발한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영 및 관리
- 18.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발전방향의 수립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19.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다른 재정 관련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제27조제2항 후단 중 “97명”을 “98명”으로 한다.

별표 1 중 총계 “969”를 “976”으로 하고, 일반직 계 “959”를 “966”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922”를 “929”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배출권거래제 총괄 운영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환경부 소속 공무원 4명(4급 1명, 5급 2명, 7급 1명)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기획재정부로 이체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의 당사자들 사이에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한 전지구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2015. 12. 12. 채택, 2016. 4. 22. 서명)됨에 따라,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 관장기관 책임제를 기반으로 하는 범정부적 정책 추진 체계 마련의 일환으로,

배출권거래제 총괄 운영 기능이 환경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이관됨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총괄 운영 기능을 담당하던 환경부 소속 인력 4명(4급 1명, 5급 2명, 7급 1명)을 기획재정부로 이체하고,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등에 필요한 인력 3명(5급 2명, 6급 1명)을 증원하는 한편,

재정기획과 심층평가의 효율적 연계 강화 등을 위하여 종전에 재정기획국장이 분장하던 재정통계의 수집·분석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등을 재정관리국장이 분장하도록 하는 등 재정기획국과 재정관리국의 일부 기능을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인

2016년 5월 31일

국무총리 황 교 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 윤 식

●대통령령 제27191호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항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의2.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기후기술 개발 및 이전에 관한 국제적 협력

제13조제4항 중 “제3항제1호부터”를 “제3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 제13호의2, 제14호부터 제16호까지, 제16호의2 및 제17호부터”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802”를 “803”으로 하고, 일반직 계 “794”를 “795”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764”를 “765”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의 당사자들 사이에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한 전지구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2015. 12. 12. 채택, 2016. 4. 22. 서명)됨에 따라,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 관장기관 책임제를 기반으로 하는 범정부적 정책 추진 체계 마련의 일환으로,

기후변화대응을 위한 기후기술 개발 및 이전에 관한 국제적 협력 업무를 연구개발정책실장의 분장사무로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인

2016년 5월 31일

국무총리 황 교 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장 홍 윤 식

●대통령령 제27192호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농림축산식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항에 제44호 및 제4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4. 농업·임업·축산업·식품 분야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배출권 할당 등 집행관리, 조기감축실적 인정 및 평가·인증 등에 관한 사항
- 45. 농업·임업·축산업·식품 분야 외부사업 온실가스감축량의 인증 등 상쇄에 관한 사항

제15조제6항 중 “제43호”를 “제45호”로 한다.

별표 2 중 총계 “557”을 “559”로 하고, 일반직 계 “551”을 “55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532”를 “534”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의 당사자들 사이에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한 전지구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2015. 12. 12. 채택, 2016. 4. 22. 서명)됨에 따라,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 관장기관 책임제를 기반으로 하는 범정부적 정책 추진 체계 마련의 일환으로,

농업·임업·축산·식품 분야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배출권 할당 등 집행관리 등의 업무를 식품산업정책실장의 분장사무로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3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장 홍윤식

●대통령령 제27193호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4항제21호부터 제31호까지를 각각 제23호부터 제33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1호 및 제2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21. 산업·발전 분야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배출권 할당 등 집행관리, 조기감축실적 인정 및 평가·인증 등에 관한 사항
- 22. 산업·발전 분야 외부사업 온실가스감축량의 인증 등 상쇄에 관한 사항

별표 3 중 총계 “856”을 “859”로 하고, 일반직 계 “844”를 “847”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812”를 “815”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산업·발전 분야 배출권거래제 집행업무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환경부장관 소속의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소속 공무원 1명(5급 1명)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체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의 당사자들 사이에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한 전지구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2015. 12. 12. 채택, 2016. 4. 22. 서명)됨에 따라,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 관장기관 책임제를 기반으로 하는 범정부적 정책 추진 체계 마련의 일환으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산업·발전 분야의 배출권거래제 집행 및 외부사업 온실가스감축량 인증 등 관련 기능을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4·5급 1명, 5급 1명)을 증원하며, 환경부장관 소속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인력 1명(5급 1명)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체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인

2016년 5월 31일

국 무 총 리 황 교 안

국 무 위 원
행정자치부
장

홍 윤 식

●대통령령 제27194호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국립환경인력개발원,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를 “국립환경인력개발원”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에 제4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45호 및 제4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44.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절약·이용효율 목표의 설정·관리
- 45. 폐기물 분야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배출권 할당 등 집행관리, 조기감축실적 인정 및 평가·인증 등에 관한 사항
- 46. 할당대상업체 보고내용의 관장기관 적합성 평가에 대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제10조제3항제47호 중 “외부사업”을 “폐기물 분야 외부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7호의2부터 제47호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47의2. 관장기관의 외부사업 승인 전 협의 및 온실가스 감축량 인증 시 의견 제출에 관한 사항
- 47의3. 기후변화 대응 관련 중장기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47의4. 지방녹색성장 추진계획의 수립 지원·협력 및 관련 지침의 제·개정에 관한 사항
- 47의5. 환경 부문 국제탄소시장 개발·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제10조제6항 중 “제43호까지 및 제45호부터 제50호까지”를 “제47호까지, 제47호의2부터 제47호의5까지 및 제48호부터 제50호까지”로 한다.

제5장의2(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를 삭제한다.

제51조제2항 후단 중 “38명”을 “37명”으로 한다.

별표 3 중 총계 “517”을 “515”로 하고, 일반직 계 “511”을 “509”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497”을 “495”로 한다.

별표 4 중 총계 및 일반직 계 “1,277”을 각각 “1,263”으로 하고,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또는 연구직 “2”를 “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249”를 “1,236”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온실가스 감축정책 총괄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소속 공무원 12명(고위공무원단 1명, 4·5급 2명, 5급 2명, 6급 1명, 연구관 4명,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9급 2.0명)은 국무조정실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국무조정실로 이체한다.

- ② 배출권 거래제 운영 총괄 기능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환경부 소속 공무원 4명(4급 1명, 5급 2명, 7급 1명)은 기획재정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기획재정부로 이체한다.
- ③ 산업·발전 분야 배출권 거래제 집행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소속 공무원 1명(5급 1명)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산업통상자원부로 이체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의 당사자들 사이에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한 전지구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2015. 12. 12. 채택, 2016. 4. 22. 서명)됨에 따라,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 관장기관 책임제를 기반으로 하는 범정부적 정책 추진 체계 마련의 일환으로,

환경부 소속기관이던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를 국무조정실 소속기관으로 이관하게 됨에 따라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의 직무, 센터장 및 하부조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정원 중 12명(고위공무원단 1명, 4·5급 2명, 5급 2명, 6급 1명, 연구관 4명, 시간선택제채용 공무원 9급 2.0명)을 국무조정실로, 1명(5급 1명)을 산업통상자원부로 각각 이체하며, 1명(연구관 1명)을 환경부로 재배정하고, 폐기물 분야 온실가스 감축 목표 관리 등에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며,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 총괄 운영 기능을 환경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각 부문별 관장기관 책임제를 도입함에 따라, 관련 정원 4명(4급 1명, 5급 2명, 7급 1명)을 기획재정부로 이체하는 한편, 환경정책실장의 분장사무에서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 등의 업무를 제외하고,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배출권 할당 업무를 폐기물 분야로 축소하는 등 업무를 조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3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장 **홍윤식**

●대통령령 제27195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에 제16호의2 및 제16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제13호부터”를 “제3항제13호부터 제16호까지, 제16호의2, 제16호의3, 제17호부터”로 한다.

16의2. 건물·교통 분야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배출권 할당 등 집행관리, 조기감축실적 인정 및 평가·인증 등에 관한 사항

16의3. 건물·교통 분야 외부사업 온실가스감축량의 인증 등 상쇄에 관한 사항

별표 2 중 총계 “980”을 “982”로 하고, 일반직 계 “970”을 “972”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941”을 “943”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의 당사자들 사이에 기후변화의 위협에 대한 전지구적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파리협정」(Paris Agreement)이 채택(2015. 12. 12. 채택, 2016. 4. 22. 서명)됨에 따라,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 관장기관 책임제를 기반으로 하는 범정부적 정책 추진 체계 마련의 일환으로,

건물·교통 분야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배출권 할당 등 집행관리 등의 업무를 기획조정실장의 분장사무로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인

2016년 5월 31일

국 무 총 리 황 교 안

국 무 위 원 행정자치부장 홍 윤 식

●대통령령 제27196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개정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2016년 6월 6일”을 “2018년 6월 6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한다.

7. 지식산업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

별표 2 중 총계 “123”을 “142”로 하고, 일반직 계 “122”를 “141”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118”을 “137”로 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

(제18조제4항 관련)

공공건축추진단(준속기한: 2018년 6월 6일)

총계	4
일반직 계	4
고위공무원단	1
3급 또는 4급 이하	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공공건축물 설치 등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한시조직인 공공건축추진단의 준속기한을 2016년 6월 6일까지에서 2018년 6월 6일까지로 2년 연장하는 한편,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청사 및 부속기관의 설치에 관한 업무가 세종특별자치시로 이관됨에 따라, 공공건축추진단장의 분장사항 중 관련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인

2016년 5월 31일

국무총리 황 교 안

국무위원
농림축산
식품부장관 이 동 필

●대통령령 제27197호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전단 중 “제1항에 따른 대부료등”을 “대부료등”으로 한다.

③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 재배용으로 대부등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중 적은 금액을 대부료등으로 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
2. 「통계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최근에 작성·공표된 권역별 단위면적당 임업 총수입에 대부면적을 곱한 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이 경우 권역별 단위면적당 임업 총수입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통계를 각각 적용한다.
 - 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경인권의 통계
 - 나. 강원도: 강원권의 통계

다.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및 충청북도: 충청권의 통계

라.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 및 제주특별자치도: 전라권의 통계

마.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 및 경상북도: 경상권의 통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등의 산출방법 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대부등의 기간에 해당하는 2016년도 분 대부료등을 부과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실류(樹實類) 및 버섯류 등 임산물 소득원의 지원 대상 품목을 재배하기 위하여 국유림의 대부등을 하는 경우 종전에는 국유림의 가격에 1천분의 10 이상의 요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대부료 등으로 하던 것을, 앞으로는 종전의 방법에 따라 산출한 금액과 권역별 단위면적당 임업 총수입에 대부면적을 곱한 금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을 대부료 등으로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가가 높은 지역의 국유림 대부료 등의 납부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인

2016년 5월 31일

국무총리 황 교 안

국무위원 윤 성 규
환경부장관

●대통령령 제27198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 중 “법 제13조의2 본문”을 “법 제13조의2제1항 본문”으로 한다.

제12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각각 다음”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가축분뇨 고체연료 검사기관

가. 국립환경과학원

나. 한국환경공단

다.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1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제12조의4 각 호 외의 부분 중 “방류수의 수질 또는 퇴비·액비의 검사방법은”을 “방류수의 수질, 퇴비·액비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검사방법은 각각”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가축분뇨 고체연료에 관한 시료 채취기준 및 검사방법: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5조의5에 따른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및 확인의 방법

제14조제1항 중 “처리시설”을 “배출시설 또는 처리시설”로 한다.

별표 9 제2호자목부터 폐목까지를 각각 카목부터 고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 아목을 자목으로 하며, 같은 호에 아목 및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 카목(중전의 자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53조제2항제2호”을 “법 제53조제2항제4호”로 하며, 같은 호 너목(중전의 하목)의 위반행위란 중 “자가측정 또는 퇴비 또는 액비”를 “자가측정, 퇴비·액비 또는 가축분뇨 고체연료”로 한다.

아. 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처리시설을 설치한 자,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처리시설설치자등 또는 법 제28조에 따른 가축분뇨처리업자로서 법 제13조의2제2항에 따른 고체연료기준에 맞지 않게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생산한 경우	법 제53조 제2항제2호	100	150	200
차. 법 제15조의2를 위반하여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사용 등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53조 제2항제3호	50	70	100

부 칙

이 영은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축분뇨를 분리·건조·성형 등을 거쳐 고체상의 연료로 제조한 가축분뇨 고체연료에 관한 기준 및 검사방법 등을 정함으로써 가축분뇨를 다양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526호, 2015. 12. 1. 공포, 2016. 6. 2. 시행)됨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 등을 가축분뇨 고체연료 검사기관으로 정하고, 가축분뇨 고체연료에 대한 검사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품질연료제품의 품질검사 및 확인의 방법에 따르도록 하는 한편,

고체연료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생산한 자에 대하여 1차 위반 시 100만원, 2차 위반 시 15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3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윤성규
환경부장관

●대통령령 제27199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농어촌도로”를 “농어촌도로(이하 이 조에서 “농어촌도로”라 한다)”로, “신설 또는 확장 공사”를 “공사”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공사구간의 폭이 2.75미터 이상이고 길이가 1킬로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00미터) 이상
제5조제1항제1호나목 중 “9,000제곱미터”를 “9천제곱미터(농어촌도로의 경우 2천제곱미터)”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제4조제1항제1호마목에 따른 매립시설의 복토공사

11.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거나 법 제2조제15호 마목부터 사목까지의 기관 중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일정 구조·규모·용도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제6조제1호 중 “20마력”을 “15킬로와트”로 한다.

제10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용역이행능력”을 “용역이행능력(비산먼지·침출수·악취 등 주변환경의 오염 방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제6항제3호”를 “법 제21조제7항제3호”로 한다.

제1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제4항”을 “법 제21조제5항”으로 한다.

제30조 중 “법 제66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6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별표 3 제1호의 계산식 중 “경력평가액”을 “경력평가액 + 환경오염방지능력평가액”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가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계산식 중 “100/100”을 “70/100”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1)·2) 외의 부분 계산식 중 “20/100”을 “10/100”으로 하며, 같은 목에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자본금평가액이 용역이행실적평가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에는 용역이행실적평가액의 50퍼센트로 산정한다.

별표 3 제2호다목1)·2) 외의 부분 계산식 중 “순환골재판매액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액”을 “(순환골재판매액 + 최근 3년간 기술개발투자액) + (평균용역실적액 × 기술능력평점 × 5/100)”으로 하고, 같은 목에 3)부터 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평균용역실적액은 해당 연도 용역이행실적액 총액을 평가대상 중간처리업체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4) 기술능력평점은 다음과 같다.

파쇄시설 보유 현황	1차 파쇄시설만 보유	2차 파쇄시설 까지 보유	3차 파쇄시설 까지 보유	4차 파쇄시설 까지 보유	5차 이상 파쇄시설 보유
평 점	1	1.25	1.5	1.75	2

5) 기술능력평가액이 용역이행실적평가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에는 용역이행실적평가액의 50퍼센트로 산정한다.

별표 3 제2호라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계산식 중 “실적평가액”을 “용역이행실적평가액”으로, “20/100”을 “10/100”으로 한다.

별표 3 제2호마목을 바목으로 하고, 같은 호에 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마. 환경오염방지능력평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

$$\text{환경오염방지능력평가액} = \text{평균용역실적액} \times \text{환경오염방지능력평점} \times 10/100$$

- 1) 평균용역실적액은 해당 연도 용역이행실적액 총액을 평가대상 중간처리업체 수로 나눈 금액으로 한다.
- 2) 환경오염방지능력평점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정하되, 환경오염방지시설평점 및 환경오염방지인력평점의 구체적인 산정 방법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text{환경오염방지능력평점} = \text{환경오염방지시설평점} + \text{환경오염방지인력평점}$$

- 3) 환경오염방지능력평가액이 용역이행실적평가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한 경우에는 용역이행실적평가액의 50퍼센트로 산정한다.

별표 3 제2호바목(중전의 마목)1)부터 3)까지 외의 부분 계산식 중 “실적평가액”을 “용역이행실적평가액”으로, “경력평가액”을 “경력평가액 + 환경오염방지능력평가액”으로 하고, 같은 목 3)다)부터 마)까지 중 “법 제25조제4항”을 각각 “법 제25조제6항”으로 한다.

별표 4 제7호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21조제4항”을 “법 제21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8호의 위반행위란 각 목 외의 부분 중 “법 제21조제6항”을 “법 제21조제7항”으로 하며, 같은 표 제15호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31조제2항”을 “법 제31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5 제2호하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21조제6항제3호”를 “법 제21조제7항제3호”로 하고, 같은 호 저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31조제2항”을 “법 제31조제3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순환골재 등의 의무사용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제1호 및 제10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발주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제3조(용역이행능력 평가방법에 관한 경과조치) 2016년에 실시하는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에 대해서는 제10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항목에 주변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한 시설·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등을 추가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527호, 2015. 12. 1. 공포, 2016. 6. 2. 시행)됨에 따라, 중간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 계산식에 주변환경의 오염방지를 위한 시설·기술인력의 보유현황을 반영할 수 있는 환경오염방지능력평가액을 추가하고, 환경오염방지능력평가액은 평균용역실적액과 환경오염방지능력평점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한편,

순환골재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순환골재 등을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도로의 신설·확장 공사 외에 도로의 유지·보수 공사 및 폐기물처리시설 중 매립시설의 복토공사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3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환경부장관

윤성규

●대통령령 제27200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제목 “(황사피해방지 종합대책 수립 등)”을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방지 종합대책 수립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황사피해”를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황사”를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황사피해”를 각각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로 한다.

제4조의 제목 “(황사대책위원회의 위원)”을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의 위원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예방의학 분야”를 “예방의학 분야, 보건 분야, 화학사고 분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解囑)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5조제1항 본문 중 “황사대책위원회”를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위원회”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황사대책”을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대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를 “한다”로 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실무위원회 위원의 지명철회 및 해촉) ① 제6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실무위원을 지명한 자는 해당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명을 철회할 수 있다.

-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② 환경부장관은 제6조제2항제3호에 따른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7조의2의 제목 “(국가황사연구단의 구성)”을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연구단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국가황사연구단(이하 “국가황사연구단”이라 한다)”을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연구단(이하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연구단”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황사피해”를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로, “국가황사연구단”을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연구단”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황사”를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황사피해”를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로 한다.

제9조제2호 및 제10조 중 “국가황사연구단”을 각각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연구단”으로 한다.

제5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0조의2(결함시정 현황 보고의 요건)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가 매년 1월 말일까지 결함시정 현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 1.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같은 부품에 대한 결함시정 요구 건수가 40건 미만인 경우
- 2. 결함시정요구율이 2퍼센트 미만인 경우

제5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53조제2항”을 “법 제53조제3항”으로 한다.

제61조제1항제1호 중 “황사”를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황사피해”를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로 한다.

제63조제3항제1호 중 “황사 등 장거리이동 오염물질”을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법 제53조제1항”을 “법 제5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제66조제1항제1호 중 “황사 등 장거리이동 오염물질”을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로 한다.

별표 15 제2호머목의 위반사항란 중 “법 제53조제4항”을 “법 제53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호 버목부터 모목까지를 각각 서목부터 보목까지로 하며, 같은 호에 버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버.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94조 제3항제3호	300	300	300
---------------------------------	---------------	-----	-----	-----

별표 15 제2호서목(중전의 버목)의 위반사항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호 어목(중전의 서목)의 근거 법조문란 중 “법 제94조제3항제3호”를 “법 제94조제3항제4호”로 하며, 같은 표 비고 중 “제2호처목”을 “제2호커목”으로 한다.

서.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결함시정 현황과 부품결함 현황 또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결함시정 현황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함시정 현황 보고에 관한 적용례) 제5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에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행자가 자동차제작자에게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시정을 요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개정이유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에 대한 자동차제작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시정 현황을 매년 1월 말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배출가스 관련 부품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결함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13528호, 2015. 12. 1. 공포, 2016. 6. 2. 시행)됨에 따라, 결함시정 현황 보고의 요건과 결함시정명령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금액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시정 현황 보고 요건 마련(제50조의2 신설)
자동차제작자가 환경부장관에게 매년 1월 말일까지 자동차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시정 현황을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를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같은 부품에 대한 결함시정 요구 건수가 40건 미만이거나 결함시정요구율이 2퍼센트 미만인 경우로 정함.
- 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별표 15 제2호 버목 신설)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결함시정 의무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동차제작자가 환경부장관의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과태료 최고 금액인 3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3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여성가족부장 **강은희**

●대통령령 제27201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의2(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 ① 여성가족부장관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지원기관의 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2. 다음 각 목의 기관이나 단체 중 성폭력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 정관이나 규약 등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사업 내용으로 정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② 여성가족부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에 관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3(보호시설의 설치·운영) ① 여성가족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보호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3. 정관이나 규약 등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사업 내용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② 여성가족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의2(상담원 교육훈련시설의 위탁·지정운영) ① 여성가족부 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상담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거나 이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교육훈련시설로 지정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2.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

3. 「법률구조법」 제4조에 따른 법률구조법인

4. 다음 각 목의 기관이나 단체 중 상담원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는 인적·물적 자원을 갖추고 있다고 여성가족부 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나. 정관이나 규약 등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사업 내용으로 정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② 여성가족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지정한 경우에는 지정한 사실을 관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보수교육 업무의 위탁운영) ① 여성가족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대학 및 전문대학 또는 다음 각 호의 전문기관에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보수교육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교육기관

- 3. 정관이나 규약 등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사업 내용으로 정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교육기관
- ②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관보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 중 “여성가족부장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영은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설치·운영을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3537호, 2015. 12. 1. 공포, 2016. 6. 2. 시행)됨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여성정책 관련 기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정관이나 규약 등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를 사업 내용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설치·운영에 관한 업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인

2016년 5월 31일

국무총리 황 교 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 홍 운 식

국무위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 양 희

●대통령령 제27202호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를 삭제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주요방송통신사업자) 법 제35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 1. 가입자 수가 10만명 이상인 자
- 2. 회선 수가 50만 이상인 자

제24조제1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로, “주요방송통신사업자”를 “법 제35조제1항 각 호의 방송통신사업자(이하 “주요방송통신사업자”라 한다)”로 한다.

제24조의2 및 제27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2(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의 지도·점검 등) ①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이하 이 조에서 “지도·점검”이라 한다)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도·점검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지도·점검을 실시하기 7일 전까지 그 일시, 내용 등을 포함한 지도·점검계획을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사전에 통지하는 경우 지도·점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도·점검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 여부의 확인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도·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에게 방송통신설비의 설치 지역이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지도·점검하게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지도·점검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7조의2(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의 지정) ①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방송통신사업자의 방송통신재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방송통신재난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없을 때에는 방송통신재난 업무와의 관련성 및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방송통신사업자의 임직원 중에서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일부터 30일 이내에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8조제1항 본문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로, “방송사업자 또는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게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을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의 전부 또는 일부에게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이하 “재난방송등”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로, “재난방송 또는 민방위경보방송”을 “재난방송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방송사업자는 재난방송등을 하는 경우에는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의 관리를 관장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재난상황 등에 관한 발표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④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재난방송등의 준수사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및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⑤ 법 제40조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방송사업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재난방송등을 자막의 형태로 송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 1.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에 관한 경보발령기관, 경보유형, 발생지역 및 시간정보를 자막으로 화면에 송출할 것
- 2. 제1호의 자막이 다른 자막과 겹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6장에 제2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8조의2(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의 역할) ① 법 제40조의2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재난방송등의 주관방송사(이하 “주관방송사”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제3호에 따른 재난방송등의 모의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주관방송사는 법 제40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의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주관방송사는 재난방송등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한 방송통신시스템의 구축 및 표준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다른 방송사업자 등과 협력하여야 하며, 재난방송등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3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8조 및 제28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23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31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만원)
가.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시험을 하지 않거나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48조제2항제1호	500
나. 법 제28조제5항에 따른 조사·시험을 거부 또는 기피하거나 이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한 경우	법 제48조제2항제2호	500
다. 법 제30조에 따른 관리 규정을 정하지 않고 방송통신설비를 관리한 경우	법 제48조제2항제3호	500
라. 법 제31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48조제2항제4호	500
마.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법 제48조제2항제5호	500
바.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1호	1,500
사. 법 제38조에 따른 방송통신재난의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48조제2항제6호	500
아.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피해복구 진행 상황 등의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48조제2항제7호	500
자. 법 제3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은 경우	법 제48조제2항제7호의2	500
차. 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재난방송등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8조제1항제2호	1,500
카.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48조제2항제8호	500
타.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48조제2항제9호	500

◇개정이유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수립하는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 여부를 지도·점검하도록 하고, 점검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며,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재난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를 지정하도록 하고, 한국방송공사를 재난방송 등의 주관방송사로 지정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3539호, 2015. 12. 1. 공포, 2016. 6. 2. 시행 및 법률 제13581호, 2015. 12. 22. 공포, 2016. 6. 23. 시행)됨에 따라,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한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 이행 여부의 지도·점검 절차 및 방법,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에 관한 사항과 주관방송사의 역할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의 절차 및 방법(제24조의2 신설)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자 수가 10만명 이상이거나 회선 수가 50만 이상인 기간통신사업자 등 주요방송통신사업자가 수립하는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 여부를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하도록 하고, 지도·점검을 실시하기 7일 전까지 지도·점검계획을 주요 방송통신사업자에게 알리도록 하는 등 지도·점검의 절차 및 방법을 정함.

나.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의 지정(제27조의2 신설)

방송통신재난 업무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주요방송통신사업자는 방송통신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을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로 지정하도록 하되, 방송통신재난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가 없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재난 업무와의 관련성 및 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해당 방송통신사업자의 임직원 중에서 지정하도록 함.

다. 자막 형태의 재난방송 등 송출에 관한 기준(제28조제5항 신설)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및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가 재난방송 등을 자막의 형태로 송출하는 경우 화면에 재해, 재난 또는 민방위사태에 관한 경보발령기관, 경보유형, 발생지역 및 시간정보를 자막으로 송출하도록 하고, 그 위치를 다른 자막과 겹치지 아니하도록 함.

라. 재난방송 등 주관방송사의 역할(제28조의2 신설)

재난방송 등의 주관방송사는 재난방송 등의 모의훈련을 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재난방송 등을 위한 인적·물적·기술적 기반 마련 등에 대한 조치 결과를 매년 2월 말일까지 미래창조과학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며, 재난방송 등의 효과적인 실시를 위한 시스템의 구축 및 표준화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다른 방송사업자 등과 협력하도록 함.

마. 과태료 부과기준의 마련(제31조 및 별표)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의 이행에 관한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1,500만원, 방송통신재난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대해서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인

2016년 5월 31일

국무총리 황 교 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국무조정실 소관) 홍 윤 식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국가정보원 소관) 홍 윤 식

●대통령령 제27203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제1장 총칙 및 국가테러대책기구

제1조(목적) 이 영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계기관의 범위)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2.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을 수행하는 지방직영기업,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제3조(국가테러대책위원회 구성) ①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법무부장관, 국방부장관, 행정자치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대통령경호실장, 국가정보원장, 국무조정실장, 금융위원회 위원장,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관세청장 및 경찰청장을 말한다.

② 법 제5조에 따른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안건 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에서 정한 위원 외에 관계기관의 장 또는 그 밖의 관계자에게 회의 참석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대책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법 제6조에 따른 대테러센터(이하 “대테러센터”라 한다)의 장(이하 “대테러센터장”이라 한다)이 된다.

제4조(대책위원회의 운영) ① 대책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대책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고 한다)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대책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대책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개가 필요한 경우 대책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5조(테러대책 실무위원회의 구성 등) ① 대책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대책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에 관한 전문적인 검토 및 사전 조정을 위하여 대책위원회에 테러대책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실무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두며, 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테러센터장이 된다.

③ 실무위원회 위원은 제3조제1항의 위원이 소속된 관계기관 및 그 소속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관계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무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6조(대테러센터) ① 대테러센터는 국가 대테러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대책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에 필요한 사무 등을 처리한다.

② 대테러센터장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직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대테러 인권보호관

제7조(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자격 및 임기) ①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대테러 인권보호관(이하 “인권보호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한민국 국민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1.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2. 인권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고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학교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10년 이상 재직하고 있거나 재직하였던 사람
3.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3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재직하였던 사람 중 인권 관련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
4. 인권분야 비영리 민간단체·법인·국제기구에서 근무하는 등 인권 관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인권보호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③ 인권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4. 그 밖에 장기간의 심신쇠약으로 인권보호관의 직무를 계속 수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8조(인권보호관의 직무 등) ① 인권보호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대책위원회에 상정되는 관계기관의 대테러정책·제도 관련 안건의 인권 보호에 관한 자문 및 개선 권고
2. 대테러활동에 따른 인권침해 관련 민원의 처리
3. 그 밖에 관계기관 대상 인권 교육 등 인권 보호를 위한 활동

② 인권보호관은 제1항제2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한 날부터 2개월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처리 계획을 민원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인권보호관이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대책위원회는 인권보호관의 직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둘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시정 권고) ① 인권보호관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직무수행 중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보고한 후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고를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그 처리 결과를 인권보호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비밀의 엄수) ① 인권보호관은 재직 중 및 퇴직 후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② 인권보호관은 법령에 따른 증인, 참고인, 감정인 또는 사건 당사자로서 직무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을 증언하거나 진술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전담조직

제11조(전담조직) ① 법 제8조에 따른 전담조직(이하 “전담조직”이라 한다)은 제12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구성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이 설치하는 다음 각 호의 전문조직(협의체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1.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2.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
3. 테러사건대책본부
4. 현장지휘본부
5. 화생방테러대응지원본부
6. 테러복구지원본부
7. 대테러특공대
8. 테러대응구조대
9. 테러정보통합센터
10. 대테러합동조사팀

②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전담조직 외에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테러업무를 수행하는 하부조직을 전담조직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지역 테러대책협의회) ①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해당 지역에 있는 관계기관 간 테러예방활동에 관한 협의를 위하여 지역 테러대책협의회를 둔다.

② 지역 테러대책협회의 의장은 국가정보원의 해당 지역 관할지부의 장(특별시의 경우 대테러센터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시·도에서 대테러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나급 상당 공무원 또는 3급 상당 공무원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가 지명하는 사람
2. 법무부·환경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국민안전처·국가정보원·식품의약품안전처·관세청·검찰청 및 경찰청의 지역기관에서 대테러업무를 담당하는 고위공무원단 나급 상당 공무원 또는 3급 상당 공무원 중 해당 관계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3. 지역 관할 군부대 및 기무부대의 장
4.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기관의 지역기관에서 대테러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중 해당 관계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및 국가중요시설의 관리자나 경비·보안 책임자

③ 지역 테러대책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시행 방안
2. 해당 지역 테러사건의 사전예방 및 대응·사후처리 지원 대책

3. 해당 지역 대테러업무 수행 실태의 분석·평가 및 발전 방안

4. 해당 지역의 대테러 관련 훈련·점검 등 관계기관 간 협조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해당 지역 대테러활동에 필요한 사항

④ 관계기관의 장은 제3항의 심의·의결 사항에 대하여 그 이행 결과를 지역 테러대책협의회에 통보하고,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의장은 그 결과를 종합하여 대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회의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3조(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 ① 공항 또는 항만(「항만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무역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내에서의 관계기관 간 대테러활동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공항·항만별로 테러대책협의회를 둔다.

②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 의장은 해당 공항·항만에서 대테러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정보원 소속 공무원 중 국가정보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해당 공항 또는 항만에 상주하는 법무부·농림축산식품부·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해양수산부·국민안전처·관세청·경찰청 및 국군기무사령부 소속기관의 장

2. 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소유자 및 경비·보안 책임자

3. 그 밖에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계기관에 소속된 기관의 장

③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는 해당 공항 또는 항만 내의 대테러활동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 시행 방안

2. 공항 또는 항만 내 시설 및 장비의 보호 대책

3. 항공기·선박의 테러예방을 위한 탑승자와 휴대화물 검사 대책

4. 테러 첩보의 입수·전파 및 긴급대응 체계 구축 방안

5. 공항 또는 항만 내 테러사건 발생 시 비상대응 및 사후처리 대책

6. 그 밖에 공항 또는 항만 내의 테러대책

④ 관계기관의 장은 제3항의 심의·의결 사항에 대하여 그 이행 결과를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에 통보하고,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 의장은 그 결과를 종합하여 대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항·항만별로 테러대책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14조(테러사건대책본부) ① 외교부장관, 국방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은 테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국외테러의 경우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한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테러사건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1. 외교부장관: 국외테러사건대책본부

- 2. 국방부장관: 군사시설테러사건대책본부
- 3. 국토교통부장관: 항공테러사건대책본부
- 4. 국민안전처장관: 해양테러사건대책본부
- 5. 경찰청장: 국내일반 테러사건대책본부

② 제1항에 따라 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같은 사건에 2개 이상의 대책본부가 관련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테러사건의 성질·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대책본부를 설치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대책본부의 장은 대책본부를 설치하는 관계기관의 장(군사시설테러사건대책본부의 경우에는 합동참모의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되며, 제15조에 따른 현장지휘본부의 사건 대응 활동을 지휘·통제한다.

④ 대책본부의 편성·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책본부의 장이 정한다.

제15조(현장지휘본부) ① 대책본부의 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건 현장의 대응 활동을 총괄하기 위하여 현장지휘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현장지휘본부의 장은 대책본부의 장이 지명한다.

③ 현장지휘본부의 장은 테러의 양상·규모·현장상황 등을 고려하여 협상·진압·구조·구급·소방 등에 필요한 전문조직을 직접 구성하거나 관계기관의 장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현장지휘본부의 장이 요청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현장지휘본부의 장은 현장에 출동한 관계기관의 조직(대테러특공대, 테러대응구조대,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 및 대테러합동조사팀을 포함한다)을 지휘·통제한다.

⑤ 현장지휘본부의 장은 현장에 출동한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통합상황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16조(화생방테러대응지원본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화생방테러사건 발생 시 대책본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분야별로 화생방테러대응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한다.

- 1. 보건복지부장관: 생물테러 대응 분야
- 2. 환경부장관: 화학테러 대응 분야
- 3.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 방사능테러 대응 분야

② 화생방테러대응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 1. 화생방테러 사건 발생 시 오염 확산 방지 및 제독(除毒) 방안 마련
- 2. 화생방 전문 인력 및 자원의 동원·배치
- 3. 그 밖에 화생방테러 대응 지원에 필요한 사항의 시행

③ 국방부장관은 관계기관의 화생방테러 대응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오염 확산 방지 및 제독 임무 등을 수행하는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를 설치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④ 화생방테러대응지원본부 및 대화생방테러 특수임무대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관계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17조(테러복구지원본부) ① 국민안전처장관은 테러사건 발생 시 구조·구급·수습·복구활동 등에 관하여 대책본부를 지원하기 위하여 테러복구지원본부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테러복구지원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테러사건 발생 시 수습·복구 등 지원을 위한 자원의 동원 및 배치 등에 관한 사항
2. 대책본부의 협조 요청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테러복구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의 시행

제18조(대테러특공대 등) ① 국방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은 테러사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대테러특공대를 설치·운영한다.

② 국방부장관, 국민안전처장관 및 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테러특공대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대테러특공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대한민국 또는 국민과 관련된 국내외 테러사건 진압
2. 테러사건과 관련된 폭발물의 탐색 및 처리
3. 주요 요인 경호 및 국가 중요행사의 안전한 진행 지원
4. 그 밖에 테러사건의 예방 및 저지활동

④ 국방부 소속 대테러특공대의 출동 및 진압작전은 군사시설 안에서 발생한 테러사건에 대하여 수행한다. 다만, 경찰력의 한계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여 대책본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군사시설 밖에서도 경찰의 대테러 작전을 지원할 수 있다.

⑤ 국방부장관은 군 대테러특공대의 신속한 대응이 제한되는 상황에 대비하기 위하여 군 대테러특수임무대를 지역 단위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군 대테러특수임무대의 편성·운영·임무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테러대응구조대) ① 국민안전처장관과 시·도지사는 테러사건 발생 시 신속히 인명을 구조·구급하기 위하여 중앙 및 지방자치단체 소방본부에 테러대응구조대를 설치·운영한다.

② 테러대응구조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테러발생 시 초기단계에서의 조치 및 인명의 구조·구급
2. 화생방테러 발생 시 초기단계에서의 오염 확산 방지 및 제독
3. 국가 중요행사의 안전한 진행 지원
4. 테러취약요인의 사전 예방·점검 지원

제20조(테러정보통합센터) ① 국가정보원장은 테러 관련 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하여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테러정보통합센터를 설치·운영한다.

② 테러정보통합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국내외 테러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분석 및 관계기관에의 배포
2. 24시간 테러 관련 상황 전파체계 유지
3. 테러 위협 징후 평가
4. 그 밖에 테러 관련 정보의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

③ 국가정보원장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소속 공무원의 파견과 테러정보의 통합관리 등 업무 수행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1조(대테러합동조사팀) ① 국가정보원장은 국내외에서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할 때 또는 테러 첩보가 입수되거나 테러 관련 신고가 접수되었을 때에는 예방조치, 사건 분석 및 사후처리방안 마련 등을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테러합동조사팀(이하 “합동조사팀”이라 한다)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정보원장은 합동조사팀이 현장에 출동하여 조사한 경우 그 결과를 대테러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사시설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자체 조사팀을 편성·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방부장관은 자체 조사팀이 조사한 결과를 대테러센터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장 테러 대응 절차

제22조(테러정보의 발령) ① 대테러센터장은 테러 위험 징후를 포착한 경우 테러정보 발령의 필요성, 발령 단계, 발령 범위 및 기간 등에 관하여 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테러정보를 발령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 또는 제2항에 따른 주의 이하의 테러정보 발령 시에는 실무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테러정보는 테러위협 정도에 따라 관심·주의·경계·심각의 4단계로 구분한다.

③ 대테러센터장은 테러정보를 발령하였을 때에는 즉시 위원장에게 보고하고, 관계기관에 전파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테러정보 발령 및 테러정보에 따른 관계기관의 조치사항에 관하여는 대책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상황 전파 및 초동 조치) ①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하거나 테러 위협 등 그 징후를 인지한 경우에는 관련 상황 및 조치사항을 관련기관의 장과 대테러센터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②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건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신속히 다음 각 호의 초동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사건 현장의 통제·보존 및 경비 강화
- 2. 긴급대피 및 구조·구급
- 3. 관계기관에 대한 지원 요청
- 4. 그 밖에 사건 확산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국내 일반테러사건의 경우에는 대책본부가 설치되기 전까지 테러사건 발생 지역 관할 경찰관서의 장이 제2항에 따른 초동 조치를 지휘·통제한다.

제24조(테러사건 대응) ① 대책본부의 장은 테러사건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지휘본부를 설치하여 상황 전파 및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조치사항을 체계적으로 시행한다.

② 대책본부의 장은 테러사건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관계기관의 장에게 인력·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외교부장관은 해외에서 테러가 발생하여 정부 차원의 현장 대응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부 현지대책반을 구성하여 파견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테러사건 대응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물자 및 편의 제공과 지역주민의 긴급대피 방안 등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장 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

제25조(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 안전대책 수립) ① 법 제1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중요시설과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및 장비”(이하 “테러대상시설”이라 한다)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 1. 국가중요시설: 「통합방위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지정된 국가중요시설 및 「보안업무규정」 제32조에 따른 국가보안시설
- 2.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 및 장비(이하 “다중이용시설”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시설과 장비 중 관계기관의 장이 소관업무와 관련하여 대테러센터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시설
 - 가.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
 - 나. 「선박안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여객선
 - 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8제1호·제2호에 따른 건축물 또는 시설
 - 라.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 마. 「항공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

② 관계기관의 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테러대상시설에 대한 테러예방대책과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테러이용수단(이하 “테러이용수단”이라 한다)의 제조·취급·저장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 수립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1. 인원·차량에 대한 출입 통제 및 자체 방호계획
- 2. 테러 첩보의 입수·전파 및 긴급대응 체계 구축 방안
- 3. 테러사건 발생 시 비상대피 및 사후처리 대책

③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의 제조·취급·저장 시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1. 테러예방대책 및 안전관리대책의 적정성 평가와 그 이행 실태 확인
- 2. 소관 분야 테러이용수단의 종류 지정 및 해당 테러이용수단의 생산·유통·판매에 관한 정보 통합관리

제26조(국가 중요행사 안전관리대책 수립)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는 국가 중요행사는 국내외에서 개최되는 행사 중 관계기관의 장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주관기관, 개최근거, 중요도 등을 기준으로 대테러센터장과 협의하여 정한다.

② 관계기관의 장은 대테러센터장과 협의하여 국가 중요행사의 특성에 맞는 분야별 안전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관계기관의 장은 국가 중요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테러·안전대책기구를 편성·운영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대책의 수립·시행 및 제3항에 따른 대테러·안전대책기구의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중 대통령과 국가원수에 준하는 국민 등의 경호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 경호실장이 정한다.

제27조(테러취약요인의 사전제거 지원) ① 테러대상시설 및 테러이용수단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시설소유자등”이라 한다)는 관계기관의 장을 거쳐 대테러센터장에게 테러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하여 적정성 평가, 현장지도 등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② 대테러센터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경우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테러예방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28조(테러취약요인의 사전제거 비용 지원) ① 국가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테러취약요인을 제거한 시설소유자등에 대하여 비용을 지원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비용의 지원 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1. 테러사건이 발생할 가능성
 2. 해당 시설 및 주변 환경 등 지역 특성
 3. 시설·장비의 설치·교체·정비에 필요한 비용의 정도 및 시설소유자등의 부담 능력
 4. 제25조제3항제1호에 따른 적정성 평가와 그 이행 실태 확인 결과
 5. 제27조제1항·제2항에 따른 적정성 평가, 현장지도 결과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에 준하는 것으로서 국가기관의 장이 대테러센터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지원되는 비용의 한도, 세부기준,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국가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6장 포상금 및 테러피해의 지원

제29조(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이하 “포상금”이라 한다)은 제30조에 따른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계기관의 장이 지급할 수 있다.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거나 체포된 범인을 인도받은 관계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나 지청장 또는 군 검찰부가 설치되어 있는 부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검사 또는 군 검찰부 검찰관은 신고를 한 사람이나 범인을 체포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인도한 사람(이하 “신고자등”이라 한다)에게 신고 또는 인도를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예방에 기여하였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등을 포상금 지급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대상자에게 추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0조(포상금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테러센터장 소속으로 포상금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8명으로 구성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테러센터 소속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이에 상당하는 특정직·별정직 공무원을 포함한다)이 되며, 심사위원회 위원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관계기관 소속 4급 상당 공무원 중 관계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④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포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할 필요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
- ⑤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포상금 지급 여부와 그 지급금액
 2. 포상금 지급 취소 및 반환 여부
 3. 그 밖에 포상금에 관한 사항
- ⑥ 심사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포상금 지급 대상자 또는 참고인의 출석을 요청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관계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1조(포상금 지급기준)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1억원의 범위에서 차등 지급한다.

1.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2. 신고자등이 테러 신고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하였는지 여부
 3. 신고자등이 테러예방 등에 이바지한 정도
 4. 신고자등이 관계기관 등에 신고·체포할 의무가 있는지 또는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체포를 하였는지 여부
- ② 포상금의 세부적인 지급기준은 대책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③ 관계기관의 장은 하나의 테러사건에 대한 신고자등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지급기준의 범위에서 그 공로를 고려하여 배분·지급한다.
- ④ 관계기관의 장은 제3항의 경우 포상금을 받을 사람이 배분방법에 관하여 미리 합의하여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합의한 내용에 따라 지급한다. 다만, 합의된 비율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계기관의 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2조(포상금 신청 절차) ① 포상금은 그 사건이 공소제기·기소유예 또는 공소보류되거나 관계기관의 장이 제29조제3항에 따라 추천한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 ② 검사 또는 군 검찰부 검찰관은 법에 따른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자등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③ 포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총리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계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제29조제2항에 따른 증명서
 2. 제2항 또는 제29조제3항 후단에 따른 통지서
 3. 공적 자술서
-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은 제2항 또는 제29조제3항 후단에 따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 ⑤ 포상금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자 전원의 연서(連署)로써 청구하여야 한다.

제33조(포상금 지급 절차) ① 관계기관의 장은 심사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을 기초로 포상금 지급 여부와 지급금액을 결정한다.

② 관계기관의 장은 포상금 지급대상자에게 결정 통지서를 보내고 포상금을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4조(포상금 지급 취소 및 반환) ① 관계기관의 장은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포상금 지급 결정을 취소한다.

1. 포상금 수령자가 신고자등이 아닌 경우

2. 포상금 수령자가 테러사건에 가담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사후에 밝혀진 경우

3. 그 밖에 포상금 지급을 취소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의 지급 결정을 취소하였을 때에는 해당 신고자등에게 그 취소 사실과 포상금의 반환 기한, 반환하여야 하는 금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포상금 반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제35조(테러피해의 지원)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이하 “피해지원금”이라 한다)은 신체 피해에 대한 치료비 및 재산 피해에 대한 복구비로 한다.

② 테러로 인한 신체 피해에 대한 치료비는 다음 각 호와 같고, 치료비 산정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1. 신체적 부상 및 후유증에 대한 치료비

2. 정신적·심리적 피해에 대한 치료비

③ 테러로 인한 재산 피해에 대한 복구비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에 따른 사회재난 피해 지원의 기준과 금액을 고려하여 대책위원회가 정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치료비와 제3항에 따른 복구비는 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피해지원금의 한도·세부기준과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위원회가 정한다.

제36조(특별위로금의 종류)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특별위로금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지급한다.

1. 유족특별위로금: 테러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2. 장애특별위로금: 테러로 인하여 신체상의 장애를 입은 경우. 이 경우 신체상 장애의 기준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장애의 기준을 따른다.

3. 중상해특별위로금: 테러로 인하여 장기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이 경우 장기치료가 필요한 피해의 기준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3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중상해의 기준을 따른다.

- ② 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일시금으로 지급한다.
-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유족특별위로금(이하 “유족특별위로금”이라 한다)은 피해자가 사망하였을 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맨 앞 순위인 유족에게 지급한다. 다만, 순위가 같은 유족이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 ④ 제1항제2호에 따른 장해특별위로금(이하 “장해특별위로금”이라 한다) 및 제1항제3호에 따른 중상해특별위로금(이하 “중상해특별위로금”이라 한다)은 해당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제37조(특별위로금의 지급기준) ① 유족특별위로금은 피해자의 사망 당시(신체에 손상을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에 손상을 입은 당시를 말한다)의 월급여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24개월 이상 48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유족의 수와 연령 및 생계유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 ② 장해특별위로금과 중상해특별위로금은 피해자가 신체에 손상을 입은 당시의 월급여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2개월 이상 48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피해자의 장해 또는 중상해의 정도와 부양가족의 수 및 생계유지 상황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한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피해자의 월급여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 등은 피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또는 피해자의 근무기관의 장의 증명이나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증명에 따른다.
-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피해자의 월급여액이나 월실수입액이 평균임금의 2배를 넘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해자의 월급여액이나 월실수입액으로 본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별위로금의 세부기준·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책위원회가 정한다.

제38조(특별위로금 지급에 대한 특례) ① 장해특별위로금을 받은 사람이 해당 테러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특별위로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37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유족특별위로금에서 이미 지급한 장해특별위로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 ② 중상해특별위로금을 받은 사람이 해당 테러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신체상의 장애를 입은 경우에는 유족특별위로금 또는 장해특별위로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37조제1항에 따라 산정한 유족특별위로금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정한 장해특별위로금에서 이미 지급한 중상해특별위로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39조(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신청) ① 법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피해지원금 또는 특별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테러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신청서에 관련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법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른 피해지원금 또는 특별위로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신청인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사람이 둘 이상이면 같은 순위의 사람이 합의하여 신청인 대표자를 정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신청인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사망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총리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맨 앞 순위인 유족 1명
2. 생존한 피해자에 대한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생존한 피해자(생존한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을 포함한다)
- ③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의 지급 신청, 지급 결정에 대한 동의, 지급 청구 또는 수령 등을 직접 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다른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 ④ 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피해지원금 또는 특별위로금의 지급신청을 받으면 그 관련 서류 등을 검토하고 서류 등이 누락되거나 보완이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제2항에 따른 신청인 대표자, 제3항에 따른 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40조(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결정) ① 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은 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의 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그 지급 여부 및 금액을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결정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관계기관의 장은 대책위원회가 피해지원금 또는 특별위로금의 지급에 관하여 심의·의결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급 여부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결정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의 신청서에 그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이의 신청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항 중 “120일”은 “60일”로 본다.

제41조(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제한) 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과실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대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그 과실의 정도에 따라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금액을 줄여 지급할 수 있다.

제42조(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지급) ① 제40조제1항에 따라 결정 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이 피해지원금 또는 특별위로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에게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 지급 결정에 대한 동의 및 신청서
2. 인감증명서(서명을 한 경우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말한다)
3. 입금계좌 통장 사본
- ②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은 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이 지급하되, 그 실무는 국고(국고대리점을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 ③ 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동의 및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90일 이내에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지급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그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3조(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 환수) 대책본부를 설치한 관계기관의 장은 피해지원금 및 특별위로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 1. 테러사건에 가담하는 등 불법행위를 한 사실이 사후에 밝혀진 경우
-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
- 3. 잘못 지급된 경우

제44조(다른 법령에 따른 급여 등과의 관계) 테러로 인하여 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를 입은 사람과 피해를 입은 사람의 유족 또는 신체상의 장애 및 장기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사람이 해당 테러행위를 원인으로 하여 다른 법령에 따라 신체 또는 재산의 피해에 대한 치료비, 복구비, 특별위로금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지원을 받을 수 있을 때에는 그 받을 금액의 범위에서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치료비·복구비 또는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장 보칙

제4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계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 1. 법 제9조에 따른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정보 수집, 대테러조사 및 테러위험인물에 대한 추적 등에 관한 사무
- 2. 법 제12조에 따른 테러선동·선전물 긴급 삭제 등 요청에 관한 사무
- 3. 법 제13조에 따른 외국인테러전투원에 대한 규제 등에 관한 사무
- 4. 법 제14조에 따른 신고자 보호 및 포상금 지급 등에 관한 사무
- 5. 법 제15조에 따른 테러피해의 지원 등에 관한 사무
- 6. 법 제16조에 따른 특별위로금 지급 등에 관한 사무

부 칙

이 영은 2016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정이유

국가안보, 공공안전 및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테러방지를 위한 국가 등의 책무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이 제정(법률 제14071호, 2016. 3. 3. 공포, 6. 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3조부터 제5조까지)
 - 1)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등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위원이 되는 사람을 정하고,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회의 위원 과반수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함.
 - 2) 국가테러대책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에 상정할 안전에 관한 전문적인 검토 및 사전 조정을 위하여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 테러대책실무위원회를 두도록 함.

나. 대테러 인권보호관의 자격·임기 및 직무 등(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 1) 대테러 인권보호관은 대한민국 국민 중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10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이나 인권 관련 활동에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등 중에서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직무와 관련한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촉되지 아니하도록 함.
- 2) 대테러 인권보호관은 국가테러대책위원회에 상정되는 안건에 대한 인권보호 자문 및 개선 권고 등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위원장은 대테러 인권보호관이 직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
- 3) 대테러 인권보호관은 직무수행 중 인권침해 행위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장에게 보고한 후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권고할 수 있도록 함.

다. 전담조직의 설치·운영(안 제11조부터 제21조까지)

- 1) 테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관계기관 합동으로 지역 테러대책협의회 및 공항·항만 테러대책협의회를 둘 수 있도록 함.
- 2)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현저한 경우에는 테러사건의 유형에 따라 국외테러사건대책본부·군사시설테러사건대책본부 등 테러사건대책본부를 설치·운영하도록 함.
- 3)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 대응 전담조직으로 화생방테러대응지원본부, 테러복구지원본부, 대테러특공대 및 테러대응구조대 등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

라. 테러대응 절차(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

- 1) 대테러센터장은 테러위험 징후를 포착한 경우에는 테러대책실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테러경보를 발령하도록 하고,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사건이 발생한 경우 사건의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건현장의 통제·보존 및 경비강화 등 초동 조치를 신속하게 하도록 함.
- 2) 테러사건대책본부의 장은 테러사건에 대한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현장지휘본부를 설치하여 상황전파 및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조치사항을 체계적으로 시행하도록 함.

마. 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안 제25조부터 제28조까지)

- 1) 관계기관의 장은 국가중요시설·다중이용시설의 테러예방대책과 테러이용수단의 제조·취급·저장 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수립한 대책의 적정성 평가와 그 이행실태를 확인하는 등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2) 관계기관의 장은 대테러센터장과 협의하여 국가 중요행사의 특성에 맞는 분야별 안전관리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국가테러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기관 합동으로 대테러·안전대책기구를 편성·운영할 수 있도록 함.

바. 테러 예방에 대한 포상금 지급(안 제29조부터 제34조까지)

- 1) 관계기관의 장은 테러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하였거나 테러에 가담·지원한 사람을 신고하거나 체포한 사람에 대하여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 2) 포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테러센터장 소속으로 포상금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포상금심사위원회는 포상금 지급여부와 그 지급금액 등을 심의·의결하도록 함.
- 3) 포상금은 신고 내용의 정확성이나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을 고려하여 1억원의 범위에서 차등 지급하도록 함.

사. 테러 피해에 대한 지원(안 제35조부터 제44조까지)

-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테러로 인한 신체 피해에 대한 치료비 및 재산 피해에 대한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2) 테러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의 유족 또는 신체상의 장애 및 장기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사람에 대해서는 유족특별위로금, 장애특별위로금 또는 중상해특별위로금을 지급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인

2016년 5월 31일

국무총리 황 교 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 윤 식
(금융위원회 소관)

●대통령령 제27204호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전채무”는 다음 각호의”를 “제2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전채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중 금융기관”을 “자 중 금융회사등”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를 “이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한다.

제19조의2제3항 중 “법 제2조제2항”을 “법 제2조제2호”로 한다.

제19조의4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이라 함은”을 “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범위안에서”를 “범위에서”로 한다.

제19조의5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이라 함은 3월”을 “이란 3개월”로 한다.

제19조의8제2항 후단 중 “금액을”을 “금액의 100분의 200을”로 한다.

제20조제2항 본문 중 “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로, “법 제23조의2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보증자로부터”를 “원보증자로부터”로 한다.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라 함은 다음 각호에 제기하는 것을”을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2조제2항제1호의”를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으로,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3월”을 “3개월”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2조제2항제2호의”를 “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으로, “금융기관”을 “금융회사등”으로, “3월”을 “3개월”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법 제2조제2항제3호의”를 “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으로 하

며, 같은 조 제4호 중 “법 제2조제2항제4호의”를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으로, “법 제23조의3제1항의”를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으로 한다.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이”를 “대통령령으로”로, “라 함은 다음 각호”를 “란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법 제2조제2항제1호의”를 “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으로, “법 제23조의3제1항의”를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호 중 “법 제2조제2항제2호 및 제4호의”를 “법 제2조제2호나목 및 라목에 따른”으로 한다.

제23조의2 중 “법 제3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법 제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법 제31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법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으로 한다.

제2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하여는 법 제23조제1항제4호 및 제6호”를 “한국자산관리공사: 법 제23조제1항제5호 및 제7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신용정보회사에 대하여는 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제4호 및 제6호”를 “신용정보회사: 법 제23조제1항제4호·제5호 및 제7호”로 한다.

- 1. 금융회사등: 법 제23조제1항제2호·제5호 및 제7호의 업무

제2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6호 중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3항제10호”를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3호바목”으로 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우수 중소기업의 성장동력 확보와 경영혁신을 위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신용보증기금이 자신이 보증한 같은 기업에 대하여 투자하는 보증연계투자의 한도를 기금이 해당 기업에 대하여 보증한 금액으로 하던 것을, 보증 금액의 두 배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3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금융위원회 소관)

●**대통령령 제27205호**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을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및 제2조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 각각 “「기술보증기금법」”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각각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제22조의8제2항 후단 중 “금액을”을 “금액의 100분의 200을”로 한다.

제23조의 제목 “(신용보증 등의 한도)”를 “(보증 등의 한도)”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신용보증”을 “기술보증, 신용보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신용보증(재보증을 포함한다)”을 “기술보증, 신용보증 및 재보증”으로, “법 제28조의2제3항에도 불구하고 원보증자로부터 신용보증”을 “원보증자로부터 원보증”으로 한다.

제29조를 삭제한다.

별표 제1호 중 “「건설기술관리법」 제16조의2”를 “「건설기술 진흥법」 제7조”로, “법 제18조”를 “법 제14조”로 하고, 같은 표 제6호 중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 관련 산업”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농업 및 식품 관련 산업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수산업 관련 산업”으로 하며, 같은 표 제20호 중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8조”를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9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의8제2항 후단 및 별표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 ② 공간정보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 ③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 ④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9. 「기술보증기금법」

- 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 ⑥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제99조제1항제1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⑦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⑧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⑨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8호의2 중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⑩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기술보증기금법」

⑪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⑫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제5조제1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기술보증기금법」

⑬ 농림수산물식품과학기술 육성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7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⑭ 농림수산물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기술보증기금법」

별표 1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⑮ 농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제15조제2항 단서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⑯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6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5호차목”을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3호바목”으로 한다.

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제4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⑱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1조제2항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⑲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기술보증기금”이라 한다)

제2조의3제7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술보증기금

제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술보증기금

제6조의3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술보증기금

제18조의3 각 호 외의 부분 중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술보증기금

별표 1의2 제2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3. 기술보증기금

⑳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4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기술신용보증”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으로 한다.

㉑ 보험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제19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기술보증기금법」

㉒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기술보증기금법」

㉓ 대통령령 제26687호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㉔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㉖ 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7항제5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별표 3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㉗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㉘ 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3항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기술보증기금법」

제34조제6항제18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㉙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5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㉚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기술보증기금법」

㉛ 선주상호보험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6. 「기술보증기금법」

㉔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㉕ 수산업협동조합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3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제27조의3제2항 단서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㉖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 및 신용보증

㉗ 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의2제2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㉙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㉚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술보증기금법」 제19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전무이사

㉛ 온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3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㉜ 은행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기술보증기금법」

㉝ 인지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㉞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제27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기술보증기금법」

제74조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제118조의18제3항제4호나목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 “「기술보증기금법」”으로 한다.

제271조의20제1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기술보증기금법」

제271조의27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제285조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제324조의3제1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제328조제1항 단서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제362조제8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㉓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㉔ 재난구호 및 재난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㉕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㉖ 전력기술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4제4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㉗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8.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제2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별표 1의2 제1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9. 「기술보증기금법」

④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제5항 중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제99조의6제1항제2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 한다)”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이하 이 조에서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제1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④9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 2 제3호다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다.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⑤0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⑤1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⑤2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⑤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제54조의9제2항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8.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이사장

⑤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기술보증기금법」

⑤5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63호 과세자료제출기관란 중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⑤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제4호바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바.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57)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58)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기술보증기금

59) 한국조폐공사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기술신용보증기금”을 “기술보증기금”으로 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영 또는 이 영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법률 제명 「기술신용보증기금법」을 「기술보증기금법」으로 변경하고, “기술신용보증”을 “기술보증”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술보증기금법」이 개정(법률 제14122호, 2016. 3. 29. 공포, 9. 30. 시행)됨에 따라, 제명을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시행령」에서 「기술보증기금법 시행령」으로 변경하고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한편,

우수 기술기업의 기술개발과 기업혁신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기술보증기금이 보증한 같은 기업에 대하여 투자하는 보증연계투자의 한도를 기금이 해당 기업에 대하여 보증한 금액으로 하던 것을, 보증 금액의 두 배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3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대통령령 제27206호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3조(감시기의 운영 위탁) ①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감시기의 운영업무를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 및 항만시설운영자에게 위탁한다.

- 1. 제11조제1항제1호의 공항에 설치한 감시기의 운영 : 해당 공항운영자 또는 항공운송사업자
- 2. 제11조제1항제2호의 무역항에 설치한 감시기의 운영 : 해당 항만시설운영자
- ② 제1항에 따른 감시기 운영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감시기를 통한 감시 대상 화물의 방사선준위 및 방사성핵종의 확인
 - 2. 감시기를 통하여 검출된 유의물질의 분류, 격리 및 임시보관
 - 3. 감시기의 정상적인 동작상태 확인 등 일상점검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감시기 운영 등에 관한 교육) ① 법 제26조의2에 따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 내용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감시기의 정상적인 동작상태 확인 등 일상점검에 관한 사항
- 2. 감시기의 고장·파손 시 조치에 관한 사항
- 3. 유의물질의 방사선준위 및 방사성핵종 확인에 관한 사항
- 4. 유의물질의 분류, 격리 및 임시보관 등 조치에 관한 사항
- 5. 그 밖에 감시기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26조의2에 따른 교육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 1. 집합교육
- 2. 감시기가 운영되고 있는 현장에서의 교육
- 3. 시설 및 장비 등을 활용한 실습교육

③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교육내용을 포함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및 운용할 수 있다.

제1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14조의2제3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용

②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및 위탁업무의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별표 제2호하목부터 러목까지를 각각 거목부터 머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하목 및 버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법 제20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제3항 제7호의2	250	500	1,000
버. 법 제2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감시기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에 대하여 교육을 받게 하지 않은 경우	법 제31조제4항제3호	70	150	300

부 칙

이 영은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방사선·방사능 감시기 운영을 담당하는 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고, 방사선·방사능 감시기 운영자가 감시기의 운영·관리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여 조치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3542호, 2015. 12. 1. 공포, 2016. 6. 2. 시행)됨에 따라, 감시기 운영 담당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내용 및 방법과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사선·방사능 감시기 운영 담당자에 대한 교육(제14조의2 및 제16조제1항제8호 신설)

- 1)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감시기 운영 담당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교육내용에는 감시기의 일상점검, 감시기 고장·파손 시 조치사항, 유의물질 검출 시 확인 및 조치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하고, 해당 교육은 집합·현장·실습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함.
- 2)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감시기 운영 담당자에 대한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용을 생활주변방사선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함.

나. 과태료의 부과기준 마련(별표 제2호하목 및 버목 신설)

- 1) 감시기 운영자가 감시기의 운영·관리 기준을 지키지 아니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조치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회 위반시 250만원, 2회 위반시 500만원, 3회 이상 위반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2) 감시기의 운영을 담당하는 자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감시기 운영자에 대하여 1회 위반시 70만원, 2회 위반시 150만원, 3회 이상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인

2016년 5월 31일

국 무 총 리 황 교 안

국 무 위 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 운 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대통령령 제27207호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을 “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영은 「원자력 손해배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변환등의 범위)”를 “(변환 등의 범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원자력 손해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나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한”을 “「원자력 손해배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으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원자력손해배상 보상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 및 제4호 중 “「원자력손해배상법」”을 각각 “「원자력 손해배상법」”으로 한다.

제3조 중 “「원자력손해배상법 시행령」”을 “「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으로 한다.

②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2조제3호 중 “「원자력손해배상법」”을 “「원자력 손해배상법」”으로 한다.

[별표 2]

과태료의 부과기준(제19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2)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 법 제16조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1호	400만원
2. 법 제16조에 따른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2호	500만원
3. 법 제16조에 따른 질문에 대해 진술을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한 경우	법 제20조제1항제2호	400만원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물가수준을 반영하여 과태료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자력 손해배상법」이 개정(법률 제13543호, 2015. 12. 1. 공포, 2016. 6. 2. 시행)됨에 따라, 원자력사업자 등이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4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진술을 한 경우에는 4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각각 과태료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등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5월 31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윤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소관)

●대통령령 제27208호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을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으로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방호구역”이라 함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을 ““방호구역”이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으로 한다.

제7조제3항 후단 중 “원자력시설등의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전자적 침해행위의 방지 및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의 보안”으로 한다.

제1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로, “기제한”을 “적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각호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를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로, “「보안업무규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보안업무규정」 제36조에 따라”로, “변경승인전”을 “변경승인 전”으로 한다.

- ① 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물리적방호 시설·설비 및 그 운영체제, 물리적 방호규정, 방호비상계획 및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이하 “물리적방호규정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는 원자력사업자는 이에 관한 승인신청서를 원자력시설등의 사용 개시 5개월 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2 제1호가목8) 및 9)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8) 해당 방호구역 내에서 핵물질을 이동시킬 때 원자력시설등의 설계기준위협에 따라 잠금, 봉인 등의 필요한 물리적방호 조치를 적용할 것
9) 제6호의 방호요건을 적용하여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체계를 수립할 것

별표 2 제1호나목7) 및 8)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7) 해당 방호구역 내 출입의 허용 및 허용된 자의 출입을 최대한 제한하고, 단독출입이 허용되지 않은 사람은 단독출입이 허용된 사람과 동행할 것
8) 해당 방호구역에 출입하는 사람, 차량 및 반입·반출되는 물품을 검색할 것

별표 2 제2호가목2)를 다음과 같이 한다.

- 2) 핵물질의 운반시간과 경로 등이 운반할 때마다 다르게 되도록 다양한 방법으로 운반계획을 수립할 것

별표 2 제2호다목3)을 다음과 같이 한다.

- 3) 핵물질의 운반계획을 수립하고 운반할 때의 물리적방호를 총괄하는 방호종사자(이하 “운반방호 책임자”라 한다)는 운반지침서를 소지할 것

별표 2 제3호거목 및 러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거. 제6호의 방호요건을 적용하여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체계를 수립할 것
러. 가목부터 더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보타주의 잠재적 방사선영향이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시하는 수용할 수 없는 방사선영향보다 낮을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적용할 것

- 1) 방호구역에 대한 접근을 통제할 것
2) 방호구역 접근 통제를 위한 수단과 절차는 임의조작이나 위조 등이 되지 않도록 보호할 것
3) 방호구역 불법침입에 대한 탐지·경비체계 및 대응조치를 수립할 것
4) 방호구역의 사보타주에 관한 방호비상계획을 수립하고 해당 시설의 방호종사자를 대상으로 방호비상훈련을 실시할 것
5) 방호종사자에 대하여 매년 물리적방호 교육을 하고, 교육한 내용에 관한 훈련을 실시할 것
6) 물리적방호규정등에 대하여 원자력시설등의 방호체제를 정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방호체제에 대한 보완조치를 취할 것

7) 제6호의 방호요건을 적용하여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체계를 수립할 것
별표 2 제5호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제6호의 방호요건을 적용하여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보안체계를 수립할 것
별표 2 제6호를 제7호로 하고, 같은 표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표 제7호(중전의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방호요건

가.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이 다음의 방식으로 통제될 것

- 1)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상의 정보가 허용된 대상에게만 허용된 방법으로 제공·사용·변경되도록 할 것
- 2)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하드웨어가 허용된 대상에게만 허용된 방법으로 설치·변경되도록 할 것

나.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물리적·전자적 접근에 필요한 수단과 절차는 임의조작이나 위조 등이 되지 않도록 보호하고 통제할 것

다.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물리적·전자적 불법접근의 예방·탐지 및 대응체계를 수립할 것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호요건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영은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5]

과태료의 부과기준(제42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개별기준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위협의 발생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를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 반 행 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가. 법 제9조제1항 단서 또는 법 제20조제1항 단서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법 제52조제1항제1호	500만원
나. 법 제14조를 위반하여 기록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경우	법 제52조제1항제2호	800만원
다. 법 제20조제2항 전단을 위반하여 해당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지정기관의 장에게 알리지 않고 방사선비상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법 제52조제1항제3호	600만원
라. 법 제21조제1항제6호 또는 법 제35조제1항을 위반하여 방사능방재전담조직·인력 또는 방사능재난 대응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지 않은 경우	법 제52조제1항제4호	1,000만원

◇개정이유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원자력시설의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을 강화하기 위하여 원자력시설 등의 물리적방호 요건에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방호요건을 신설하고, 원자력사업자가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을 마련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이 개정(법률 제13544호, 2015. 12. 1. 공포, 2016. 6. 2. 시행)됨에 따라,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방호요건의 세부사항을 정하고,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의 승인절차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의 승인절차 마련(제17조제1항)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 보안규정의 승인을 받으려는 원자력사업자는 해당 보안규정에 관한 승인신청서를 원자력시설 등의 사용개시 5개월 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

나.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방호요건 신설(별표 2 제6호 신설)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요건에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방호요건을 신설하여 원자력시설 컴퓨터 및 정보시스템에의 접근의 통제방식, 접근 수단과 절차의 임의조작이나 위조 등으로부터의 보호, 물리적·전자적 불법접근에 대한 예방·탐지 및 대응체계 수립 등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방호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함.

<법제처 제공>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 통 령 박 근 혜 인

2016년 5월 31일

국 무 총 리 황 교 안

국 무 위 원
행정자치부 장관
홍 윤 식
(식품의약품안전처 소관)

●대통령령 제27209호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의료기기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분과위원회)”를 “(분과위원회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9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제6항에 따른 소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는 “소분과위원회”로, “20명 이내”는 “10명 이내”로, “분과위원장”은 “소분과위원장”으로, “분과위원”은 “소분과위원”으로 본다.

⑧ 소분과위원회가 심의·의결한 사항은 위원장이 분과위원회 또는 다른 소분과위원회에서 재심의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것으로 본다.

제13조제1항에 제2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1의2. 법 제40조의2에 따른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의 위촉, 교육, 해촉 및 단독 출입의 승인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의료기기위원회의 분과위원회에 설치된 소분과위원회를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는 등 소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방식을 명확하게 하는 한편,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의 위촉·해촉 및 교육 등의 업무를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의 활동과 직접 연관성이 높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하여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 제도를 활성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부 령

●기획재정부령 제564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5월 31일

기획재정부장관 인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5항제1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4. 인사혁신처 소관 일반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제10조제7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19항제3호 중 “행정자치부·외교부·통일부·대통령비서실·대통령경호실·국가안보실·인사혁신처”를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경호실·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외교부·통일부·행정자치부·국세청·관세청·통계청”으로 한다.

10. 조달청 소관 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집행의 관리

제12조의2제2항 중 “인력정책과 및 복지경제과”를 “인력정책과·복지경제과 및 기후경제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6호부터 제19호까지, 제21호 및 제2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기후경제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녹색성장 관련 경제정책의 협의·조정
2.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제25조제3항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이행 관련 협의·조정
3. 기후변화 관련 정책의 협의·조정
4.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제도의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배출권 할당·상쇄 및 배출량 인증 관련 협의·조정
7. 배출권거래소의 지정·운영 및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화 등 배출권 거래시장 관리에 관한 사항
8. 국내 배출권 시장과 국제 탄소시장 간의 연계에 관한 사항
9. 국민생활 및 안전 관련 환경규제 협의·조정
10. 환경과 개발의 조화에 관한 시책 및 중장기 전략 수립
11. 지속가능발전 전략 수립

제15조제2항 중 “재정정보과”를 “재정분석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⑥ 재정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재정사업 심층평가 관련 계획 수립·시행
2. 재정사업 심층평가 수행·관리
3. 재정사업 심층평가 결과와 재정운용·제도개선 등의 연계에 관한 사항
4.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심층평가 관련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재정사업 심층평가와 관련된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6. 재정정책의 효과 분석
7. 재정정책 관련 지표의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제15조의2제2항 중 “사회재정성과과·경제재정성과과·타당성심사과·민간투자정책과 및 회계결산과”를 “재정성과평가과·타당성심사과·민간투자정책과·회계결산과 및 재정정보과”로 하고, 같은 조 제

3항제6호의2를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19호부터 제2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19. 기금운용실태 조사·분석
- 20. 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1. 기금운용평가보고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에 관한 사항
- 22. 기금의 존치평가에 관한 사항
- 23. 기금 여유자금 운영의 기본방향 수립
- 24. 기금 여유자금 통합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25. 행정분야 재정 성과목표 관리·운영
- 26. 행정분야 재정사업 자율평가제도의 운영
- 27. 행정분야 재정사업 평가결과 분석 및 관리·활용

제15조의2제4항 중 “사회재정성과과장”을 “재정성과평가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의2부터 제2호의6까지 중 “사회분야”를 각각 “사회·경제분야”로 하며, 같은 항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한다.

- 7. 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 및 부정 수급 대응 등 국고보조사업 관련 정책수립
- 8. 신규보조사업 적격성 심사, 보조사업 연장평가 및 부처별 유사·중복 보조사업 조정

제15조의2에 제9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재정정보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 1. 재정정보의 공개와 관련한 사항
- 2. 재정통계의 수집·분석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 3.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국가재정법」 제97조의2에 따라 개발한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운영 및 관리
- 4.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발전방향 수립·추진
- 5.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 6.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재해복구시스템 운영 및 관리
- 7.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장애 관리에 관한 사항
- 8.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과 다른 재정 관련 정보시스템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
- 9.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홈페이지의 운영·관리
- 10.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보안 및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 1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사용자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12.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사용자에게 대한 교육계획의 수립 및 시행
- 13.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기능 개선에 관한 사항
- 14. 한국재정정보원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제20조의2를 삭제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1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은 별표 1 제2호 및 별표 1의2 제2호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외의 공무원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별표 1 및 별표 1의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4를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기획재정부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1항 본문 관련)

총계	976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969
정무직 계	3
장관	1
차관	2
별정직 계	7
고위공무원단(장관정책보좌관)	1
장관정책보좌관(3급상당 또는 4급상당)	2
비서(6급상당)	2
비서(7급상당)	1
비서(9급상당)	1
일반직 계	959
고위공무원단	3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비상안전기획관)	1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30
서기관	60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8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02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3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행정사무관	375
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4
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시설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0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전산사무관	1
행정주사	142
행정주사·세무주사 또는 통계주사	5
세무주사	21
행정주사 또는 관세주사	8
사서주사	1

전산주사	10
행정주사보	29
세무주사보 또는 통계주사보	3
행정주사보 또는 관세주사보	2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4
행정서기	64
사서서기	1
행정서기보	8
운전서기보	8
기록연구사	1
사무운영서기보	10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비상계획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사진촬영 담당)	1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7.0
일반직 계	7.0
행정주사	3.0
행정주사보	3.0
행정서기보	1.0

[별표 1의2]

기획재정부 공무원 정원표(제20조제1항 단서 관련)

총계	973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계	966
정무직 계	3
장관	1
차관	2
별정직 계	7
고위공무원단(장관정책보좌관)	1
장관정책보좌관(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2
비서(6급 상당)	2
비서(7급 상당)	1
비서(9급 상당)	1
일반직 계	956
고위공무원단	33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비상안전기획관)	1
부이사관 또는 서기관	30
서기관	60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8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102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3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행정사무관	396

행정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사서사무관	15
행정사무관·농업사무관·시설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9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전산사무관	1
행정주사	125
행정주사·세무주사 또는 통계주사	6
행정주사 또는 공업주사	3
세무주사	15
행정주사 또는 관세주사	8
사서주사	1
전산주사	10
행정주사보	27
세무주사보 또는 통계주사보	1
행정주사보 또는 관세주사보	2
행정주사보 또는 전산주사보	4
행정서기	64
행정서기보	8
운전서기보	8
기록연구사	1
사무운영서기보	10
전문경력관 가군(비상계획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비상계획 담당)	1
전문경력관 나군(사진촬영 담당)	1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계	7.0
일반직 계	7.0
행정주사	3.0
행정주사보	3.0
행정서기보	1.0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배출권거래제 총괄 운영 기능이 환경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이관됨에 따라 배출권거래제 총괄 운영 기능을 담당하던 환경부 소속 인력 4명(4급 1명, 5급 2명, 7급 1명)을 기획재정부로 이체하고, 배출권 거래시장 활성화 등에 필요한 인력 3명(5급 2명, 6급 1명)을 증원하며,

재정기획과 심층평가의 효율적 연계 강화 등을 위하여 종전에 재정기획국장이 분장하던 재정통계의 수집·분석 및 정보화에 관한 사항 등을 재정관리국장이 분장하도록 하는 등 재정기획국과 재정관리국의 일부 기능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7190호, 2016. 5. 31. 공포, 6. 1. 시행)됨에 따라 미래경제전략국에 기후경제과를 신설하여 기후경제과장은 녹색성장 관련 경제정책의 협의·조정 등을 분장하도록 하고, 재정관리국 사회재정성과과와 경제재정성과과를 재정성과평가과로 통합·개편하는 등 기획재정부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며, 증원된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는 한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정원을 구분하여 정원표에 표기하고,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을 위하여 운영하는 별도정원과 관련된 조문 및 해당 별도정원표를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기획재정부 제공>

●보건복지부령 제77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5월 31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280일”을 “280일(해당 의료기술이 체외진단 검사 또는 유전자 검사인 경우에는 140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체외진단 검사 또는 유전자 검사의 평가결과 통보 기간에도 불구하고 추가적 검토를 필요로 하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140일의 범위에서 그 통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연장사유 및 연장기간 등을 신청인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평가결과의 통보 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제3조제1항 및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체외진단 검사 또는 유전자 검사에 대한 신의료기술평가가 진행 중인 경우 그 평가결과의 통보 기간에 대해서는 제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의료기술평가를 신청하는 경우 280일 이내에 그 평가결과를 통보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신의료기술평가 대상이 체외진단 검사 또는 유전자 검사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140일 이내에 평가결과를 통보하도록 개선함으로써 신의료기술의 조속한 시장 진입을 유도하고, 사업자 경영활동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

●국토교통부령 제313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5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8항에 제8호의2부터 제8호의9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8의2. 건물·교통 분야 배출권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변경 관련 고시 등에 관한 사항
- 8의3. 건물·교통 분야 배출권 할당, 추가 할당, 조정 및 취소 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 8의4. 건물·교통 분야 배출권할당결정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8의5. 건물·교통 분야 배출권거래제 조기감축실적의 등록·평가·검증·인정 등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 8의6. 건물·교통 분야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인증 및 제도 운영
- 8의7. 건물·교통 분야 배출권의 이월·차입 승인 및 거래 신고에 관한 사항
- 8의8. 건물·교통 분야 배출권거래제 관련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의 등록·평가·검증·인증 등 상쇄제도 운영
- 8의9. 건물·교통 분야 배출권거래제 관련 과징금·과태료 등에 관한 사항

별표 7 중 총계 “980”을 “982”로 하고,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공무원은 제외한다) “978”을 “980”으로 하며, 일반직 계 “968”을 “970”으로 하고, 행정사무관 “109”를 “110”으로, 시설사무관 “65”를 “66”으로 한다.

별표 7의2 중 총계 “980”을 “982”로 하고, 1. 공무원 계(시간선택제공무원은 제외한다) “978”을 “980”으로 하며, 일반직 계 “968”을 “970”으로 하고, 행정사무관 “111”을 “112”로, 시설사무관 “66”을 “67”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16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 관장기관 책임제를 기반으로 하는 범정부적 정책 추진체계 마련의 일환으로, 건물·교통 분야 할당대상업체의 지정 및 배출권 할당 등 집행관리 등의 업무를 기획조정실장의 분장사무로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2명(5급 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7195호, 2016. 5. 31. 공포, 6. 1. 시행)됨에 따라,

기획조정실 미래전략담당관의 분장사무에 건물·교통 분야 배출권 할당대상 업체 지정 및 변경 관련 고시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추가하고, 증원되는 인력의 직급별 정원을 반영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령 제315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6년 5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①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하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이라 한다) 정원은 별표 1 제2호 및 별표 2 제2호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관 운영상 필요한 경우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 외의 공무원 정원을 활용하여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으로 운영할 수 있다.

제12조제3항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지식산업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의2를 삭제한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정원표(제10조 본문 관련)

총계	142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140
정무직 계	1
청장	1
일반직 계	139
고위공무원단	4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4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9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5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4
행정사무관	4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7
행정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6
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1
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
시설사무관 또는 보건사무관	2
전산사무관	1
행정주사	6
행정주사 또는 세무주사	1
행정주사·사회복지주사·간호주사 또는 보건주사	2
행정주사·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1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11
행정주사·시설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1
행정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6
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1
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
전산주사	1
행정주사보	2
행정주사보 또는 세무주사보	1
행정주사보 또는 사회복지주사보	1
행정주사보·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행정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6
전산주사보	1

사무운영주사보	1
기록연구사	1
행정서기	3
운전서기	1
행정서기보	8
운전서기보	2
사무운영서기보	1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2.0
일반직 계	2.0
행정서기보	2.0

[별표 2]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공무원 정원표(제10조 단서 관련)

총계	142
1. 공무원(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은 제외한다)	140
정무직 계	1
청장	1
일반직 계	139
고위공무원단	4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4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9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1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5
서기관 또는 행정사무관	4
행정사무관	4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7
행정사무관·환경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2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방송통신사무관	4
행정사무관 또는 시설사무관	19
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방재안전사무관	1
행정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	1
행정사무관 또는 학예연구관	1
시설사무관 또는 보건사무관	2
전산사무관	1
행정주사	6
행정주사 또는 세무주사	1
행정주사·사회복지주사·간호주사 또는 보건주사	2
행정주사·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11
행정주사 또는 시설주사	11
행정주사·시설주사 또는 방재안전주사	1
행정주사 또는 학예연구사	1

공업주사 또는 시설주사	6
환경주사 또는 시설주사	1
시설주사 또는 방송통신주사	1
전산주사	1
행정주사보	2
행정주사보 또는 세무주사보	1
행정주사보 또는 사회복지주사보	1
행정주사보 · 공업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1
행정주사보 또는 시설주사보	4
전산주사보	1
사무운영주사보	1
기록연구사	1
행정서기	3
운전서기	1
행정서기보	7
운전서기보	2
사무운영서기보	1
2.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2.0
일반직 계	2.0
행정서기보	2.0

[별표 4]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한시조직에 두는 공무원 정원표(제12조 관련)

공공건축추진단(존속기한: 2018년 6월 6일)

총계	4
일반직 계	4
고위공무원단	1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
공업주사 · 시설주사 또는 전산주사	1
공업주사보 · 시설주사보 또는 환경주사보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중심복합도시의 공공건축물 설치 등 건설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한시조직인 공공건축추진단의 존속기한을 2016년 6월 6일까지에서 2018년 6월 6일까지로 2년 연장하고, 세종특별자치시 교육청 청사 및 부속기관의 설치에 관한 업무가 세종특별자치시로 이관되어 공공건축추진단장의 분장사항 중 관련 규정을 삭제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27196호, 2016. 5. 31. 공포·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는 한편,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정원을 구분하여 정원표에 표기하며, 육아휴직자 결원보충을 위하여 운영하는 별도정원과 관련된 조문 및 해당 별도정원표를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고 시

●법무부고시제2016-168호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금액 등에 관한 기준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제27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의 투자지역, 투자대상 및 투자기준금액 등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31일

법무부장관

1.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용산리·수하리 일원]

가. 투자대상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강원도지사가 승인하여 지정한 ‘대관령알펜시아관광단지’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③ 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1호) 및 시행령(제28조),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6호) 및 시행령(168조의13), 법인세법(제55조의2제2항제6호) 및 시행령(제92조의10)에 따른 별장
- ※ 위 법령에 따른 별장은 2018년 5월 1일부터는 거주(F-2)자격 취득을 위한 부동산 투자대상에서 제외됨
- ④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관광펜션

나. 투자금액 : 5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13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 2016. 5. 18. 재검토 결과, 5년간(2023년 4월 30일까지) 연장 결정

2.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영종지구, 청라국제도시

[인천광역시 중구, 연수구, 서구 일원]

가. 투자대상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4조, 제9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정·승인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영종지구, 청라국제도시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③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조제2항제8호 ‘마’목) 및 지식경제부 고시(제2012-323호)에 따라 체육시설과 연계하여 건설하는 주택

④ 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1호) 및 시행령(제28조),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6호) 및 시행령(168조의13), 법인세법(제55조의2제2항제6호) 및 시행령(제92조의10)에 따른 별장

※ 위 법령에 따른 별장은 2018년 5월 1일부터는 거주(F-2)자격 취득을 위한 부동산 투자대상에서 제외됨

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7호)에 따른 관광펜션

⑥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제6항에 따라 선착순의 방법에 의하여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는 주택 (단, '14.9.30. 현재 및 '15.9.30.까지 해당 요건을 갖춘 주택에 한함)

- 분양계약이 해제된 주택 및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명의로 최초 소유권 이전등기가 된 주택도 대상에 포함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택법 시행령」 제107조제1항에 따라 주택을 매입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2.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해당 주택을 받은 주택의 시공자 3.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5, 제1호의8 및 제1호의10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등 4. 「법인세법 시행령」 제92조의2제2항제1호의7, 제1호의9 및 제1호의11에 따라 주택을 취득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
|--|

- 임대 중인 주택의 경우 투자이민으로 인한 거주(F-2) 체류자격을 받는 시점은 임대기간 종료 후 공실이 된 때로 함

나. 투자금액 : 5억 원 이상(단, 2016. 5. 고시일 이전까지는 7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13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 2016. 5. 18. 재검토 결과, 5년간(2023년 4월 30일까지) 기간 연장 결정

3. 제주특별자치도

가. 투자대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47조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얻고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관광단지 및 관광지' 지정을 받은 사업지역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③ 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1호) 및 시행령(제28조),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6호) 및 시행령(168조의13), 법인세법(제55조의2제2항제6호) 및 시행령(제92조의10)에 따른 별장

※ 위 법령에 따른 별장은 2018년 5월 1일부터는 거주(F-2)자격 취득을 위한 부동산 투자대상에서 제외됨

④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7호)에 따른 관광펜션

나. 투자금액 : 5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15년 11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 2016. 5. 18. 재검토 결과, 5년간(2023년 4월 30일까지) 연장 결정

라. 경과규정(신설)

① 2016년 12월 31일까지 종전 고시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29조에 따른 도지사의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얻은 경우 이 고시에 따른 투자대상 부동산으로 본다.

4. 전남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전남 여수시 경호동 대경도 일원]

가. 투자대상

「여수세계박람회 기념 및 사후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에 따라 해양수산부 장관이 박람회를 지원하기 위한 구역으로 지정·고시한 ‘여수경도 해양관광단지’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③ 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1호) 및 시행령(제28조),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6호) 및 시행령(168조의13), 법인세법(제55조의2제2항제6호) 및 시행령(제92조의10)에 따른 별장
 - ※ 위 법령에 따른 별장은 2018년 5월 1일부터는 거주(F-2)자격 취득을 위한 부동산 투자대상에서 제외됨
- ④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7호)에 따른 관광펜션

나. 투자금액 : 5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13년 5월 1일부터 2018년 4월 30일까지

※ 2016. 5. 18. 재검토 결과, 5년간(2023년 4월 30일까지) 연장 결정

5. 부산 해운대관광리조트, 동부산관광단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중1동 일원,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시랑·연화·대변·당사·청강리 일원]

가. 투자대상

「관광진흥법」 제52조, 제70조에 따라 부산광역시장의 승인하여 지정한 ‘해운대관광특구’ 중 ‘해운대관광리조트’ 및 ‘동부산관광단지’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③ 지방세법(제13조제5항제1호) 및 시행령(제28조), 소득세법(제104조의3제1항제6호) 및 시행령(168조의13), 법인세법(제55조의2제2항제6호) 및 시행령(제92조의10)에 따른 별장
 - ※ 위 법령에 따른 별장은 2018년 5월 1일부터는 거주(F-2)자격 취득을 위한 부동산 투자대상에서 제외됨
- ④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7호)에 따른 관광펜션

나. 투자금액 : 5억 원 이상(단, 해운대관광리조트는 2016. 5. 고시일 이전까지 7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13년 5월 20일부터 2018년 5월 19일까지

※ 2016. 5. 18. 재검토 결과, 5년간(2023년 5월 19일까지) 연장 결정

6. 경기 파주 통일동산 지구

[경기도 파주시 탄현면 범흥리 일원]

가. 투자대상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舊 특정지역 종합개발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촉진지구로 지정된 ‘통일동산’ 내의 부동산 중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나. 투자금액 : 5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15년 11월 1일부터 2020년 10월 31일까지

7. 강원도 강릉 정동진 지구

[강원도 강릉시 강동면 정동진리 일원]

가. 투자대상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지원하기 위한 구역으로 지정·고시한 ‘2018 평창 동계올림픽 특별구역’ 내의 부동산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 ①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나’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1항제2호 ‘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
- ②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가’목)에 따른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 ③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15호 ‘라’목) 및 관광진흥법(제3조제7호)에 따른 관광펜션

나. 투자금액 : 5억 원 이상

다. 시행기간 : 2016년 2월 1일부터 2021년 1월 31일까지

●법무부고시제2016-169호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지역 지정 절차

「출입국관리법시행령」 별표1의 제27호 거주(F-2)의 체류자격 ‘차’목에 해당하는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지역 지정 절차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31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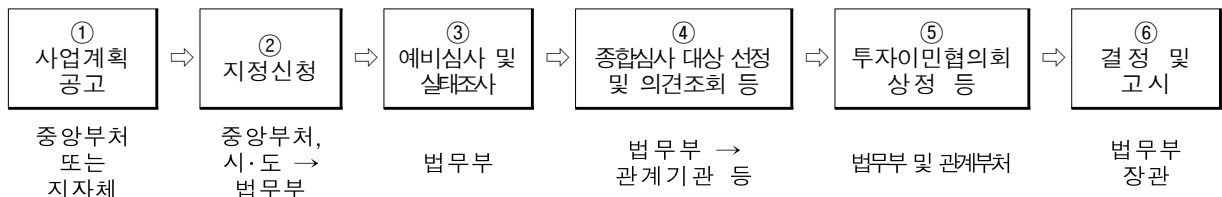
법무부장관

1. 지정신청 대상

법률에 근거하여 중앙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등록)한 특정 구역, 단지 또는 시설

- 경제자유구역(경자구역특별법), 관광 특구·단지(관광진흥법), 올림픽 특구(특별법), 종합휴양업 등록시설(관광진흥법) 등

2. 지정절차



① 사업계획 공고

- (주체) 해당 중앙부처 또는 지자체(기초 또는 광역)
 - ※ 신청 사업이 2개 이상의 기초 지자체에 걸쳐있는 경우 중앙부처 또는 광역지자체가 주체가 되어야 함
- (내용)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개발 및 투자유치 계획서’(별첨)를 작성하여 20일 이상 공고*
 - * 공고는 해당 지자체의 홈페이지 게시 등 해당 지역 주민이면 누구든지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

② 지정신청

- (주체) 중앙부처의 장 또는 시·도지사 명의의 공문으로 법무부장관에게 부동산 투자이민 투자지역 지정 신청
- (신청내용) 지정 필요성, 외국인 관광활성화 및 투자유치 가능성, 개발 및 투자유치계획, 기대효과 등을 기재
- (제출서류) 신청공문, 개발 및 투자유치 계획서*, 타당성 분석자료**, 지정신청 대상사업임을 입증하는 서류, 주민 의견청취 관련 증빙자료 등 (공청회 및 지방의회 의견을 거친 경우에는 관련 자료)
 - * 지정필요성, 사업목적 및 개요, 위치도, 추진상황 및 향후 계획, 투자유치 동향 및 향후 가능성, 공고 등 지역 주민 의견수렴 결과 등 포함 (별첨 양식)
 - ** 부동산 투자이민제로 인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해당 지역의 발전가능성 등이 포함된 전문기관의 연구결과 또는 자문 등을 근거로 작성하고 해당 자료를 별도 첨부

③ 예비심사 및 실태조사 등

- (예비심사) 제출자료 및 관련정보 등을 통한 1차 서면심사
 - ※ 기존 지정지역(신청 지자체)의 투자유치 실적이 없는 경우 추가 지정 억제
- (실태조사) 지정신청에 대한 현지 실태조사 등을 통해 제출자료 진위여부, 지정필요성 및 지역여론 등 분석
- (공청회, 지방의회 의견) 심사과정에서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신청 기관에게 주민 공청회나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요구할 수 있음
 - ※ 법무부장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지정신청 기관은 이에 응해야 함

④ 종합심사 대상여부 결정 및 의견조회 등

- (종합심사 대상 결정) 예비심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지정검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종합심사 대상결정 및 신청기관 통보
- (의견조회 등) 종합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면 이를 관계기관, 전문가 등을 통한 의견조회, 관련 세부자료 검토 등 추진

⑤ 투자이민협의회 상정

- 종합심사 대상을 '투자이민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

⑥ 결정 및 고시

- (결정) 신청사항에 대한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투자대상지역 지정 여부 결정
- (고시) 결정사항을 법무부장관 명의로 고시

⑦ 일몰제 적용

- 지정일로부터 5년 단위로 지정 유지 여부 검토
 - ※ 시행기간내 투자유치 실적과 향후 투자 가능성 등을 검토 후 연장 여부 결정[다만,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지역(지자체)의 재신청은 사정변경이 없는 한 1년이 경과하여야함]

3. 처리 기한 : 신청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함

- 다만, 정밀심사, 자료보완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3개월 연장 가능 (최대 심사기간 6개월)

● 행정자치부고시제2016-16호

민원처리기준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민원처리기준표를 다음과 같이 고시(신규 4종, 변경 4종)합니다.

2016년 5월 31일

행정자치부장관

○ 신규등록 : 2종

- 국토교통부 : 3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0000000-0000 (국토교통부)	입주 승인 신청	방문, 우편
	근거법령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3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1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시·도·특별자치도(0일) - 처리 : 시·도·특별자치도(40일)
	구비서류	<신청서>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입주승인 신청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사업계획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방법 1부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입주승인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입주(변경) 승인서’ 1부
0000000-0000 (국토교통부)	입주 변경승인 신청	방문, 우편
	근거법령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 후단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2제2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시·도·특별자치도(0일) - 처리 : 시·도·특별자치도(30일)
구비서류	<신청서>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입주 변경승인 신청서’ 1부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민원인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부 - 변경사유서 1부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의 '입주(변경) 승인서' 1부
0000000-0000 (국토교통부)	부지·시설·건축물 양도신고	방문, 우편
	근거법령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4제1항 -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4제1항 -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시·도·특별자치도(0일) - 처리 : 시·도·특별자치도(5일)
	구비서류	<신청서>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부지·시설·건축물 양도 신고서' 1부 <민원인 제출서류> - 양도사유서 1부 -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4제1항에 따른 부지·시설 또는 건축물에 대한 양도가격의 산출 근거에 관한 서류 1부 - 양도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공무원 확인사항> -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해당없음

- 국세청 : 1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0000000-0000 (국세청)	소득확인증명서 (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방문, 인터넷
	근거법령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3조의4제4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세무서(즉시) - 처리 : 세무서(즉시)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신청방법
	구비서류	<신청서> - 국제 증명발급 등 민원신청서 <민원인 제출서류> -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 -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위임장, 위임하는 사람 신분증(사본)과 위임받은 사람의 신분증]	
	수수료	해당없음	
	발급물내용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별지 제60호의19서식] 소득확인증명서(서민형 개인자산관리계자 가입용)	

○ 변경등록 : 4종

- 미래창조과학부 : 1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311000-0044 (미래부)	정보통신보조 기기 신청	접수처리 (기관 및 기간)	- 접수 : 미래창조과학부 (14일) - 처리 : 미래창조과학부 (90일)	- 접수 : 미래창조과학부(0 일), 17개 지자체 시, 군, 구(60일) - 처리 : 미래창조과학부 (0일), 17개 지자체 시, 군, 구(90일)

- 행정자치부 : 1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310000-0059 (행정자치부)	지방세 환급금 양도신청	구비서류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1)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 증 사본 (2) 양수인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1. 기본서류 < 민원인 제출서류 > - 양도인과 양수인의 신분 증 사본

- 문화체육관광부 : 1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370000-0163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사업 등록	접수/처리(기관/기간)	여행업 및 관광숙박업 시군구, 특별자치도(7일)	여행업 및 관광숙박업 시군구, 특별자치도(7일)
			종합휴양업 시군구, 특별자치도(12일)	종합휴양업 시군구, 특별자치도(12일)
			기타 시군구, 특별자치도(5일)	기타 시군구, 특별자치도(5일)
			-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시군구, 특별자치도(14일)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수수료	단일(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70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1건 30,000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1건 20,000원, 그밖의 관광사업(숙박시설이 있는 경우 매 실당 700원을 가산한 금액으로 합니다) 1건 30,000원

- 관세청 : 1종

분류번호 (소관부처)	민원사무명	구분	당 초	변 경
1220000-0145 (관세청)	영업등록(갱신)	구비서류	<민원인제출서류> (1)영업등록(갱신)신청서 (2)항만운송사업법등관련법령에의한등록증(허가서,면허증) (3)임원명단(등기부상의임원전원기재,개인인경우대표자만기재) <공무원확인사항> (4)국세납세증명서	<민원인제출서류> (1)영업등록(갱신)신청서 (2)항만운송사업법등관련법령에의한등록증(허가서,면허증) (3)임원명단(등기부상의임원전원기재,개인인경우대표자만기재) <공무원확인사항> (4)국세납세증명서 (5)법인등기부등본

● 환경부고시제2016-99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지정(환경부 고시 제2014-162호, '14.9.12),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변경(환경부 고시 제2014-185호, '14.10.10),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변경(환경부 고시 제2014-197호, '14.11.6),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변경(환경부 고시 제2015-79호, '15.6.15),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변경(환경부 고시 제2015-186호, '15.9.22),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변경(환경부 고시 제2015-216호, '15.11.16),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변경(환경부 고시 제2016-48호, '16.2.22)에 대하여 업체명 변경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변경사항을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31일

환 경 부 장 관

배출권거래제 할당대상업체 변경사항

기존	변경	비고
· 업 종 : 석유화학 · 업체명 : 한화케미칼 주식회사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6	· 업 종 : 석유화학 · 업체명 : 한화케미칼 주식회사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6	합병
· 업 종 : 석유화학 · 업체명 : 한화화인케미칼(주) · 소재지 : 전라남도 여수시 율하동 425		
· 업 종 : 철강	· 업 종 : 철강	합병

기존	변경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명 : 주식회사 포스코 · 소재지 :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괴동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명 : 주식회사 포스코 · 소재지 : 경상북도 남구 동해안로 62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 종 : 철강 · 업체명 : 주식회사 포스하이메탈 · 소재지 : 전라남도 광양시 금호동 868-11번지 포스하이메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명 : 주식회사 포스코 · 소재지 : 경상북도 남구 동해안로 626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 종 : 전기전자 · 업체명 : 삼성에스디아이 주식회사 ·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로 15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 종 : 전기전자 · 업체명 : 삼성에스디아이 주식회사 ·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로 150-20 	분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명 : 삼성에스디아이 주식회사 · 소재지 :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공세로 150-2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 종 : 전기전자 · 업체명 : 롯데첨단소재 주식회사 · 소재지 : 전라남도 여수시 여수산단로 334-2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 종 : 전기전자 · 업체명 : LG전자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LG트윈타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 종 : 전기전자 · 업체명 : 엘지전자 주식회사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 128 	업체명 표기 변경 소재지 표기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 종 : 반도체 · 업체명 : SK하이닉스 주식회사 · 소재지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9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 종 : 반도체 · 업체명 : 에스케이하이닉스 주식회사 · 소재지 : 경기도 이천시 부발읍 경충대로 2091 	업체명 표기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 종 : 발전·에너지 · 업체명 : 수완에너지(주) · 소재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 종 : 발전·에너지 · 업체명 : 수완에너지 주식회사 · 소재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수완로 130 	업체명 표기 변경 소재지 표기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 종 : 발전·에너지 · 업체명 : MPC 대산 전력(주) · 소재지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독곶리 63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 종 : 발전·에너지 · 업체명 : 씨지엔대산전력 주식회사 · 소재지 :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 독곶로 82 	업체명 변경 소재지 표기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 종 : 발전·에너지 · 업체명 : 군장에너지주식회사 · 소재지 : 전라북도 군산시 소룡동 53-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 종 : 발전·에너지 · 업체명 : 군장에너지 주식회사 · 소재지 : 전라북도 군산시 임해로 333 	소재지 표기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 종 : 발전·에너지 · 업체명 :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서구 평리6동 404-2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 종 : 발전·에너지 · 업체명 : 대구염색산업단지관리공단 · 소재지 : 대구광역시 서구 염색공단중앙로 33 	소재지 표기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 종 : 발전·에너지 · 업체명 : 엠피씨울촌전력 · 소재지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세풍리 219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 종 : 발전·에너지 · 업체명 : 씨지엔울촌전력 주식회사 · 소재지 : 전라남도 광양시 광양읍 인덕로 360-202 	업체명 변경 소재지 표기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 종 : 음식료품 · 업체명 : 대한제당(주)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중구 북성동1가 6-1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 종 : 음식료품 · 업체명 : 대한제당 주식회사 · 소재지 :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 116 	업체명 표기 변경 소재지 표기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 종 : 석유화학 · 업체명 : 오씨아이머티리얼즈 주식회사 · 소재지 : 경상북도 영주시 가흥공단로 59-3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 종 : 석유화학 · 업체명 : 에스케이머티리얼즈 주식회사 · 소재지 : 경상북도 영주시 가흥공단로 59-33 	업체명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 종 : 석유화학 · 업체명 : 동부팜한농 주식회사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 종 : 석유화학 · 업체명 : 주식회사 팜한농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432 	업체명 변경

기존	변경	비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 종 : 석유화학 · 업체명 : 삼성비피화학 주식회사 · 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 종 : 석유화학 · 업체명 : 롯데비피화학 주식회사 · 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상개로 63-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명 변경 · 소재지 표기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 종 : 석유화학 · 업체명 : 삼성정밀화학 주식회사 · 소재지 : 울산광역시 남구 여천로217번길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 종 : 석유화학 · 업체명 : 롯데정밀화학 주식회사 · 소재지 : 울산광역시 남구 여천로217번길 1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명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 종 : 석유화학 · 업체명 : 아세아아세틸스 주식회사 · 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상남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 종 : 석유화학 · 업체명 : 아세아아세틸스 주식회사 · 소재지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상개로 63-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지 표기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 종 : 석유화학 · 업체명 : 한국스티롤루션(주) · 소재지 : 울산광역시 남구 상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 종 : 석유화학 · 업체명 : 한국이네오스스티롤루션 주식회사 · 소재지 : 울산광역시 남구 상개로 14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명 변경 · 소재지 표기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 종 : 유리·요업 · 업체명 : 한국유리공업 주식회사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종로구 청계천로 4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 종 : 유리·요업 · 업체명 : 한국유리공업 주식회사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2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지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 종 : 철강 · 업체명 : 동부제철(주)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91-10 동부금융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 종 : 철강 · 업체명 : 동부제철 주식회사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후암로 9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명 표기 변경 · 소재지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 종 : 반도체 · 업체명 : STS반도체통신(주) · 소재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동 555-9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 종 : 반도체 · 업체명 : 주식회사 에스에프에이반도체 · 소재지 :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백석공단7로 1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명 변경 · 소재지 표기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 종 : 반도체 · 업체명 : 주식회사 엘지실트론 · 소재지 : 경상북도 구미시 임수동 엘지실트론 27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 종 : 반도체 · 업체명 : 주식회사 엘지실트론 · 소재지 : 경상북도 구미시 임수로 5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재지 표기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 종 : 건물 · 업체명 : (주)호텔롯데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 종 : 건물 · 업체명 : 주식회사 호텔롯데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3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명 표기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 종 : 건물 · 업체명 : 프라임에이엠(주)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97(구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 종 : 건물 · 업체명 : 주식회사 삼원에이엠씨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로구 새말로 9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명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 종 : 통신 · 업체명 : KT ·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KT본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 종 : 통신 · 업체명 : 주식회사 케이티 ·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불정로 90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명 표기 변경 · 소재지 표기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 종 : 통신 · 업체명 : SK텔레콤(주)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5 SK텔레콤빌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 종 : 통신 · 업체명 : 에스케이텔레콤 주식회사 · 소재지 :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6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업체명 표기 변경

○ 문의처 : 환경부 기후변화대응과(044-201-6955)

●국토교통부고시제2016-316호

인천~김포 고속도로 도로구역결정(변경), 입체적도로구역 지정, 지형도면(변경), 토지의 세목조서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857호(2011.12.30), 제2012-291호(2012.06.11.),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954호(2014.01.03.), 제2014-485호(2014.08.13.), 제2016-73호(2016.02.26.)로 고시된 인천~김포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결정(변경), 「도로법」 제28조에 의한 입체적도로구역, 「도로법」 제45조에 의한 도로보전입체구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의한 지형도면(변경),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토지의 세목조서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도로구역결정(변경) 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중요 통과지	⑩총연장 (km)
기정	고속 국도	400호선	수도권 제2순환선 (인천~김포)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홍신리	1,860,126.1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 (남향 교차로)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홍신리 (국도 48호선 지내)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향동7가, 신흥동2가 동구 송현동, 서구 원창동, 경서동, 오류동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대포리, 학운리, 유현리, 홍신리, 누산리 대곶면 대능리, 울생리, 초원지리, 오니산리 통진읍 수참리, 도사리	연장: 28.88km 폭원: 23.4~30.6m (4~6차로) -JCT/IC: 5개소 -영업소: 6개소 (IC영업소포함)
변경					2,040,216.3				

※ 도로구역결정(변경) 사유 : 면적 정정

2. 입체적도로구역지정 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중요 통과지	⑩지정구간
신설	고속 국도	400호선	수도권 제2순환선 (인천~김포)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180,090.2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2-4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2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신흥동2가, 유동, 울목동, 경동, 인현동	인천방향 : 4,885m 김포방향 : 4,895m

										동구 창영동, 금곡동, 송림동, 송현동, 화평동, 화수동 서구 원창동
--	--	--	--	--	--	--	--	--	--	--

3. 도로보전입체구역지정 내용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노선번호	400호선	노선명	수도권제2순환선(인천~김포)
지정·변경 또는 해제의 구간 및 범위	- 위치 인천방향 :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 서구 원창동(STA.3+555~8+440)L=4,885m 김포방향 :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3가 ~ 서구 원창동(STA.3+555~8+450)L=4,895m - 평면적 범위 : 인천터널 지하시설물 폭 + 양측 각각 0.5m - 입체적 범위 : 인천터널 지하시설물 상단 높이 및 하단 깊이 + 보호층 각각 6.5m				
지정·변경 또는 해제사유	- 인천~김포고속도로 중 인천터널 구간(인천광역시 중구, 동구, 서구)의 합리적인 토지이용과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기 위하여 인천터널 시설물 상·하부로부터 보호층을 포함한 지하공간을 도로보전입체구역으로 지정코자 함				
비고					

4.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 조서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분	구 모				기능	연장(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광로	2	1	50m ~ 65m	주간선 도로	3,540	15호 광장	광3-2	일반도로	-	경기도고시 제160호(1976.7.8)	
기정	대로	2	94	33m	주간선 도로	4,183	중로 3-191 원창동 431	북측구역계 경서동 522-12	자동차 전용도로	3호 문화공원	지식경제부고시 제2010-101호 (2010.5.12)	
기정	대로	2	107	30m ~ 34m	주간선 도로	12,141	인천시 중구 신흥동2가 44-5	인천시 중구 오류동 1461-11	자동차 전용도로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857호 (2011.12.30)	
기정	소로	3	101	8m	집산도로	131	인천시 서구 원창동 425-2	인천시 서구 원창동 425-4	일반도로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857호 (2011.12.30)	
기정	소로	3	102	5m	집산도로	389	인천시 서구 원창동 425-7	인천시 서구 원창동 420-10	일반도로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857호 (2011.12.30)	

2) 광장 결정(변경)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91	광장	교통광장 (남청라CT)	인천시 서구 원창동 420-10전 일원	176,591	-	176,591	지식경제부고시 제2008-64 (2008.6.10)	남청라CT 영업소 (유지관리사무소) 청라영업소
기정	92	광장	교통광장 (북청라IC)	인천시 서구 오류동 일원	103,934	-	103,93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857호 (2011.12.30)	북청라IC 영업소
기정	93	광장	교통광장 (검단IC)	인천시 서구 오류동 306-6 일원	88,018	-	88,018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857호 (2011.12.30)	검단IC영업소

○ 김포시 도시계획 시설결정(변경) 조서

1) 도로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기정	중로	1	5	23.4m ~ 90.7m	주간선 도로	9,303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769	김포시 통진읍 수참리 90-2	자동차 전용 도로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857호 (2011.12.30)	
기정	대로	3	40	25m ~ 36m	보조 간선 도로	448	김포시 양촌읍 대포리 374-10	김포시 양촌읍 대포리 322-33	일반도로	-	국토해양부고시 제2014-485호 (2014.8.13)	
기정	중로	1	15	21m ~ 23m	보조 간선 도로	1,251	통진 대1-2 (수참리 509-119)	통진 대2-1 (수참리 56-5)	일반도로	-	김포시 고시 제2009-7호 (2009.1.14)	

2) 광장 결정(변경) 조서 (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치	면적(m ²)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82	광장	교통광장 (검단IC)	김포시 양촌면 유현리 산13 일원	6,064	-	6,06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857호 (2011.12.30)	검단IC영업소
기정	83	광장	교통광장 (양곡IC)	김포시 대곶면 울생리 산172 일원	89,564	-	89,564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857호 (2011.12.30)	양곡IC영업소
기정	84	광장	교통광장 (수참IC)	김포시 양촌면 흥신리 193-98 일원	89,405	-	89,405	국토해양부고시 제2011-857호 (2011.12.30)	수참IC영업소

5. 접도구역지정(변경) 내용 (변경없음)

도로의 종류	고속국도	노선번호	400	노 선 명	수도권제2순환선(인천~김포)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도구역 : 도로구역 경계선으로 부터 양측 각 10m ○ 위 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점 : 인천광역시 중구 신흥동 - 종점 :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흥신리 				
접도구역 지정목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의 구조에 대한 손피방지 ○ 도로의 미관 보존 ○ 교통에 대한 위험 방지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접도구역지정 구간 중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접도구역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의한 지형도면은 아래의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 (http://luris.mltm.go.kr)에서도 열람이 가능합니다. ○ 열람장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032-260-0923)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1009호(송도동, 미추홀타워 본관)) - 한국도로공사 인천김포건설사업단(☎032-728-7132) (주 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1102호(송도동, 미추홀타워 본관)) 				

6. 지형도면 : 공람장소에 비치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 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는 공람장소에 비치함으로써 같음하며, 별도도면의 관보 게재는 생략함

7. 사업 시행기간 : 2012.3.23. ~ 2017.3.22. (변경없음)

8.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 붙임

9. 사업시행자 (변경없음)

- 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사업시행)
- 한국도로공사(용지보상)

10.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변경없음)

가. 열람장소

- 인천김포고속도로주식회사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1009호(송도동, 미추홀타워 본관) ☎ 032-260-0923
- 한국도로공사 인천김포건설사업단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2, 1102호(송도동, 미추홀타워 본관) ☎ 032-728-7132

나. 열람기간 : 고시일로부터 14일

11. 기타사항 (변경없음)

- 수도권매립지내 중복고시 구간(STA.12+883~17+161)
환경부고시 제1996-162호(수도권매립지 폐기물처리시설계획변경승인)에 따른 인천광역시 수도권매립지내 일부구간(STA.12+883~17+161)이 인천-김포 고속도로 도로구역(국토해양부 고시 제2011-857호)과 중복으로 결정되었음
- 인천-김포 고속도로 시점부 일부구간(STA.0+000~3+555)은 광로2-1호선과 중복으로 결정 되었음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원면적		지목	사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기준 (0m~(m)까지)
		지번	면적 (㎡)			성명 (명칭)	주소	성명 (명칭)	주소	권리 관계	
1	중구 신흥동3가	2-4	1,513.2	도	179.0	공	인천광역시				4.25 ~ -17.50
2	중구 신흥동3가	28-2	7,430.3	도	180.0	국	국토교통부				3.71 ~ -18.04
3	중구 신흥동3가	2-21	177.8	도	70.0	국	국세청				3.71 ~ -18.04
4	중구 신흥동2가	44-5	786.0	도	746.0	공	인천광역시				3.71 ~ -18.04
5	중구 신흥동2가	44-16	124.3	도	124.3	국	기획재정부				3.71 ~ -18.04
6	중구 신흥동2가	44-21	22.6	도	1.0	국	기획재정부				4.25 ~ -17.50
7	중구 신흥동2가	44-2	28.6	도	27.0	국	국토해양부				3.71 ~ -18.04
8	중구 신흥동2가	44-1	667.4	도	24.0	공	인천광역시				3.71 ~ -18.04
9	중구 신흥동2가	12-1	1,354.8	도	998.0	공	인천광역시				2.63 ~ -19.12
10	중구 신흥동2가	16-39	72.5	도	72.5	공	인천직할시중구청 외 1인				1.55 ~ -20.20

일련 번호	소재지	원면적		지목	사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기준 (0m~)m까지
		지번	면적 (㎡)			성명 (명칭)	주소	성명 (명칭)	주소	권리 관계	
11	중구 신흥동2가	16-54	13.2	도	13.2	국	기획재정부				1.55 ~ -20.20
12	중구 신흥동2가	16-135	0.2	도	0.2	공	인천광역시				1.55 ~ -20.20
13	중구 신흥동2가	16-174	2.4	대	1.0	나기철 외 1인	서울 송파구 송파동 119 한양아파트 6-803				1.46 ~ -20.74
14	중구 신흥동2가	16-156	10.0	대	9.0	공	인천광역시				1.46 ~ -20.74
15	중구 신흥동2가	16-152	638.3	대	44.0	나기철 외 1인	서울 송파구 송파동 119 한양아파트 6-803				0.92 ~ -21.28
16	중구 신흥동2가	16-140	331.6	도	177.0	공	인천광역시중구				0.92 ~ -21.28
17	중구 신흥동2가	16-165	9.0	도	9.0	공	인천광역시중구				0.92 ~ -21.28
18	중구 신흥동2가	16-173	0.4	대	0.4	공	인천광역시 중구				0.92 ~ -21.28
19	중구 신흥동2가	16-141	117.6	대	12.0	공	인천광역시중구				0.92 ~ -21.28
20	중구 신흥동2가	21-2	71.3	대	63.0	배석원	신흥동2가 18-11				0.39 ~ -21.81
21	중구 신흥동2가	21-3	188.7	대	3.0	노승자	신흥동2가 21-3				0.39 ~ -21.81
22	중구 신흥동2가	16-1	8,051.7	도	5,086.0	공	인천광역시				-0.16 ~ -22.36
23	중구 신흥동2가	18-4	6,726.5	대	1,216.0	공	인천광역시				-1.14 ~ -22.89
24	중구 신흥동2가	18-23	19.4	도	9.0	공	인천광역시중구				-2.76 ~ -24.51
25	중구 신흥동2가	30-2	8,234.0	도	877.0	국	국토해양부				-2.77 ~ -24.52
26	중구 신흥동2가	11-1	288.7	도	4.0	공	인천광역시				3.17 ~ -18.58
27	중구 신흥동2가	13	115.7	도	115.7	국	기획재정부				2.63 ~ -19.12
28	중구 신흥동2가	12-4	755.1	도	657.0	공	인천광역시				2.09 ~ -19.66
29	중구 신흥동2가	16-111	26.4	도	26.4	공	인천광역시중구				1.55 ~ -20.20
30	중구 신흥동2가	16-134	134.1	도	134.1	국	기획재정부				1.55 ~ -20.20
31	중구 신흥동2가	17-5	117.3	도	97.0	공	인천광역시				0.92 ~ -21.28
32	중구 신흥동2가	16-8	0.2	도	0.2	국	기획재정부				0.92 ~ -21.28
33	중구 신흥동2가	16-150	1.1	도	1.1	국	기획재정부				0.92 ~ -21.28
34	중구 유동	23-12	1.2	도	1.2	국	국토해양부				-2.77 ~ -24.52
35	중구 유동	23-3	8.7	도	8.7	국	기획재정부				-2.77 ~ -24.52
36	중구 유동	23-1	367.8	도	223.0	공	인천광역시				-2.77 ~ -24.52
37	중구 유동	23-9	0.6	도	0.6	국	기획재정부				-2.77 ~ -24.52
38	중구 유동	23-15	8.2	도	3.2	공	인천광역시중구				-2.77 ~ -24.52
39	중구 유동	24-2	1,625.9	도	112.0	공	인천광역시				-3.31 ~ -25.06
40	중구 유동	42-2	7,225.0	도	716.0	국	국토해양부				-5.46 ~ -27.21
41	중구 유동	24-7	1,523.4	도	1,172.0	공	인천광역시				-4.39 ~ -26.14
42	중구 유동	31-4	77.4	도	35.0	공	인천직할시 중구청				-6.54 ~ -28.29
43	중구 유동	31-1	48.8	대	46.0	김정부	유동 31				-6.54 ~ -28.29
44	중구 유동	34-25	65.0	대	11.0	이득복	유동 34-25				-6.54 ~ -28.29
45	중구 유동	39-3	18.8	도	8.0	국	기획재정부				-6.54 ~ -28.29
46	중구 유동	34-16	87.6	도	32.0	국	기획재정부				-6.55 ~ -28.30

일련 번호	소재지	원면적		지목	사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기준 (0m~)m까지
		지번	면적 (㎡)			성명 (명칭)	주소	성명 (명칭)	주소	권리 관계	
47	중구 유동	39-2	19.5	대	19.5	재단법인인 천교구천주 교회유지재 단	인천중구답동 3				-6.54 ~ -28.29
48	중구 유동	35-16	64.1	대	63.0	고봉덕	유동 35				-6.54 ~ -28.29
49	중구 유동	39-1	63.1	대	36.0	박지은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영통동 988-2 살구골 서광아파트 707-502				-6.54 ~ -28.29
50	중구 유동	38-1	109.4	대	21.0	권완섭	신흥동1가 20-45				-7.08 ~ -28.83
51	중구 유동	35-14	122.3	대	122.3	신현수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노쓰리지시 버카이 매도우 19747				-7.08 ~ -28.83
52	중구 유동	40-6	18.5	대	10.0	국	기획재정부				-7.08 ~ -28.83
53	중구 유동	40-5	105.2	대	1.0	배영덕	인천 중구 유동 40-5				-7.08 ~ -28.83
54	중구 유동	35-10	126.3	도	32.0	국	기획재정부				-7.08 ~ -28.83
55	중구 유동	35-13	18.8	대	17.8	윤길중	유동 36-13				-7.08 ~ -28.83
56	중구 유동	38-2	1.0	대	0.8	국	기획재정부				-7.08 ~ -28.83
57	중구 유동	35-12	56.5	대	56.5	이정순	유동 35-12				-7.08 ~ -28.83
58	중구 유동	37-20	4.6	대	3.0	윤길중	유동 36-13				-7.62 ~ -29.37
59	중구 유동	37-19	1.3	대	1.3	오제곤	남구 용현동 622-33				-7.62 ~ -29.37
60	중구 유동	37-18	9.3	대	6.0	국	기획재정부				-7.62 ~ -29.37
61	중구 유동	35-11	94.2	대	72.0	대한예수교 장로회성산 교회	인천 부평구 심정동 421				-7.08 ~ -28.83
62	중구 유동	35-9	60.8	대	60.0	오제곤	남구 용현동 622-33				-7.62 ~ -29.37
63	중구 유동	37-16	121.7	대	77.0	박재빈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작동 34-16	심곡새마을금 고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169-14	근저당 권	-7.62 ~ -29.37
64	중구 유동	37-17	22.5	대	22.5	오제곤	남구 용현동 622-33				-7.62 ~ -29.37
65	중구 유동	35-39	2.2	도	1.0	공	인천광역시 중구				-7.62 ~ -29.37
66	중구 유동	35-8	2.6	대	2.6	국	기획재정부				-7.62 ~ -29.37
67	중구 유동	37-15	27.8	대	27.8	국	기획재정부				-7.62 ~ -29.37
68	중구 유동	37-13	30.1	도	24.0	공	인천광역시중구				-7.62 ~ -29.37
69	중구 유동	37-8	84.6	대	57.0	신정운	유동 37-8				-7.62 ~ -29.37
70	중구 유동	37-9	76.5	대	46.0	박노학 외1인	전라북도 무주군 안성면 죽천리 445	오정농업 협동조합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원종동 233(도당지점)	근저당 권	-8.16 ~ -29.91
71	중구 유동	37-5	3.6	대	1.0	국	기획재정부				-8.16 ~ -29.91
72	중구 유동	37-3	73.1	대	73.1	이조영	유동 37-3				-7.62 ~ -29.37
73	중구 유동	37-2	55.0	대	19.0	김주호	인천 중구 유동 37	주식회사거광 목재	인천 동구 송현동 140-18	근저당 권	-8.16 ~ -29.91
74	중구 유동	35-1	640.9	대	152.0	공	인천광역시중구				-8.17 ~ -29.92
75	중구 유동	37-21	1.2	도	1.0	공	인천광역시중구				-8.16 ~ -29.91
76	중구 유동	37-22	0.5	대	0.5	임병권 외1인	유동 37				-8.16 ~ -29.91
77	중구 유동	37-10	96.6	대	96.6	임병권	유동 37				-8.16 ~ -29.91
78	중구 유동	37-11	59.8	대	23.0	이규자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 497번길 13				-8.16 ~ -29.91
79	중구 유동	37-23	4.9	도	4.9	공	인천광역시중구				-8.16 ~ -29.91
80	중구 유동	37-24	5.0	도	2.0	국	기획재정부				-8.16 ~ -29.91
81	중구 유동	27-14	28.9	대	3.0	공	인천광역시				-4.93 ~ -26.68
82	중구 유동	27-4	689.1	대	82.0	공	인천광역시중구				-5.46 ~ -27.21
83	중구 유동	27-2	97.2	도	74.0	공	인천광역시				-5.46 ~ -27.21

일련 번호	소재지	원면적		지목	사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구분지상권	
		지번	면적 (㎡)			성명 (명칭)	주소	성명 (명칭)	주소	권리 관계	평균해수면기준 (0m~)m까지	
84	중구 유동	27-1	112.8	대	112.8	임재욱	유동 27-1	주식회사금화 상호신용금고	인천북구 부평동 416-18,20	지상권 /근저당 권 2건	-6.00 ~ -27.75	
85	중구 유동	30-35	26.1	대	8.0	공	인천광역시				-6.01 ~ -27.76	
86	중구 유동	27-11	13.8	도	13.8	공	인천광역시				-6.00 ~ -27.75	
87	중구 유동	27-8	28.8	대	28.8	송재희	유동 27-2				-6.00 ~ -27.75	
88	중구 유동	28-3	3,441.4	도	378.0	공	인천광역시				-6.01 ~ -27.76	
89	중구 유동	31-5	12.2	대	3.0	공	인천광역시				-10.25 ~ -27.45	
90	중구 유동	30-3	100.2	대	48.0	양춘욱	동구 송림동 45-33				-6.01 ~ -27.76	
91	중구 유동	32-19	76.0	대	4.0	이유근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483번길 8-1(유동)				-10.25 ~ -27.45	
92	중구 유동	32-5	107.8	대	53.0	강대기	남구 용현동 415-30				-10.26 ~ -27.46	
93	중구 유동	30-7	73.9	대	73.9	황호필	유동 30-7				-6.01 ~ -27.76	
94	중구 유동	32-21	77.0	대	41.0	채삼심	유동 32				-6.01 ~ -27.76	
95	중구 유동	32-4	100.2	대	100.2	임점매	인천 중구 유동 32				-6.55 ~ -28.30	
96	중구 유동	32-3	37.0	대	36.0	공	인천광역시				-6.55 ~ -28.30	
97	중구 유동	32-20	79.7	도	57.0	국	기획재정부				-6.55 ~ -28.30	
98	중구 유동	32-26	85.3	대	21.0	조재철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 878, 101동 1003호(병방동, 학마을 서해아파트)				-6.55 ~ -28.30	
99	중구 유동	32-2	68.8	대	62.0	강동윤	인천광역시 중구 유동 32-2				-6.55 ~ -28.30	
100	중구 유동	32-24	20.0	대	1.0	공	인천광역시				-6.55 ~ -28.30	
101	중구 유동	32-25	80.3	대	80.3	최윤희	율목동 9				-6.55 ~ -28.30	
102	중구 유동	32-15	1.3	대	1.3	국	기획재정부				-6.55 ~ -28.30	
103	중구 유동	32-39	0.3	대	0.3	국	기획재정부				-7.09 ~ -28.84	
104	중구 유동	34-44	84.1	도	23.0	공	인천광역시중구				-7.09 ~ -28.84	
105	중구 유동	32-16	104.0	도	19.0	국	기획재정부				-7.09 ~ -28.84	
106	중구 유동	32-9	118.7	도	2.0	국	기획재정부				-7.09 ~ -28.84	
107	중구 유동	32-35	122.3	도	68.0	공	인천광역시중구				-7.09 ~ -28.84	
108	중구 유동	34-22	12.6	대	6.0	공	인천광역시중구				-7.09 ~ -28.84	
109	중구 유동	34-15	43.9	대	43.9	공	인천광역시중구				-7.09 ~ -28.84	
110	중구 유동	34-14	47.7	대	45.0	공	인천광역시중구				-7.09 ~ -28.84	
111	중구 유동	34-21	59.8	대	21.0	최오복	유동 34-21	인평신용협동 조합	인천 연수구 연수동 535-2	근저당 권	-7.09 ~ -28.84	
112	중구 유동	34-13	15.2	대	4.0	국	기획재정부				-7.09 ~ -28.84	
113	중구 유동	35-28	1.0	대	1.0	방운식	인천 중구 유동 34				-7.63 ~ -29.38	
114	중구 유동	34-11	69.9	대	4.0	방운식	인천 중구 유동 34				-7.63 ~ -29.38	
115	중구 유동	35-27	24.1	도	24.1	국	기획재정부				-7.63 ~ -29.38	
116	중구 유동	34-9	20.5	도	4.0	국	기획재정부				-7.63 ~ -29.38	
117	중구 유동	34-3	1.0	대	1.0	국	기획재정부				-7.63 ~ -29.38	
118	중구 유동	34-17	142.5	대	104.0	최상환	인천시 중구 유동 34-17				-7.09 ~ -28.84	
119	중구 유동	35-29	63.1	대	9.0	박찬원	유동 2-50				-7.63 ~ -29.38	
120	중구 유동	35-26	59.8	대	59.8	이정식	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원대로 950, 3동 302호(간석동,영남아 파트)				-7.63 ~ -29.38	
121	중구 유동	35-22	26.8	대	26.8	국	기획재정부				-7.63 ~ -29.38	
122	중구 유동	35-30	19.8	대	7.0	고애경	인천광역시 남구 송의동 168-19,현대이맨션 502호	화수동신용협 동조합	인천광역시 동구 만석동 140-4	근저당 권 지상권	-7.63 ~ -29.38	

일련 번호	소재지	원면적		지목	사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기준 (0m~)m까지
		지번	면적 (㎡)			성명 (명칭)	주소	성명 (명칭)	주소	권리 관계	
123	중구 유동	35-25	26.4	대	26.4	박우희	유동 35				-7.63 ~ -29.38
124	중구 유동	35-24	27.8	대	27.8	한규영	유동 35				-7.63 ~ -29.38
125	중구 유동	36-15	40.7	대	30.0	팽홍순	유동 36-15				-7.63 ~ -29.38
126	중구 유동	35-23	6.0	대	6.0	국	기획재정부				-7.63 ~ -29.38
127	중구 유동	36-14	14.2	도	14.2	국	기획재정부				-7.63 ~ -29.38
128	중구 유동	35-4	113.7	대	15.0	이규숙	서울 구로구 오류동 336 동아아파트 103-1203				-7.63 ~ -29.38
129	중구 유동	35-38	25.3	도	3.0	공	인천광역시중구				-7.63 ~ -29.38
130	중구 유동	36-11	83.0	대	26.0	권금희	인천 중구 울목로49번길 11-6,201호(울목동,진 홍빌라)	웅진농업협동 조합	인천광역시 중구 인증로41번길 1(신흥동3가)(인 현동지점)	근저당 권	-8.17 ~ -29.92
131	중구 유동	36-13	66.1	대	66.1	최성욱	유동 36-13				-8.17 ~ -29.92
132	중구 유동	36-12	50.6	대	50.6	이용하 외3인	인천 남동구 만수동 905 효성상아맨션 4-409				-8.17 ~ -29.92
133	중구 유동	36-8	87.4	대	78.0	김정숙	인천광역시 중구 서해대로497번길 5(유동)	관교문학동새 마을금고	인천광역시 남구 문학동 366-5	근저당 권	-8.17 ~ -29.92
134	중구 유동	36-21	28.4	도	16.0	공	인천광역시중구				-8.71 ~ -30.46
135	중구 울목동	253-12	352.6	도	16.0	공	인천광역시중구				-3.30 ~ -25.05
136	중구 울목동	250-19	40.3	도	7.0	공	인천광역시중구	이건일	서울시 서대문구 갈현동 110-35	근저당 권	-3.30 ~ -25.05
137	중구 울목동	250-31	422.7	도	62.0	인천직할시 중구 외 2인					-3.30 ~ -25.05
138	중구 울목동	250-20	7.6	도	7.6	공	인천광역시중구				-3.30 ~ -25.05
139	중구 울목동	250-27	23.0	도	23.0	공	인천광역시중구				-3.30 ~ -25.05
140	중구 울목동	250-39	39.8	대	1.0	기획재정부 외 2인					-3.30 ~ -25.05
141	중구 울목동	250-5	3.6	대	3.6	유영애	서울 성북구 돈암동 42-36				-3.30 ~ -25.05
142	중구 울목동	250-6	33.9	대	33.9	유영애	서울 성북구 돈암동 42-36				-3.30 ~ -25.05
143	중구 울목동	250-15	176.8	대	139.0	오용정	서울 은평구 구산동 6-16	주식회사국민 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주택용현동지 점)	근저당 권	-3.30 ~ -25.05
						정희인	과천시 별양동 7 주공아파트 404동 604호				
						김찬수	서울 구로구 구로동 551-65				
						김기범	서울 중랑구 면목동 494 용마금호타운 5동 504호				
						박용성	인천 계양구 효성동 273-40				
						장인팔	인천 남구 용현동 451-81 신성빌라 비-102호				
						이기준	인천 연수구 연수동 501-3 1층 101호				
						이순곤	서울 강동구 상일동 131 주공아파트 508동 501호				
						이창선	인천 남동구 만수동 983-1 삼환아파트 102동 104호				

일련 번호	소재지	원면적		지목	사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기준 (0m~)m까지	
		지번	면적 (㎡)			성명 (명칭)	주소	성명 (명칭)	주소	권리 관계		
						신경섭	서울 은평구 역촌동 56-22 정우빌라 301호					
						김진택	서울 은평구 신사동 200-162					
						신태엽	서울 은평구 대조동 48-48 2층 가호					
						전태수	서울 은평구 대조동 208-5 아주빌라 204호					
						양정애	서울 은평구 신사동 5-47					
						신영도	경기 고양시 일산구 지영동 219-2					
144	중구 율목동	250-26	381.9	대	119.0	인천직할시 중구청 외3인		담동 신용협동조합	인천시 중구 담동3	근저당 권	-3.30 ~ -25.05	
								이선녀	인천 남구 주안동 525-20	근저당 권		
								이병욱	부천시 오정구 월종동 138	근저당 권		
								권병남	광명시 철산동 52-23	근저당 권		
								이건창	인천 남구 주안동 431-1 경인상가아파트 씨동202호	근저당 권		
145	중구 율목동	250-7	0.7	대	0.7	국	기획재정부				-3.84 ~ -25.59	
146	중구 율목동	250-13	37.7	대	34.0	정덕용	인천광역시 중구 율목로8번길 4-25(율목동)				-3.84 ~ -25.59	
147	중구 율목동	249-8	127.6	대	27.0	이연숙	인천광역시 중구 율목로8번길 4-21(율목동)	주식회사신한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2가 120(인천중앙지점)	근저당 권	-3.84 ~ -25.59	
148	중구 율목동	248-5	109.1	대	5.0	최진희	남동구 구월1동 1171-15	주식회사국민 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근저당 권	-4.38 ~ -26.13	
						박천분	인천 남동구 구월1동 1171-15					
						이인철	인천 남동구 구월2동 24 주공아파트 240동 204호					
						조길동	인천 남구 관교동 132-7 쌍용아파트 2동 802호					
						박용준	인천 중구 중산동 415					
						박천연	인천 중구 중산동 415					
						김현무	인천 계양구 작전동 420 미도아파트 3동 1001호					
						음상훈	인천 서구 가정동 산17-10 성광아파트 가동 405호					
						이명심	인천 서구 가정동 517-16 무궁화빌라 에이동 402호					
						박천희	부천시 원미구 상동 315-21					
						서금주	시흥시은행동은행택지 개발기구80블럭대우아 파트104동302호					
						이요한	시흥시 신천동 198 인화빌라 102호					

일련 번호	소재지	원면적		지목	사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구분지상권	
		지번	면적 (㎡)			성명 (명칭)	주소	성명 (명칭)	주소	권리 관계	평균해수면기준 (0m~)m까지	
						최현희	시흥시 신천동 272					
						심재정	서울 성동구 금호3가 1344-84					
						허태성	서울 관악구 신림동 502-30					
						최광진	인천 남구 문학동 254					
						최진희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71-15					
						박천분	인천 남동구 구월동 1171-15					
						이인철	인천 남동구 구월동 24 주공아파트 240동 204호					
						조길동	인천 남구 관교동 13-7 쌍용아파트 2동 802호					
						박용준	인천 중구 중산동 415					
						박천연	인천 중구 중산동 415					
						김현무	인천 계양구 작전동 420 미도아파트 3동 1001호					
						음상훈	인천 서구 가정동 산17-10 성광아파트 가동 405호					
						이명십	인천 서구 가정동 517-16 무궁화빌라 에이동 402호					
						박천희	부천시 원미구 상동 315-21					
						서금주	시흥시은행동은행택지 개발지구80블럭대우아 파트104동302호					
						이요한	시흥시 신천동 198 인화빌라 102호					
						최현희	시흥시 신천동 272					
						심재정	서울 성동구 금호3가 1344-84					
						허태성	서울 관악구 신림동 502-30					
						최광진	인천 남구 문학동 254					
149	중구 율목동	247-20	102.5	대	65.0	김성근 외1인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1727 임광관악파크아파트 101-402	채유경	서울 송파구 방이동 89 울림픽션수기자촌 아파트130-702	근저당 권	-4.92	~ -26.67
150	중구 율목동	247-19	137.4	도	31.0	하순희	율목동 247				-4.38	~ -26.13
151	중구 율목동	248-1	13.2	도	9.0	국	국토해양부				-4.38	~ -26.13
152	중구 율목동	248-4	86.0	대	79.0	홍연표	군포시 금정동 712-19 하니빌라 2동 201호	주식회사국민 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신포동지점)	근저당 권	-4.38	~ -26.13
						김형진	인천 남구 송의동 7-229공명빌라 다동 101호					
						김영희	인천 서구 신현동 173-25					
						진영미	인천 남구 송의동 7-193 공명빌라 나동 101호					
						김화자	인천 동구 화수동 290-53 율곡빌라 에이동 102호					

일련 번호	소재지	원면적		지목	사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기준 (0m~)m까지
		지번	면적 (㎡)			성명 (명칭)	주소	성명 (명칭)	주소	권리 관계	
						진희	인천 남동구 만수동 844-125 황제연립 1동 203호				
						진병주	인천 남구 도화동 624-156				
						진만연	인천 남구 송의동 7-192 공명빌라 101호				
						신점덕	인천 부평구 부개동16-61 영림아파트 107호				
						김미선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575-12 연희주택 7동 201호				
						채송기	인천 부평구 부평동 146-8				
						박명숙	인천 남구 주안동 906-1 주공아파트 38동 109호				
						김형진	인천 남구 송의동 7-229공명빌라 다동 101호				
						김영희	인천 서구 신현동 173-25				
						진영미	인천 남구 송의동 7-193 공명빌라 나동 101호				
						김화자	인천 동구 화수동 290-53 울곡빌라 에이동 102호				
						진희	인천 남동구 만수동 844-125 황제연립 1동 203호				
						진병주	인천 남구 도화동 624-156				
						진만연	인천 남구 송의동 7-192 공명빌라 101호				
						신점덕	인천 부평구 부개동16-61 영림아파트 107호				
						김미선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575-12 연희주택 7동 201호				
						채송기	인천 부평구 부평동 146-8				
						박명숙	인천 남구 주안동 906-1 주공아파트 38동 109호				
153	중구 울목동	249-19	61.2	대	35.0	정덕용	울목동 249-19				-3.84 ~ -25.59
154	중구 울목동	248-15	62.8	대	62.8	홍연표	경기도 군포시 금정동 712-19 하니빌라 2동 201호	주식회사국민 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신포동지점)	근저당 권	-4.38 ~ -26.13
						김형진	인천 남구 송의동 7-229공명빌라 다동 101호				
						김영희	인천 서구 신현동 173-25				
						진영미	인천 남구 송의동 7-193 공명빌라 나동 101호				
						김화자	인천 동구 화수동 290-53 울곡빌라 에이동 102호				
						진희	인천 남동구 만수동 844-125 황제연립 1동 203호				

일련 번호	소재지	원면적		지목	사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구분지상권
		지번	면적 (㎡)			성명 (명칭)	주소	성명 (명칭)	주소	권리 관계	평균해수면기준 (0m~)m까지
						진병주	인천 남구 도화동 624-156				
						진만연	인천 남구 송의동 7-192 공명빌라 101호				
						신점덕	인천 부평구 부개동16-61 영림아파트 107호				
						김미선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575-12 연희주택 7동 201호				
						채송기	인천 부평구 부평동 146-8				
						박명숙	인천 남구 주안동 906-1 주공아파트 38동 109호				
						김형진	인천 남구 송의동 7-229공명빌라 다동 101호				
						김영희	인천 서구 신현동 173-25				
						진영미	인천 남구 송의동 7-193 공명빌라 나동 101호				
						김화자	인천 동구 화수동 290-53 울곡빌라 에이동 102호				
						진희	인천 남동구 만수동 844-125 황제연립 1동 203호				
						진병주	인천 남구 도화동 624-156				
						진만연	인천 남구 송의동 7-192 공명빌라 101호				
						신점덕	인천 부평구 부개동16-61 영림아파트 107호				
						김미선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575-12 연희주택 7동 201호				
						채송기	인천 부평구 부평동 146-8				
						박명숙	인천 남구 주안동 906-1 주공아파트 38동 109호				
155	중구 울목동	248-2	79.3	대	49.0	김완규	울목동 248				-4.38 ~ -26.13
156	중구 울목동	248-3	95.9	대	39.0	오제현	인천 중구 울목동 248-3				-4.38 ~ -26.13
157	중구 울목동	249-7	110.1	대	108.0	황순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14 남동아파트 102-206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만수동지점)	근저당 권	-4.38 ~ -26.13
158	중구 울목동	249-18	84.6	대	25.0	정덕용	울목동 249-19				-4.38 ~ -26.13
159	중구 울목동	249-33	106.1	대	105.0	김윤선 외 1인	울목동 249-33				-3.84 ~ -25.59
160	중구 울목동	249-32	51.2	대	10.0	박순덕	인천광역시 중구 울목로 2-27(울목동)				-3.84 ~ -25.59
161	중구 울목동	249-5	93.2	대	91.0	윤천순	울목동 249				-3.84 ~ -25.59
162	중구 울목동	250-14	1.3	대	1.3	공	인천광역시중구				-3.84 ~ -25.59
163	중구 울목동	247-4	125.6	대	120.0	이영순 외 7인	북구 부평동 406-35				-4.92 ~ -26.67
164	중구 울목동	247-6	119.0	대	1.0	김진섭 외 7인	울목동 247-6 건영아트빌라 가동 302호				-4.92 ~ -26.67

일련 번호	소재지	원면적		지목	사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기준 (0m~)m까지
		지번	면적 (㎡)			성명 (명칭)	주소	성명 (명칭)	주소	권리 관계	
165	중구 율목동	247-3	125.6	대	116.0	윤옥자 외 7인	남구 도화동 108-1				-4.92 ~ -26.67
166	중구 율목동	246-26	595.1	도	27.0	공	인천직할시				-5.46 ~ -27.21
167	중구 율목동	247-1	13.2	대	6.0	공	인천광역시중구				-5.46 ~ -27.21
168	중구 율목동	246-30	4.4	도	4.0	공	인천광역시중구				-5.46 ~ -27.21
169	중구 율목동	246-4	117.9	대	39.0	임복금 외 7인	남동구 만수동 1044 뉴서울아파트 101-301	주식회사국민 은행의 취급지점 대출실행센터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0)	근저당 권	-5.46 ~ -27.21
170	중구 율목동	253-10	89.8	도	53.0	공	인천광역시중구				-5.46 ~ -27.21
171	중구 율목동	246-3	19.8	도	4.0	장광순	서울 강남구 삼성동 153-56				-5.46 ~ -27.21
172	중구 율목동	90-4	105.1	대	22.0	오상오	율목동 90-4	송북새마을금 고	인천 중구 북성동 2가 11-12	근저당 권	-6.00 ~ -27.75
173	중구 율목동	90-3	490.7	도	7.0	공	인천광역시중구				-6.00 ~ -27.75
174	중구 율목동	253-2	1,748.3	도	89.0	국	국토해양부				-8.16 ~ -29.91
175	중구 율목동	253-5	127.2	학	7.0	국	교육과학기술부				-10.86 ~ -32.61
176	중구 율목동	254-1	202.1	학	69.0	국	교육과학기술부				-11.94 ~ -33.69
177	중구 율목동	1-34	224.2	도	60.0	공	인천광역시중구				-8.16 ~ -29.91
178	중구 율목동	1-27	15,746.6	학	4,650.0	공	인천광역시 (교육감)				-10.87 ~ -32.62
179	중구 율목동	1-29	330.7	대	143.0	하인선	인천시 북구 신현동 254 주공아파트 19동 505호	이영구	인천 남구 송의동 188-7	근저당 권	-11.95 ~ -33.70
						최선화	부천시 괴안동 174-16 삼원연립 가동 105호				
						전예순	남구 송의동 210-10				
						김정자	남구 구월동 342-1				
						이재성	남구 주안동 730-25				
						이옥희	남구 주안동 1466-3 광성아파트 가동 507호				
						지종례	동구 화평동 186				
						진영복	남구 구월동 24 주공아파트 201동 105호				
						김의광	항동 7가 91-2 연안아파트 8동 502호				
						조안무	서울 종로구 와룡동 1-181				
						유신웅	남구 주안동 1443 남광로얄아파트 13동 205호				
						유신웅	남구 주안동 1443 남광로얄아파트 13동 205호				
						윤관섭	남구 주안동 1443 남광로얄아파트 13동 506				
						김정화	동구 송림도 228-1 삼익아파트 2동 311호				
						김정화	동구 송림도 228-1 삼익아파트 2동 311				
						이명자	남구 용현동 29-2				
						설봉녀	동구 송현동 45				
						신충식	경기 여주군 여주읍 교리 2-1				
						신현대	남구 주안동 498				

일련 번호	소재지	원면적		지목	사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구분지상권
		지번	면적 (㎡)			성명 (명칭)	주소	성명 (명칭)	주소	권리 관계	평균해수면기준 (0m~)0m까지
						최원봉	남구 도화동 421-5	이영구	인천 남구 송의동 188-7	근저당 권	
						이충우	부천시 심곡동 647				
						홍종열	경기 화성군 송산면 교포리 371				
						어성우	서구 신현동 254 주공아파트 20동 302호				
						정진원	남동구 간석동 616-7 이화아파트 10동 507호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서울중구 충정로1가 75	근저당 권	
						최명진	동구 송현동 66-26 동부아파트 4동 509호	오승택	인천 동구 화수동 60	근저당 권	
						신현대	남구 주안동 498-18				
						이민용	경기도 김포군 검단면 불노리 487-5				
						강대승	남동구 구월동 1210-6				
						우규암	남구 연수동 8블럭 태산아파트 103동 801호				
						허동규	남구 송의동 350-17 조은빌라 401호				
						문미옥	남구 도화동 601-1동아아파트 4-301	주식회사신원	서울 마포구 도화동 532	근저당 권	
						신혜경	남구 용현동 557-1 유원용현아파트 6동 201호				
						박철수	부천시 원미구 도당동 246-83	주식회사용수 상사	서울 서초구 방배동 983-17	근저당 권 2건	
						허동규	남구 송의동 350-17 조은빌라 401호				
						허동규	남구 송의동 350-17 조은빌라 401호				
						허동규	남구 송의동 350-17 조은빌라 401호				
						허동규	남구 송의동 350-17 조은빌라 401호				
						허동규	남구 송의동 350-17 조은빌라 401호				
						허동규	남구 송의동 350-17 조은빌라 401호				
						허동규	남구 송의동 350-17 조은빌라 401호				
						허동규	동구 화수동 266-33				
						신원영	서울 강서구 등촌동 636-32	한국출판협동 조합	서울 마포구 신수동 448-6	근저당 권	
						허동규	남구 송의동 350-17 조은빌라 401호				
						허동규	남구 송의동 350-17 조은빌라 401호				
						허동규	남구 송의동 350-17 조은빌라 401호				
						허동규	남구 송의동 350-17 조은빌라 401호				
						전정수	북구 가좌동 283-3				
						최원봉	남구 도화동 421-5				
						우규암	남구 연수동 8블럭 태산아파트 103동 801호				
						안종화	인천광역시 중구 유동 2				

일련 번호	소재지	원면적		지목	사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기준 (0m~)m까지
		지번	면적 (㎡)			성명 (명칭)	주소	성명 (명칭)	주소	권리 관계	
						이강훈	경기도 시흥시 월곶동 1010-1월곶풍림2차아 이원아파트 213-1003				
						오용석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446-46 2층 -201				
						정은화	인천광역시 남구 학익동 587-74				
180	중구 율목동	1-24	349.8	대	186.0	장정기	남구 도화동 399-2				-13.03 ~ -34.78
						장정기	남구 도화동 399-2				
						김진배	남구 장수동 580-15	주식회사인천 상호신용금고	인천 남구 송의동 166	근저당 권	
						이창수	인현동1	정복자	서울 성북구 정릉동 689-32	근저당 권	
						오종두	인현동17-11				
						오종두	인현동17-11				
						오종두	인현동17-11				
						오종두	인현동17-11				
						오종두	인현동17-11				
						오종두	인현동17-11				
						오종두	인현동17-11				
						오종두	인현동17-11				
						오종두	인현동17-11				
						오종두	인현동17-11				
						오종두	인현동17-11				
						이창수	경동4-11				
						박홍석	남구 관교동 13-6 삼환(아)103-402				
						김옥자	율목동 250				
						박홍석	남구 관교동 13-6삼환아파트 103동 402호				
						박홍석	남구 관교동 13-6삼환아파트 103동 402호				
						박홍석	남구 관교동 13-6삼환아파트 103동 402호				
						박홍석	남구 관교동 13-6삼환아파트 103동 402호				
						박홍석	남구 관교동 13-6삼환아파트 103동 402호				
						박홍석	남구 관교동 13-6삼환아파트 103동 402호				
						박홍석	남구 관교동 13-6삼환아파트 103동 402호				
						박홍석	남구 관교동 13-6삼환아파트 103동 402호				
						박홍석	남구 관교동 13-6삼환아파트 103동 402호				

일련 번호	소재지	원면적		지목	사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기준 (0m~)m까지
		지번	면적 (㎡)			성명 (명칭)	주소	성명 (명칭)	주소	권리 관계	
						박홍석	남구 관교동 13-6삼환아파트 103동 402호				
						박홍석	남구 관교동 13-6삼환아파트 103동 402호				
						박홍석	남구 관교동 13-6삼환아파트 103동 402호				
						박홍석	남구 관교동 13-6삼환아파트 103동 402호				
						최학민	계양구 작전동 286-1 동보아파트 107동 502호				
						한진수	인천 중구 유동 2-40				
						오종두	인천동 17-11				
						박인희	인천광역시 중구 유동 8-8				
						인천중부신 융합동조합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57-2				
181	중구 율목동	1-1	508.4	도	252.0	공	인천광역시(교육감)				-13.03 ~ -34.78
182	중구 율목동	1-2	608.3	도	363.0	국	국토해양부				-13.57 ~ -35.32
183	중구 율목동	254	117.8	도	22.0	국	국토해양부				-13.57 ~ -35.32
184	중구 율목동	1-3	49.2	도	23.0	공	인천광역시				-13.57 ~ -35.32
185	중구 율목동	1-12	6.9	도	6.9	공	인천광역시				-13.57 ~ -35.32
186	중구 율목동	1-19	3.0	도	3.0	공	인천광역시				-13.57 ~ -35.32
187	중구 율목동	1-11	13.2	도	13.2	공	인천광역시				-13.57 ~ -35.32
188	중구 율목동	1-10	13.2	도	13.2	국	기획재정부				-14.11 ~ -35.86
189	중구 율목동	1-4	3.6	도	3.6	국	기획재정부				-14.11 ~ -35.86
190	중구 율목동	250-38	98.2	대	1.0	국	기획재정부외2인				-2.76 ~ -24.51
191	중구 경동	246-1	103.4	구	20.0	국	교육과학기술부				-12.48 ~ -34.23
192	중구 경동	246-2	54.8	구	18.0	국	국토해양부				-12.48 ~ -34.23
193	중구 경동	4-16	2,812.4	학	303.0	공	인천광역시 (교육감)				-12.48 ~ -34.23
194	중구 경동	4-11	166.7	대	36.0	김인권	서울 성북구 석관동 10 두산아파트 113-801	주식회사하나 은행	서울중구을지로 1가101-1 (신당역지점)	근저당 권	-13.02 ~ -34.77
195	중구 경동	4-12	72.7	대	49.0	이백의	경동 4				-13.02 ~ -34.77
196	중구 경동	4-10	94.4	대	3.0	이백의	경동 4				-13.02 ~ -34.77
197	중구 경동	3-6	1,313.1	대	720.0	안문자	서울 성북구 화랑로 270-7(석관동)	주식회사하나 은행	서울중구을지로 1가101-1 (신당역지점)	근저당 권	-13.02 ~ -34.77
198	중구 경동	3-2	119.0	도	12.0	국	국토해양부				-14.10 ~ -35.85
199	중구 경동	3-10	114.0	도	40.0	공	인천광역시중구				-14.10 ~ -35.85
200	중구 경동	1-4	31.2	도	28.0	공	인천광역시				-14.11 ~ -35.86
201	중구 경동	3-3	42.4	대	42.4	유승호	남동구 간석동 893-1 우성아파트 8동 402호				-14.10 ~ -35.85
202	중구 경동	3-9	34.4	대	34.0	유승호	남동구 간석동 893-1 우성아파트 8동 402호				-14.10 ~ -35.85
203	중구 경동	1-1	47.2	도	2.0	공	인천광역시				-14.65 ~ -36.40
204	중구 경동	1-3	361.1	도	63.0	공	인천직할시				-14.10 ~ -35.85
205	중구 경동	77-8	8.0	도	7.0	공	인천광역시중구				-14.10 ~ -35.85
206	중구 경동	1-13	50.5	도	5.0	공	인천광역시				-14.65 ~ -36.40
207	중구 경동	241-1	16,839.5	도	432.0	국	국토해양부				-14.64 ~ -36.39
208	중구 경동	77-5	537.4	대	90.0	조인흡	경동 127				-14.10 ~ -35.85

일련 번호	소재지	원면적		지목	사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기준 (0m~)까지
		지번	면적 (㎡)			성명 (명칭)	주소	성명 (명칭)	주소	권리 관계	
209	중구 경동	77-7	112.1	대	3.0	장항발	동구 송림1동 224-7				-14.64 ~ -36.39
210	중구 경동	77-4	13.2	도	13.2	공	인천광역시				-14.64 ~ -36.39
211	중구 경동	77-3	165.3	도	165.3	공	인천광역시				-14.64 ~ -36.39
212	중구 경동	77-1	248.3	도	167.0	이창환 외 1인	미국뉴욕 10312 스테튼아일랜드 안나테일로드 210	주식회사하나 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130	근저당 권	-14.64 ~ -36.39
213	중구 경동	79-1	79.3	도	17.0	주식회사성 우금융개발 외 2인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 48-1 충북산업용재유통상가 105-224				-15.72 ~ -37.47
214	중구 경동	78-1	51.9	도	27.0	국	국도해양부				-15.18 ~ -36.93
215	중구 인현동	1-593	1.7	도	1.7	공	인천광역시				-15.72 ~ -37.47
216	중구 인현동	1-606	28.5	도	27.5	국	국도해양부				-15.72 ~ -37.47
217	중구 인현동	1-489	0.8	대	0.8	공	인천광역시				-15.72 ~ -37.47
218	중구 인현동	1-456	1,268.0	도	20.0	국	국도해양부				-15.72 ~ -37.47
219	중구 인현동	1-495	0.7	도	0.7	국	국도해양부				-15.72 ~ -37.47
220	중구 인현동	1-488	2.4	대	2.4	공	인천광역시				-16.26 ~ -38.01
221	중구 인현동	1-496	12.3	도	10.0	국	국도해양부				-15.72 ~ -37.47
222	중구 인현동	1-487	4.8	대	4.8	한국철도시 설공단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52-3				-16.26 ~ -38.01
223	중구 인현동	1-605	254.8	도	59.0	공	인천광역시				-16.26 ~ -38.01
224	중구 인현동	1-486	13.0	대	6.0	한국철도시 설공단	대전광역시 중구 대흥동 452-3				-16.26 ~ -38.01
225	중구 인현동	1-613	14,799.4	철	634.0	국	국도해양부				-16.26 ~ -38.01
226	동구 창영동	179-1	20,648.6	철	857.0	국	건설교통부				-14.65 ~ -36.40
227	동구 창영동	177-1	8,964.5	도	69.0	국	건설부 외1인				-15.19 ~ -36.94
228	동구 금곡동	87-6	4,780.9	도	159.0	국	건설부 외 1인				-15.73 ~ -37.48
229	동구 금곡동	13-7	22.7	대	1.0	나춘삼	금곡동 13				-15.19 ~ -36.94
230	동구 금곡동	13-10	88.9	도	82.0	국	건설부				-15.73 ~ -37.48
231	동구 금곡동	13-8	19.8	대	1.0	공	인천광역시동구				-15.73 ~ -37.48
232	동구 금곡동	89	952.1	구	1.0	국	건설부				-15.73 ~ -37.48
233	동구 금곡동	92-33	9.6	대	1.0	이성실	인천광역시 남구 관교동 394-45 형산위드맨션 102호	송월타운주식 회사	부천시 동래구 사직동 3-1	근저당 권	-16.80 ~ -38.55
234	동구 금곡동	92-32	7.6	대	5.0	이홍구	금곡동 5-7				-16.80 ~ -38.55
235	동구 금곡동	92-31	5.6	대	5.0	양태호	중구 경동 212				-16.80 ~ -38.55
236	동구 금곡동	92-30	4.6	대	4.6	이숙자	서울 송파구 방이동 89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 트 117동 103호	주식회사할부 전업경인개발 상호신용금고	인천시 중구 사동 26	근저당 권	-16.80 ~ -38.55
237	동구 금곡동	92-29	10.6	대	10.6	양태호	중구 경동 212				-16.80 ~ -38.55
238	동구 금곡동	92-28	11.6	대	11.6	곽중훈	서울 강남구 도곡동 527 도곡렉슬아파트 402-901				-16.80 ~ -38.55
239	동구 금곡동	3-79	8.6	대	1.0	유영복	인천 동구 송현동 100				-17.34 ~ -39.09
240	동구 금곡동	5-19	174.9	대	8.0	국	재무부				-16.80 ~ -38.55
241	동구 금곡동	92-27	4.6	대	4.6	곽중훈	서울 강남구 도곡동 527 도곡렉슬아파트 402-901				-16.80 ~ -38.55
242	동구 금곡동	3-80	9.6	대	4.0	유영복	인천시 동구 금곡동 5				-17.34 ~ -39.09
243	동구 금곡동	92-26	5.0	대	5.0	곽중훈	서울 강남구 도곡동 527 도곡렉슬아파트 402-901				-16.80 ~ -38.55
244	동구 금곡동	92-25	5.6	대	5.6	곽중훈	서울 강남구 도곡동 527 도곡렉슬아파트 402-901				-16.80 ~ -38.55

일련 번호	소재지	원면적		지목	사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기준 (0m~)m까지
		지번	면적 (㎡)			성명 (명칭)	주소	성명 (명칭)	주소	권리 관계	
245	동구 금곡동	3-94	19.5	대	12.0	김말순	금곡동 3-94				-17.34 ~ -39.09
246	동구 금곡동	92-24	13.2	대	13.2	곽중훈	서울 강남구 도곡동 527 도곡렉슬아파트 402-901	주식회사경기 은행	인천시 중구 사동 9-1 (송현동지점)	근저당 권	-17.34 ~ -39.09
247	동구 금곡동	3-89	6.3	도	6.0	공	인천광역시동구				-17.34 ~ -39.09
248	동구 금곡동	4-93	263.5	잡	73.0	이성자	금곡동 1	주식회사할부 전업경인개발 상호신용금고	인천시 중구 사동 26	근저당 권 6건	-16.80 ~ -38.55
						김도분	북구 가정동 275				
						박인용	창영동 151				
						남종희	중구 유동 5				
						염옥순	북구 십정동 24부력 1-21 롯트				
						이용복	남구 주안동 80현대아파트1동 904				
						홍선기	북구 석남동 493 롯데 우람아파트 7동 101				
						모덕진	송림동 239				
						이흥구	금곡동 5-7				
						김진숙	66-26 동부아파트 6동 1207호				
						이성자	금곡동 1				
						이숙자	서울 송파구 방이동 89 올림픽선수기자촌아파 트 117동 103호				
						박승천	송현동 102-37				
						오수용	금곡동 5				
						양태호	중구 경동 212				
						백정흠	대전시 서구 월평동 302 황실타운 115동 906호				
						이윤주	서울 구로구 고척동 76-55 우성아파트 102동 1105호				
						이병길	서구 가정동 200 중앙아파트 101동 904호				
						곽중훈	서울 강남구 도곡동 527 도곡렉슬아파트 402-901				
						전영자	인천 동구 금곡동 2				
						국	국토해양부				
						이성실	인천광역시 남구 관교동 394-45 형산위드맨션 102호				
						곽중훈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527 도곡렉슬아파트 402-901				
						박명용	인천광역시 동구 중앙로 15(금곡동)				
						이강남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덕영대로 2077번길, 20, 101동 504호(영덕동, 용인영덕 신일아파트)				

일련 번호	소재지	원면적		지목	사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기준 (0m~)m까지
		지번	면적 (㎡)			성명 (명칭)	주소	성명 (명칭)	주소	권리 관계	
						이강복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156번길, 5-74,205동 804호(달동, 달동2차현대아파트)				
						이강용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로 50, 122동 806호(송현동, 솔빛마을주공아파트)				
						이강현	인천광역시 연수구 센트럴로 232, 101동 2504호(송도동, 더샵 센트럴파크1)				
						이강덕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18길 18-17(개포동)				
						이강열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로 50, 119동 901호(송현동, 솔빛마을주공아파트)				
						하성순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당골길 16-10, 가동 201호 (전원로얄타운)				
249	동구 금곡동	92-23	11.6	대	11.6	김진숙	송현동 66-26 동부아파트 6동 1207호	화수2동새마 을금고	인천 동구 화수2동 37	근저당 권	-17.34 ~ -39.09
250	동구 금곡동	3-96	37.1	대	3.0	한상현	금곡동 3				-17.43 ~ -39.63
251	동구 금곡동	92-22	7.6	대	7.3	홍선기	북구 석남동 493 롯데우림아파트 7동 101				-17.34 ~ -39.09
252	동구 금곡동	3-66	193.7	도	111.0	국	건설교통부				-17.34 ~ -39.09
253	동구 금곡동	1-2	601.7	도	256.0	국	건설부				-17.34 ~ -39.09
254	동구 금곡동	92-21	12.6	대	3.0	김광월	금곡동 5				-17.34 ~ -39.09
255	동구 금곡동	3-85	19.2	대	19.2	김영두	금곡동 5				-17.43 ~ -39.63
256	동구 금곡동	3-88	19.5	대	19.5	정영자	금곡동 5				-17.43 ~ -39.63
257	동구 금곡동	3-86	3.0	대	3.0	정연철	남구 용현동 187-17	주식회사국민 은행	서울중구남대문로 279-1 (인천지점)	근저당 권 2건	-17.43 ~ -39.63
258	동구 금곡동	3-87	0.3	대	0.3	안병해	남구주안동1458로얄 아파트8동204호				-17.43 ~ -39.63
259	동구 금곡동	3-6	19.2	대	12.0	국	건설교통부				-17.43 ~ -39.63
260	동구 금곡동	1-58	8.3	대	8.3	안병해	남구 주안동 1458 로얄아파트 8동 204호				-17.43 ~ -39.63
261	동구 금곡동	1-48	12.6	대	12.6	정연철	남구 용현동 187-17	주식회사국민 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인천지점)	근저당 권 2건	-17.43 ~ -39.63
262	동구 금곡동	1-57	6.0	대	6.0	양춘실	북구 십정동 313-17	주식회사국민 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인천지점)	근저당 권	-17.43 ~ -39.63
263	동구 금곡동	1-3	3.3	대	3.3	국	재무부				-17.43 ~ -39.63
264	동구 금곡동	1-87	56.6	대	22.0	김홍선	금곡동 2				-17.43 ~ -39.63
265	동구 금곡동	1-56	5.6	대	5.6	이영빈 외5인	동구 금곡동 9	주식회사사력키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537	근저당 권 2건	-17.43 ~ -39.63
266	동구 금곡동	1-55	7.3	대	7.3	이영빈 외6인	동구 금곡동 10	주식회사사력키	서울 중구 남대문로 5가 537	근저당 권 2건	-17.43 ~ -39.63
267	동구 금곡동	1-49	12.9	대	12.9	박명주	금곡동 1	주식회사한미 은행	서울 중구 다동39 (동인천지점)	근저당 권	-17.43 ~ -39.63

일련 번호	소재지	원면적		지목	사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기준 (0m~)m까지
		지번	면적 (㎡)			성명 (명칭)	주소	성명 (명칭)	주소	권리 관계	
268	동구 금곡동	1-54	5.6	대	5.6	유정석외7인	인천 남동구 간석동 426-5 수경파크빌 102호	주식회사정리 금융공사	서울 중구 다동33	근저당 권	-17.43 ~ -39.63
269	동구 금곡동	1-60	209.9	도	90.0	국	건설교통부				-17.43 ~ -39.63
270	동구 금곡동	1-84	48.5	대	33.0	이길자	인천 동구 금곡동 1-39				-17.43 ~ -39.63
271	동구 금곡동	1-53	6.3	대	6.3	유정석 외 1인	인천 남동구 간석동 426-5 수경파크빌 102호				-17.43 ~ -39.63
272	동구 금곡동	1-50	5.6	대	5.6	김명성	송림동 204				-17.43 ~ -39.63
273	동구 금곡동	1-65	8.3	대	8.3	김명성	송림동 204				-17.43 ~ -39.63
274	동구 금곡동	1-43	174.2	도	146.0	국	건설교통부				-17.97 ~ -40.17
275	동구 금곡동	1-51	0.3	대	0.3	국	재정경제부				-17.97 ~ -40.17
276	동구 금곡동	1-52	7.6	대	7.6	유선근	금곡동 1-53				-17.43 ~ -39.63
277	동구 금곡동	1-66	6.6	대	6.6	김명성	송림동 204				-17.97 ~ -40.17
278	동구 금곡동	1-39	57.2	대	54.0	이길자	인천 동구 금곡동 1				-17.97 ~ -40.17
279	동구 금곡동	1-40	95.9	대	38.0	오수용	금곡동 5				-17.97 ~ -40.17
280	동구 금곡동	1-61	31.4	대	26.0	백정흠	대전광역시 서구 월평동 302 황실타운 115동 906호				-17.97 ~ -40.17
281	동구 금곡동	1-72	11.2	대	1.0	문영재	중구반달로20번길 8-2(북성동1가)				-17.97 ~ -40.17
282	동구 금곡동	1-38	23.1	대	23.1	문주태	인천 연수구 옥련동 631 원흥아파트 103동 505호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75 (동인천지점)	근저당 권 2건	-17.97 ~ -40.17
283	동구 금곡동	1-37	89.3	대	88.0	문주태	인천 연수구 옥련동 631 원흥(아) 103동 505호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75 (동인천지점)	근저당 권 2건	-17.97 ~ -40.17
284	동구 금곡동	1-71	10.9	대	8.0	문영재	중구 반달로20번길 8-2(북성동1가)				-17.97 ~ -40.17
285	동구 금곡동	1-73	18.5	대	1.0	이희철	금곡동 1	인천계삼교회 신용협동조합	인천시동구 송림2동54	근저당 권 2건	-17.97 ~ -40.17
286	동구 금곡동	1-86	82.6	대	82.0	김정순 외 1인	동구화도진로7번길 14-5(금곡동)	갈산삼익신용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169-16	근저당 권	-17.97 ~ -40.17
287	동구 금곡동	1-33	80.3	대	80.3	이우선 외 2인	금곡동 1-33	희망새마을금 고	인천광역시동구 송림동 50-17	근저당 권	-18.51 ~ -40.71
288	동구 금곡동	1-32	40.7	대	40.7	진상철	금곡동 1				-18.51 ~ -40.71
289	동구 금곡동	1-85	31.7	대	31.7	진상철	금곡동 1				-18.51 ~ -40.71
290	동구 금곡동	1-31	28.4	대	27.0	예용섭	인천 남구 용현동 627-40 금호타운 1-705				-18.51 ~ -40.71
291	동구 금곡동	1-47	2.6	대	2.0	예용섭	인천 남구 용현동 627-40 금호타운 1-705				-18.51 ~ -40.71
292	동구 금곡동	1-45	10.9	대	9.0	예용섭	인천 남구 용현동 627-40 금호타운 1-705				-18.51 ~ -40.71
293	동구 금곡동	92-1	8.9	구	4.0	국	건설교통부				-18.51 ~ -40.71
294	동구 금곡동	1-44	23.1	대	23.1	최홍식	송림동 55-6				-18.51 ~ -40.71
295	동구 금곡동	1-30	177.0	도	120.0	국	건설교통부				-18.51 ~ -40.71
296	동구 금곡동	1-114	2.5	도	2.5	곽종훈	서구 가좌동 30-102 진주아파트 503동 907호				-18.51 ~ -40.71
297	동구 금곡동	1-20	163.9	대	73.0	곽종훈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곡동 527 도곡레이크아파트 402-901	주식회사한국 씨티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24 (다동) (주안지점)	근저당 권	-18.51 ~ -40.71

일련 번호	소재지	원면적		지목	사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기준 (0m~)m까지
		지번	면적 (㎡)			성명 (명칭)	주소	성명 (명칭)	주소	권리 관계	
298	동구 금곡동	1-113	4.1	도	2.0	곽종훈	서구 가좌동 30-102 진주아파트 503동 907호				-19.50 ~ -41.25
299	동구 금곡동	12-1	224.8	도	141.0	국	건설부				-15.73 ~ -37.48
300	동구 금곡동	10-1	2,852.8	도	257.0	공	인천시				-16.27 ~ -38.02
301	동구 금곡동	92-6	132.2	도	56.0	공	인천광역시				-16.27 ~ -38.02
302	동구 금곡동	13-9	4.6	대	1.0	공	인천광역시동구				-15.73 ~ -37.48
303	동구 금곡동	11-14	55.9	대	4.0	이정기	송림동 210				-16.81 ~ -38.56
304	동구 금곡동	11-7	15.2	도	6.0	국	건설교통부				-16.27 ~ -38.02
305	동구 금곡동	6-31	19.8	대	11.0	주식회사국 민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16.81 ~ -38.56
306	동구 금곡동	6-30	6.0	도	1.0	이경부외3인	송림동 210				-16.81 ~ -38.56
307	동구 금곡동	87-15	6.6	도	1.0	국	건설교통부				-16.81 ~ -38.56
308	동구 금곡동	11-6	52.9	대	52.0	주식회사국 민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16.81 ~ -38.56
309	동구 금곡동	6-2	123.6	대	120.0	주식회사국 민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16.81 ~ -38.56
310	동구 금곡동	11-2	75.7	대	37.0	주식회사국 민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16.81 ~ -38.56
311	동구 금곡동	6-29	146.1	대	137.0	주식회사국 민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16.81 ~ -38.56
312	동구 금곡동	5-8	102.5	대	9.0	이기윤	금곡동 5-8	만수중앙신용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1041-6	근저당 권 4건	-17.35 ~ -39.10
313	동구 금곡동	6-3	3.3	대	2.0	주식회사국 민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16.81 ~ -38.56
314	동구 금곡동	5-2	24.8	대	21.0	국	건설교통부				-17.35 ~ -39.10
315	동구 금곡동	5-10	49.6	대	41.0	이기윤	금곡동 5-8	만수중앙신용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1041-6	근저당 권 4건	-17.35 ~ -39.10
316	동구 금곡동	9-25	157.8	대	1.0	문춘자 외 3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 101-2 우성아파트 28동 903				-16.81 ~ -38.56
317	동구 금곡동	5-6	84.3	도	55.0	국	건설교통부				-17.35 ~ -39.10
318	동구 금곡동	5-7	163.0	대	130.0	이흥구	금곡동 5-7				-17.89 ~ -39.64
319	동구 금곡동	6-28	133.0	대	76.0	주식회사국 민은행	서울시 중구 남대문로2가 9-1				-17.35 ~ -39.10
320	동구 금곡동	3-76	145.4	대	137.0	이광복 외 5인	인천부평구산곡동산37 -4 현대아파트307동307호				-17.89 ~ -39.64
321	동구 금곡동	5-17	0.3	도	0.1	황을수	중구 율목동 96				-17.35 ~ -39.10
322	동구 금곡동	2-44	1.0	대	1.0	국	재무부				-17.98 ~ -40.18
323	동구 금곡동	3-7	66.1	도	48.0	황을수	중구 율목동 96				-17.89 ~ -39.64
324	동구 금곡동	2-32	232.4	대	109.0	곽종훈	서울 강남구 도곡동 527 도곡렉슬아파트 402-901	주식회사한국 씨티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24 (다동) (주안지점)	근저당 권	-17.89 ~ -39.64
325	동구 금곡동	2-43	22.5	대	5.0	국	건설교통부				-17.89 ~ -39.64
326	동구 금곡동	2-42	5.0	대	1.0	국	건설교통부				-17.98 ~ -40.18
327	동구 금곡동	2-80	6.1	대	1.0	공	인천광역시동구				-17.98 ~ -40.18
328	동구 금곡동	2-31	35.0	대	23.0	국	재무부				-17.98 ~ -40.18
329	동구 금곡동	2-39	111.6	도	90.0	공	인천광역시동구				-17.89 ~ -39.64
330	동구 금곡동	2-86	39.8	도	39.0	국	건설교통부				-17.98 ~ -40.18
331	동구 금곡동	2-84	66.4	도	2.0	국	건설교통부				-17.98 ~ -40.18
332	동구 금곡동	3-65	26.4	도	1.0	국	건설교통부				-17.89 ~ -39.64
333	동구 금곡동	3-43	42.6	대	6.0	김지택	금곡동 3				-17.89 ~ -39.64
334	동구 금곡동	2-33	9.6	대	9.6	국	재정경제부				-17.98 ~ -40.18

일련 번호	소재지	원면적		지목	사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기준 (0m~)m까지
		지번	면적 (㎡)			성명 (명칭)	주소	성명 (명칭)	주소	권리 관계	
335	동구 금곡동	2-60	2.3	도	2.3	국	건설교통부				-17.98 ~ -40.18
336	동구 금곡동	2-9	53.7	도	14.0	국	건설교통부				-17.98 ~ -40.18
337	동구 금곡동	3-90	26.4	대	20.0	안창근	금곡동 3				-17.98 ~ -40.18
338	동구 금곡동	2-79	4.0	도	4.0	공	인천광역시동구				-17.98 ~ -40.18
339	동구 금곡동	3-42	113.4	대	2.0	김영자	연수구 선학동 352 뉴서울아파트 106동 503호				-17.98 ~ -40.18
340	동구 금곡동	2-34	1.7	대	1.4	국	재정경제부				-17.98 ~ -40.18
341	동구 금곡동	2-45	31.0	대	31.0	김장석	남구 주안동 1606 진홍아파트 106동 302호				-17.98 ~ -40.18
342	동구 금곡동	2-78	0.5	도	0.5	공	인천광역시				-17.98 ~ -40.18
343	동구 금곡동	2-22	6.6	도	6.6	김장석	남구 주안동 1606 진홍아파트 106동 302호				-17.98 ~ -40.18
344	동구 금곡동	2-76	0.1	도	0.1	공	인천광역시동구				-17.98 ~ -40.18
345	동구 금곡동	2-58	22.1	대	7.0	김진우외3인	인천 연수구 송도동 3-10 풍림아이원아파트 214-1006				-17.98 ~ -40.18
346	동구 금곡동	2-51	51.6	도	51.6	국	건설교통부				-17.98 ~ -40.18
347	동구 금곡동	2-21	60.5	도	28.0	공	인천광역시				-17.98 ~ -40.18
348	동구 금곡동	2-59	19.5	도	19.5	이성자	남동구 만수동 932-15				-17.98 ~ -40.18
349	동구 금곡동	2-56	46.3	도	3.0	공	인천광역시동구				-17.98 ~ -40.18
350	동구 금곡동	2-75	56.7	도	47.0	국	건설교통부				-17.98 ~ -40.18
351	동구 금곡동	2-77	2.5	도	2.5	공	인천광역시동구				-18.52 ~ -40.72
352	동구 금곡동	2-4	513.5	차	426.0	공	인천광역시				-18.52 ~ -40.72
353	동구 금곡동	2-73	57.6	도	25.0	공	인천광역시				-18.52 ~ -40.72
354	동구 금곡동	2-24	6.9	차	6.9	국	재무부				-21.82 ~ -40.42
355	동구 금곡동	2-25	15.3	대	1.0	공	인천광역시				-18.52 ~ -40.72
356	동구 금곡동	1-28	35.1	대	28.0	공	인천광역시동구				-21.82 ~ -40.42
357	동구 금곡동	1-29	51.6	대	1.0	공	인천광역시동구				-18.52 ~ -40.72
358	동구 금곡동	2-85	3.7	도	3.7	국	건설교통부				-18.52 ~ -40.72
359	동구 금곡동	1-100	230.6	도	25.0	공	인천광역시동구				-21.82 ~ -40.42
360	동구 금곡동	1-18	538.4	차	171.7	공	인천광역시동구				-18.95 ~ -41.15
361	동구 금곡동	2-81	7.0	차	7.0	국	건설교통부				-18.52 ~ -40.72
362	동구 금곡동	2-82	24.9	차	9.0	국	건설교통부				-18.95 ~ -41.15
363	동구 금곡동	1-15	31.1	대	4.0	공	인천광역시동구				-19.94 ~ -41.69
364	동구 금곡동	1-109	1.5	대	1.0	공	인천광역시동구				-19.94 ~ -41.69
365	동구 금곡동	1-98	13.7	대	12.0	방도성	부평구 부평동 65-7 육일아파트 4-501				-19.94 ~ -41.69
366	동구 금곡동	1-89	94.5	차	35.0	국	재정경제부				-19.94 ~ -41.69
367	동구 금곡동	1-11	145.5	대	19.0	방도성	금곡동 1				-19.94 ~ -41.69
368	동구 금곡동	1-91	275.9	도	212.0	공	인천광역시동구				-19.94 ~ -41.69
369	동구 금곡동	1-6	196.1	차	188.0	공	인천광역시동구				-19.94 ~ -41.69
370	동구 금곡동	1-7	35.7	대	34.7	공	인천광역시동구				-19.94 ~ -41.69
371	동구 금곡동	1-10	36.4	대	9.0	박경숙	동구화도진로 11-1 (금곡동)	박종리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신평동 3-156	근저당 권	-20.48 ~ -42.23
372	동구 금곡동	1-9	36.4	대	36.4	우종인	금곡동 1				-20.48 ~ -42.23
373	동구 금곡동	1-93	8.8	도	8.8	공	인천광역시				-20.48 ~ -42.23
374	동구 금곡동	1-46	0.3	차	0.1	공	인천광역시				-20.48 ~ -42.23
375	동구 금곡동	1-5	112.5	차	29.0	공	인천광역시				-19.94 ~ -41.69

일련 번호	소재지	원면적		지목	사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기준 (0m~)m까지
		지번	면적 (㎡)			성명 (명칭)	주소	성명 (명칭)	주소	권리 관계	
376	동구 금곡동	1-90	7.1	도	7.1	국	건설교통부				-20.48 ~ -42.23
377	동구 금곡동	1-8	26.0	대	26.0	국	재무부				-20.48 ~ -42.23
378	동구 금곡동	1-1	100.0	도	24.0	국	건설교통부				-20.48 ~ -42.23
379	동구 금곡동	1-88	16.8	도	13.0	국	건설교통부				-20.48 ~ -42.23
380	동구 금곡동	5-15	6.6	도	1.0	국	건설교통부				-17.35 ~ -39.10
381	동구 금곡동	1-111	15.7	차	15.0	국	건설교통부				-18.95 ~ -41.15
382	동구 송림동	255-22	3.0	대	3.0	이기업 외 5인	송림동 146				-20.48 ~ -42.23
383	동구 송림동	255-9	98.0	대	15.0	신동욱	인천 남동구 구월동 1359-5				-20.48 ~ -42.23
384	동구 송림동	255-17	66.0	대	57.0	이창남	송림동 255				-21.02 ~ -42.77
385	동구 송림동	255-18	30.0	대	2.0	신동욱	남동구 구월동 1359-5	송림새마을금 고	인천 동구 송림동31-12	근저당 권 2건	-21.02 ~ -42.77
386	동구 송림동	255-20	66.0	대	66.0	문봉임	송림동 255				-20.48 ~ -42.23
387	동구 송림동	255-21	27.0	대	27.0	김정자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로 11-10(송림동)				-20.48 ~ -42.23
388	동구 송림동	255-26	6.0	도	6.0	공	인천광역시동구				-20.48 ~ -42.23
389	동구 송림동	255-24	56.0	도	56.0	공	인천광역시동구				-21.02 ~ -42.77
390	동구 송림동	255-25	45.0	도	38.0	공	인천광역시동구				-21.02 ~ -42.77
391	동구 송림동	255-23	58.0	도	53.0	공	인천광역시동구				-21.02 ~ -42.77
392	동구 송림동	255-13	87.0	대	87.0	최운인	송림동 256-24	주식회사국민 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2가 9-1(인천지점)	근저당 권 3건	-21.02 ~ -42.77
393	동구 송림동	255-12	102.0	대	102.0	임영주	연수구 동춘동 931 무지개마을아파트 6동 602호				-21.56 ~ -43.31
394	동구 송림동	255-11	76.0	대	74.0	김용선	연수구 동춘동 931 무지개마을 6동 602호	주식회사 한미은행	서울 중구 다동39	근저당 권	-21.56 ~ -43.31
395	동구 송림동	255-7	106.0	대	50.0	최운인	송림동 256-24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동인천지점)	근저당 권	-21.56 ~ -43.31
396	동구 송림동	286-4	11,266.0	도	260.0	국	건설부				-22.10 ~ -43.85
397	동구 송림동	286-7	53.0	도	33.0	국	건설부				-22.74 ~ -44.49
398	동구 송림동	286-6	36.0	도	1.0	박종범	송림동 98-151				-22.74 ~ -44.49
399	동구 송림동	259-7	46.0	도	8.0	공	인천광역시동구				-22.74 ~ -44.49
400	동구 송림동	259-8	5.0	대	5.0	이종택	송림동 98				-22.74 ~ -44.49
401	동구 송림동	259-10	5.0	도	4.0	공	인천광역시동구				-22.74 ~ -44.49
402	동구 송림동	259-2	457.0	도	1.0	국	건설교통부				-22.74 ~ -44.49
403	동구 송림동	253-2	2,049.0	도	115.0	국	건설교통부				-21.56 ~ -43.31
404	동구 송림동	257-32	105.0	도	10.0	국	건설교통부				-22.10 ~ -43.85
405	동구 송림동	257-59	46.0	도	19.0	국	건설교통부				-22.10 ~ -43.85
406	동구 송림동	257-22	586.0	도	529.0	국	건설교통부				-22.64 ~ -44.39
407	동구 송림동	257-21	150.0	대	14.0	김창호	서구 가좌동 30-2 진주아파트 301동 202호				-22.64 ~ -44.39
408	동구 송림동	257-41	30.0	대	14.0	가순옥	동구 화평동 494				-22.64 ~ -44.39
409	동구 송림동	257-26	40.0	대	26.0	변해창	인천시 동구 송림동 234				-22.64 ~ -44.39
410	동구 송림동	257-25	50.0	대	50.0	김이섭 외 1인	송림동 257				-22.64 ~ -44.39
411	동구 송림동	257-27	109.0	대	62.0	변해창	인천시 동구 송림동 234				-23.18 ~ -44.93
412	동구 송림동	257-31	96.0	대	96.0	김이섭	송림동 257				-23.18 ~ -44.93
413	동구 송림동	257-28	96.0	대	17.0	김상희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223-18				-23.18 ~ -44.93

일련 번호	소재지	원면적		지목	사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기준 (0m~)m까지
		지번	면적 (㎡)			성명 (명칭)	주소	성명 (명칭)	주소	권리 관계	
414	동구 송림동	257-50	3.0	대	1.0	최동규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로20번길 13-5(송림동)	송림동신용협 동조합	인천 동구 송현동 87	근저당 권 2건	-23.18 ~ -44.93
415	동구 송림동	257-60	8.0	대	8.0	공	인천광역시동구				-23.18 ~ -44.93
416	동구 송림동	257-48	2.0	도	2.0	공	인천광역시동구				-23.18 ~ -44.93
417	동구 송림동	257-47	26.0	대	25.0	장인섭	송림동 257				-23.18 ~ -44.93
418	동구 송림동	257-51	2.0	대	2.0	김상희	충청북도 옥천군 옥천읍 삼양리 223-18				-23.18 ~ -44.93
419	동구 송림동	257-40	10.0	대	8.0	장숙자	인천 동구 송현동 154 솔빛마을주공아파트 112-202				-23.72 ~ -45.47
420	동구 송림동	257-30	122.0	대	122.0	김이섭 외 1인	송림동 257				-23.72 ~ -45.47
421	동구 송림동	257-29	91.0	대	45.0	최동규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로20번길 13-5(송림동)	송림동신용협 동조합	인천 동구 송현동 87	근저당 권 2건	-23.72 ~ -45.47
422	동구 송림동	257-49	10.0	도	4.0	김춘화	서울 마포구 용강동 40-1				-23.72 ~ -45.47
423	동구 송현동	110-25	238.0	구	2.0	국	건설부				-18.51 ~ -40.71
424	동구 송현동	113	177.0	도	102.0	국	건설부				-19.50 ~ -41.25
425	동구 송현동	98-125	119.0	대	39.0	김수연 외 3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09-9				-19.50 ~ -41.25
426	동구 송현동	98-124	108.0	대	88.0	신덕호	인천광역시 동구 중앙로 26-5(송현동)	희망새마을 금고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로99-2 (송림동)	근저당	-19.50 ~ -41.25
427	동구 송현동	98-555	30.0	대	3.0	공	인천광역시				-19.50 ~ -41.25
428	동구 송현동	98-554	21.0	대	19.0	공	인천광역시				-19.50 ~ -41.25
429	동구 송현동	98-14	13.0	도	3.0	공	인천광역시				-19.50 ~ -41.25
430	동구 송현동	98-123	68.0	대	68.0	김은경	송현동 98-123				-19.50 ~ -41.25
431	동구 송현동	98-473	45.0	대	45.0	안영애	인천 동구 송현동 98-473				-19.50 ~ -41.25
432	동구 송현동	98-18	10.0	도	10.0	공	인천광역시				-20.04 ~ -41.79
433	동구 송현동	98-648	88.0	도	69.0	공	인천광역시				-20.04 ~ -41.79
434	동구 송현동	98-588	15.0	대	15.0	공	인천광역시				-19.50 ~ -41.25
435	동구 송현동	98-340	10.0	도	7.0	국	건설교통부				-19.50 ~ -41.25
436	동구 송현동	98-19	488.0	대	49.0	조원집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901 목동 신시가지아파트 106동 202호				-20.04 ~ -41.79
437	동구 송현동	98-122	63.0	도	59.0	국	건설교통부				-20.04 ~ -41.79
438	동구 송현동	98-542	21.0	대	18.0	공	인천광역시				-20.04 ~ -41.79
439	동구 송현동	98-583	77.0	도	28.0	공	인천광역시				-20.04 ~ -41.79
440	동구 송현동	98-685	6.0	도	6.0	공	인천광역시				-20.04 ~ -41.79
441	동구 송현동	98-468	17.0	도	17.0	공	인천광역시				-20.04 ~ -41.79
442	동구 송현동	98-647	17.0	도	16.0	공	인천광역시				-20.58 ~ -42.33
443	동구 송현동	98-420	33.0	도	33.0	공	인천광역시동구 외 1인				-20.04 ~ -41.79
444	동구 송현동	98-309	3.0	도	3.0	국	건설교통부				-20.04 ~ -41.79
445	동구 송현동	98-574	23.0	도	22.0	공	인천광역시				-20.04 ~ -41.79
446	동구 송현동	98-676	3.0	도	3.0	국	건설교통부				-20.58 ~ -42.33
447	동구 송현동	98-657	16.0	도	16.0	공	인천광역시				-20.58 ~ -42.33
448	동구 송현동	98-695	6.0	도	6.0	국	재무부				-20.58 ~ -42.33
449	동구 송현동	98-677	8.0	도	8.0	공	인천광역시				-20.04 ~ -41.79
450	동구 송현동	98-552	29.0	도	5.0	공	인천광역시				-20.04 ~ -41.79
451	동구 송현동	98-338	7.0	대	2.0	공	인천광역시				-20.04 ~ -41.79

일련 번호	소재지	원면적		지목	사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기준 (0m~)0m까지
		지번	면적 (㎡)			성명 (명칭)	주소	성명 (명칭)	주소	권리 관계	
452	동구 송현동	98-305	4.0	대	4.0	국	재정경제부				-20.58 ~ -42.33
453	동구 송현동	98-95	4.0	대	4.0	공	인천광역시				-20.58 ~ -42.33
454	동구 송현동	98-306	28.0	대	28.0	이정숙	송현동 98-302				-20.04 ~ -41.79
455	동구 송현동	98-308	13.0	대	11.0	공	인천광역시				-20.04 ~ -41.79
456	동구 송현동	98-304	2.0	도	2.0	국	재무부				-20.58 ~ -42.33
457	동구 송현동	98-307	13.0	대	2.0	국	재정경제부				-20.04 ~ -41.79
458	동구 송현동	98-299	50.0	대	2.0	천윤옥	인천동구송현동 98-299				-20.58 ~ -42.33
459	동구 송현동	98-300	54.0	도	41.0	국	재무부				-20.58 ~ -42.33
460	동구 송현동	98-94	125.0	대	1.0	김정섭	송현동 98-94				-20.58 ~ -42.33
461	동구 송현동	98-302	56.0	대	56.0	신장운	인천시 동구 송현동 98				-20.58 ~ -42.33
462	동구 송현동	98-456	62.0	대	28.0	정춘화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409-3 현지아트빌 401호	송림신용협동 조합/ 강상용	인천동구송현동88 -4/ 경기도성남시분당 구운중동873산운 마을302-203	근저당	-21.12 ~ -42.87
463	동구 송현동	98-379	20.0	대	20.0	박점숙	인천 남동구 간석동 337-20				-20.58 ~ -42.33
464	동구 송현동	98-225	13.0	도	13.0	국	재무부				-20.58 ~ -42.33
465	동구 송현동	98-329	17.0	대	3.0	공	인천광역시				-21.12 ~ -42.87
466	동구 송현동	98-6	3.0	대	3.0	정춘화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409-3 현지아트빌 401호	송림신용협동 조합/ 강상용	인천동구송현동88 -4/ 경기도성남시분당 구운중동873산운 마을302-203	근저당	-21.12 ~ -42.87
467	동구 송현동	98-675	21.0	도	21.0	공	인천광역시				-20.58 ~ -42.33
468	동구 송현동	98-659	52.0	도	26.0	공	인천광역시				-20.58 ~ -42.33
469	동구 송현동	98-112	1.0	대	0.5	공	인천광역시				-21.12 ~ -42.87
470	동구 송현동	98-303	48.0	대	48.0	공	인천광역시				-20.58 ~ -42.33
471	동구 송현동	98-263	3.0	도	3.0	국	건설교통부				-21.12 ~ -42.87
472	동구 송현동	98-327	1.0	대	1.0	국	국세청				-21.12 ~ -42.87
473	동구 송현동	98-465	10.0	대	10.0	공	인천광역시				-20.58 ~ -42.33
474	동구 송현동	98-17	7.0	대	7.0	국	재무부				-20.58 ~ -42.33
475	동구 송현동	98-93	3.0	도	1.0	공	인천광역시				-20.58 ~ -42.33
476	동구 송현동	98-669	8.0	도	8.0	공	인천광역시				-20.58 ~ -42.33
477	동구 송현동	98-653	47.0	도	1.0	공	인천광역시				-20.58 ~ -42.33
478	동구 송현동	113-2	5.0	도	1.0	국	건설부				-20.48 ~ -42.23
479	동구 송현동	98-326	40.0	대	39.0	정춘화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409-3 현지아트빌 401호	송림신용협동 조합/ 강상용	인천동구송현동88 -4/ 경기도성남시분당 구운중동873산운 마을302-203	근저당	-21.12 ~ -42.87
480	동구 송현동	98-261	63.0	대	63.0	이양수	인천시동구송현동 98-216				-21.12 ~ -42.87
481	동구 송현동	98-111	3.0	대	3.0	국	국세청				-21.12 ~ -42.87
482	동구 송현동	98-654	7.0	대	2.0	조원집	서울시 양천구 목동 901 목동 신시가리아파트 106동 202호				-21.12 ~ -42.87
483	동구 송현동	98-324	7.0	도	6.0	국	건설교통부				-21.12 ~ -42.87
484	동구 송현동	98-110	3.0	도	3.0	국	건설교통부				-21.12 ~ -42.87
485	동구 송현동	98-325	7.0	도	7.0	국	건설교통부				-21.12 ~ -42.87
486	동구 송현동	98-73	13.0	대	13.0	이양수	송현동 98-216				-21.12 ~ -42.87
487	동구 송현동	98-455	3.0	도	3.0	국	건설교통부				-21.12 ~ -42.87

일련 번호	소재지	원면적		지목	사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기준 (0m~)m까지
		지번	면적 (㎡)			성명 (명칭)	주소	성명 (명칭)	주소	권리 관계	
488	동구 송현동	98-389	63.0	대	22.0	한주택	인천시 동구 송립동 184-10				-21.12 ~ -42.87
489	동구 송현동	98-109	85.0	대	85.0	홍양표	인천시 동구 송현동 98				-21.12 ~ -42.87
490	동구 송현동	98-323	10.0	도	8.0	국	건설교통부				-21.12 ~ -42.87
491	동구 송현동	98-471	67.0	대	67.0	박종범	송현동 98-151				-21.12 ~ -42.87
492	동구 송현동	98-108	2.0	도	2.0	국	건설교통부				-21.12 ~ -42.87
493	동구 송현동	98-362	4.0	대	4.0	국	재무부				-21.12 ~ -42.87
494	동구 송현동	98-87	112.0	대	14.0	탁영상	송현동 98				-21.66 ~ -43.41
495	동구 송현동	98-638	3.0	도	3.0	국	건설교통부				-21.66 ~ -43.41
496	동구 송현동	98-363	10.0	대	9.0	국	재무부				-21.66 ~ -43.41
497	동구 송현동	98-618	85.0	대	85.0	우선주	송현동 98-360				-21.66 ~ -43.41
498	동구 송현동	98-290	73.0	대	45.0	국	재정경제부				-21.66 ~ -43.41
499	동구 송현동	98-86	119.0	대	2.0	장순애 외 3인	송현동 98	송립동신용협 동조합	인천 동구 송현동 88-4	근저당 2건	-21.66 ~ -43.41
500	동구 송현동	98-617	221.0	도	190.0	공	인천광역시				-21.66 ~ -43.41
501	동구 송현동	98-105	305.0	대	10.0	손범래	인천 동구 송현동 98-105	주식회사한미 은행	서울 중구 다동 39 (동인천지점)	근저당 6건	-21.66 ~ -43.41
502	동구 송현동	98-187	4.0	대	4.0	국	재무부				-21.66 ~ -43.41
503	동구 송현동	98-643	25.0	대	1.0	국	재무부				-21.66 ~ -43.41
504	동구 송현동	98-613	3.0	도	3.0	국	건설교통부				-21.66 ~ -43.41
505	동구 송현동	98-294	31.0	대	31.0	공	인천광역시				-21.66 ~ -43.41
506	동구 송현동	98-91	1.0	도	1.0	국	건설교통부				-21.66 ~ -43.41
507	동구 송현동	98-612	4.0	도	4.0	공	인천광역시				-21.66 ~ -43.41
508	동구 송현동	98-153	17.0	도	17.0	국	건설교통부				-21.66 ~ -43.41
509	동구 송현동	98-154	92.0	대	70.0	윤인섭	인천시 동구 송현동 98				-21.66 ~ -43.41
510	동구 송현동	98-295	3.0	대	1.0	공	인천광역시				-22.20 ~ -43.95
511	동구 송현동	98-296	1.0	도	0.5	국	건설교통부				-22.20 ~ -43.95
512	동구 송현동	98-156	69.0	대	68.0	박종범	송현동 98-151				-22.20 ~ -43.95
513	동구 송현동	98-292	3.0	도	1.0	국	건설교통부				-22.20 ~ -43.95
514	동구 송현동	98-101	2.0	대	2.0	박종범	송현동 98-151				-22.20 ~ -43.95
515	동구 송현동	98-90	3.0	도	1.0	국	건설교통부				-22.20 ~ -43.95
516	동구 송현동	98-138	7.0	도	1.0	국	건설교통부				-22.20 ~ -43.95
517	동구 송현동	98-102	119.0	대	2.0	석진철	중구 송학동 1가 9	주식회사신한 은행	서울 중구 태평로2가120(인 천중앙지점)	근저당 3건	-22.20 ~ -43.95
518	동구 송현동	98-689	5.0	대	3.0	석진철	인천광역시 중구 송학동 1가 9				-22.20 ~ -43.95
519	동구 송현동	98-152	21.0	대	21.0	박종범	송현동 98-151				-22.20 ~ -43.95
520	동구 송현동	98-358	3.0	도	3.0	국	건설교통부				-22.20 ~ -43.95
521	동구 송현동	98-155	8.0	대	3.0	국	재무부				-22.20 ~ -43.95
522	동구 송현동	98-556	21.0	도	21.0	공	인천광역시				-22.74 ~ -44.49
523	동구 송현동	98-576	67.0	도	41.0	공	인천광역시				-22.74 ~ -44.49
524	동구 송현동	98-100	49.0	대	24.0	박종범	송현동 98-151	한국중앙무역 주식회사	서울 중구 남대문로 3가 106	근저당	-22.20 ~ -43.95
525	동구 송현동	98-224	9.0	대	8.0	안정훈	남동구 만수동 5-426 신동아아파트 1동 302호				-22.74 ~ -44.49
526	동구 송현동	98-151	67.0	대	67.0	박종범	송현동 98-151				-22.20 ~ -43.95
527	동구 송현동	98-312	46.0	대	20.0	변진규	송현동 98				-22.74 ~ -44.49
528	동구 송현동	98-562	44.0	도	44.0	국	건설교통부 외 1인				-22.74 ~ -44.49

일련 번호	소재지	원면적		지목	사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기준 (0m~)m까지
		지번	면적 (㎡)			성명 (명칭)	주소	성명 (명칭)	주소	권리 관계	
529	동구 송현동	98-691	32.0	대	7.0	장정근	송현동 98				-22.74 ~ -44.49
530	동구 송현동	98-99	17.0	도	17.0	국	건설교통부				-22.74 ~ -44.49
531	동구 송현동	98-311	17.0	대	1.0	장정근	송현동 98				-22.74 ~ -44.49
532	동구 송현동	98-97	30.0	대	30.0	국	재정경제부				-22.74 ~ -44.49
533	동구 송현동	98-310	3.0	대	3.0	국	재무부				-22.74 ~ -44.49
534	동구 송현동	98-223	22.0	대	22.0	이인숙	화수동 2-7 미류아파트 107동 302호				-22.74 ~ -44.49
535	동구 송현동	98-561	2.0	도	2.0	국	건설교통부				-22.74 ~ -44.49
536	동구 송현동	98-548	4.0	도	4.0	공	인천광역시	한국중앙무역 주식회사	서울 중구 남대문로3가 106	근저당	-22.74 ~ -44.49
537	동구 송현동	98-222	1.0	대	1.0	국	건설교통부				-22.74 ~ -44.49
538	동구 송현동	87-94	60.0	대	60.0	이계숙 외 4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굴포로 158,501동 1103호(삼산동, 행복한마을서해그랑블 아파트)				-22.74 ~ -44.49
539	동구 송현동	105-9	58.0	대	58.0	국	재정경제부				-23.28 ~ -45.03
540	동구 송현동	87-139	1.0	대	1.0	공	인천광역시				-22.74 ~ -44.49
541	동구 송현동	87-50	868.0	도	453.0	국	건설부				-23.82 ~ -45.57
542	동구 송현동	105-6	1,467.0	도	24.0	국	건설부				-23.72 ~ -45.47
					46.0	국	건설부				-25.34 ~ -47.09
					292.0	국	건설부				-25.44 ~ -47.19
543	동구 송현동	98-96	73.0	도	9.0	국	건설부				-23.28 ~ -45.03
544	동구 송현동	97-4	99.0	대	35.0	임식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97-4	송림신용협동 조합	인천광역시 동구 화진로34번길 15(송현동)	근저당	-23.28 ~ -45.03
545	동구 송현동	87-92	20.0	대	20.0	홍석영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3로 290-16, 804동 303호 (장기동,고창마을 이니스터원아파트)				-23.28 ~ -45.03
546	동구 송현동	87-91	13.0	대	13.0	홍석영	경기도 김포시 김포한강3로 290-16, 804동 303호 (장기동,고창마을 이니스터원아파트)				-23.28 ~ -45.03
547	동구 송현동	87-88	18.0	대	18.0	방순분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로 100,2동401호(선학동, 금호아파트)				-23.28 ~ -45.03
548	동구 송현동	97-5	126.0	대	46.0	조은주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로 29(송현동)				-23.28 ~ -45.03
549	동구 송현동	97-3	86.0	대	17.0	박보현	송현동 97-5				-23.82 ~ -45.57
550	동구 송현동	92-7	281.0	대	1.0	원태룡	경기도 시흥시 옥구천동로 399,202동603호 (경왕동,건영아파트)	주식회사우리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회현동1가 203	근저당	-23.82 ~ -45.57
551	동구 송현동	105-4	116.0	도	101.0	국	건설교통부				-23.82 ~ -45.57
552	동구 송현동	91-2	2,613.0	도	207.0	국	건설교통부				-23.82 ~ -45.57
553	동구 송현동	87-43	66.0	대	43.0	재단법인기 독교대한성 결교회유지 재단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90-56	주식회사신한 은행	서울특별시중구 태평로2가120 (인천중앙지점)	근저당	-23.72 ~ -45.47
554	동구 송현동	87-42	76.0	대	76.0	재단법인기 독교대한성 결교회유지 재단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90-56	주식회사신한 은행	서울특별시중구 태평로2가120 (인천중앙지점)	근저당	-23.72 ~ -45.47

일련 번호	소재지	원면적		지목	사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기준 (0m~)m까지
		지번	면적 (㎡)			성명 (명칭)	주소	성명 (명칭)	주소	권리 관계	
555	동구 송현동	87-25	56.0	대	33.0	재단법인기 독교대한성 결교회유지 재단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90-56	주식회사신한 은행	서울특별시중구 태평로2가120 (인천중앙지점)	근저당	-23.72 ~ -45.47
556	동구 송현동	87-44	89.0	대	73.0	재단법인기 독교대한성 결교회유지 재단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90-56	주식회사신한 은행	서울특별시중구 태평로2가120 (인천중앙지점)	근저당	-24.26 ~ -46.01
557	동구 송현동	87-111	13.0	대	11.0	재단법인기 독교대한성 결교회유지 재단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90-56				-24.26 ~ -46.01
558	동구 송현동	87-28	585.0	대	280.0	재단법인기 독교대한성 결교회유지 재단	서울특별시 강남구 대치동 890-56	주식회사신한 은행	서울특별시중구태 평로2가120(인천 중앙지점)	근저당	-24.26 ~ -46.01
559	동구 송현동	105-11	1.0	대	1.0	우봉영 외 1인	김포군 김단면 금곡리 678				-24.36 ~ -46.11
560	동구 송현동	87-63	56.0	대	48.0	김영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21 이매촌 503동 103호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75(동인 천지점)	근저당	-24.36 ~ -46.11
561	동구 송현동	87-66	26.0	대	23.0	김영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21 이매촌 503동 103호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75(동인 천지점)	근저당	-24.36 ~ -46.11
562	동구 송현동	87-122	3.0	대	2.0	김영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21 이매촌 503동 103호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75(동인 천지점)	근저당	-24.36 ~ -46.11
563	동구 송현동	87-123	12.0	대	3.0	이점순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로 32(송현동)				-24.36 ~ -46.11
564	동구 송현동	87-65	53.0	대	2.0	김영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이매동 121 이매촌 503동 103호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75(동인 천지점)	근저당	-24.36 ~ -46.11
565	동구 송현동	87-27	1,099.0	대	303.0	재단법인기 독교대한성 결교회유지 재단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 동 890-56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특별시중구 태평로2가120 (인천중앙지점)	근저당	-24.80 ~ -46.55
					23.0	재단법인기 독교대한성 결교회유지 재단	서울특별시강남구대치 동 890-56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특별시중구 태평로2가120 (인천중앙지점)	근저당	-25.34 ~ -47.09
566	동구 송현동	91-3	2.0	도	2.0	국	건설교통부				-24.90 ~ -46.65
567	동구 송현동	91-1	11.0	도	9.0	국	건설교통부				-24.90 ~ -46.65
568	동구 송현동	92-1	53.0	대	53.0	양문훈	송현동92				-24.90 ~ -46.65
569	동구 송현동	92-10	7.0	도	7.0	공	인천광역시				-24.90 ~ -46.65
570	동구 송현동	105-3	42.0	대	42.0	양문훈	송현동92				-24.90 ~ -46.65
571	동구 송현동	90-37	1.0	도	1.0	공	인천광역시				-24.90 ~ -46.65
572	동구 송현동	87-62	63.0	대	56.0	양문훈	인천시 동구 송현동92				-24.90 ~ -46.65
573	동구 송현동	87-61	79.0	대	14.0	양문훈	인천시 동구 송현동92				-24.90 ~ -46.65
574	동구 송현동	87-60	84.0	대	58.0	양문훈	인천시 동구 송현동92				-24.90 ~ -46.65
575	동구 송현동	87-121	2.0	도	2.0	양문훈	인천시 동구 송현동92				-29.15 ~ -46.35
576	동구 송현동	87-120	17.0	도	12.0	공	인천광역시				-29.15 ~ -46.35
577	동구 송현동	88-47	26.0	도	15.0	공	인천광역시				-24.90 ~ -46.65
578	동구 송현동	87-59	106.0	대	25.0	임현순	송현동 92				-29.59 ~ -46.79
579	동구 송현동	87-119	10.0	대	8.0	국	재정경제부				-29.59 ~ -46.79
580	동구 송현동	87-57	102.0	대	29.0	황순영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로34번길 10-2(송현동)				-25.34 ~ -47.09

일련 번호	소재지	원면적		지목	사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기준 (0m~)0m까지
		지번	면적 (㎡)			성명 (명칭)	주소	성명 (명칭)	주소	권리 관계	
581	동구 송현동	87-36	123.0	대	123.0	김정윤 외 1인	송현동 87-36	주식회사 신한은행	서울특별시중구 태평로2가120 (인천중앙지점)	근저당	-25.34 ~ -47.09
582	동구 송현동	87-58	43.0	도	37.0	국	건설교통부				-29.59 ~ -46.79
583	동구 송현동	87-32	231.0	도	61.0	공	인천광역시				-25.34 ~ -47.09
584	동구 송현동	90-30	10.0	대	4.0	이원희	서구 석남동 587-62				-25.44 ~ -47.19
585	동구 송현동	90-20	69.0	대	7.0	이마빈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92833 플러튼 와일드플라워 드라이브 2205				-25.44 ~ -47.19
586	동구 송현동	90-21	10.0	대	9.0	주득정	인천광역시 서구 청에메랄드로 30,110동 1901호(연회동, 청라자이)				-25.44 ~ -47.19
587	동구 송현동	90-6	67.0	대	67.0	이원희	서구 석남동 587-62				-25.44 ~ -47.19
588	동구 송현동	90-36	21.0	도	21.0	공	인천광역시				-25.44 ~ -47.19
589	동구 송현동	90-5	66.0	대	60.0	주득정	인천광역시 서구 청에메랄드로 30,110동 1901호(연회동, 청라자이)				-25.44 ~ -47.19
590	동구 송현동	90-35	13.0	도	13.0	공	인천광역시				-25.44 ~ -47.19
591	동구 송현동	88-26	55.0	대	25.0	박종수	남구 송의동 295-55 대광빌라 2동 401호				-25.44 ~ -47.19
592	동구 송현동	88-46	7.0	도	7.0	공	인천광역시				-25.44 ~ -47.19
593	동구 송현동	88-25	159.0	대	29.0	박상용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진로34번길 3-4 (송현동)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서울특별시중구 다동 39 (동인천지점)	근저당	-25.44 ~ -47.19
594	동구 송현동	88-23	122.0	대	5.0	최병국	인천 동구 송현동 88-23	송림신용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88-4	근저당	-25.88 ~ -47.63
595	동구 송현동	88-6	550.0	차	397.0	공	인천광역시				-25.88 ~ -47.63
596	동구 송현동	88-27	103.0	대	12.0	정용	송현동 88				-25.88 ~ -47.63
597	동구 송현동	90-8	116.0	대	4.0	주득정	인천광역시 서구 청에메랄드로 30,110동 1901호(연회동, 청라자이)				-25.98 ~ -47.73
598	동구 송현동	90-24	3.0	대	3.0	주득정	인천광역시 서구 청에메랄드로 30,110동 1901호(연회동, 청라자이)				-25.98 ~ -47.73
599	동구 송현동	90-4	76.0	대	76.0	주득정	인천광역시 서구 청에메랄드로 30,110동 1901호(연회동, 청라자이)				-25.98 ~ -47.73
600	동구 송현동	90-34	7.0	도	7.0	공	인천광역시				-25.98 ~ -47.73
601	동구 송현동	90-7	69.0	대	29.0	주득정	인천광역시 서구 청에메랄드로 30,110동 1901호(연회동, 청라자이)				-25.98 ~ -47.73
602	동구 송현동	90-2	577.0	대	232.0	이강현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68 뉴서울아파트 106동 301호				-25.98 ~ -47.73
603	동구 송현동	88-45	17.0	도	16.0	공	인천광역시				-25.98 ~ -47.73
604	동구 송현동	88-18	102.0	대	8.0	전대만	송현동 83				-25.98 ~ -47.73

일련 번호	소재지	원면적		지목	사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기준 (0m~)m까지
		지번	면적 (㎡)			성명 (명칭)	주소	성명 (명칭)	주소	권리 관계	
605	동구 송현동	88-44	20.0	도	12.0	공	인천광역시				-25.98 ~ -47.73
606	동구 송현동	88-19	343.0	대	62.0	공	인천광역시				-26.42 ~ -48.17
607	동구 송현동	88-38	93.0	대	93.0	이희상	송현동 88-38				-26.42 ~ -48.17
608	동구 송현동	88-11	69.0	대	45.0	김영석	송현동 88				-26.42 ~ -48.17
609	동구 송현동	88-14	7.0	도	6.0	공	인천광역시				-26.42 ~ -48.17
610	동구 송현동	88-13	13.0	도	13.0	공	인천광역시				-26.42 ~ -48.17
611	동구 송현동	89-56	4.0	도	1.0	국	건설교통부				-26.42 ~ -48.17
612	동구 송현동	89-48	26.0	대	1.0	공	인천광역시				-26.42 ~ -48.17
613	동구 송현동	89-18	102.0	대	1.0	공	인천광역시				-26.42 ~ -48.17
614	동구 송현동	88-1	30.0	도	0.1	국	건설부				-26.42 ~ -48.17
615	동구 송현동	66-865	24.0	도	1.6	공	인천광역시				-37.85 ~ -60.05
616	동구 송현동	88-12	17.0	도	16.0	공	인천광역시				-26.42 ~ -48.17
617	동구 송현동	110-1	1,138.0	구	55.0	국	건설부				-26.42 ~ -48.17
					96.0	국	건설부				-26.52 ~ -48.27
618	동구 송현동	90-1	17.0	대	17.0	함영선	송현동 90				-26.52 ~ -48.27
619	동구 송현동	90-32	10.0	대	10.0	함영선	송현동 90				-26.52 ~ -48.27
620	동구 송현동	90-38	1.0	대	1.0	공	인천광역시				-26.52 ~ -48.27
621	동구 송현동	98-185	63.0	구	1.0	국	건설부				-26.52 ~ -48.27
622	동구 송현동	88-50	30.0	도	5.0	공	인천광역시				-26.52 ~ -48.27
623	동구 송현동	89-45	3.0	도	2.0	공	인천광역시				-26.52 ~ -48.27
624	동구 송현동	89-29	76.0	대	27.0	김상임 외 1인	송현동 89				-26.52 ~ -48.27
625	동구 송현동	89-50	456.0	대	5.0	국	재정경제부				-26.52 ~ -48.27
					157.0	국	재정경제부				-26.96 ~ -48.71
626	동구 송현동	89-39	109.0	대	68.0	김종옥	송현동 89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중구남대문로 2가9-1 (송림동지점)	근저당	-26.96 ~ -48.71
627	동구 송현동	89-23	109.0	대	105.0	박수영	송현동 89	송림동신용 협동조합	인천 동구 송현동 88-4	근저당	-26.96 ~ -48.71
628	동구 송현동	89-21	99.0	대	83.0	황평화	송현동 89				-26.96 ~ -48.71
629	동구 송현동	89-20	43.0	대	16.0	박수영	인천동구송현동37백마 그린빌라 302호				-26.96 ~ -48.71
630	동구 송현동	89-49	3.0	도	3.0	국	건설교통부				-26.96 ~ -48.71
631	동구 송현동	109	179.0	도	164.0	국	건설부				-27.06 ~ -48.81
632	동구 송현동	99-5	59.0	도	4.0	국	건설교통부				-27.06 ~ -48.81
633	동구 송현동	89-35	86.0	대	86.0	류정희	송현동 89				-27.06 ~ -48.81
634	동구 송현동	89-34	99.0	대	99.0	이광희	송현동 89				-27.06 ~ -48.81
635	동구 송현동	89-37	50.0	대	50.0	김순자	남구 주안동 305				-27.06 ~ -48.81
636	동구 송현동	89-36	23.0	대	22.0	국	재정경제부				-27.06 ~ -48.81
637	동구 송현동	89-27	53.0	대	1.0	황평화 외 1인	인천 동구 송현동 89				-27.06 ~ -48.81
638	동구 송현동	89-31	76.0	대	1.0	김상임	송현동 89				-27.06 ~ -48.81
639	동구 송현동	89-33	89.0	대	55.0	부회옥	송현동 89-33	송림동신용 협동조합	인천 동구 송현동 88-4	근저당	-27.06 ~ -48.81
640	동구 송현동	89-41	36.0	대	36.0	차병천 외 1인	송현동 89-24				-27.50 ~ -49.25
641	동구 송현동	89-19	36.0	대	1.0	운순이	인천 중구 운북동 1021				-27.50 ~ -49.25
642	동구 송현동	89-22	73.0	대	73.0	이건	송현동 89				-27.50 ~ -49.25
643	동구 송현동	89-25	112.0	대	12.0	차병천 외 1인	송현동 89-24				-27.50 ~ -49.25
644	동구 송현동	89-24	99.0	대	69.0	차병천 외 1인	송현동 89-24				-27.50 ~ -49.25

일련 번호	소재지	원면적		지목	사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기준 (0m~)0m까지
		지번	면적 (㎡)			성명 (명칭)	주소	성명 (명칭)	주소	권리 관계	
645	동구 송현동	89-2	48.0	대	48.0	공	인천광역시				-27.50 ~ -49.25
646	동구 송현동	89-3	61.0	대	13.0	정훈	154 솔빛마을주공아파트 116동 707호	송림신용 협동조합	인천 동구 송현동 88-4	근저당	-27.50 ~ -49.25
647	동구 송현동	89-55	20.0	도	20.0	공	인천광역시				-27.60 ~ -49.35
648	동구 송현동	89-52	23.0	대	13.0	안형진	경기도 시흥시 방산동 294				-27.60 ~ -49.35
649	동구 송현동	89-59	19.0	도	11.0	공	인천광역시				-27.60 ~ -49.35
650	동구 송현동	73-21	8.0	도	4.0	공	인천광역시				-27.60 ~ -49.35
651	동구 송현동	79-152	44.0	도	14.0	공	인천광역시				-27.60 ~ -49.35
652	동구 송현동	79-40	70.0	대	11.0	공	인천광역시				-27.60 ~ -49.35
653	동구 송현동	99-28	7.0	도	3.0	공	인천광역시				-27.60 ~ -49.35
654	동구 송현동	108	1,307.0	수	134.0	국	건설부				-27.60 ~ -49.35
					125.0	국	건설부				-28.04 ~ -49.79
655	동구 송현동	89-42	3.0	대	1.0	정영택	인천 동구 송림동 181				-28.04 ~ -49.79
656	동구 송현동	89-57	46.0	도	30.0	공	인천광역시				-28.04 ~ -49.79
657	동구 송현동	79-148	2.0	도	2.0	국	국세청				-28.04 ~ -49.79
658	동구 송현동	79-147	17.0	도	17.0	공	인천광역시				-28.04 ~ -49.79
659	동구 송현동	79-149	7.0	도	5.0	김노성 외 1인	송현동 79				-28.04 ~ -49.79
660	동구 송현동	79-50	122.0	대	40.0	신현우	송현동79-50	송림동신용 협동조합	인천 동구 송현동 88-4	근저당	-28.04 ~ -49.79
661	동구 송현동	79-47	166.0	대	141.0	공	인천광역시				-28.04 ~ -49.79
662	동구 송현동	79-41	117.0	대	23.0	오종일	송현동 79				-28.04 ~ -49.79
663	동구 송현동	72-67	93.0	대	93.0	우수진 외 2인	화수동 289				-28.14 ~ -49.89
664	동구 송현동	114-49	12.0	대	12.0	장호성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73-3				-28.14 ~ -49.89
665	동구 송현동	72-282	7.0	도	7.0	공	인천광역시				-28.14 ~ -49.89
666	동구 송현동	73-3	174.0	대	94.0	우수진 외 2인	화수동 289				-28.14 ~ -49.89
667	동구 송현동	73-7	19.0	대	2.0	유창순	송현동 73				-28.14 ~ -49.89
668	동구 송현동	72-73	115.0	대	29.0	김병희 외 1인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로 21, 2동 501호(송현동,삼두아 파트)	임종철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126-9	근저당	-28.14 ~ -49.89
669	동구 송현동	79-144	10.0	도	7.0	공	인천광역시				-28.14 ~ -49.89
670	동구 송현동	72-66	93.0	대	51.0	고화식 외 1인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72-59	송림신용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88-4	근저당	-28.14 ~ -49.89
671	동구 송현동	79-143	10.0	도	1.0	공	인천광역시				-28.14 ~ -49.89
672	동구 송현동	114-40	473.0	도	82.0	국	건설부				-28.14 ~ -49.89
					164.0	국	건설부				-29.66 ~ -51.41
673	동구 송현동	79-43	66.0	대	66.0	최삼복	서구 가정동 479-2				-28.58 ~ -50.33
674	동구 송현동	79-42	149.0	대	135.0	공	인천광역시				-28.58 ~ -50.33
675	동구 송현동	79-109	422.0	대	96.0	국	재정경제부				-28.58 ~ -50.33
676	동구 송현동	79-45	76.0	대	24.0	정옥봉	송현동 79				-28.58 ~ -50.33
677	동구 송현동	79-35	53.0	대	37.0	신희식	송현동 79				-28.58 ~ -50.33
678	동구 송현동	79-37	126.0	대	1.0	서경석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로16번길 19 (송현동)	주식회사 한국씨티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다동 39 (동인천지점)	근저당	-28.58 ~ -50.33
679	동구 송현동	72-68	116.0	대	116.0	이윤경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1-57 송현아파트 9동 408호				-28.68 ~ -50.43
680	동구 송현동	72-72	273.0	대	197.0	김영실	서울 강남구 역삼동 732-3				-28.68 ~ -50.43

일련 번호	소재지	원면적		지목	사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기준 (0m~)m까지
		지번	면적 (㎡)			성명 (명칭)	주소	성명 (명칭)	주소	권리 관계	
681	동구 송현동	72-64	175.0	대	78.0	강옥수	송현동 72				-28.68 ~ -50.43
682	동구 송현동	72-77	64.0	대	10.0	김윤경	남동구 논현동 111				-28.68 ~ -50.43
683	동구 송현동	72-244	83.0	대	1.0	강창인	송현동 72-244				-28.68 ~ -50.43
684	동구 송현동	79-30	50.0	대	50.0	김명복	인천 동구 송현동 154 솔빛주공아파트 116동 1501호				-29.12 ~ -50.87
685	동구 송현동	79-5	93.0	대	88.0	유제혁	송현동 79-5				-29.12 ~ -50.87
686	동구 송현동	79-31	126.0	대	54.0	장영득	송현동 79				-29.12 ~ -50.87
687	동구 송현동	79-32	76.0	대	71.0	허택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237-1	송림신용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88-4	근저당	-29.12 ~ -50.87
688	동구 송현동	79-111	56.0	대	5.0	국	재무부				-29.12 ~ -50.87
689	동구 송현동	79-136	17.0	도	11.0	공	인천광역시				-29.12 ~ -50.87
690	동구 송현동	72-53	933.0	도	196.0	공	인천광역시				-29.22 ~ -50.97
691	동구 송현동	72-100	28.0	대	28.0	정용숙	중구 송학동 1가 5-2				-29.22 ~ -50.97
692	동구 송현동	72-75	240.0	대	49.0	유복준 외 2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827 상현마을금호베스트빌 1단지(아 155-1703	남동농업 협동조합	인천남동구만수동 1014-1 (간석복지점)	근저당 지상권	-29.22 ~ -50.97
693	동구 송현동	72-63	144.0	대	1.0	김광윤	송현동 72-61	인천강화용진 축산업협동조합	인천 강화군 강화읍 관청리 117-1	근저당	-29.22 ~ -50.97
694	동구 송현동	79-135	1.0	도	1.0	공	인천광역시				-29.66 ~ -51.41
695	동구 송현동	79-132	43.0	도	34.0	공	인천직할시동구				-29.66 ~ -51.41
696	동구 송현동	79-27	73.0	대	72.0	안영환	남구 학익동 191	남인천농업 협동조합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3334-1(본점)	근저당	-29.66 ~ -51.41
697	동구 송현동	79-26	99.0	대	42.0	장강식	송현동 79				-29.66 ~ -51.41
698	동구 송현동	79-25	86.0	대	3.0	박용운	인천 동구 송림동 105				-29.66 ~ -51.41
699	동구 송현동	72-107	45.0	대	40.0	장영득	송현동 79				-29.66 ~ -51.41
700	동구 송현동	72-56	70.0	대	32.0	최인규	66-51 삼두아파트 2동 103호				-29.66 ~ -51.41
701	동구 송현동	72-57	46.0	대	2.0	박계숙	66-51 삼두아파트 2동 103호				-29.66 ~ -51.41
702	동구 송현동	72-16	2,441.0	도	414.0	국	건설부				-29.76 ~ -51.51
703	동구 송현동	74-11	146.0	대	146.0	김창민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100				-30.20 ~ -51.95
704	동구 송현동	74-15	10.0	도	9.0	조숙화	송현동 100				-30.20 ~ -51.95
705	동구 송현동	74-16	134.0	대	110.0	임병재 외 1인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로 801-23,106동201호(용 곡동,용곡1차세광엔리 치타워아파트)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영등포지점)	근저당	-30.20 ~ -51.95
706	동구 송현동	74-14	13.0	도	1.0	공	인천광역시				-30.20 ~ -51.95
707	동구 송현동	72-55	76.0	대	18.0	김윤배	송현동 72				-30.20 ~ -51.95
708	동구 송현동	72-17	13.0	대	2.0	공	인천광역시				-30.20 ~ -51.95
709	동구 송현동	114-41	67.0	도	2.0	국	건설부				-30.20 ~ -51.95
710	동구 송현동	72-83	50.0	대	20.0	공	건설교통부				-30.30 ~ -52.05
711	동구 송현동	72-234	89.0	대	1.0	송명옥 외 1인	캐나다 브리티쉬 콜롬비아 밴쿠우버 웨스트 20번가 예비뉴 2766	남인천농업 협동조합	인천 연수구 옥련동 334-1 (용이지점)	근저당	-30.30 ~ -52.05
712	동구 송현동	72-82	119.0	대	58.0	송명옥 외 1인	캐나다 브리티쉬 콜롬비아 밴쿠우버 웨스트 20번가 예비뉴 2766	남인천농업 협동조합	인천 연수구 옥련동 334-1 (용이지점)	근저당	-30.30 ~ -52.05

일련 번호	소재지	원면적		지목	사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기준 (0m~)m까지
		지번	면적 (㎡)			성명 (명칭)	주소	성명 (명칭)	주소	권리 관계	
713	동구 송현동	72-226	79.0	대	79.0	강갑병	송현동 154 솔빛마을 주공아파트 113동 1205호				-30.30 ~ -52.05
714	동구 송현동	72-81	79.0	대	79.0	최은기 외 1인	인천 부평구 십정동 350-11				-30.30 ~ -52.05
715	동구 송현동	72-109	60.0	대	48.0	강갑병	송현동 154 솔빛마을 주공아파트 113동 1205호				-30.30 ~ -52.05
716	동구 송현동	72-116	17.0	대	1.0	강갑병	송현동 154 솔빛마을 주공아파트 113동 1205호				-30.30 ~ -52.05
717	동구 송현동	74-17	318.0	도	184.0	공	인천광역시				-30.74 ~ -52.49
718	동구 송현동	74-5	78.0	대	8.0	임정재	인천 남동구 만수동 1037 현대아파트 101동 505호	농업협동 조합중앙회	서울 중구 충정로1가 75 (영등포지점)	근저당	-30.74 ~ -52.49
719	동구 송현동	74-3	916.0	도	200.0	국	건설교통부				-30.74 ~ -52.49
720	동구 송현동	72-80	74.0	대	74.0	윤두상	송현동 72				-30.84 ~ -52.59
721	동구 송현동	72-1	122.0	도	88.0	국	건설교통부				-30.84 ~ -52.59
722	동구 송현동	72-111	104.0	대	34.0	박영진	송현동 67-66				-30.84 ~ -52.59
723	동구 송현동	72-322	12.0	대	3.0	공	인천광역시				-30.84 ~ -52.59
724	동구 송현동	72-293	33.0	도	20.0	공	인천광역시				-30.84 ~ -52.59
725	동구 송현동	72-294	6.0	도	6.0	공	인천광역시				-30.84 ~ -52.59
726	동구 송현동	114-42	125.0	도	67.0	국	건설부				-30.84 ~ -52.59
727	동구 송현동	67-53	63.0	도	35.0	국	건설교통부				-30.84 ~ -52.59
728	동구 송현동	67-169	1.0	도	1.0	공	인천광역시				-30.84 ~ -52.59
729	동구 송현동	67-183	1.0	도	1.0	국	건설교통부				-30.84 ~ -52.59
730	동구 송현동	67-66	136.0	대	10.0	박영진	인천 동구 송현동 72-111				-30.84 ~ -52.59
731	동구 송현동	67-51	66.0	대	9.0	주인숙	인천 중구 신포동 26-11				-30.84 ~ -52.59
732	동구 송현동	67-69	55.0	대	41.0	최원	인천 동구 송현동 67-69	경인북부수산 연합동조합	인천강화군강화읍 신문리7-1 (내가지점)	근저당	-30.84 ~ -52.59
733	동구 송현동	67-11	436.0	도	234.0	국	건설부				-31.28 ~ -53.03
734	동구 송현동	67-54	43.0	대	18.0	국	건설교통부				-31.28 ~ -53.03
735	동구 송현동	67-48	102.0	대	89.0	임성희	남구관교동 13-3 동아아파트 5동 103호				-31.28 ~ -53.03
						임성욱	북구 산곡동 294-35 우성아파트 113동 607호				
						임성민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89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 303동 1903호				
						임성근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투준가시버케트가 6844				
						임재근	북구 부평동 70-5 동아아파트 11동 1101호				
						임성희	남구 관교동 13-3 동아아파트 5동 103호				
						임성욱	북구 산곡동 294-35 우성아파트 113동 607호				
						임성민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89 올림픽선수기자촌 아파트 303동 1903호				

일련 번호	소재지	원면적		지목	사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기준 (0m~)m까지
		지번	면적 (㎡)			성명 (명칭)	주소	성명 (명칭)	주소	권리 관계	
						임성근	미합중국 캘리포니아주 투준가시버케트가 6844				
						임재근	북구 부평동 70-5 동아아파트 11동 1101호				
						임성진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70-5 동아아파트 26-1510				
						임용근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70-125 동아아파트 18-1804				
						임용근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70-125 동아아파트 18-1804				
736	동구 송현동	67-65	76.0	대	8.0	정해성 외 1인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757 한양아파트 3-1101	주식회사국민 은행	서울중구남대문로 2가9-1 (동인천지점)	근저당	-31.28 ~ -53.03
737	동구 송현동	67-123	6.0	대	6.0	심동석	송현동 72-21				-31.38 ~ -53.13
738	동구 송현동	67-182	20.0	도	19.0	공	인천광역시				-31.38 ~ -53.13
739	동구 송현동	67-130	35.0	대	35.0	국	재정경제부				-31.38 ~ -53.13
740	동구 송현동	67-122	70.0	대	70.0	심동석	송현동 72-21				-31.38 ~ -53.13
741	동구 송현동	67-181	13.0	도	12.0	공	인천광역시				-31.38 ~ -53.13
742	동구 송현동	67-121	93.0	대	89.0	문관필	송현동72-23				-31.38 ~ -53.13
743	동구 송현동	67-52	60.0	대	46.0	문관필	송현동72-23				-31.38 ~ -53.13
744	동구 송현동	67-67	76.0	대	10.0	문관필	송현동72-23				-35.63 ~ -52.83
745	동구 송현동	67-56	63.0	대	39.0	윤정희	송현동 67-66	화도진새마을 금고	인천 동구 송현동 157	근저당	-35.63 ~ -52.83
746	동구 송현동	67-46	63.0	대	20.0	이철운	인천 동구 송현동 67-46	화도진새마을 금고	인천 동구 송현동 157	근저당	-36.07 ~ -53.27
747	동구 송현동	67-47	63.0	대	26.0	김범배	송현동67-47				-31.82 ~ -53.57
748	동구 송현동	67-71	73.0	대	8.0	강순희	인천동구관교동475-3 2층201호				-31.82 ~ -53.57
749	동구 송현동	67-64	86.0	대	80.0	김동우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67-64				-31.82 ~ -53.57
750	동구 송현동	67-41	83.0	대	16.0	김현래	송현동 67-127	웅진농업 협동조합	인천 중구 유동 6-3	근저당	-31.82 ~ -53.57
751	동구 송현동	67-42	66.0	대	62.0	박미자 외 2인	송현동 67-42				-31.82 ~ -53.57
752	동구 송현동	67-133	56.0	대	56.0	심영하	송현동 67-133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2가 145-1	근저당	-31.82 ~ -53.57
753	동구 송현동	67-8	172.0	도	119.0	국	건설교통부				-31.92 ~ -53.67
754	동구 송현동	67-119	30.0	대	27.0	하영길	송현동67-47	주식회사 제일은행	서울 종로구 공평동100(제물포 지점)	근저당	-31.92 ~ -53.67
755	동구 송현동	67-109	194.0	대	98.0	정평상	인천 동구 송현동 67-109	화도진 새마을금고	인천 동구 송현동 157	근저당	-31.92 ~ -53.67
756	동구 송현동	67-63	252.0	대	231.0	김순미	서울 강서구 방화동 553-6 리빙주택 102호				-31.92 ~ -53.67
757	동구 송현동	67-108	45.0	대	1.0	국	재정경제부				-31.92 ~ -53.67
758	동구 송현동	67-120	99.0	대	53.0	박정숙	송현동 67				-31.92 ~ -53.67
759	동구 송현동	67-124	93.0	대	5.0	하영길	송현동 67	주식회사 제일은행	서울 종로구 공평동100(제물포 지점)	근저당	-31.92 ~ -53.67
760	동구 송현동	67-125	73.0	대	73.0	심인수	송현동 67				-32.36 ~ -54.11
761	동구 송현동	67-44	63.0	대	61.0	방영순	송현동 67-44				-32.36 ~ -54.11
762	동구 송현동	67-37	60.0	대	26.0	이부순	송현동 72-137 송현아트빌 402호				-32.36 ~ -54.11

일련 번호	소재지	원면적		지목	사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기준 (0m~)m까지
		지번	면적 (㎡)			성명 (명칭)	주소	성명 (명칭)	주소	권리 관계	
763	동구 송현동	67-43	119.0	대	113.0	성보경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내리 1649				-32.36 ~ -54.11
764	동구 송현동	67-128	66.0	대	16.0	서석갑	서울 중랑구 면목동 1502 면목현대아파트 101동 601호				-32.36 ~ -54.11
765	동구 송현동	67-75	69.0	대	64.0	노연균	상주군 공검면지평리 425				-32.36 ~ -54.11
766	동구 송현동	67-126	69.0	대	7.0	조순여	인천 동구 송현동 67-126				-32.36 ~ -54.11
767	동구 송현동	67-38	63.0	대	1.0	허복순	송현동67				-32.36 ~ -54.11
768	동구 송현동	67-24	66.0	대	66.0	김원조	송현동67-24				-32.46 ~ -54.21
769	동구 송현동	67-60	139.0	대	38.0	이봉일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목로5길 9, 101동 502호 (신정동,대림아파트)	주식회사국민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남대문로27가9 -1(목동8단지지점)	근저당	-32.46 ~ -54.21
770	동구 송현동	67-79	53.0	대	8.0	김영환 외 1인	인천 동구 송현동 154 솔빛주공아파트 117-1105				-32.46 ~ -54.21
771	동구 송현동	67-58	69.0	대	60.0	이선애	송현동 67-58				-32.46 ~ -54.21
772	동구 송현동	67-30	66.0	대	1.0	허윤	송림동 228-1 삼익아파트 1동613호				-32.90 ~ -54.65
773	동구 송현동	67-61	69.0	대	45.0	이건식	송현동67				-32.90 ~ -54.65
774	동구 송현동	67-29	83.0	대	83.0	김양중	송현동 67-29				-32.90 ~ -54.65
775	동구 송현동	67-28	86.0	대	14.0	최병주	송현동 72				-32.90 ~ -54.65
776	동구 송현동	67-7	1,954.0	도	409.0	국	건설부				-32.90 ~ -54.65
					244.0	국	건설부				-33.00 ~ -54.75
777	동구 송현동	67-13	76.0	대	10.0	장민기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동 307-1				-33.00 ~ -54.75
778	동구 송현동	67-129	73.0	대	73.0	한상원	송현동 67-129				-33.00 ~ -54.75
779	동구 송현동	67-168	15.0	대	6.0	국	재무부				-33.00 ~ -54.75
780	동구 송현동	67-20	66.0	대	4.0	최경자	송현동 67				-33.00 ~ -54.75
781	동구 송현동	67-138	43.0	대	39.0	김무환	송현동 67				-33.44 ~ -55.19
782	동구 송현동	67-26	10.0	대	10.0	김현래	송현동 67				-33.44 ~ -55.19
783	동구 송현동	67-16	50.0	대	50.0	김종순	송현동 154 솔빛마을 주공아파트 115동705호				-33.44 ~ -55.19
784	동구 송현동	67-27	66.0	대	23.0	진영자	송현동 67				-33.44 ~ -55.19
785	동구 송현동	67-1	40.0	대	31.0	차선준	송현동 67				-33.44 ~ -55.19
786	동구 송현동	67-70	60.0	대	1.0	유석준	송현동 75-9				-33.44 ~ -55.19
787	동구 송현동	67-19	23.0	대	13.0	김무환	송현동 67				-33.44 ~ -55.19
788	동구 송현동	67-73	63.0	대	3.0	김무환	송현동 67				-33.44 ~ -55.19
789	동구 송현동	67-18	60.0	대	2.0	박경선	송현동 67				-33.44 ~ -55.19
790	동구 송현동	115-4	74.0	구	6.0	국	건설부				-33.44 ~ -55.19
791	동구 송현동	67-146	128.0	대	128.0	김형수	송현동 67				-33.54 ~ -55.29
792	동구 송현동	67-12	146.0	대	75.0	황영자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로19번길 19(송현동)	남동신용협동 조합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856-1	근저당	-33.54 ~ -55.29
793	동구 송현동	67-81	68.0	대	44.0	손경호	송현동 67-81				-33.54 ~ -55.29
794	동구 송현동	67-2	169.0	대	2.0	김영환	송현동 154 솔빛마을주공아파트 117동 1105호	화도진새마을 금고	인천 동구 송현동 157	근저당	-33.54 ~ -55.29
795	동구 송현동	67-188	20.0	대	2.0	국	개정경제부				-33.54 ~ -55.29
796	동구 송현동	67-104	30.0	대	12.0	송순옥	인천광역시 연수구 솔샘로 20, 101동 1501호(청학동,삼용아 파트)				-33.54 ~ -55.29

일련 번호	소재지	원면적		지목	사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기준 (0m~)m까지
		지번	면적 (㎡)			성명 (명칭)	주소	성명 (명칭)	주소	권리 관계	
797	동구 송현동	115-2	77.0	구	36.0	국	건설부				-33.54 ~ -55.29
798	동구 송현동	114-4	278.0	도	59.0	국	건설부				-33.54 ~ -55.29
					82.0	국	건설부				-33.98 ~ -55.73
799	동구 송현동	115-3	102.0	대	78.0	국	재정경제부				-33.98 ~ -55.73
800	동구 송현동	66-46	30.0	대	29.0	고재덕	송현동 66				-33.98 ~ -55.73
801	동구 송현동	67-15	36.0	대	28.0	박형진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67				-33.98 ~ -55.73
802	동구 송현동	66-41	50.0	대	22.0	김형덕	화수동 7				-33.98 ~ -55.73
803	동구 송현동	66-42	136.0	대	64.0	정종원	송현동 66-42				-33.98 ~ -55.73
804	동구 송현동	66-44	43.0	대	43.0	김진석	인천광역시 동구 수문동로32번길 14-4(송현동)	화수1화평 새마을금고	인천광역시 동구 화평동 357	근저당	-33.98 ~ -55.73
805	동구 송현동	66-45	116.0	대	95.0	윤백용	인천 동구 송현동 66-45	웅진농업협동 조합	인천 중구유동 6-3(송현지소)	근저당 전세권	-33.98 ~ -55.73
806	동구 송현동	66-20	238.0	대	180.0	곽중훈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221,402동 901호(도곡동,도곡택 슬아파트)	중소기업은행	서울특별시중구을 지로2가50 (만수동지점)	근저당	-34.08 ~ -55.83
807	동구 송현동	66-785	432.0	도	222.0	공	인천직할시				-34.08 ~ -55.83
808	동구 송현동	66-792	53.0	도	5.0	국	건설교통부				-34.08 ~ -55.83
809	동구 송현동	66-129	36.0	대	36.0	구명호 외 1인	화평동 28				-34.52 ~ -56.27
810	동구 송현동	66-43	17.0	대	17.0	김규환	인천시 중구 용동 67-2				-34.52 ~ -56.27
811	동구 송현동	66-145	36.0	대	36.0	구명호 외 1인	화평동 28				-34.52 ~ -56.27
812	동구 송현동	66-128	1.0	대	1.0	대한예수교 장로회인천 중앙교회	송현동 66-6				-34.52 ~ -56.27
813	동구 송현동	66-150	40.0	대	36.0	구명호 외 1인	화평동 28				-34.52 ~ -56.27
814	동구 송현동	66-141	20.0	대	17.0	국	재무부				-34.52 ~ -56.27
815	동구 송현동	66-142	79.0	대	79.0	대한예수교 장로회인천 중앙교회	송현동 66-6				-34.52 ~ -56.27
816	동구 송현동	66-10	46.0	대	39.0	정하나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135-29				-34.52 ~ -56.27
817	동구 송현동	66-149	116.0	대	2.0	심인수	송현동 66				-34.52 ~ -56.27
818	동구 송현동	66-144	7.0	대	3.0	심인수	송현동 66				-34.52 ~ -56.27
819	동구 송현동	66-143	126.0	대	103.0	신태환	송현동 66				-34.52 ~ -56.27
820	동구 송현동	66-765	1,425.0	구	254.0	국	건설부				-34.62 ~ -56.37
					269.0	국	건설부				-36.14 ~ -57.89
821	동구 송현동	66-157	1.0	대	1.0	국	재무부				-35.06 ~ -56.81
822	동구 송현동	66-156	3.0	도	3.0	국	건설교통부				-35.06 ~ -56.81
823	동구 송현동	66-14	126.0	대	105.0	윤영희	송현동 56				-35.06 ~ -56.81
824	동구 송현동	66-137	76.0	대	60.0	유종수	송현동 66-137				-35.06 ~ -56.81
825	동구 송현동	66-133	23.0	대	12.0	국	재무부				-35.06 ~ -56.81
826	동구 송현동	66-6	29.0	중	29.0	대한예수교 장로회인천 중앙교회	송현동 66-6				-35.06 ~ -56.81
827	동구 송현동	66-18	134.0	대	131.0	박향규	송현동 66-18	주식회사 한미은행	서울 중구 다동 39 (관교동지점)	근저당	-35.06 ~ -56.81
828	동구 송현동	66-158	23.0	대	6.0	국	재무부				-35.06 ~ -56.81
829	동구 송현동	66-816	160.0	도	12.0	공	인천광역시				-35.16 ~ -56.91
830	동구 송현동	66-767	59.0	대	16.0	공	인천광역시				-35.16 ~ -56.91

일련 번호	소재지	원면적		지목	사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기준 (0m~)m까지
		지번	면적 (㎡)			성명 (명칭)	주소	성명 (명칭)	주소	권리 관계	
831	동구 송현동	66-3	1,279.0	도	195.0	국	건설부				-35.16 ~ -56.91
					186.0	국	건설부				-36.14 ~ -57.89
832	동구 송현동	66-794	560.0	도	228.0	공	인천광역시				-35.60 ~ -57.35
833	동구 송현동	66-51	4,318.0	대	1,628.0	삼두실업주 식회사	서울 동작구 대방동 339-1				-36.24 ~ -57.99
						여호와의 증인의 인천북부회 중(교회)	인천시 동구 송현동 66-51				
						손길완 외 170인	인천시 동구 송현동 66				
					381.0	삼두실업주 식회사	서울 동작구 대방동 339-1				-36.68 ~ -58.43
						여호와의 증인의 인천북부회 중(교회)	인천시 동구 송현동 66-51				
						손길완 외 170인	인천시 동구 송현동 66				
834	동구 송현동	66-237	23.0	도	4.0	이은자 외 3인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452의 22 일신아파트 105동 301호				-36.68 ~ -58.43
835	동구 송현동	66-738	50.0	대	34.0	이은자 외 3인	광주광역시 서구 쌍촌동 452의22 일신아파트 105동 301호				-36.68 ~ -58.43
836	동구 송현동	66-740	20.0	대	18.0	이운재	화수동 47				-37.22 ~ -58.97
837	동구 송현동	66-741	23.0	대	22.0	이희숙	송현동 66				-37.22 ~ -58.97
838	동구 송현동	66-742	23.0	대	23.0	신윤진	서울 성북구 성북동 1가 5				-37.22 ~ -58.97
839	동구 송현동	66-743	23.0	대	23.0	신윤진	서울 성북구 성북동 1가 5				-37.22 ~ -58.97
840	동구 송현동	66-744	26.0	대	26.0	김진희	송현동 66				-37.22 ~ -58.97
841	동구 송현동	66-745	23.0	대	23.0	김진희	송현동 66				-37.22 ~ -58.97
842	동구 송현동	66-746	23.0	대	23.0	김명숙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448-1 푸른솔마을신성미소지 옴아파트 313동 1003호				-37.22 ~ -58.97
843	동구 송현동	66-747	23.0	대	23.0	김순자	인천 동구 송현동 66				-37.22 ~ -58.97
844	동구 송현동	66-240	3.0	도	1.0	이희숙	송현동 66				-37.22 ~ -58.97
845	동구 송현동	66-241	7.0	도	4.0	신윤진	서울 성북구 성북동 1가 5				-37.22 ~ -58.97
846	동구 송현동	66-242	7.0	도	6.0	신윤진	서울 성북구 성북동 1가 5				-37.22 ~ -58.97
847	동구 송현동	66-243	3.0	도	3.0	김진희	송현동 66				-37.22 ~ -58.97
848	동구 송현동	66-244	7.0	도	7.0	김진희	송현동 66				-37.22 ~ -58.97
849	동구 송현동	66-736	7.0	도	4.0	공	인천광역시				-37.22 ~ -58.97
850	동구 송현동	66-735	7.0	도	7.0	공	인천광역시				-37.22 ~ -58.97
851	동구 송현동	66-236	40.0	대	1.0	공	인천광역시				-37.22 ~ -58.97
852	동구 송현동	66-245	7.0	도	7.0	김명숙	인천광역시 부평구 삼산동 448-1 푸른솔마을신성미소지 옴아파트 313동 1003호				-37.31 ~ -59.51
853	동구 송현동	66-246	7.0	도	7.0	김순자	인천 동구 송현동 66				-37.31 ~ -59.51
854	동구 송현동	66-247	7.0	도	7.0	김대현	송현동 66				-37.31 ~ -59.51

일련 번호	소재지	원면적		지목	사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기준 (0m~)0m까지
		지번	면적 (㎡)			성명 (명칭)	주소	성명 (명칭)	주소	권리 관계	
855	동구 송현동	66-248	6.0	도	6.0	김영우	송현동 66				-37.31 ~ -59.51
856	동구 송현동	66-249	6.0	도	6.0	김영우	송현동 67				-37.31 ~ -59.51
857	동구 송현동	66-250	8.0	도	8.0	김인서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66-755	계양신용협동 조합	인천광역시계양구 작전동793-1,794- 7	근저당 지상권	-37.31 ~ -59.51
858	동구 송현동	66-748	78.0	대	77.0	김대현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66-748	주식회사국민 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주택구월남영 업지원센터)	근저당	-37.31 ~ -59.51
859	동구 송현동	66-751	53.0	대	39.0	김인서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66-755	계양신용협동 조합	인천광역시계양구 작전동793-1,794- 7	근저당	-37.31 ~ -59.51
860	동구 송현동	66-251	28.0	대	19.0	이정자	부평구 부평동 232				-37.31 ~ -59.51
861	동구 송현동	66-753	26.0	대	10.0	이정자	북구 부평동 232				-37.31 ~ -59.51
862	동구 송현동	66-856	3.0	도	3.0	공	인천광역시				-37.31 ~ -59.51
863	동구 송현동	66-861	2.0	도	2.0	공	인천광역시				-37.31 ~ -59.51
864	동구 송현동	66-252	2.0	도	2.0	손희정	서울특별시 광진구구의동 210-88				-37.85 ~ -60.05
865	동구 송현동	66-253	1.0	도	1.0	조덕너	송현동 66				-37.85 ~ -60.05
866	동구 송현동	66-254	1.0	도	1.0	이정자	인천 동구 송현동 66				-37.85 ~ -60.05
867	동구 송현동	66-255	276.0	도	143.0	공	인천광역시				-37.85 ~ -60.05
868	동구 송현동	66-226	467.0	도	316.0	공	인천광역시				-37.85 ~ -60.05
869	동구 송현동	66-227	85.0	차	84.0	공	인천광역시				-37.85 ~ -60.05
870	동구 송현동	114-34	155.0	도	33.0	공	인천광역시				-37.85 ~ -60.05
871	동구 송현동	66-755	56.0	대	22.0	이정자	부평구 부개동 191-37				-41.15 ~ -59.75
872	동구 송현동	66-756	32.0	대	31.0	이상현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363-7				-37.85 ~ -60.05
873	동구 송현동	66-757	24.0	대	23.0	한철희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대화동 2162, 3층				-37.85 ~ -60.05
874	동구 송현동	66-758	56.0	대	10.0	이재욱	송현동 66				-37.85 ~ -60.05
875	동구 송현동	66-895	433.0	도	185.0	공	인천광역시				-38.39 ~ -60.59
876	동구 송현동	66-641	1,166.0	도	8.0	공	인천광역시				-38.39 ~ -60.59
877	동구 송현동	66-220	111.0	차	106.0	공	인천광역시				-38.39 ~ -60.59
878	동구 송현동	114-32	105.0	도	70.0	공	인천광역시				-38.39 ~ -60.59
879	동구 송현동	66-219	18.0	대	8.0	김간란	송현동 66				-38.39 ~ -60.59
880	동구 송현동	66-1	74.0	차	4.0	공	인천광역시				-38.39 ~ -60.59
881	동구 송현동	66-283	431.0	대	141.0	김홍석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50 시범아파트 15-63	주식회사국민 은행	서울 중구 남대문로2가 9-1	근저당	-38.39 ~ -60.59
882	동구 송현동	66-669	47.0	대	47.0	김경자	송현동 66-669				-39.38 ~ -61.13
883	동구 송현동	66-671	20.0	대	20.0	최희순	송현동 66				-39.38 ~ -61.13
884	동구 송현동	66-670	112.0	대	105.0	이구영	송현동66				-39.38 ~ -61.13
885	동구 송현동	66-672	30.0	대	29.0	최희순	송현동 66				-39.38 ~ -61.13
886	동구 송현동	66-668	23.0	대	17.0	김예윤	계양구 계산동 942-39				-39.38 ~ -61.13
887	동구 송현동	114	149.0	도	105.0	국	건설부				-40.02 ~ -61.77
888	동구 송현동	66-673	68.0	대	9.0	한진호	인천 동구 송현동 66-673	부평농업협동 조합	인천 부평구 갈산동396(부이지 집)	근저당	-39.92 ~ -61.67
889	동구 송현동	66-674	57.0	대	30.0	이복례	인천 동구 송현동 66-674	송림신용협동 조합	인천 동구 송현동 88-4	근저당	-39.92 ~ -61.67
890	동구 송현동	66-675	43.0	대	36.0	박영래	인천 동구 송현동 66				-39.92 ~ -61.67
891	동구 송현동	66-676	43.0	대	43.0	이종국	송현동 66				-39.92 ~ -61.67

일련 번호	소재지	원면적		지목	사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기준 (0m~)m까지
		지번	면적 (㎡)			성명 (명칭)	주소	성명 (명칭)	주소	권리 관계	
892	동구 송현동	66-347	42.0	대	42.0	장순금	송현동 66				-39.92 ~ -61.67
893	동구 송현동	66-357	46.0	대	46.0	김예윤	계양구 계산동 942-39				-39.92 ~ -61.67
894	동구 송현동	66-677	40.0	대	37.0	조석호	송현동 66				-39.92 ~ -61.67
895	동구 송현동	66-298	42.0	대	6.0	김근칠	송현동 66				-39.92 ~ -61.67
896	동구 송현동	66-678	23.0	대	21.0	김수남	화평동 121				-39.92 ~ -61.67
897	동구 송현동	66-679	173.0	대	37.0	김수남	인천 동구 송현동 66-679	화수2동 새마을금고	인천동구 화수2동37	근저당	-39.92 ~ -61.67
898	동구 송현동	66-449	40.0	대	40.0	김양희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66				-40.46 ~ -62.21
899	동구 송현동	66-195	74.0	대	63.0	김양희	송현동 66				-40.46 ~ -62.21
900	동구 송현동	66-879	103.0	도	76.0	공	인천광역시				-40.46 ~ -62.21
901	동구 송현동	66-197	66.0	대	3.0	오인성	송현동 66				-40.46 ~ -62.21
902	동구 송현동	66-654	66.0	대	14.0	김명기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문갑2길 36	송화 새마을금고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동37	근저당	-40.46 ~ -62.21
903	동구 송현동	66-511	79.0	대	31.0	김현주	화수동 92				-40.46 ~ -62.21
904	동구 송현동	118	8,206.0	도	130.0	국	건설부				-40.46 ~ -62.21
905	동구 송현동	66-22	519.0	도	87.0	국	건설교통부				-41.00 ~ -62.75
906	동구 송현동	66-838	1,278.0	도	58.0	공	인천광역시				-41.00 ~ -62.75
907	동구 송현동	66-21	15,225.0	학	2,291.0	공	인천광역시 (교육감)				-43.16 ~ -64.91
					613.9	공	인천광역시 (교육감)				-43.26 ~ -65.01
908	동구 송현동	174	34,607.1	잡	12,430.0	동국제강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수하동 66 페럼타워				-52.74 ~ -74.49
909	동구 송현동	172	5,466.7	도	2,301.0	국	해양수산부				-53.02 ~ -75.22
910	동구 송현동	171	290.3	잡	75.0	국	해양수산부				-53.01 ~ -75.21
911	동구 송현동	170	29,006.8	잡	5,436.0	국	해양수산부				-53.16 ~ -74.91
912	동구 송현동	175	981.3	잡	89.0	동국제강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수하동 66 페럼타워				-52.35 ~ -74.10
					87.0	동국제강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수하동 66 페럼타워				-51.84 ~ -73.59
913	동구 화평동	1-33	5,019.2	대	857.0	삼두실업주 식회사	서울 동작구 대방동 339-1				-37.41 ~ -59.61
						여호와의 증인의 인천북부회 중(교회)	인천시 동구 송현동 66-51				
						손길완 외 170인	인천시 동구 송현동 66				
914	동구 화평동	1-32	12.2	대	1.0	이계환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66-764				-37.95 ~ -60.15
915	동구 화평동	1-31	39.7	대	10.0	이광석	화수동 157				-37.95 ~ -60.15
916	동구 화평동	1-30	51.9	대	29.0	이형태	인천연수구연수동582- 2 연수1차아파트 113-1405				-37.95 ~ -60.15
917	동구 화평동	1-29	26.4	대	23.0	최종문	송현동 66				-37.95 ~ -60.15
918	동구 화평동	1-23	22.9	대	22.9	공	인천광역시				-38.94 ~ -60.69
919	동구 화평동	1-24	25.5	대	25.5	강순금	인천광역시 동구 화평동 1-24				-38.94 ~ -60.69
920	동구 화평동	1-25	26.4	대	26.4	강순금	인천광역시 동구 화평동 1-24				-38.94 ~ -60.69
921	동구 화평동	1-26	26.4	대	26.4	박대식	송현동 66-689				-38.94 ~ -60.69
922	동구 화평동	1-27	26.4	대	26.4	이현수	송현동 66-354				-38.94 ~ -60.69
923	동구 화평동	1-28	26.4	대	25.0	서순분	송현동 56				-38.94 ~ -60.69
924	동구 화평동	1-17	11.5	대	11.5	공	인천광역시				-38.94 ~ -60.69

일련 번호	소재지	원면적		지목	사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기준 (0m~)0m까지
		지번	면적 (㎡)			성명 (명칭)	주소	성명 (명칭)	주소	권리 관계	
925	동구 화평동	1-16	6.4	대	2.4	공	인천광역시				-38.94 ~ -60.69
926	동구 화평동	1-18	0.5	대	0.5	공	인천광역시				-38.94 ~ -60.69
927	동구 화평동	1-22	3.6	대	3.6	공	인천광역시				-38.94 ~ -60.69
928	동구 화평동	1-46	0.2	도	0.2	공	인천광역시				-38.94 ~ -60.69
929	동구 화평동	1-48	822.9	도	1.0	공	인천광역시				-38.94 ~ -60.69
930	동구 화평동	1-52	239.7	도	68.0	공	인천광역시				-38.94 ~ -60.69
931	동구 화평동	1-42	278.6	도	139.0	공	인천광역시				-39.48 ~ -61.23
932	동구 화평동	1-51	93.2	대	92.0	공	인천광역시동구 외 1인				-39.48 ~ -61.23
933	동구 화평동	1-1	131.9	대	130.7	공	인천광역시				-39.48 ~ -61.23
934	동구 화평동	1-4	13.9	공	3.0	공	인천광역시동구 외 1인				-39.48 ~ -61.23
935	동구 화평동	1-5	124.8	공	1.0	공	인천광역시				-39.48 ~ -61.23
936	동구 화평동	531-74	27.5	도	16.0	국	재무부				-40.02 ~ -61.77
937	동구 화평동	2-3	14.2	도	13.0	차상철	화평동1				-40.02 ~ -61.77
938	동구 화평동	2-1	54.2	대	25.0	차상철	화평동1				-40.02 ~ -61.77
939	동구 화평동	3-135	26.4	대	11.0	최길례	인천광역시 강화군 선원면 창리 658 세광엔리치빌 109-1402				-40.02 ~ -61.77
940	동구 화평동	3-1	12.9	대	10.0	임정옥	서울특별시 마포구 성산동 450 시영아파트 16-1308				-40.02 ~ -61.77
941	동구 화수동	276-4	63.0	대	11.0	공	인천광역시				-40.02 ~ -61.77
942	동구 화수동	276-14	19.0	대	17.0	공	인천광역시 (교육감)				-40.02 ~ -61.77
943	동구 화수동	276-13	39.0	대	14.0	공	인천광역시 (교육감)				-40.02 ~ -61.77
944	동구 화수동	276-12	32.0	대	11.0	이종수	인천동구송현동66-270 초롱마을101-302				-40.02 ~ -61.77
945	동구 화수동	278-22	83.0	대	50.0	홍성순	화평동 65	동인천 새마을금고	인천 중구 전동 18-1	근저당	-40.02 ~ -61.77
946	동구 화수동	276-11	43.0	대	15.0	김명환	인천남구주안동 1454-59				-40.56 ~ -62.31
947	동구 화수동	276-3	29.0	대	21.0	공	인천광역시(교육감)				-40.56 ~ -62.31
948	동구 화수동	276-10	24.0	대	22.0	윤윤분	인천 동구 화수동 278				-40.56 ~ -62.31
949	동구 화수동	276-9	5.0	대	5.0	공	인천광역시(교육감)				-40.56 ~ -62.31
950	동구 화수동	276-8	7.0	대	6.0	차영수	화수동 278				-40.56 ~ -62.31
951	동구 화수동	278-20	17.0	대	17.0	표정순 외 3인	화수동 278				-40.56 ~ -62.31
952	동구 화수동	278-21	93.0	대	45.0	황인선	인천동구화수동 278-21				-40.56 ~ -62.31
953	동구 화수동	278-19	20.0	대	20.0	국	재무부				-40.56 ~ -62.31
954	동구 화수동	278-17	26.0	대	26.0	차영수	화수동 278				-40.56 ~ -62.31
955	동구 화수동	278-18	83.0	대	38.0	우성락	화수동 278				-40.56 ~ -62.31
956	동구 화수동	278-16	83.0	대	12.0	안희숙	송현동66-26동부아파 트 3동207호				-41.10 ~ -62.85
957	동구 화수동	278-15	10.0	대	10.0	왕기회	화수동 278				-41.10 ~ -62.85
958	동구 화수동	278-14	86.0	대	2.0	한영자	송현동 66-299				-41.10 ~ -62.85
959	동구 화수동	319-26	766.0	대	404.0	국	기획재정부				-41.10 ~ -62.85
960	동구 화수동	277-10	10.0	대	10.0	왕기회	화수동 278				-41.10 ~ -62.85
961	동구 화수동	277-9	13.0	대	13.0	한영자	송현동 66-299				-41.10 ~ -62.85
962	동구 화수동	276-2	873.0	도	195.0	공	인천광역시				-41.10 ~ -62.85
963	동구 화수동	276-6	17.0	학	7.0	공	인천광역시				-41.00 ~ -62.75

일련 번호	소재지	원면적		지목	사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기준 (0m~)0m까지
		지번	면적 (㎡)			성명 (명칭)	주소	성명 (명칭)	주소	권리 관계	
964	동구 화수동	276-5	475.0	도	9.0	공	인천광역시				-41.00 ~ -62.75
					145.0	공	인천광역시				-41.64 ~ -63.39
965	동구 화수동	277-8	33.0	대	14.0	지찬하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동 278-13				-41.64 ~ -63.39
966	동구 화수동	276-1	1,776.0	학	332.0	공	인천광역시(교육감)				-41.54 ~ -63.29
					461.0	공	인천광역시(교육감)				-42.18 ~ -63.93
967	동구 화수동	275-100	655.0	도	145.0	변성목 외 1인	화수동 275				-43.26 ~ -65.01
968	동구 화수동	275-41	165.0	대	43.0	이정필	화수동 275-41				-43.26 ~ -65.01
969	동구 화수동	275-33	93.0	대	93.0	김종길	화수동 229-3				-43.80 ~ -65.55
970	동구 화수동	275-35	50.0	대	50.0	황준혁	인천광역시동구화도안 로 50-9 (화수동)				-43.80 ~ -65.55
971	동구 화수동	275-31	73.0	대	38.0	임병덕	화수동 275-31				-43.80 ~ -65.55
972	동구 화수동	275-127	46.0	대	42.0	박태형	인천서구석남동587-58 대진빌라 가-302				-43.80 ~ -65.55
973	동구 화수동	275-37	96.0	대	45.0	유정일	화수동 275-37				-44.34 ~ -66.09
974	동구 화수동	275-39	93.0	대	2.0	유정일	화수동 275-37				-44.34 ~ -66.09
975	동구 화수동	275-32	99.0	대	98.0	이순자	인천동구화수동 275-32				-44.34 ~ -66.09
976	동구 화수동	275-34	149.0	대	147.0	박창호	인천광역시동구화도안 로 54-4(화수동)	송화 새마을금고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동 37	근저당	-44.34 ~ -66.09
977	동구 화수동	275-99	764.0	도	421.0	국	건설부				-44.34 ~ -66.09
978	동구 화수동	275-25	119.0	대	18.0	김기인	화수동 275-25	중구농업 협동조합	인천 중구 운남동433-3 (화수지점)	근저당	-48.59 ~ -65.79
979	동구 화수동	275-26	99.0	대	11.0	최천호	화수동 275-26				-44.34 ~ -66.09
980	동구 화수동	275-38	99.0	대	63.0	서오성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동 275-38				-44.86 ~ -66.61
981	동구 화수동	275-126	99.0	대	78.0	김재홍	화수동 275-126	화수1동 새마을금고	인천동구 화수동286	근저당	-44.86 ~ -66.61
982	동구 화수동	275-30	99.0	대	99.0	유두예	인천광역시 동구 화도안로 54(화수동)	화수1화평 새마을금고	인천동구 화평동358	근저당	-44.86 ~ -66.61
983	동구 화수동	275-27	116.0	대	32.0	이광우	화수동 205				-44.86 ~ -66.61
984	동구 화수동	275-17	86.0	대	68.0	이정균	화수동 275				-45.25 ~ -67.00
985	동구 화수동	275-15	69.0	대	66.0	이정균	화수동 275				-45.25 ~ -67.00
986	동구 화수동	275-19	79.0	대	17.0	이정균	화수동 275				-45.25 ~ -67.00
987	동구 화수동	275-16	79.0	대	77.0	이정균	화수동 275				-45.25 ~ -67.00
988	동구 화수동	275-77	73.0	대	39.0	송재한	화수동 275-75				-45.35 ~ -67.10
989	동구 화수동	275-75	79.0	대	79.0	송재한	화수동 275-75				-45.35 ~ -67.10
990	동구 화수동	275-73	65.0	대	58.0	공	인천광역시				-45.35 ~ -67.10
991	동구 화수동	275-78	63.0	대	3.0	정재경	경기도 여주군 점동면 관한리 363-3				-45.35 ~ -67.10
992	동구 화수동	275-4	1,617.0	도	263.0	이규직	경성부 공평동 39				-45.35 ~ -67.10
					686.0	이규직	경성부 공평동 39				-46.14 ~ -67.89
993	동구 화수동	275-18	69.0	대	52.0	김봉근	남구주안동1466-3 광성아파트가동407				-45.71 ~ -67.46
994	동구 화수동	275-20	69.0	대	10.0	김봉근	남구주안동1466-3 광성아파트가동407				-45.71 ~ -67.46
995	동구 화수동	275-9	161.0	대	33.0	재단법인기 독교대한성 결교회유지 재단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0-56	남인천농업협 동조합	인천광역시 연수구 옥련동 334-1	근저당	-45.71 ~ -67.46
996	동구 화수동	275-12	298.0	종	228.0	재단법인기 독교대한성 결교회유지 재단	서울 강남구 대치동 890-56				-45.71 ~ -67.46

일련 번호	소재지	원면적		지목	사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기준 (0m~)m까지
		지번	면적 (㎡)			성명 (명칭)	주소	성명 (명칭)	주소	권리 관계	
997	동구 화수동	275-98	496.0	도	6.0	국	건설교통부				-45.71 ~ -67.46
998	동구 화수동	275-76	69.0	대	62.0	정재경	경기도여주군점동면 관한리363-3				-45.81 ~ -67.56
999	동구 화수동	275-74	53.0	대	53.0	공	인천광역시				-45.81 ~ -67.56
1000	동구 화수동	275-152	41.0	도	18.0	공	인천광역시				-45.81 ~ -67.56
1001	동구 화수동	275-86	60.0	대	9.0	정정임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동 233-3				-45.81 ~ -67.56
1002	동구 화수동	275-112	43.0	대	43.0	공	인천광역시				-45.81 ~ -67.56
1003	동구 화수동	275-85	6.0	대	6.0	공	인천광역시				-45.81 ~ -67.56
1004	동구 화수동	273-4	66.0	대	3.0	손정수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동 273				-45.81 ~ -67.56
1005	동구 화수동	275-71	96.0	대	2.0	국	재무부				-45.81 ~ -67.56
1006	동구 화수동	275-68	83.0	대	14.0	이학원	화수동 275-68	송화새마을금 고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동 37	근저당	-46.14 ~ -67.89
1007	동구 화수동	275-66	76.0	대	75.0	박필남	화수동 275	인천수산업협 동조합	인천광역시연수구 연수동577-5 (연수중앙지점)	근저당	-46.14 ~ -67.89
1008	동구 화수동	275-65	53.0	대	51.0	윤애자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55-231				-46.14 ~ -67.89
1009	동구 화수동	275-154	67.0	도	67.0	공	인천광역시				-46.24 ~ -67.99
1010	동구 화수동	273-13	721.0	도	78.0	공	인천광역시				-46.24 ~ -67.99
1011	동구 화수동	273-3	46.0	대	31.0	공	인천광역시				-46.24 ~ -67.99
1012	동구 화수동	273-53	160.0	도	6.0	공	인천광역시				-46.24 ~ -67.99
1013	동구 화수동	273-14	11.0	대	10.0	국	재정경제부				-46.24 ~ -67.99
1014	동구 화수동	274-10	3.0	대	3.0	정경임 외 2인	화수동 273				-46.24 ~ -67.99
1015	동구 화수동	274-11	13.0	대	13.0	국	재무부				-46.24 ~ -67.99
1016	동구 화수동	273-2	93.0	대	91.0	홍종복	화수동 273-2	주식회사하나 은행	서울중구을지로1 가101-1 (인하대지점)	근저당	-46.24 ~ -67.99
1017	동구 화수동	273-1	79.0	대	42.0	정영일	화수동 273-1	이기훈	인천 연수구 연수동532 경남아파트 107동203호	근저당	-46.24 ~ -67.99
1018	동구 화수동	37-13	122.0	대	17.0	김창기	화수동 37-13				-46.24 ~ -67.99
1019	동구 화수동	275-67	36.0	대	21.0	박필남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대림로 256, 101동 1908호 (대림동,성원아파트)	인천수산업협 동조합	인천광역시연수구 연수동 577-5 (연수중앙지점)	근저당	-46.54 ~ -68.29
1020	동구 화수동	274-15	63.0	대	60.0	국	재무부				-46.54 ~ -68.29
1021	동구 화수동	274-16	82.0	대	47.0	류금영	화수동 37				-46.54 ~ -68.29
1022	동구 화수동	37-352	10.0	대	8.0	류금영	화수동 37				-46.54 ~ -68.29
1023	동구 화수동	37-412	227.0	대	114.0	국	재무부				-46.54 ~ -68.29
1024	동구 화수동	37-11	198.0	대	66.0	안경자	화수동 35-22				-46.54 ~ -68.29
1025	동구 화수동	37-308	132.0	대	112.0	이은희	인천동구화수동 37-308				-46.54 ~ -68.29
1026	동구 화수동	39-15	93.0	대	93.0	한근오	화수동 39-15				-46.65 ~ -68.40
1027	동구 화수동	274-7	13.0	대	13.0	이정준	화수동 38				-46.65 ~ -68.40
1028	동구 화수동	39-14	26.0	대	26.0	이정준	화수동 38				-46.65 ~ -68.40
1029	동구 화수동	39-23	47.0	대	47.0	국	건설교통부				-46.65 ~ -68.40
1030	동구 화수동	39-18	14.0	도	14.0	공	인천광역시				-46.65 ~ -68.40
1031	동구 화수동	274-8	33.0	대	30.0	김형국	만석동 65				-46.65 ~ -68.40

일련 번호	소재지	원면적		지목	사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기준 (0m~)0m까지
		지번	면적 (㎡)			성명 (명칭)	주소	성명 (명칭)	주소	권리 관계	
1032	동구 화수동	274-5	93.0	대	20.0	하광호	남구 용현동 623-86	화수2동 새마을금고	인천동구 화수2동37	근저당	-46.65 ~ -68.40
1033	동구 화수동	274-2	10.0	대	8.0	국	재무부				-46.65 ~ -68.40
1034	동구 화수동	39-13	90.0	대	70.0	국	재무부				-46.65 ~ -68.40
1035	동구 화수동	274-21	8.0	대	3.0	하광호 외 1인	남구 용현동 623-86	화수2동 새마을금고	인천동구 화수2동37	근저당	-46.65 ~ -68.40
1036	동구 화수동	39-21	1.0	대	1.0	공	인천광역시				-46.65 ~ -68.40
1037	동구 화수동	39-19	64.0	도	14.0	공	인천광역시				-46.65 ~ -68.40
1038	동구 화수동	39-12	14.0	대	1.0	공	인천광역시				-46.65 ~ -68.40
1039	동구 화수동	39-24	15.0	대	9.0	국	재무부				-46.65 ~ -68.40
1040	동구 화수동	38-127	777.0	도	17.0	공	인천광역시				-46.65 ~ -68.40
1041	동구 화수동	37-416	50.0	도	32.0	공	인천광역시				-46.91 ~ -68.66
1042	동구 화수동	37-306	38.0	대	38.0	한두현	인천 동구 화수동 37-306				-46.91 ~ -68.66
1043	동구 화수동	37-307	77.0	대	51.0	박합준	화수동 37-307	송화새마을금 고	인천동구 화수2동37	근저당	-46.91 ~ -68.66
1044	동구 화수동	274-1	1.0	대	1.0	국	재무부				-47.02 ~ -68.77
1045	동구 화수동	39-6	38.0	대	15.0	김예순	화수동 38				-47.02 ~ -68.77
1046	동구 화수동	39-8	118.0	대	118.0	이경호	화수동 39				-47.02 ~ -68.77
1047	동구 화수동	39-9	96.0	대	62.0	이영임	인천 동구 송림동 8				-47.02 ~ -68.77
1048	동구 화수동	39-4	96.0	대	96.0	이애연	서구 석남동 578-25				-47.02 ~ -68.77
1049	동구 화수동	38-33	114.0	대	73.0	이종구 외 1인	화수동 38				-47.02 ~ -68.77
1050	동구 화수동	39-3	79.0	대	9.0	김용채	화수동 38				-47.02 ~ -68.77
1051	동구 화수동	37-374	133.0	대	58.0	홍중선	화수동 38				-47.25 ~ -69.00
1052	동구 화수동	37-410	8.0	대	7.0	국	재무부				-47.25 ~ -69.00
1053	동구 화수동	37-419	55.0	대	5.0	최은순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부두로 45번길 10(화수동)				-47.25 ~ -69.00
1054	동구 화수동	37-361	357.0	도	66.0	공	인천광역시				-47.25 ~ -69.00
					29.0	공	인천광역시				-47.36 ~ -69.11
1055	동구 화수동	38-32	36.0	도	25.0	국	건설부				-47.36 ~ -69.11
1056	동구 화수동	38-31	90.0	대	40.0	이만성	화수동38				-47.36 ~ -69.11
1057	동구 화수동	38-130	17.0	도	3.0	국	재정경제부				-47.36 ~ -69.11
1058	동구 화수동	38-30	109.0	대	109.0	최창현	화수동 38-30				-47.36 ~ -69.11
1059	동구 화수동	39-2	13.0	도	10.0	국	건설교통부				-47.36 ~ -69.11
1060	동구 화수동	39-1	17.0	대	13.0	국	재무부				-47.36 ~ -69.11
1061	동구 화수동	38-29	23.0	대	20.0	국	국세청				-47.36 ~ -69.11
1062	동구 화수동	37-370	83.0	대	18.0	이성재	화수동 38				-47.36 ~ -69.11
1063	동구 화수동	37-367	218.0	대	77.0	최인선	서울송파구오금동44 현대아파트23동401호	송화 새마을 금고	인천동구 화수동37	근저당	-47.36 ~ -69.11
1064	동구 화수동	2-11	27.0	도	12.0	공	인천광역시				-47.56 ~ -69.31

일련 번호	소재지	원면적		지목	사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기준 (0m~)m까지
		지번	면적 (㎡)			성명 (명칭)	주소	성명 (명칭)	주소	권리 관계	
1065	동구 화수동	38-28	61.0	대	15.0	김미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동 38	김용석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 627-534 신창아파트105-90 1	근저당	-47.68 ~ -69.43
1066	동구 화수동	38-27	77.0	대	29.0	이광재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동 907 샘머리아파트 111-1205				-47.68 ~ -69.43
1067	동구 화수동	38-21	214.0	대	172.0	최주혜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동 38-27				-47.68 ~ -69.43
1068	동구 화수동	38-26	165.0	대	165.0	장창섭	화수동 38-26				-47.68 ~ -69.43
1069	동구 화수동	37-5	79.0	대	49.0	이강희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동 35-37				-47.68 ~ -69.43
1070	동구 화수동	2-7	19,906.0	대	722.0	공	인천광역시				-47.85 ~ -69.60
1071	동구 화수동	38-23	10.0	도	10.0	국	재무부				-47.96 ~ -69.71
1072	동구 화수동	38-19	91.0	대	91.0	이건섭	인천 동구 화수동 38-19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서울특별시중구 충정로1가75 (신포지점)	근저당	-47.96 ~ -69.71
1073	동구 화수동	38-103	74.0	도	74.0	공	인천광역시				-47.96 ~ -69.71
1074	동구 화수동	37-18	168.0	도	131.0	국	건설부				-47.96 ~ -69.71
1075	동구 화수동	38-2	2.0	대	1.0	국	재무부				-47.96 ~ -69.71
1076	동구 화수동	37-3	36.0	대	30.0	국	건설교통부				-47.96 ~ -69.71
1077	동구 화수동	2-15	805.0	대	122.0	공	인천광역시				-48.10 ~ -69.85
1078	동구 화수동	4-33	1,679.0	도	102.0	국	건설교통부 외 1인				-48.22 ~ -69.97
1079	동구 화수동	37-15	55.0	도	55.0	국	건설부				-48.22 ~ -69.97
1080	동구 화수동	37-16	33.0	도	33.0	공	인천광역시				-48.22 ~ -69.97
1081	동구 화수동	37-375	49.0	도	49.0	공	인천광역시 동구 외 1인				-48.22 ~ -69.97
1082	동구 화수동	37-376	48.0	도	23.0	공	인천광역시 (교육감)외 2인				-48.22 ~ -69.97
1083	동구 화수동	37-4	139.0	학	55.0	공	인천광역시 동구 외 1인				-48.22 ~ -69.97
1084	동구 화수동	37-17	45.0	학	1.0	공	인천광역시 외 2인				-48.22 ~ -69.97
1085	동구 화수동	37-20	59.0	대	9.0	김인순	화수동 38				-48.22 ~ -69.97
1086	동구 화수동	37-160	26.0	대	2.0	국	재정경제부 외 1인				-48.22 ~ -69.97
1087	동구 화수동	2-12	164.0	도	29.0	공	인천광역시 (교육감)				-48.44 ~ -70.19
1088	동구 화수동	37-126	1.0	학	1.0	국	교육과학기술부				-48.44 ~ -70.19
1089	동구 화수동	2-5	11,748.0	학	2,288.0	공	인천광역시 (교육감)				-48.83 ~ -70.58
					1,466.0	공	인천광역시 (교육감)				-48.81 ~ -70.56
1090	동구 화수동	4-50	88.0	대	85.0	박덕신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동 7-300 화도파크빌라 가동 비01호	의정부서부 새마을금고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2동 720-24	근저당	-49.05 ~ -70.80
1091	동구 화수동	4-83	2.0	도	2.0	공	인천광역시				-49.05 ~ -70.80
1092	동구 화수동	4-31	33.0	대	33.0	김복자 외 7인	송현동66-51삼두아파 트2동1201호				-49.05 ~ -70.80

일련 번호	소재지	원면적		지목	사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기준 (0m~)m까지
		지번	면적 (㎡)			성명 (명칭)	주소	성명 (명칭)	주소	권리 관계	
1093	동구 화수동	4-8	36.0	대	27.0	김복자 외 7인	송현동66-51삼두아파 트2동1201호				-49.05 ~ -70.80
1094	동구 화수동	4-81	21.0	대	14.0	김복자 외 7인	송현동66-51삼두아파 트2동1201호				-49.05 ~ -70.80
1095	동구 화수동	4-10	37.0	대	37.0	김복자 외 7인	송현동66-51삼두아파 트2동1201호				-49.05 ~ -70.80
1096	동구 화수동	4-49	40.0	대	12.0	김복자 외 7인	송현동66-51삼두아파 트 2동 1201호				-49.05 ~ -70.80
1097	동구 화수동	4-52	59.0	대	17.0	이민재	화수동 5-29	한국주택은행	서울영등포구여의 도동36-3 (동인천지점)	근저당	-49.15 ~ -70.90
1098	동구 화수동	4-78	4.0	도	4.0	공	인천광역시				-49.15 ~ -70.90
1099	동구 화수동	4-80	1.0	도	1.0	공	인천광역시				-49.15 ~ -70.90
1100	동구 화수동	5-166	1.0	도	1.0	공	인천광역시				-49.15 ~ -70.90
1101	동구 화수동	5-165	26.0	도	1.0	국	건설부				-49.15 ~ -70.90
1102	동구 화수동	4-74	44.0	도	37.0	공	인천광역시				-49.15 ~ -70.90
1103	동구 화수동	5-70	78.0	대	78.0	이태복 외 3인	송현동 5-70				-49.15 ~ -70.90
1104	동구 화수동	5-24	164.0	대	41.0	엄인숙 외 7인	남동구 간석동 906-8 원옥빌라 나동 비01호				-49.15 ~ -70.90
1105	동구 화수동	2-16	533.0	도	99.0	공	인천광역시				-49.15 ~ -70.90
					71.0	공	인천광역시				-49.25 ~ -71.00
1106	동구 화수동	4-77	148.0	대	1.0	박현식 외 7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26 탑마을 710동 1401호				-49.14 ~ -70.89
1107	동구 화수동	2-17	176.0	대	125.0	석대봉	경기도 군포시 산본동 1091-1 목련아파트 1246-1503				-49.14 ~ -70.89
1108	동구 화수동	5-21	198.0	대	112.0	임상희 외 7인	화수동 5-26				-49.25 ~ -71.00
1109	동구 화수동	5-19	238.0	대	214.0	이정남	인천 부평구 부평동 760-632				-49.25 ~ -71.00
1110	동구 화수동	5-66	139.0	대	111.0	박현석 외 7인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26 탑마을 710동 1401호				-49.25 ~ -71.00
1111	동구 화수동	2-14	71.0	대	25.0	공	인천광역시				-49.24 ~ -70.99
1112	동구 화수동	2-18	13,180.0	도	339.0	국	건설부				-49.24 ~ -70.99
					361.0	국	건설부				-49.45 ~ -71.20
1113	동구 화수동	5-134	144.0	도	15.0	공	인천광역시				-49.35 ~ -71.10
1114	동구 화수동	5-27	116.0	도	29.0	이광우	화수동 205				-49.35 ~ -71.10
1115	동구 화수동	5-63	83.0	대	83.0	윤태천 외 3인	화수동 5-63				-49.35 ~ -71.10
1116	동구 화수동	5-62	20.0	대	13.0	공	인천광역시				-49.35 ~ -71.10
1117	동구 화수동	5-17	51.0	대	1.0	김옥남 외 5인	화수동 5				-49.35 ~ -71.10
1118	동구 화수동	2-1	9,759.0	철	277.0	공	인천광역시				-49.34 ~ -71.09
					271.0	공	인천광역시				-49.55 ~ -71.30
1119	동구 화수동	5-133	1.0	도	1.0	공	인천광역시				-49.45 ~ -71.20
1120	동구 화수동	5-8	176.0	대	1.0	공	인천광역시				-49.45 ~ -71.20
1121	동구 화수동	5-172	2,427.0	장	271.0	공	인천광역시				-49.44 ~ -71.19
1122	동구 화수동	5-177	1,180.0	장	229.0	공	인천광역시				-49.65 ~ -71.40

일련 번호	소재지	원면적		지목	사용 면적 (㎡)	소유자		관계인			구분지상권 평균해수면기준 (0m~)m까지
		지번	면적 (㎡)			성명 (명칭)	주소	성명 (명칭)	주소	권리 관계	
1123	동구 화수동	5-5	32,585.0	장	890.0	일진전기주 식회사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112-83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중구남대문로 2가9-1 (도화동지점)	근저당	-49.54 ~ -71.29
1124	동구 화수동	5-57	18,810.0	장	5,620.0	일진전기주 식회사	경기도 화성시 안녕동 112-83	주식회사 국민은행	서울중구남대문로 2가9-1 (도화동지점)	근저당	-50.04 ~ -71.79
1125	동구 화수동	5-180	4,239.0	도	1,009.0	공	인천광역시 동구				-50.35 ~ -72.10
1126	동구 화수동	311	2,387.0	도	467.0	국	건설부				-50.74 ~ -72.49
1127	동구 화수동	7-11	134,998.0	장	1,131.0	두산인프라 코어주식회 사	화수동 7-11				-50.35 ~ -72.10
1128	동구 화수동	7-275	26.0	대	4.0	정춘관	화수동 6-9				-50.35 ~ -72.10
1129	동구 화수동	7-273	26.0	대	26.0	김순옥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돈지섬길 155(대부북동)				-50.75 ~ -72.50
1130	동구 화수동	7-271	26.0	대	26.0	최미애	남동구 논현동 577 소래마을풍림아파트 108동 1804호				-50.75 ~ -72.50
1131	동구 화수동	7-269	13.0	대	13.0	한현수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동 7				-50.85 ~ -72.60
1132	동구 화수동	7-268	23.0	대	23.0	이다슬	인천광역시 동구 화수동 7-268				-50.85 ~ -72.60
1133	동구 화수동	7-265	17.0	대	15.0	김연목	화수동 7-262				-50.85 ~ -72.60
1134	동구 화수동	7-264	7.0	대	3.0	김연목	화수동 7-262				-50.85 ~ -72.60
1135	동구 화수동	7-263	17.0	대	1.0	김연목	화수동 7				-50.85 ~ -72.60
1136	동구 화수동	7-359	789.0	대	170.0	국	국토해양부				-50.85 ~ -72.60
1137	동구 화수동	311-2	224.0	도	5.0	국	건설교통부				-50.75 ~ -72.50
1138	동구 화수동	7-462	162.0	잡	15.0	국	해양수산부				-50.54 ~ -72.29
1139	동구 화수동	311-3	741.0	차	47.0	공	인천광역시				-50.84 ~ -72.59
					135.0	공	인천광역시				-50.85 ~ -72.60
1140	동구 화수동	311-1	112.0	대	85.0	이관국	인천광역시동구만석동 48-3	주식회사 하나은행	서울특별시중구 을지로1가 101-1 (삼성역지점)	근저당	-50.95 ~ -72.70
1141	동구 화수동	7-459	1,522.9	잡	228.0	국	국토해양부				-51.05 ~ -72.80
1142	동구 화수동	37-19	13.0	대	1.0	국	기획재정부				-48.22 ~ -69.97
1143	동구 화수동	37-143	1,676.0	도	524.0	국	기획재정부				-47.25 ~ -69.00
1144	동구 화수동	4-4	223.0	대	23.0	박현석 외 7인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26 탑마을 710동 1401호				-49.15 ~ -70.90
1145	서구 원창동	397-4	527.4	제	64.0	인천항만공 사	인천중구신흥동3가 7-241				-37.44 ~ -59.19
1146	서구 원창동	396-6	20,832.8	잡	2,909.0	인천항만공 사	인천중구신흥동3가 7-241				-36.26 ~ -58.01
1147	서구 원창동	395-3	52,626.0	도	1,784.0	공	인천광역시				-34.49 ~ -56.24
1148	서구 원창동	393-1	618.2	도	535.0	국	해양수산부				-32.72 ~ -54.47
1149	서구 원창동	393	533,565.6	잡	26,073.0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부산광역시영도구 봉래동5가29				-14.55 ~ -36.75
1150	서구 원창동	395-2	9,458.4	도	1,205.0	공	인천광역시				-11.48 ~ -33.23
1151	서구 원창동	392	227,950.9	잡	10,217.0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부산광역시영도구 봉래동5가29				-11.88 ~ -26.11
1152	공유수면	1		필지	26,930.0						

●국토교통부고시제2016-317호

「건축구조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5-769호, 2015.10.30)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31일

국토교통부장관

1. 개정 이유

‘09.9월 건축구조기준 개정 이후 기준 전반에 대하여 최근 연구결과 및 개선된 공법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2. 주요 개정내용

가. 총칙

- 1) 성능설계법을 도입하여 구조설계 자율성을 부여하되, 구조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입증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안전 확보

나. 구조검사 및 실험

- 1) 제진·면진 시스템을 적용한 건축물의 지진하중 특별검사 및 풍속 35m/s이상 지역의 높이 22m 이상 건축물의 풍하중 특별검사시, 용접부, 고력볼트 체결부 등 접합상세에 대해 적합성을 확인

다. 설계하중

- 1) 건축물 설계시 적용하여야 하는 하중에 화재, 폭발, 차량충돌 등의 돌발상황에 의한 하중 추가
- 2) 건축물 용도별로 적용하여야 하는 하중 조정
- 3) 풍하중 산정시 사용하는 지역별 기본풍속에 최신 기상관측 자료를 반영하고, 기존 5m/s단위로 구분된 풍속도를 2m/s단위로 세분화
- 4) 풍하중 산정방법을 개선하고, 강풍 시 피해를 많이 입을 수 있는 독립벽체, 옥상구조물 등의 풍하중 산정방법 신설
- 5) 국내 지반환경 등을 반영하여 지진하중 산정방법을 개선하고, 비구조요소(승강기 등 기계, 전 기구성 요소) 내진설계에 내용 추가

라. 기초구조

- 1) 건축물 지반조건이 위치에 따라 상이하거나 매립지와 같은 연약지반에 적용할 수 있도록 병용 기초 기초내력 산정방법 도입

마. 콘크리트구조

- 1) 2012년 개정된 「콘크리트구조기준」을 반영

바. 강구조

- 1) 강재 규격에 신(新)강재 규격 추가, 폐기된 규격 삭제
- 2) 해외 강구조 설계의 최신 기준인 AISC2010을 참고하여 정비

사. 목구조

- 1) 목재를 기계장치에 의해 측정된 값에 의해 5등급으로 구분하던 것을 12등급으로 세분화하고, 각 등급에 따른 허용응력 제시

아. 기타 구조

- 1) 막과 케이블구조, 부유식 구조에 대한 설계하중, 재료, 구조해석 및 설계 방법 제시

자. 부칙(전문 기재)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기준의 개정규정은 이 기준 시행 이후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법 제4조의2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 및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법 제19조에 따른 용도변경 허가를 신청(용도변경 신고 및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 신청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3. 기타 참고사항

이 고시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보마당/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란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전화 : 044-201-4082, 4752, 팩스 044-201-557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청고시제2016-52호

백두대간보호지역 확대지정중정정

관보 제18763호(2016.5.20.)에 게재된 “백두대간보호지역 확대지정” 중 오류사항이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2016년 5월 31일

산 립 청 장

◇ 7. 백두대간보호지역 확대지정 토지조서 중 소재지(리)명 정정

○ (당초) 대상토지조서

(단위 : m²)

연 번	소재지					지목	지적	백두대간보호지역 편입면적			소유자	
	도	시군	읍면동	리	지번			기 지정면적 (‘13.12.31. 기준)	확대지정 면적			
									계	핵심		완충
3	충북	단양	대강	용부	산49-17	임야	26,892	26,892		26,892	국(산림청)	

○ (변경) 대상토지조서

(단위 : m²)

연 번	소재지					지목	지적	백두대간보호지역 편입면적			소유자	
	도	시군	읍면동	리	지번			기 지정면적 (‘13.12.31. 기준)	확대지정 면적			
									계	핵심		완충
3	충북	단양	대강	용부원	산49-17	임야	26,892	26,892		26,892	국(산림청)	

※ 나머지 토지조서는 종전 고시와 같음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6-109호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첨단산업클러스터(C)

첨단산업클러스터(E) 관공선부두 개발계획(변경) 승인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 제2016-54호(2016.03.21)로 변경·고시된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개발계획에 대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7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31일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외국인 전용임대주택에 관한 특례) 조항 삭제에 따른 외국인 주택공급계획 변경
- 첨단산업클러스터(C)내 기반시설 추가확보, 관련부서 협의의견 및 제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반영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변경
-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130호(2009.3.26)의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변경 및 매립준공측량 결과를 반영하여 첨단산업클러스터(C), 첨단산업클러스터(E) 관공선부두의 단위개발사업지구 구역계 조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의 사항

1. 경제자유구역의 명칭·위치 및 면적 : 변경

- 명 칭 :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국제도시
- 위 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일원
- 면 적 : 기정) 53,400,882.6㎡, 변경) 53,451,991.8㎡
 - 첨단산업클러스터(C) : 기정) 12,384,270.8㎡, 변경) 12,452,645.0㎡
 - 첨단산업클러스터(E) 관공선부두 : 기정) 343,065.0㎡, 변경) 325,800.0㎡

명 칭	위 치	면 적 (㎡)	비고
시가지조성단지	2공구	1,303,042.8	
지식정보산업단지	2·4공구	2,401,744.7	
어민생활대책단지	1공구	314,342.0	
바이오단지	4공구	1,316,962.3	
국제업무단지	1~4공구	5,770,553.0	
아암공원(A)	1·2공구	1,531,326.6	
아암공원(B)	7·8·9·11공구	2,345,341.6	
송도국제화복합단지	7공구	1,416,713.6	
인천테크노파크 확대조성단지(A)	7공구	651,758.2	
첨단산업클러스터(B)	5공구	3,541,285.3	
첨단산업클러스터(C)	기정	11공구	12,384,270.8
	변경	11공구	12,452,645.0
첨단산업클러스터(E) 관공선부두	기정	11공구	343,065.0
	변경	11공구	325,800.0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F)	5·7공구	389,273.8	
송도랜드마크시티	6·8공구	5,828,284.9	
아암물류단지	9공구	2,625,730.0	
국제여객터미널	9공구	1,325,533.0	
신항물류단지(A)	10공구	4,010,093.0	
신항물류단지(B)	10공구	5,901,562.0	
합계	기정	-	53,400,882.6
	변경	-	53,451,991.8

- 2.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목적 : 변경 없음
- 3. 개발사업의 위치·면적 및 개발사업시행자 : 변경 없음
- 4. 개발사업의 개발기간, 재원 조달방법 및 시행방법 : 변경 없음
- 5. 토지이용계획과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 : 변경

- 1) 기본방향 : 변경 없음
- 2) 용도별 변경 내역 : 변경

○ 주요 변경내용

① (구역계 변경)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반영 등에 따른 구역계 조정

- 첨단산업클러스터(C) : 12,384,270.8㎡ → 12,452,645.0㎡ (증 68,374.2㎡)

(※ 구역계조정 : 증 17,265.0㎡, 구적오차 보정 : 증 51,109.2㎡)

- 첨단산업클러스터(E) 관공선부두 : 343,065.0㎡ → 325,800.0㎡ (감 17,265.0㎡)

② (관련부서 협의의견 반영) 유지관리용지 변경

③ (기반시설 추가확보) 오수중계펌프장(2,481.0㎡), 생활폐기물자동집하장(5,924.0㎡), 전기공급 설비(5,751.0㎡), 주유소(3,000.0㎡), 종교시설(2,555.0㎡) 부족기반시설 확보

④ (제영향평가 반영)

-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교육환경평가

○ 용도별 변경 내역

구 분	면적(㎡)		증 감(㎡)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합계	12,384,270.8	12,452,645.0	68,374.2	100.0	
주택건설용지	972,093.0	980,914.0	8,821.0	7.8	
근린생활시설용지	83,350.0	79,348.0	감)4,002.0	0.6	
상업시설용지	259,775.0	259,433.0	감)342.0	2.1	
복합개발용지	120,536.0	119,600.0	감)936.0	1.0	
산업시설용지	942,159.0	914,340.0	감)27,819.0	7.3	
연구시설용지	838,039.0	840,193.0	2,154.0	6.7	
공공시설용지	9,168,318.8	9,258,817.0	90,498.2	74.5	

주) 기정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224호(2014. 11. 26)

○ 토지이용계획표 : 변경

< 첨단산업클러스터(C) 토지이용계획표 >

구 분	면 적(㎡)		증 감(㎡)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합계	12,384,270.8	12,452,645.0	68,374.2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계	972,093.0	980,914.0	8,821.0	7.8
	공동주택	927,773.0	935,755.0	7,982.0	7.5
	단독주택	44,320.0	45,159.0	839.0	0.3
근린생활시설용지	83,350.0	79,348.0	감)4,002.0	0.6	
상업 시설 용지	소계	259,775.0	259,433.0	감)342.0	2.1
	상업시설용지	213,633.0	213,170.0	감)463.0	1.7
	주상복합용지	46,142.0	46,263.0	121.0	0.4

구 분	면 적(m ²)		증 감(m ²)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복합개발용지	120,536.0	119,600.0	감)936.0	1.0	
산업시설용지	942,159.0	914,340.0	감)27,819.0	7.3	
연구 시설 용지	소계	838,039.0	840,193.0	2,154.0	6.7
	연구용지	612,967.0	615,482.0	2,515.0	4.9
	교육연구용지	225,072.0	224,711.0	감)361.0	1.8
공공 시설 용지	소계	9,168,318.8	9,258,817.0	90,498.2	74.5
	도로	1,243,343.8	1,318,173.0	74,829.2	10.4
	도로	1,215,172.8	1,287,691.0	72,518.2	10.2
	보행자도로	28,171.0	30,482.0	2,311.0	0.2
	공원	7,005,475.0	7,005,541.0	66.0	56.3
	육지부	1,013,647.0	1,016,762.0	3,115.0	8.2
	수로부	3,088,055.0	3,085,000.0	감)3,055.0	24.8
	습지구역	2,903,773.0	2,903,779.0	6.0	23.3
	광장	1,615.0	2,512.0	897.0	0.1
	공공녹지	401,849.0	396,566.0	감)5,283.0	3.2
	공공공지	136,201.0	135,324.0	감)877.0	1.1
	학교	130,606.0	121,269.0	감)9,337.0	1.0
	종교시설	1,440.0	3,979.0	2,539.0	0.1
	충전·주유소	2,205.0	5,205.0	3,000.0	0.1
	기타	245,584.0	270,248.0	24,664.0	2.2
	주차장	63,977.0	63,977.0	-	0.5
	자동차정류장	14,270.0	24,000.0	9,730.0	0.2
	공공청사	58,152.0	59,331.0	1,179.0	0.5
	문화시설	21,586.0	20,774.0	감)812.0	0.2
	공급처리시설	68,498.0	82,654.0	14,156.0	0.6
트램역사	15,295.0	15,295.0	-	0.1	
유지관리용지	3,806.0	4,217.0	411.0	0.1	

주) 기정 :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14-224호(2014. 11. 26)

< 첨단산업클러스터(E) 관공선부두 토지이용계획표 >

구 분	면 적(m ²)		증 감(m ²)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합계	343,065.0	325,800.0	감)17,265.0	100.0	
도로	28,113.5	197.0	감)27,916.5	0.1	
항만	292,457.0	303,249.0	10,792.0	93.1	
공공녹지	22,494.5	22,354.0	감)140.5	6.8	

주) 기정 : 제정경제부고시 제2008-1호(2008. 01. 04)

< 송도국제도시 토지이용계획표 >

구 분	면 적(m ²)		증 감(m ²)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합계	53,400,882.6	53,451,991.8	51,109.2	100.0	
주택 건설 용지	소계	4,439,166.8	4,447,987.8	8,821.0	8.3
	공동주택	4,274,595.8	4,282,577.8	7,982.0	8.0
	단독주택	164,571.0	165,410.0	839.0	0.3
근린생활시설용지	511,755.1	507,753.1	감) 4,002.0	0.9	
상업시설 용지	소계	3,209,959.5	3,209,617.5	감) 342.0	6.0
	상업시설용지	969,611.2	969,148.2	감) 463.0	1.8
	주상복합용지	1,526,289.0	1,526,410.0	121.0	2.8
	복합지원	706,059.3	706,059.3	-	1.3
지식기반산업지원	8,000.0	8,000.0	-	0.1	

구	분	면 적(m ²)		증 감(m ²)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업무시설용지	821,551.6	821,551.6	-	1.5	
	복합개발용지	120,536.0	119,600.0	감) 936.0	0.2	
	산업시설용지	2,950,668.0	2,922,849.0	감) 27,819.0	5.5	
연구시설 용지	소계	3,152,261.1	3,154,415.1	2,154.0	5.9	
	연구용지	1,317,130.1	1,319,645.1	2,515.0	2.5	
	교육연구용지	1,835,131.0	1,834,770.0	감) 361.0	3.4	
	물류시설용지	4,309,298.0	4,309,298.0	-	8.1	
관광위락 시설용지	소계	954,034.0	954,034.0	-	1.9	
	골프장	946,875.0	946,875.0	-	1.8	
	청소년수련시설	7,159.0	7,159.0	-	0.1	
공공시설 용지	소계	32,931,652.5	33,004,885.7	73,233.2	61.7	
	도로	7,831,369.0	7,906,863.7	75,494.7	14.6	
	도로	7,743,791.0	7,816,974.7*	73,183.7	14.4	
	보행자도로	87,578.0	89,889.0	2,311.0	0.2	
	공원	15,315,141.2	15,313,057.0	감) 2,084.2	28.6	
	육지부	5,412,985.0	5,280,669.4*	감) 132,315.6	9.9	
	수로부	6,998,383.2	7,128,608.6*	130,225.4	13.3	
	습지구역	2,903,773.0	2,903,779.0	6.0	5.4	
	항만	4,111,023.6	4,121,816.0*	10,792.4	7.7	
	복합환승센터	31,697.5	31,697.5	-	0.1	
	광장	17,206.9	18,103.9	897.0	0.1	
	공공녹지	2,427,095.7	2,395,240.0*	감) 31,855.7	4.4	
	공공공지	136,201.0	135,324.0	감) 877.0	0.2	
	유수지	109,640.3	109,640.3	-	0.2	
	학교	803,166.6	793,829.6	감) 9,337.0	1.4	
	병원	80,719.3	80,719.3	-	0.1	
	종교시설	11,908.5	14,447.5	2,539.0	0.1	
	충전·주유소	9,587.7	12,587.7	3,000.0	0.1	
	기타	2,046,895.2	2,071,559.2	24,664.0	4.1	
	주차장	252,168.0	252,168.0	-	0.5	
	자동차정류장	14,270.0	24,000.0	9,730.0	0.1	
	공공청사	200,416.7	201,595.7	1,179.0	0.3	
	복지시설	18,008.4	18,008.4	-	0.1	
	문화시설	118,849.9	118,037.9	감) 812.0	0.2	
	체육시설	738,173.8	738,173.8	-	1.4	
	공급처리시설	675,615.9	689,771.9	14,156.0	1.3	
	트랩역사	15,295.0	15,295.0	-	0.1	
	기타용지	14,097.5	14,508.5	411.0	0.1	

주) 기정 :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고시제2016-54호 (2016. 03. 21)

주) * 단위개발사업지구 합산 면적 오류 정정

나. 주요 기반시설계획 : 변경

○ 상수공급계획 : 변경

구 분	주 요 내 용
상수공급계획	○ 급수량 - (기정) 295,944m ³ /일 → (변경) 208,911m ³ /일 (감 87,033m ³ /일)

○ 하수처리계획 : 변경

구 분	주 요 내 용
하수도계획	○ 계획오수량 - (기정) 248,908m ³ /일 → (변경) 161,498m ³ /일 (감 87,410m ³ /일)

○ 에너지사용계획 : 변경

구 분	주 요 내 용
에너지사용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력사용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정) 11,624,048MWh/년 → (변경) 11,611,150MWh/년 (MWh/년) ○ 난방·급탕 부하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정) 4,712,131Gcal/년 → (변경) 4,710,879Gcal/년 (Gcal/년) ○ 냉방 부하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정) 816,807 Gcal/년 → (변경) 816,281Gcal/년 (Gcal/년) ○ 취사연료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정) 68,398천·Nm³/년 → (변경) 68,415천·Nm³/년 (천·Nm³/년)

○ 교통처리계획 : 변경 없음

○ 보건의료·교육·복지시설 설치계획 : 변경

구 분	주 요 내 용
교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교용지(송도국제도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 적 : (기정) 803,166.6m² → (변경) 793,829.6m² (감 9,337.0m²) - 초등학교 : (기정) 23개교 → (변경) 22개교

○ 환경보전계획 : 변경

구 분	주 요 내 용
환경보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생활폐기물 발생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63.64톤/일 → 356.98톤/일 (감 6.66톤/일)

○ 문화시설·공원·녹지계획 : 변경

구 분	주 요 내 용
공원·녹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원(첨단산업클러스터(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 적 : (기정) 7,005,475.0m² → (변경) 7,005,541.0m² (증 66.0m²) ○ 녹지(첨단산업클러스터(C))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 적 : (기정) 401,849.0m² → (변경) 396,566.0m² (감 5,283.0m²)

6. 인구수용계획과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

가. 인구수용계획 : 변경 없음

나. 주거시설 조성계획 : 변경

○ 주거유형별 인구계획 : 변경

< 송도국제도시 주택공급계획 >

구 분		용지면적		세대(호)	인 구		인구밀도 (인/ha)
		천m ²	%		인	구성비(%)	
계	기정	6,087	100.0	103,633	264,390	100.0	434
	변경	6,094	100.0	103,633	264,390	100.0	434
단독주택	기정	165	2.7	489	1,258	0.5	76
	변경	165	2.7	474	1,221	0.5	74
공동주택	기정	4,275	70.2	72,220	184,237	69.7	431
	변경	4,283	70.2	72,239	184,279	69.7	430
주상복합	기정	1,527	25.1	29,843	76,142	28.8	499
	변경	1,527	25.1	29,841	76,138	28.8	499
복합개발	기정	120	2.0	1,081	2,753	1.0	229
	변경	119	2.0	1,079	2,752	1.0	231

주) 공동주택에 타운하우스 포함

○ 단계별 주택공급계획 : 변경

< 송도국제도시 단계별 주택공급계획 >

구 분		총 계	I 단계(2009년)	II 단계(2014)	III 단계(2020)	
계	세대	기정	103,633	38,611	57,755	7,267
		변경	103,633	38,611	57,684	7,338
	인구	기정	264,390	98,526	147,327	18,537
		변경	264,390	98,526	147,151	18,713
단독 주택	세대	기정	489	200	289	-
		변경	474	200	274	-
	인구	기정	1,258	500	758	-
		변경	1,221	500	721	-
공동 주택	세대	기정	72,220	24,170	40,783	7,267
		변경	72,239	24,170	40,731	7,338
	인구	기정	184,237	61,680	104,020	18,537
		변경	184,279	61,680	103,886	18,713
주상 복합	세대	기정	29,843	14,241	15,602	-
		변경	29,841	14,241	15,600	-
	인구	기정	76,142	36,346	39,796	-
		변경	76,138	36,346	39,792	-
복합 개발	세대	기정	1,081	-	1,081	-
		변경	1,079	-	1,079	-
	인구	기정	2,753	-	2,753	-
		변경	2,752	-	2,752	-

주) 공동주택에 타운하우스 포함

7. 외국인의 투자 유치와 정주를 위한 환경조성계획 : 변경

가. 외국인 정주환경 계획

○ 단위사업지구별 외국인 주택공급계획 : 변경

구 분	합 계	일반분양	외국인주택공급			
			소 계	분 양	임 대	
합 계	기정	103,633	100,168	3,465	1,028	2,437
	변경	103,633	102,413	1,220	-	1,220
시가지조성단지	5,897	5,897	-	-	-	
어민대책생활단지	3,677	3,677	-	-	-	
국제업무단지	기정	25,969	25,486	483	227	256
	변경	25,969	25,713	256	-	256
지식정보산업단지	기정	3,068	2,918	150	30	120
	변경	3,068	2,948	120	-	120
아암물류	1,721	1,721	-	-	-	
송도국제화복합단지	4,799	4,799	-	-	-	
첨단산업클러스터(B) 인천글로벌캠퍼스	기정	10,412	10,113	299	26	273
	변경	10,412	10,139	273	-	273
첨단산업클러스터(C)	기정	19,590	17,771	1,819	602	1,217
	변경	19,590	19,590	-	-	-
송도랜드마크시티 (6·8공구)	기정	28,500	27,786	714.0	143	571
	변경	28,500	27,929	571	-	571

8.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 규정에 의한 관계 서류와 도면 및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계획총괄과(☎032-453-7542)에서 열람 가능

●국립전파연구원고시제2016-4호

「전파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3조제1항제1의2호에 따라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국립전파연구원고시 제2015-13호, 2015. 4. 28.)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3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해상업무용 무선설비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 제목“(공중선전류 및 전력비율)”을“(안테나공급전류 및 전력비율)”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공중선을”을 “안테나를”로, “공중선 전류 또는 공중선 전력”을 각각 “안테나공급전류 또는 안테나공급전력”으로 하며, 같은 조 표 중 “공중선전류(전력)”을 “안테나공급전류(전력)”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나목 중 “공중선은”을 “안테나는”으로 한다.

제7조제1항제1호바목 중 “공중선”을 “안테나”로, “또는 공중선”을 “또는 안테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라목 중 “공중선전류 혹은 공중선전력”을 “안테나공급전류 혹은 안테나공급전력”으로, “공중선”을 “안테나”로 하고, 같은 호 바목의 표 중 “공중선전력”을 “안테나공급전력”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가호의 표 중 “공중선전력”을 “안테나공급전력”으로 한다.

제8조제1항제3호 중 “수신공중선이득”을 “수신안테나이득”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중선”을 “안테나”로 하고, 같은 호 가목 및 나목 중 “공중선”을 “안테나”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카목 중 “공중선”을 “안테나”로 한다.

제9조제2호가목 및 나목 중 “의사공중선회로”를 “의사안테나회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의사공중선회로”를 “의사안테나회로”로 한다.

제10조제1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중선”을 “안테나”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공중선계”를 “안테나계”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중선”을 “안테나”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공중선”을 “안테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2호가목 중 “공중선계”를 “안테나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중선”을 “안테나”로 하며, 같은 호 가목 중 “공중선을”을 “안테나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제2호가목 중 “공중선계”를 “안테나계”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중선”을 “안테나”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공중선은”을 “안테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제2호가목 중 “공중선계”를 “안테나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중선”을 “안테나”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제3호가목 중 “공중선계”를 “안테나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중선”을 “안테나”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제2호가목 중 “공중선계”를 “안테나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중선”을 “안테나”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제2호 중 “공중선계”를 “안테나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중선”을 “안테나”로 하며, 같은 조 제9항제3호나목 중 “공중선계”를 “안테나계”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중선”을 “안테나”로 한다.

제11조제1항제2호가목의 표 중 “공중선전력”을 “안테나공급전력”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공중선단자”를 “안테나단자”로, 같은 호 마목 중 “공중선전력”을 “안테나공급전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공중선”을 “안테나”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의 표 중 “공중선전력”을 각각 “안테나공급전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공중선전력”을 “안테나공급전력”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6호 단서 중 “공중선전력”을 “안테나공급전력”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송신공중선
은”을 “송신안테나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중 “공중선전력”을 “안테나공급전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공중선전력”을 각각 “안테나공급전력”으로 한다.

제15조제5항 중 “공중선전력”을 “안테나공급전력”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공중선 전력”을 “안테나
공급전력”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중 “공중선 전력”을 “안테나공급전력”으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공중선계”를 “안테나계”로 한다.

제18조제1항제8호마목 중 “공중선”을 “안테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3호 중 “공중선은”을 “안테나는”
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가목 중 “공중선이”를 “안테나가”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공중선전
력”을 “안테나공급전력”으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중 “공중선이”를 “안테나가”로 한다.

제19조제1항제1호 중 “공중선은”을 “안테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공중선”을 “안테나”로 한다.

제20조제1항제3호 전단 중 “공중선전력”을 “안테나공급전력”으로 하고, 같은 호 후단 중 “공중선전력”을
“안테나공급전력”으로 한다.

제22조제1항제1호파목 중 “공중선”을 “안테나”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다목 중 “공중선전력”을 “안테나공
급전력”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나목 중 “공중선전력”을 “안테나공급전력”으로 한다.

제23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공중선”을 “안테나”로 한다.

별표 26의 제목 중 “공중선계”를 “안테나계”로 하고, 그림 중 “공중선계의”를 “안테나계의”로 한다.

별표 38의 표 중 “공중선의”를 “안테나의”로 한다.

부칙

이 고시의 제4조, 제5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1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2조, 제23조, 별표 26 및 별표 38 개정규정은 2016년 6월 2일부터 시행한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83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
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31일

국방시설본부장

- 1. 사업의 명칭 : 000 장비시험실 증축공사
-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에 필요한 군사시설 신축
-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m ²)	사업면적(m ²)
000 장비시험실 증축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 산21	176,523	981

4. 사업시행기간 : '16. 05. 01. ~ '17. 2. 28.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31) 440-7162]
하십시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84호

국방·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3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사단 0연대 율리리대대 폐수처리시설 신축
0사단 0연대 동막리대대 폐수처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폐수처리시설을 신축하여 환경보전에 기여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시행기간

사업명	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사업시행기간
0사단 0연대 율리리대대 폐수처리시설 신축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율리리 4	4,812㎡	4,812㎡	2016. 5. 01 ~ 2016. 12. 31
0사단 0연대 동막리대대 폐수처리시설 신축	강원도 철원군 갈말읍 동막리 466-1	14,464㎡	4,017㎡	

4.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02-371-237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85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3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사단 108 00대대 취사식당 증축공사
2. 사업의 개요 : 식당 증축으로 장병들의 복지여건 개선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	사업면적(㎡)
00사단 108 00대대 취사식당 증축공사	경기도 양평군 옥천면 신복리 876-4	49,527	203

4. 사업시행기간 : '16. 06. 01. ~ '16. 11.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남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31) 440-7035]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86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31일

국방시설본부장

- 1. 사업의 명칭 : 000여단 간부숙소 신축
- 2. 사업의 개요 : 소요부대 간부숙소 신축으로 복지여건 개선
-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m ²)	사업면적(m ²)
000여단 간부숙소 신축	경기도 양주시 봉양동 242-2	84,896	2,270

4. 사업시행기간 : '16. 07. 1. ~ '17. 0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2) 371-237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87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31일

국방시설본부장

- 1. 사업의 명칭 : 0사단 000장비 월릉산 차양대 신축
- 2. 사업의 개요 : 차양대를 신축하여 전력자산 수용공간 확보
-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m ²)	사업면적(m ²)
0사단 000장비 월릉산 차양대 신축	경기도 파주시 검산동 산80	11,107	442

4. 사업시행기간 : '16. 02. 26. ~ '18. 02. 25.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경기북부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2) 371-2378]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88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3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0mm 교체시설사업(000여단 000대대 G지역)
2. 사업의 개요 : 소요시설을 신축하여 전력 향상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m ²)	사업면적(m ²)
000mm 교체시설사업 (000여단 000대대 G지역)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 와초리 479-1	11,412	3,565

4. 사업시행기간 : '16. 6. 1. ~ '16. 12. 31.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경기북부시설단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설계관리1과 사업담당에게 문의 [☎ (02) 748-4373]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89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3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부대 군사시설 신축
2. 사업의 개요 : 사용부대 시설 환경 개선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m ²)	사업면적(m ²)
00부대 군사시설 신축	경북 영천시 고경면 창하리 41번지 외 2필지	208,772	12,760

4. 사업시행기간 : '16. 7. 1 ~ '18. 6.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

나. 주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사업담당에게 문의[☎ (02) 748-4371]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90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3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여단 00훈련시설
2. 사업의 개요 : 훈련장 이전에 따른 훈련시설 설치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m ²)	사업면적(m ²)
00훈련시설 신축	전남 담양군 무정면 오룡리 506-1 30-1, 499, 550-7	427,238	48,650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6. 1. 1. ~ 2016. 10.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전라시설단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63-260-3024] 하시기 바랍니다.

●국방시설본부고시제2016-91호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방·군사 시설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을 다음과 같이 승인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31일

국방시설본부장

1. 사업의 명칭 : 00여단 00대대 00훈련시설
2. 사업의 개요 : 예비군 훈련시설 확충으로 전투력 강화
3. 사업예정지역의 위치 및 면적

사업명	사업위치	공부상면적(m ²)	사업면적(m ²)
00훈련시설 신축	제주도 서귀포시 토평동 3285	117,085	2,182

4. 사업의 시행기간 : 2016. 6. 1. ~ 2016. 11. 30.

5. 사업시행자와 그 주소

가. 사업시행자 : 국방시설본부장(전라시설단장)

나. 주 소 :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로 22 국방시설본부

※ 사업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방시설본부 전라시설단 사업담당에게 문의 [☎ 063-260-3022] 하시기 바랍니다.

●한강유역환경청고시제2016-7호

연성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수도법」 제1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인가(변경)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31일

한강유역환경청장

수도사업인가(변경)

1. 사업명: 연성정수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 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 안산시장(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고도정수처리공정 도입을 통한 맛, 냄새물질 등 제거로 안전한 수돗물 공급
4.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면적
 - 경기도 시흥시 광석동 146-1 연성정수장 내(99,610㎡)
5. 급수구역·급수인구 및 급수량

급수구역	급수인구(인)	1일 1인당 급수량(lpcd)
안산시 및 시흥시 일원	931,238	431

6. 사업시행기간 및 급수시작 예정일
 - 사업시행기간 : 2016~2018
 - 급수시작 예정일 : 2018
7. 수용·사용할 토지 등의 조서와 그 지번·지목·면적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 : 붙임
8. 토지등의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 붙임
9. 인가(변경) 내용

구 분		시설물 개요		비 고
고도처리공정 신설	오존접촉조	B15.6m×L16.0m×H5.6m×2지		
	활성탄흡착지	B3.8m×L12.3m×2면×10지		
	중간가압장	B24.6m×L11.7m×H7.1m×2지		체류시간 13.7분

* 관련도서는 안산시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열람(관련도서 생략)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조서 및 소유자 성명·주소

연번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성명	소유자	
				공부	편입		주소	
합 계				100,709	99,610			
1	시흥시 광석동	146-1	수	98,345	97,482	시흥시	공유지	
2	시흥시 광석동	426-5	구	128	119	국토교통부	국유지	
3	시흥시 광석동	144-3	수	115	115	시흥시	공유지	
4	시흥시 광석동	147-2	수	533	533	안산시	공유지	
5	시흥시 광석동	426-6	수	336	336	국토교통부	국유지	
6	시흥시 광석동	426-3	구	18	18	국토교통부	국유지	
7	시흥시 광석동	147-4	전	94	90	정○○	시흥시 연성로 156번길67(광석동)	
8	시흥시 광석동	430	도	159	15	국토교통부	국유지	
9	시흥시 광석동	426-7	수	14	14	국토교통부	국유지	
10	시흥시 광석동	176-2	도	81	2	서○○	시흥시 하상로 36, 306동 902호(하상동, 연꽃마을금호타운)	
11	시흥시 광석동	431-35	수	23	23	국토교통부	국유지	
12	시흥시 광석동	431-34	수	129	129	국토교통부	국유지	
13	시흥시 광석동	177-4	전	93	93	정○○	안산시 단원구 원곡동 938 경남아너스빌 아파트110-2203	
14	시흥시 광석동	432-1	수	396	396	농림축산식품부	국유지	
15	시흥시 광석동	431-36	수	245	245	국토교통부	국유지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87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33조제6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허가사항을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1. 하천의 명칭 : 곡교천(국가하천)
2. 하천점용허가번호 : 제2016-22호
3.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 이동호
 - 주소 : 충남 아산시 염치읍 석정길 79-6
4. 점용목적 및 개요
 - 목적 : 공작물의 설치
 - 개요 : 진출입로
5.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치 : 충남 아산시 염치읍 석정리 62-3번지
 - 면적 : 29.0m²
6.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16. 5. 26. ~ 2018. 5. 25.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191호

하천구역의 결정(변경·폐지)

「하천법」 제10조 제4항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하천구역 결정사항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관계 서류(토지세목, 지형도면)를 대전지방국토관리청 및 금산군에 갖추어 놓았으니 관계인은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5월 31일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하천 명칭	하천 등급	하천구간			하천구역면적(m ²)		결정 (변경·폐지일 및 사유)
		기 점	종 점	거리(km)	당초	변경	
금강	국가	충남 금산군 제원면 (No. 185+120)	충북 금산군 제원면 (No. 182+140)	0.580	1,340	-	결정일 : 고시일 사유 : 하천구역부분변경

첨부서류

- 하천구역에 편입된 토지의 세목을 적은 서류
- 하천구역이 표시된 지형도면(축척이 1천 500분의 1 이상인 지형도) : 생략

해당 시·군·구 : 금산군

- 하천구역 토지세목조서

소재지					지목	지적 (m ²)	소유자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당초('11) 편입면적 (m ²)	변경('16) 제외면적 (m ²)	편입면적 (m ²)	주소
충남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39-65	임	475	475	475	-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용강길 252 김이자

소재지					지목	지적 (㎡)	당초('11)	변경('16)		소유자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번지			편입면적 (㎡)	제외면적 (㎡)	편입면적 (㎡)	주소	성명
충남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39-66	임	239	239	239	-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용강길 252	김이자
충남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39-89	임	94	94	94	-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용강길 252	김이자
충남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39-90	임	22	22	22	-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용강길 252	김이자
충남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39-95	대	3	3	3	-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용강길 252	김이자
충남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39-96	대	1	1	1	-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용강길 252	김이자
충남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39-97	도	1	1	1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양자리 907 양지마을신원아침도시 103-1006	김진겸 외 1인
충남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39-98	임	1	1	1	-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용강길 252	김이자
충남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39-67	임	382	382	382	-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용강길 252	김이자
충남	금산군	제원면	용화리	47-8	전	122	122	122	-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용강길 252	김이자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51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 점용을 허가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3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 하천명 : 영산강 및 황룡강(국가하천)
- 위 치 : (영산강)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대동 941-3번지내,
(황룡강) 광주광역시 광산구 북룡동 582-2번지, 광산구 월전동 47-2번지
- 점용목적 : 방범용 CCTV설치
- 점용면적 : 3㎡
- 점용개요 : 방범용 CCTV설치 3대(카메라, 파이프지주, 콘크리트기초)
- 점용기간 : 2016.05.25. ~ 2021.05.24.(5년간)
(공사기간) (2016.05.25. ~ 2016.06.30.)
- 피허가자 : 광주광역시광산구청장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제2016-252호

하천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하천점용 연장허가 하였기에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31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장

- 하천명 : 전주천(국가하천)

2. 위 치 : 전북 전주시 송천동2가 1082 외2필지
3. 점용목적 : 도시가스관 매설
4. 점용면적 : 315.2㎡
5. 점용개요 : 도시가스관 매설(L=328m, Ø=500mm)
6. 점용기간 : (당 초) 1996.06.24. ~ 2016.06.23.
(연 장) 2016.06.24. ~ 2021.06.23.
7. 피허가자 : 전북도시가스(주) 대표이사

●서울지방항공청고시2016-30호

원주공항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

항공법 제9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제9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31일

서울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1) 성 명 : 한국공항공사 원주지사장
 - 2) 주 소 :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곡교리 111-1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
 - 1) 공 항 명 : 원주공항
 - 2) 사업의 종류 : 공항개발사업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 1) 사업의 목적 : 원주공항 주차시설 확장 및 노후된 기존 주차장, 구내도로를 재포장하여 여객편의 향상 도모
 - 2) 사업의 내용
 - 주차장 신설 2,419㎡
 - 기존 주차장 및 구내도로 포장 9,709㎡ 등
4. 사업시행의 기간 및 방법
 - 1) 사업시행의 기간 : '16. 5월 ~ 12월
 - 2) 방법 : 공항공사 자체 시행
5. 수용·사용할 토지 및 장애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명세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2)	소유지
1	강원도 횡성군 횡성읍 곡교리	101	대	410	한국공항공사
2	"	102	전	1,053	한국공항공사
3	"	105-2	도	24	국토부
4	"	105-4	도	13	기재부
5	"	105-6	도	39	국토부
6	"	105-7	도	8	국토부
7	"	107-4	도	63	국토부
8	"	111-1	잡	2,647	한국공항공사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m2)	소유지
9	"	111-3	잡	30	국토부
10	"	111-4	구	527	한국공항공사
11	"	111-9	도	23	국토부
12	"	112	잡	6,438	한국공항공사
13	"	451-1	구	97	농수산부
14	"	451-3	구	84	농수산부
15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둔둔리	1103	주차장	207	한국공항공사
16	"	1103-3	답	31	국토부
17	"	1103-4	주차장	434	한국공항공사
계	17필지			12,128	

6. 기타 사업에 필요한 사항

동 사업 실시계획에 관한 서류의 열람장소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이며, 동 사업과 관련하여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서울지방항공청 공항시설과(Tel: 032-740-2355, Fax: 032-740-2239)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지방항공청고시제2016-3호

제주국제공항 주차빌딩 신축 및 주차장 확충공사 실시계획 승인

공항개발사업 「제주국제공항 주차빌딩 신축 및 주차장 확충공사」 실시계획에 대하여 항공법 제95조제3항에 따라 승인하고, 같은 법 제95조제5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31일

제주지방항공청장

1.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장
- 주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공항로2

2. 공항명 및 사업의 종류

- 공항명 : 제주국제공항
- 사업의 종류 : 제주국제공항 주차빌딩 신축 및 주차장 확충공사

3. 사업의 목적 및 내용

- 사업목적 : 제주공항 운항 및 이용객 증가(기존 항공수요 예측 초과)로 인한 주차시설(여객 및 상주직원) 부족 해소
- 사업내용 : 주차빌딩 신축(20,278㎡, 850대), 동편 옥외주차장(8,178㎡, 274대), 서편 옥외주차장(6,037㎡, 228대)

4. 사업시행기간 : 2016. 6 ~ 2016. 12.

5. 수용·사용할 토지 및 장애물의 세목과 그에 관한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에 관한 명세 : 해당없음

6. 기타 사업시행에 필요한 사항

- 관계도서는 제주지방항공청(항공시설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열람토록 하였으며, 동 사업에 대해 이견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께서는 한국공항공사 제주지역본부 건축설비팀 (담당자 : 정형진, Tel : 064-797-234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여수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34호

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 승인

「GS칼텍스 제3제품부두 1선석 건설공사」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에 의거 항만건설사업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같은법 제1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실시계획승인 고시 합니다.

2016년 5월 31일

여수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GS칼텍스 제3제품부두 1선석 건설공사
2. 시행자의 성명(또는 명칭) 및 주소
 - 가. 성 명(또는 명칭) : GS칼텍스 주식회사 대표이사 허진수
 - 나. 주 소 : 전남 여수시 여수산단로 918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가. 목 적 : 원유 및 제품의 해상 물동량 처리를 위한 80,000DWT급 부두 건설
 - 나. 사업개요
 - 위 치 : 전남 여수시 낙포동 낙포 관공선 부두 전면 해상 일원
 - 사 업 비 : 51,863백만원
 - 사업내용 : 80,000DWT급 1선석, 부대공 1식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전남 여수시 낙포동 낙포 관공선 부두 전면 해상 일원
 - 면 적 : 13,272.84㎡
5. 사업시행기간 : 착수일로부터 33개월
6.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한 사항 : 의제처리(여수시 도시계획과 협의완료)
7.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여수지방해양수산청 항만건설과(☎ 061-650-6150)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관계도서 게재 생략).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4호

항로표지 폐지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폐지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31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 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 구조 · 높이	폐 지 년월일	목 적	비고
폐 지	구도항 삼호A호 등부표	36-49-35.6N 126-19-26.0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16.5.25.	공사목적용	
폐 지	구도항 삼호B호 등부표	36-49-98.5N 126-19-22.4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16.5.25.	공사목적용	
폐 지	구도항 삼호C호 등부표	36-49-42.4N 126-19-22.6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16.5.25.	공사목적용	
폐 지	구도항 삼호D호 등부표	36-49-43.8N 126-19-27.1E	Fl(4) Y 8s	7	황망대형 (LS-24)	'16.5.25.	공사목적용	

●대산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25호

항로표지 현황변경

대산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가 아래와 같이 현황변경 되었기에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31일

대산지방해양수산청장

구 분	표지명	위 치	등질	광달 거리 (해리)	도색 · 구조 · 높이	변경 년월일	목 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비고
변경 전	당진화력	37-04-41.0N 126-29-48.0E	VQG	7	녹망대형	'16.5.25.	항해 원조용	사용목적 종료시까지 /이동없음	이설
변경 후	9호 등부표	37-04-34.9N 126-30-06.5E							
-	당진화력 13호 등부표	37-04-26.6N 126-30-30.9E	FI(2)G6s	7	녹망대형	'16.5.25.	항해 원조용	-	폐지

●포항지방해양수산청고시제2016-47호

『항로표지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 관내 사설항로표지 현상변경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31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장

구 분	표지명	위 치 (WGS-84)	등질	등고 (m)	광달 거리 (해리)	도색· 구조·높이	변 경 년월일	목 적	설치기간/ 이동여부
변경전	후포제동항	N 36° 41' 10.5"	FIR5s	15	5	홍·원형 콘크리트조 ·10m	2016. 5.25.	항행 원조용	영구/ 이동없음
변경후	방파제등대	E 129° 28' 12.6"			8				

●영산강홍수통제소고시제2016-46호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하천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을 하였기에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31일

영산강홍수통제소장

- 제 목 : 하천수사용허가 기간연장
- 피허가자 : 전라남도 나주시 나주로 54 (주)엘지화학(나주공장)
- 목적 및 개요 : 공업용수(엘지화학양수장)
- 취수위치 : 전라남도 나주시 삼도동 738-2
영산강수계 본류(국가하천)
- 허 가 량 : 9,000 m³/일(하천점용 9,420m³)
- 허가기간 : 2016. 6. 28. ~ 2021. 6. 27.

공 고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208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임시마약류 지정을 예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사유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응으로 유통되어 국민보건 상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1P-LSD 등 18종(붙임 1)에 대하여 새로이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자 함

2. 임시마약류의 명칭, 지정사유 및 구분

붙임 1 참조

3. 그 밖에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에 관한 사항

<지정 예고 또는 지정 후 효력 등>

- 효력기간
 - (지정 예고) 지정 예고한 날부터 임시마약류 지정 공고 전달까지
 - (지정) 지정을 공고한 날부터 3년
 - ▶ 마약류 지정 검토 필요가 있는 경우 지정 예고 후 재지정할 수 있음
 - ▶ 효력기간 중 마약류로 지정(「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되는 경우, 그 시행일부터 임시마약류의 효력은 상실됨
- 취급사항
 -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또는 지정 이후에는 소지·소유·사용·관리·수출입·제조·매매·매매의 알선·수수 행위 등이 금지됨
 - 공무상 필요 등에 따라 취급하고자 하는 경우, 식약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취급 및 처분 관련 법률 조항
 - (지정 예고)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의2, 제15조, 제47조
 - (지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조, 제5조, 제5조의2, 제15조, 제41조, 제47조, 제58조, 제59조, 제60조, 제61조

「붙임 1」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 목록

<지정사유 내용>

가. 구조적·효과적 분류군, 나. 약리효과(중추신경계 자극, 흥분, 억제 등), 다. 부작용 및 유해사례, 라. 국내 반입·유통 여부, 마. 국외 유통 및 규제현황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지정사유	구분
1	1P-LSD	N,N-diethyl-7-methyl-4-propanoyl-6,6a,8,9-tetrahydroindolo[4,3-fg]quinoline-9-carboxamide	가. LSD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동물실험에서 LSD의 38%에 해당하는 환각 효과 보임 라. 영국 발 국제등기우편 반입적발(16.4) 마. 일본, 스웨덴, 덴마크 규제	임시향정신성의약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
2	3C-E	1-(4-ethoxy-3,5-dimethoxyph	가. 암페타민 계열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지정사유	구분
		enyl)propan-2-amine	나. 중추신경계 작용(강력한 환각작용 우려) 다. 오심, 진전, 불안, 시각왜곡현상 등이 보고된 바 있음 라. 정보없음 마. 캐나다, 영국, 일본 규제	
3	Bromo-DragnFLY	1-(4-bromofuro[2,3-f[1]benzofuran-8-yl)propan-2-amine	가. 암페타민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강력한 환각작용) 다. '08년 스웨덴에서 해당물질 섭취 후 경련, 호흡기 기상, 간·신장 부전 등의 증상으로 환자 내원 사례 보고된 바 있으며, '09년 덴마크에서 해당물질 1 mL 섭취 후 사망사례 발생, 급성중독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라. 정보없음 마.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뉴질랜드 규제	
4	Prolintane	1-(1-benzylbutyl)pyrrolidine	가. 암페타민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부작용으로서 불면증, 신경과민 등이 보고되어 있고 고용량 투여 시 환각, 정신이상,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보고된 바 있음 라. 미국 발 국제특송화물 반입 적발('15.3.) 마. 일본 규제	
5	Methamnetamine	N-Methyl-1-(2-naphthyl)propan-2-amine	가. 암페타민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불안, 발한, 우울, 감정변화, 탈수 등 보고 라. 정보없음 마. 일본 규제	
6	30C-NBOMe	2-(4-chloro-2,5-dimethoxyphenyl)-N-(3,4,5-trimethoxybenzyl)ethanamine	가. 암페타민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25C-NBOMe과 유사 구조) 다. 위해사례 및 의존성 평가보고 없음 라. 정보없음 마. 영국, 일본 규제	
7	25I-NB34MD	N-(1,3-benzodioxol-5-ylmethyl)-2-(4-iodo-2,5-dimethoxyphenyl)ethan-1-amine	가. 암페타민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25I-NBOMe과 유사 구조) 다. 위해사례 및 의존성 평가보고 없음 라. 정보없음 마. 영국, 일본, 스웨덴, 헝가리 규제	
8	4AcO-MiPT	4-acetoxy-N-isopropyl-N-methyltryptamine	가. 트립타민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psilocin보다 더 심한 환각 유발 가능성) 다. 불안, 과행동, 정신혼란, 환각, 의식저하 등이 보고된 바 있음 라. 정보없음 마. 영국, 일본규제	
9	4-AcO-MET	3-(2-Ethyl(methyl)aminoethyl)-1H-indol-4-yl acetate	가. 트립타민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psilocin보다 더 심한 환각 유발 가능성) 다. 남용자들의 자가 투여 보고에 따르면 환각, 오심, 동공확장 등의 증상이 나타남 라. 정보없음 마. 영국, 일본, 뉴질랜드 규제	
10	4-AcO-DALT	3-(2-[Di(prop-2-en-1-yl)amino]ethyl)-1H-indol-4-yl acetate	가. 트립타민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트립타민 계열 약물)(psilocin보다 더 심한 환각 유발 가능성)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지정사유	구분
			다. 흡연 시 폐 손상을 유발할 수 있음 라. 정보없음 마. 영국, 일본, 뉴질랜드 규제	
11	4-AcO-DET	3-(2-Diethylaminoethyl)-1H-indol-4-yl acetate	가. 트립타민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트립타민 계열 약물)(psilocin보다 더 심한 환각 유발 가능성) 다. 극도의 불안, 불면증, 피로, 다행감, 환각, 체온상승, 심계항진, 혈압상승, 오심 등의 부작용이 보고되어 있음 라. 정보없음 마. 영국, 일본, 뉴질랜드 규제	
12	4-AcO-DMT	3-[2-(Dimethylamino)ethyl]-1H-indol-4-yl acetate	가. 트립타민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트립타민 계열 약물)(psilocin과 유사 작용 가능성) 다. 다행감, 심한 두통, 오심, 일시적 혈압 상승, 위장장애, 동공확장 등이 발생 라. 정보없음 마. 영국, 뉴질랜드, 일본, 호주 규제	
13	4-OH-MET	N-ethyl-4-hydroxy-N-methyltryptamine	가. 트립타민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가능성(마약류 psilocin 유사)(psilocin과 유사 작용 가능성) 다. 조절장애, 발한, 오한, 심박수 증가, 두통, 불면증, 행복감, 에너지 고조 등 라. 정보없음 마. 미국, 캐나다, 덴마크, 영국, 일본 규제	
14	4-OH-MiPT	4-hydroxy-N-isopropyl-N-methyltryptamine	가. 트립타민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psilocin과 유사 작용 가능성) 다. 불안, 과행동, 정신혼란, 환각, 의식저하 등이 보고된 바 있음 라. 정보없음 마. 영국, 일본 규제	
15	5-MeO-2-TMT	2-(5-methoxy-2-methyl-H-indol-3-yl)-N,N-dimethylethanamine	가. 트립타민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bufotenine보다 더 심한 환각 가능성) 다. 환각, 운동기능 저하 양상, 성적 흥분 등의 사례가 보고된 바 있음 라. 정보없음 마. 영국, 일본 규제	
16	JWH-145	naphthalene-1-yl(1-pentyl-5-phenyl-1H-pyrrole-3-yl)methanone	가. 합성대마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위해사례 및 의존성 평가보고 없음 라. 정보없음 마. 영국, 호주, 일본 규제	
17	Org27569	5-chloro-3-ethyl-N-[4-(piperidine-1-yl)phenethyl]-1H-indole-2-carboxamide	가. 합성대마 계열 나. 중추신경계 작용 다. 위해사례 및 의존성 평가보고 없음 라. 정보없음 마. 영국, 일본 규제	
18	Mephtramine	3,4-dihydro-2-[(methylamino)methyl]-1(2H)-naphthalen	가. 기타 계열 나. 알려진바 없음(mephedrone 유사체로서 심각한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지정사유	구분
		one	중추신경계 부작용 예상, 암페타민과 유사한 작용 가능성) 다. 위해사례 및 의존성 평가보고 없음 라. 정보없음 마. 일본 규제	

「붙임 2」

임시마약류 지정 현황('16.5월 현재)

○ 다음의 것과 그 염 및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으로 한다.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효력기간	구분
1	PMMA(p-methoxymethamphetamine)	1-(4-methoxyphenyl)-N-methylpropan-2-amine	'14.6.11 ~17.6.10	임시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가목)
2	Methoxetamine	(RS)-2-(3-methoxyphenyl)-2-(ethylamino)cyclohexanone		
3	5-APB(5-aminopropyl)benzofuran	5-(2-aminopropyl)benzofuran		
4	MMDA(2-methoxy-4,5-methylenedioxyamphetamine)	1-(6-methoxy-1,3-benzodioxol-5-yl)propan-2-amine		
5	CB-13(SAB-378)	Naphthalen-1-yl-(4-pentyloxynaphthalen-1-yl)methanone		
6	5-MeO-DALT	N-allyl-N-[2-(5-methoxy-1H-indol-3-yl)ethyl]prop-2-en-1-amine		
7	6-APB(Benzo Fury)	6-(2-aminopropyl)benzofuran		
8	Methiopropamine	1-(thiophen-2-yl)-2-methylaminopropane		
9	5-MAPB	1-(benzofuran-5-yl)-N-methylpropan-2-amine		
10	5-APDB (EMA-4, 3-Desoxy-MDA)	5-(2-aminopropyl)-2,3-dihydrobenzofuran		
11	α-Methyltryptamine (αMT, AMT, Indopan)	2-(1H-indole-3-yl)-1-methyl-ethylamine		
12	p-chloroamphetamine (PCA, 4-CA)	1-(4-chlorophenyl)propan-2-amine		
13	NMT	2-(1H-Indol-3-yl)-N-methylethanamine		
14	4-HO-DET (CZ-74, ethocin)	3-(2-diethylaminoethyl)-1H-indol-4-ol		
15	2,3-DCPP	1-(2,3-dichlorophenyl)piperazine		
16	Desoxy-D2PM (A3A, Methano, Green powder)	(RS)-2-(Diphenylmethyl)pyrrolidine		
17	α-PVT	2-(pyrrolidin-1-yl)-1-(thiophen-2-yl)pentan-1-one		
18	JWH-307	(5-(2-fluorophenyl)-1-pentylpyrrol-3-yl)-naphthalen-1-ylmethanone		
19	MDAI	6,7-dihydro-5H-cyclopenta[f][1,3]benzodioxol-6-amine		
20	25I-NBOMe (2C-I-NBOMe)	2-(4-iodo-2,5-dimethoxyphenyl)-N-[(2-methoxyphenyl)methyl]ethanamine		
21	2C-C-NBOMe	2-(4-chloro-2,5-dimethoxyphenyl)-N-[(2-methoxyphenyl)methyl]ethanamine		
22	3-Fluoromethamphetamine (3-FMA)	1-(3-fluorophenyl)-N-methylpropan-2-amine		
23	5-(2-Aminopropyl)indole	2-(1H-indol-5-yl)-1-methyl-ethylamine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효력 기간	구분
	(5-API, 5-IT)			
24	5-IAI	5-iodo-2,3-dihydro-1H-inden-2-amine		
25	Dimethoxy-methamphetamine(D MMA)	2-(3,4-Dimethoxyphenyl)-N-methylpropylamine		
26	DOC	1-(4-chloro-2,5-dimethoxy-phenyl)propan-2-amine		
27	Ethylphenidate	(RS)-ethyl 2-phenyl-2-piperidin-2-ylacetate		
28	Phenazepam	7-Bromo-5-(2-chlorophenyl)-1,3-dihydro-2H-1,4-benzodiazepin-2-one		
29	MT-45 (IC-6)	1-cyclohexyl-4-(1,2-diphenylethyl)piperazine		
30	5-MeO-EPT	5-Methoxy-N-ethyl-N-propyltryptamine		
31	AH-7921	3,4-dichloro-N-((1-dimethylamino)cyclohexylmethyl)benzamide		
32	alkyl nitrite (poppers, rush, boppers, snappers) ※ 화학명칭에 기재된 7종에 대해서만 적용. 다만, 원소 또는 화합물에 화학반응을 일으키게 하는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학술 연구 및 제품제조 등)에는 임시 마약류에 해당하지 않음	isobutyl nitrite, isopropyl nitrite, pentyl nitrite, isopentyl nitrite, tertiarybutyl nitrite, cyclohexyl nitrite, butyl nitrite		
33	A-836339	N-[3-(2-methoxyethyl)-4,5-dimethyl-1,3-thiazol-2-ylidene]-2,2,3,3-tetramethylcyclopropane-1-carboxamide		
34	p-Chloromethamphetamine	1-(4-chlorophenyl)-N-methylpropan-2-amine		
36	p-Bromoamphetamine	1-(4-bromophenyl)propan-2-amine		
36	25B-NBOMe	2-(4-bromo-2,5-dimethoxyphenyl)-N-[(2-methoxyphenyl)methyl]ethanamine		
37	25D-NBOMe	2-(2,5-dimethoxy-4-methylphenyl)-N-(2-methoxybenzyl)ethanamine		
38	25H-NBOMe	2-(2,5-dimethoxyphenyl)-N-(2-methoxybenzyl)ethanamine		
39	5-EAPB	1-(Benzofuran-5-yl)-N-ethylpropan-2-amine		
40	2C-C	1-(4-Chloro-2,5-dimethoxyphenyl)-2-aminoethane		
41	2C-P	2-(2,5-Dimethoxy-4-propylphenyl)ethanamine		
42	N-methyl-2-AI	2,3-dihydro-N-methyl-1H-inden-2-amine		
43	3,4-dichloromethylphenidate	methyl (2R)-2-(3,4-dichlorophenyl)-2-[(2R)-piperidin-2-yl]acetate		
44	W-15	(E)-4-chloro-N-(1-phenethylpiperidin-2-ylidene)benzenesulfonamide		
45	RH-34	3-[2-(2-methoxybenzylamino)ethyl]-1H-quinazoline-2,4-dione		
46	N-ethyl-norketamine	N-1-naphthalenyl-1-pentyl-1H-indazole-3-carboxamide		
47	Mepirapim	(4-methylpiperazin-1-yl)(1-pentyl-1H-indol-3-yl)methanone		
48	2C-N	2,5-dimethoxy-4-nitrophenethylamine		
49	Acetylfentanyl ※ 시험검사(품질관리 등)의 용도로 사	(N-(1-Phenethylpiperidin-4-yl)-N-phenylacetamide)	'14.12.1 1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효력 기간	구분
	용하는 경우에는 임시마약류에 해당하지 않음		~17. 12.1 0	
50	LY2183240	N,N-dimethyl-5-[(4-biphenyl)methyl]tetrazole-1-carboxamide		
51	4,4'-DMAR	4,5-Dihydro-4-methyl-5-(4-methylphenyl)-2-oxazolamine		
52	Escaline	2-(4-ethoxy-3,5-dimethoxy-phenyl)-ethylamine		
53	Diphenidine	1-(1,2-diphenylethyl)piperidine		
54	BiPICANA	N-(naphthalen-1-yl)-1-pentyl-N-(1-pentyl-1H-indole-3-carbonyl)-1H-indole-3-carboxamide		
55	FUBIMINA (AM2201 benzimidazole analog)	(1-(5-Fluoropentyl)-1H-indazole-3-yl)(naphthalen-1-yl)methanone		
56	25C-NBF	4-chloro-N-[(2-fluorophenyl)methyl]-2,5-dimethoxy-benzeneethanamine		
57	α-PBT	2-(pyrrolidin-1-yl)-1-(thiophen-2-yl)butan-1-one		
58	25B-NBF	2-(4-bromo-2,5-dimethoxyphenyl)-N-(2-fluorobenzyl)ethanamine		
59	2-MeO-diphenidine (Methoxyphenidine)	1-[1-(2-methoxyphenyl)-2-phenylethyl]piperidine		
60	Flubromazepam	7-bromo-5-(2-fluorophenyl)-1,3-dihydro-1,4-benzodiazepin-2-one		
61	EG-018	naphthalen-1-yl-(9-pentyl-9H-carbazol-3-yl)methanone	'15.11.2 7	
62	Nitracaine	3-diethylamino-2,2-dimethylpropyl)-4-nitrobenzoate	~18. 11.2 6	
63	25I-NBF	2-(4-iodo-2,5-dimethoxyphenyl)-N-[(2-fluorophenyl)methyl]ethanamine		
64	BOD	2-(2,5-dimethoxy-4-methylphenyl)-2-methoxyethanamine		
65	Allylescaline	4-allyloxy-3,5-dimethoxyphenethylamine		
66	Methallylescaline	2-{3,5-dimethoxy-4-[(2-methylprop-2-en-1-yl)oxy]phenyl}-ethanamine		
67	25N-NBOMe	2-(2,5-dimethoxy-4-nitrophenyl)-N-(2-methoxybenzyl)ethanamine		
68	25E-NBOMe	2-(4-ethyl-2,5-dimethoxyphenyl)-N-(2-methoxybenzyl)ethanamine		
69	25C-NBOH	2-[(4-chloro-2,5-dimethoxyphenethylamino)methyl]phenol		
70	25I-NBOH	2-[(4-iodo-2,5-dimethoxyphenethylamino)methyl]phenol		
71	2-DPMP (Desoxypipradrol)	2-benzhydrylpiperidine		
72	Larocaine (Dimethocaine)	(3-diethylamino-2,2-dimethylpropyl)-4-aminobenzoate		
73	Thienoamfetamine (Thiopropamine)	1-(thiophen-2-yl)-2-aminopropane		

「붙임 3」

임시마약류 삭제·정정 목록(사유 포함)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삭제·정정 사유	삭제·정정 일자
1	메틸렌디옥시피로발론 (Methylenedioxypropioverone, MDPV)	1-(benzo-1,3-dioxol-5-yl)-2-(pyrrolidin-1-yl)pentan-1-on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제39호	2012.6.8
2	O-2387(α-PVP)	1-phenyl-2-(1-pyrrolidinyl)-1-pentanone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제22호 「메스케치논 및 그 유사체」에 해당하는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이므로 임시마약류에서 삭제·정정	2013.1.2.10
3	Dimethylamphetamine	N,N-dimethyl-1-phenylpropan-2-amin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25호	2013.1.2.10
4	4-AcO-DiPT (4-Acetoxy-DiPT, Ipracetin)	3-[2-[bis(1-methylethyl)amino]ethyl]-1H-Indol-4-ol acetat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제32호	2013.1.2.10
5	4-Fluoroamphetamine	(RS)-1-(4-Fluorophenyl)propan-2-amin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제40호	2014.8.27
6	4-Methylamphetamine	1-(4-Methylphenyl)propan-2-amin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제41호	2014.8.27
7	AM-1248	1-[(N-methylpiperidin-2-yl)methyl]-3-(adamant-1-yl)indol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제33호	2014.1.2.23
8	UR-144(KM-X1)	(1-pentyl-1H-indol-3-yl)-(2,2,3,3-tetramethylcyclopropyl)methanon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제33호	2014.1.2.23
9	5F-UR-144(XLR-11)	(1-(5-fluoropentyl)-1H-indol-3-yl)-(2,2,3,3-tetramethylcyclopropyl)methanon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제33호	2014.1.2.23
10	STS-135	N-(1-adamantyl)-1-(5-fluoropentyl)-1H-indazole-3-carboxamid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제33호	2014.1.2.23
11	AM-2233	1-[(N-methylpiperidin-2-yl)methyl]-3-(2-iodobenzoyl)indol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제33호	2014.1.2.23
12	AKB-48(APINACA)	N-(1-adamantyl)-1-pentyl-1H-indazole-3-carboxamid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제33호	2014.1.2.23
13	5F-AKB-48	1-(5-fluoropentyl)-N-tricyclo[3.3.1.1 ^{3,7}]dec-1-yl-1H-indole-3-carboxamid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제33호	2014.1.2.23
14	APICA(2NE1)	N-(1-adamantyl)-1-pentyl-1H-indole-3-carboxamid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2014.1.2.23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삭제·정정 사유	삭제·정정 일자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제33호	
15	AB-001	1-pentyl-3-(adamant-1-oyl) indol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제33호	2014.1 2.23
16	ADB-FUBINACA	N-(1-Amino-3,3-dimethyl-1-oxobutan-2-yl)-1-(4-fluorobenzy)-1H-indazole-3-carboxamid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제33호	2014.1 2.23
17	ADBICA	N-(1-Amino-3,3-dimethyl-1-oxobutan-2-yl)-1-pentyl-1H-indole-3-carboxamid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제33호	2014.1 2.23
18	AB-PINACA	N-[(1S)-1-(aminocarbonyl)-2-methylpropyl]-1-pentyl-1H-indazole-3-carboxamid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제33호	2014.1 2.23
19	QUPIC(PB-22)	1-pentyl-1H-indole-3-carboxylic acid 8-quinolinyl ester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제33호	2014.1 2.23
20	JWH-030	naphthalen-1-yl-(1-pentylpyrrol-3-yl)methanon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제34호	2014.1 2.23
21	5-Fluoropentyl-3-pyridinoylindole	5-Fluoropentyl-3-pyridinoylindol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제33호	2014.1 2.23
22	AM-1241	(2-iodo-5-nitrophenyl)-[1-(1-methylpiperidin-2-yl)methyl]indol-3-yl]methanon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제33호	2014.1 2.23
23	5F-PB-22	1-(5-fluoropentyl)-1H-indole-3-carboxylic acid 8-quinolinyl ester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제33호	2014.1 2.23
24	5F-NNEI	1-(5-fluoropentyl)-N-(naphthalen-2-yl)-1H-indole-3-carboxamid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제33호	2014.1 2.23
25	A-834,735	1-(tetrahydropyran-4-yl-methyl)-1H-indol-3-yl-(2,2,3,3-tetraethyl propyl)methanon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제33호	2014.1 2.23
26	AB-FUBINACA	N-[(1S)-1-(aminocarbonyl)-2-methylpropyl]-1-[(4-fluorophenyl)methyl]-1H-indazole-3-carboxamid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제33호	2014.1 2.23
27	NNEI (MN-24)	N-1-naphthalenyl-1-pentyl-1H-indole-3-carboxamid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제33호	2014.1 2.23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삭제·정정 사유	삭제·정정 일자
28	QUCHIC (BB-22)	1-(cyclohexylmethyl)-1H-indole-3-carboxylic acid 8-quinolinyl ester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제33호	2014.1 2.23
29	RCS-4 ortho-isomer	2-(4-methoxyphenyl)-1-(1-pentyl-indol-3-yl)methanon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제33호	2014.1 2.23
30	MN-18	N-1-naphthalenyl-1-pentyl-1H-indazole-3-carboxamid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제33호	2014.1 2.23
31	5F-MN-18	1-(5-fluoropentyl)-N-1-naphthalenyl-1H-indazole-3-carboxamid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제33호	2014.1 2.23
32	Methyl-1-(cyclohexylmethyl)-1H-indole-3-carboxylate	Methyl-1-(cyclohexylmethyl)-1H-indole-3-carboxylat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제33호	2014.1 2.23
33	5F-AB-PINACA	(s)-N-(1-amino-3-methyl-1-oxobutan-2-yl)-1-(5-fluoropentyl)-1H-indazole-3-carboxamid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제33호	2014.1 2.23
34	FUB-PB-22	quinoline-8-yl-1-(4-fluorobenzyl)-1H-indole-3-carboxylat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제33호	2014.1 2.23
35	5F-ADBICA	N-(1-amino-3,3-dimethyl-1-oxobutan-2-yl)-1-(5-fluoropentyl)-1H-indole-3-carboxamid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제33호	2014.1 2.23
36	XLR-12	(2,2,3,3-tetramethylcyclopropan-1-yl)[1-(4,4,4-trifluorobutyl)-1H-indol-3-yl]methanon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제33호	2014.1 2.23
37	ADB-PINACA	N-(1-amino-3,3-dimethyl-1-oxobutan-2-yl)-1-pentyl-1H-indazole-3-carboxamid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제33호	2014.1 2.23
38	FDU-PB-22	Naphthalen-1-yl-1-(4-fluorobenzyl)-1H-indole-3-carboxylat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제33호	2014.1 2.23
39	AB-CHMINACA	N-[(1S)-1-(aminocarbonyl)-2-methylpropyl]-1-(cyclohexylmethyl)-1H-indazole-3-carboxamid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제33호	2014.1 2.23
40	5-fluoro-AMB	(S)-methyl-2-(1-(5-fluoropentyl)-1H-indazole-3-carboxamido)-3-methylbutanoat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제33호	2014.1 2.23
41	βk-2C-B	2-amino-1-(4-bromo-2,5-di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2014.1

연번	물질명	화학명칭	삭제·정정 사유	삭제·정정 일자
		methoxyphenyl)ethan-1-one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3 제22호	2.23
42	Lisdexamphetamine	(2S)-2,6-diamino-N-[(2S)-1-phenylpropan-2-yl]hexanamide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지정*됨에 따라 인한 임시마약류 효력 상실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 제44호	2014.1 2.23

●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6-209호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을 일괄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한시적 행정규제 유예 등을 위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안」 일괄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16.5.18자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특별 대책에 따라, 중소기업 등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항구적으로 개선하거나 일정기간 유예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등 4개의 총리령을 일괄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위생 영업의 허가·신고·등록 신청 시 구비서류 완화(안 제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0조, 제42조, 제43조의2)

- 1) 식품위생법상 영업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등록을 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건강진단결과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나, 건강진단결과서 발급 및 제출에 따른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2) 이에 영업의 허가·신고·등록 신청 시 신청인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공무원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건강진단결과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함.
- 3) 민원인이 건강진단결과서를 직접 제출하지 않고 공무원이 확인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민원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식품위생교육 면제대상 확대(안 제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

- 1) 식품첨가물제조업 영업자 등이 매년 받는 식품위생 의무 교육과 관련하여,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당 연도에 동일 업종의 교육을 받았거나 상호 인정 가능한 업종*의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식품위생교육을 면제하고 있으나, 연말에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연도의 의무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아 영업자에게 부담을 주고 있음.

* 상호 인정 가능 업종(번호별 인정)

1)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2)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제과점영업

3) 단란주점영업, 유흥주점영업

2) 이에 동일 업종의 교육을 받은 경우 또는 상호 인정 가능한 업종의 교육을 받은 경우로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 식품위생교육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

3) 식품위생교육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운영으로 영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식품운반업 영업신고 기준 개선(안 제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1) 식품운반업을 하려는 자는 사무소 등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영업신고를 하여야 하나,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개별화물자동차(1인 1차량)로 사업을 하는 자의 경우에는 별도의 사무소를 갖추도록 하는 것은 영업자에 큰 부담으로 작용함.

2) 이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상 개별화물자동차로 영업활동을 하는 식품운반업자의 경우에는 사무소 구비를 면제함.

3) 개별화물자동차를 이용한 식품운반업자의 부담 완화 및 합리적인 규제 운용으로 영세업자의 영업 진입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됨

라. 식품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가격표시 의무 위반 시 행정처분 완화(안 제1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1)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및 식품접객영업자는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붙이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행정처분토록 하고 있으나 동일한 위반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식품접객영업자에 비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행정처분이 과도하게 규정되어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식품접객업자: 시정명령(1차) ▶ 7일(2차) ▶ 15일(3차)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 영업정지 7일(1차) ▶ 15일(2차) ▶ 1개월(3차)

2) 이에 가격표시 의무 위반 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행정처분 기준을 식품접객업자와 동일하게 규정함.

3) 행정처분 기준 개선으로 인하여 합리적인 행정행위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마.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의 신고 전 위탁 생산 허용(안 제2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1호 바목)

1)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는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받거나 영업신고를 한 자에게만 위탁·의뢰받아 제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을 하려는 자는 시·군·구 등 지자체에 신고한 이후에만 위탁 제조 의뢰가 가능함에 따라, 제품 출시에 많은 시간 소요되는 등 영업활동에 어려움이 있음.

*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제조한 건강기능식품을 자신의 상표로 유통·판매하는 자

2) 이에 제조공정의 일부를 위탁한 경우에는 위탁 제조한 사실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도록 2년간 한시적으로 유예하도록 함.

3) 건강기능식품유통전문판매업자 진입장벽 완화함으로써 민원편의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바. 건강기능식품 위탁 제조 시 표시의무 경감(부칙 제2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 머목 관련)

- 1)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가 다른 건강기능식품제조업자에게 제조공정의 일부나 전부를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에는 영업자 준수사항에 따라 분기별 1회 이상 위탁 제조 관리상태 등을 점검하고 해당 제품에 위탁 제조한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제품의 한정된 표시공간에 제조공정의 전부를 위탁한 경우뿐만 아니라 일부를 위탁한 경우까지 모두 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를 위한 정보제공의 효과도 미미할 것으로 보임.
- 2) 이에 제조공정의 전부를 위탁한 경우에만 제품에 위탁 제조한 사실을 표시하도록 함.
- 3) 최소한의 소비자 알권리 보호를 도모함과 동시에 표시로 인한 업계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어 민원만족도 제고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임.

사. 안전관리책임자 특례 대상 의약품 확대(안 제3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6조제1항 및 제58조제2항)

- 1) 현행 법령상 혈액제제, 한약제, 원료의약품, 의료용 고압가스는 다른 의약품에 비해 완화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특례를 주고 있고 안전관리책임자 고용 의무도 면제되어 있는 반면에,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준수를 면제하도록 특례가 적용되고 있는 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아니하는 제품(소독제 등)은 오히려 안전관리책임자를 두도록 하고 있어 형평에 맞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음.
- 2) 이에 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아니하는 제품(소독제 등)에 대해서만 품목허가를 받은 자의 경우도 안전관리책임자를 두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
- 3) 의약품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함으로써 민원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아. 의약품의 첨부문서 기재사항 완화(안 제3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70조제3항)

- 1) 의약품의 용기나 포장에 기재해야 할 사항을 모두 기재한 경우라도 의약품에 첨부하는 문서에 사용기한이 경과된 의약품의 교환방법 등을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 2) 이에 의약품의 첨부문서 기재사항을 용기나 포장에 기재한 경우에는 첨부문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함.
- 3) 의약품의 표시기재 의무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민원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자. 화장품 제조판매관리자 고용 부담 완화(안 제4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8조제3항)

- 1) 현행 규정상 상시근로자가 없이 제조판매업을 경영하는 1인 기업의 제조판매업자의 경우에는 대표자가 제조판매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어 영세한 화장품 업계의 특성을 고려하고는 있으나, 10인 이하의 소규모 제조업체의 경우에도 일정한 자격을 갖춘 제조판매관리자의 고용 의무는 큰 부담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실정임.

* ('15 실적보고 기준) 제조판매업체(개소) 3,840 / 10인 이하 업체 2,897 (75%)

- 2) 이에 직원 수가 10인 이하의 제조판매업체의 경우에도 자격을 갖춘 대표자가 제조판매관리자를 겸직할 수 있도록 확대함.
- 3) 영세한 화장품 업계 특성을 고려한 규제 운영으로 화장품 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차. 유통화장품안전관리 위반 경중에 따른 행정처분 차등화(안 제4조, 화장품법 시행규칙 별표 7)

- 1) 현행 규정상 유통화장품의 안전관리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 품목 제조 또는 판매업무 정지 6개월(1차)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화장품에 표시한 내용량과 실제 내용량의 차이가 표시기준에 따른 허용오차를 위반한 경우에도 동일 처분을 적용하고 있으나, 내용량의 차이는 품질검사 부적합 등 다른 안전관리기준 위반사항과 비교해 볼 때 국민보건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거의 없고 위반행위의 경중도 작은 바, 처분 양형을 달리할 필요가 있음.
- 2) 이에 화장품에 표시한 내용량과 실제 내용량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 행정처분 개별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내용량의 허용오차에 따라 처분을 달리하고자 함.
- 3) 위반 경중에 따라 처분을 차등화함에 따라, 합리적인 처분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이 일괄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또는 각 법령소관 담당부서)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일괄개정 총괄)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optjyy@korea.kr
- 전화번호 : 043-719-1531
- 팩스 : 043-719-1500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소관부서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정책조정과
- 전자우편 : sky0701@korea.kr
- 전화번호 : 043-719-2014
- 팩스 : 043-719-2000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소관부서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건강기능식품정책과
- 전자우편 : hjm0514@korea.kr
- 전화번호 : 043-719-2465
- 팩스 : 043-719-2450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소관부서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의약품정책과

- 전자우편 : yeonjikim@korea.kr

- 전화번호 : 043-719-2621

- 팩스 : 043-719-2606

※ 화장품법 시행규칙 소관부서

- 일반우편 :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 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화장품정책과

- 전자우편 : ez0123@korea.kr

- 전화번호 : 043-719-3409

- 팩스 : 043-719-3400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www.mfds.go.kr)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거나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또는 각 법령 소관 담당부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정거래위원회공고제2016-53호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 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 일부개정(안) 입안예고

1. 개정취지

국내외 법령 등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여 고시의 적용범위, 표시·광고 의무사항 등을 수정하고, 기타 고시 내용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개정(안)의 주요내용

가. 국내외 법령 개정사항 반영

1) 어린이용품 제조·판매업 및 완구업종의 적용범위 수정(안 IV. 3-1. 나, 안 V. 1. 다.)

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상의 어린이용품, 완구 등의 정의규정 등이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으로 이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어린이용품 제조·판매업 및 완구업종의 적용 범위에서 법령명 등 수정

2) 건축물 분양 업종의 적용범위 수정(안 V. 3. 가.)

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적용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건축물 분양 업종의 적용제외범 위 수정

* 동법상 광고의무자가 “오피스텔로서 20실 이상인 것”을 분양하려는 사업자에서 “오피스텔로서 30실 이상인 것”을 분양하려는 사업자로 변경

※ 다른 법령에서 표시·광고하도록 한 사항은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의 적용이 배제됨

3) 유전자 변형물질 분야의 적용범위 수정(안 IV. 1-1. 가.)

가) 「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기준」 고시의 명칭이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으로 변경

됨에 따라 유전자 변형물질 분야의 적용범위에서 고시명 수정

4) 여객운송업의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수정(안 IV. 3-2. 다.)

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협약이 개정되어 항공기 안전정보의 공개를 금지함에 따라 여객운송업의 표시대상 중요정보 항목 수정

나. 고시 내용상 미비점 보완

- 1) “유전자재조합농·축·수산물”이라는 용어를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의 명칭인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로 변경(안 IV. 1-2)
- 2) 유전자 변형물질 분야의 농·수산물 생산·판매업 광고 예시 부분 중 “당해 식품” 부분을 “당해 농·수산물”로 변경(안 IV. 1-2. 나)
- 3) 대형 시설물 관련 표시대상 중요정보 중 “소관 법률에 의한 최근의 안전 관련 점검 일자 및 결과”는 범위가 불분명하므로 삭제(안 IV. 3-2. 라.)

다. 고시 개정(안)의 시행시기

- 1) 2016년 7월 1일 시행 예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참조 : 소비자안전정보과장, 전화 (044)200-4423, 팩스(044)200-4477)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http://www.ftc.go.kr>) → 정책/제도 →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56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49조의3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등록사실을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등록 업무	등록일
(가칭)주식회사 로만자산운용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6.5.25.
한국성장금융 투자운용 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3-14-1 전문사모집합투자업	2016.5.25.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57호

「은행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개혁의 일환으로 발표된 「제재개혁 추진방안」(2015. 9. 2.)에 따라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에서 기관제재로 전환하고 금전제재를 활성화하는 등 「은행법」 관련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임직원 제재 관련(안 제53조의2, 제54조, 제54조의2, 제54조의3)

현행 임원에 대한 직무정지 또는 해임권고 중 선택적 부과를 임원 해임 권고시 직무정지 병과가 가능토록 개정하고, 퇴임·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권한의 일부를 금감원에 위탁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한편, 은행 임직원에 대하여 5년(공소시효가 5년 초과시 해당 공소시효)이 경과하면 제재하지 않도록 하는 제재시효제도를 도입함.

나. 과징금 부과한도 인상 등(안 제65조의3, 제65조의8)

과징금 부과비율 한도를 현행 2%·10%에서 각각 5%·30%로 상향 조정하되 대주주와의 거래한도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부과한도를 위반금액의 40%에서 100%로 조정하고, 영업정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와 가산금 징수기간에 대한 상한을 각각 신설함.

다.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 등(안 제69조)

과태료 부과한도를 은행의 경우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임직원의 경우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되 현행 은행에 대한 1천만원·3천만원 한도인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는 각각 3천만원·5천만원으로 조정하고, 은행의 의무위반에 대한 임직원 과태료를 은행 과태료로 전환하여 위법행위 주체와 과태료 부과대상을 일치시키는 한편, 과태료 부과·징수업무를 금감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라. 기타 조문 정비(안 제34조의3, 제52조의2, 제67조)

「은행법」 개정(법률 제14129호, 7. 30. 시행)으로 자본금 감소가 신고에서 승인 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위반시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별칙 사항으로 개정하고, 금융사고 예방대책과 불공정영업행위 금지의무 준수대상 및 위반시 과태료 부과대상을 은행으로 일원화함.

3. 의견제출

동 개정법률안은 법률 제14129호 은행법(2016. 7. 30. 시행)을 기준으로 마련한 것으로, 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은행과, 전화 : 02-2100-2953, 팩스 : 02-2100-2948, 이메일 : fscbank@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지식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58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금전제재 활성화 등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의 후속조치로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중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1)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한도 인상 (안 제349조, 제428조, 제449조)

- 과태료 부과한도를 현행 5천만원(중대한위반), 1천만원(경미한 위반)에서 각각 1억원, 3천만원으로 일괄 인상
- 과징금의 경우 부과비율을 최대 5배 인상하되, 동일행위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제재수준도 추가적으로 고려

(2) 금전제재 간 유형 재조정 (안 제349조, 제446조, 제449조)

- 동일·유사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과징금·벌금이 상이하게 부과되어 불합리한 규제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칙*에 따라 금전제재 유형 재조정

(3) 임원 해임권고와 직무정지 병과근거 마련 (안 제422조)

- 임원 등에 대한 조치로서 해임권고와 직무정지의 병과가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

(4) 제재시효제도 도입 (안 제422조의2)

- 자본시장법상 임직원에 대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제재하지 않도록 하는 제재시효제도 도입

(5) 퇴직자 제재제도 보완 (안 제424조)

- 금융투자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와 마찬가지로 퇴임·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 중 경징계 권한을 금감원에 위탁하는 근거를 명확화

(6) 영업정지 같음 과징금 관련 시행령 위임근거 마련 (안 제428조)

- 영업정지 같음 과징금 부과금액 산정방식 등 세부사항을 시행령에서 정할 수 있도록 위임근거 마련

(7) 과태료 부과·징수업무 금감원 위탁 근거마련 (안 제449조)

- 과태료 관련 업무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금융위가 과태료 부과·징수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

3. 의견 제출

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 7. 11.(월)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자본시장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

-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전화 : 02-2100-2654
- 팩스 : 02-2100-2648
- 이메일 : econokdh@korea.kr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59호

「전자금융거래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15년 발표한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의 후속조치로서 금전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제재와 관련한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 가. 금전제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한도를 인상함 (안 제51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46조제2항)
- 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간 협력 강화, 업무효율성의 제고 등을 위해 과태료 부과·징수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51조제5항)
- 다. 전자금융거래법상 임직원에 대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제재하지 않도록 하는 제재시효제도를 도입함 (안 제39조의2)
- 라.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하지 않거나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임원으로 지정하지 않는 경우 또는 겸직금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근거를 마련함 (안 제51조제2항제2호 및 제3호)
- 마. 금융위원회가 퇴임·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조치내용을 해당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장에게 통보할 권한을 신설하고 동 권한의 일부를 금융감독원장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안 제39조의3)
- 바. 임원의 해임권고와 직무정지의 병과가 가능하도록 함 (안 제39조제6항)
- 사.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에서 개별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위임 근거

를 마련함 (안 제51조제4항)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전자금융과, 전화 : 02-2100-2971, 팩스 : 02-2100-2946, 이메일 : crisis@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전자금융과(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60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1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투자업 업무폐지사실을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상 호	폐지되는 업무	폐지일자
주식회사 굿웰스투자자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5-2-1 투자자문업 나. 6-2-1 투자일임업	2016.5.25
에스엔케이투자자문 주식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다음의 등록 업무단위 가. 5-2-1 투자자문업	2016.5.25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61호

「여신전문금융업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금융위원회 위원장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금융분야 제재개혁 추진방안(‘15.8월)」의 후속조치로 금전제재 부과금액을 현실화 하는 등 제재수단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한편, 여신전문금융업 관련 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 사항을 반영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금전제재 관련 제도개선

- ㉠ 과징금 부과금액 한도 상향(안 제58조)

- 과징금 부과한도를 사안에 따라 기존 5천만원인 경우에는 2억원으로, 기존 1억원인 경우에는 3억원으로 각각 상향 조정
- 대주주와의 거래한도(신용공여, 주식 보유) 위반에 대한 과징금 한도는 기존의 위반금액의 20%에서 위반금액 전체로 상향
- 부동산 취득제한 위반시 과징금 한도는 기존 1억원에서 취득한(또는 초과 취득한) 부동산 취득가액의 30%로 부과방식을 변경

② 과태료 부과금액 한도 상향 등(안 제72조)

- 고객응대직원 보호조치 의무 위반 및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한도를 현행 1천만원('16.9.30일 시행)에서 3천만원과 5천만원으로 각각 상향
- 부수업무 신고 의무 위반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한도 5천만원)
- 감독업무의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 위탁

③ 제재시효 제도 도입(안 제53조의4)

- 금융기관 임직원에게 대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제재하지 않도록 하는 제재시효제도 도입
- * 제재시효는 5년으로 하되, 공소시효가 5년보다 긴 형벌조항 위반시 공소시효를 적용

나. 신기술사업금융업 등 여전업 규제 완화

①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투자 대상인 “신기술사업자”의 범위를 현행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을 포함하여 확대(안 제2조)

- 신기술금융시장이 투자 위주로 개편된 점을 감안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에 대한 용자한도 규제 폐지(안 제45조)

② 시설대여 물건에 대한 표지 부착의무 등 삭제(안 제36조)

- 시설대여업자에게 시설대여 물건에 대해 시설대여 등을 나타내는 표지를 부착하도록 하는 의무를 폐지
- * 시설대여 등의 대상이 되는 물건을 무단으로 양도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운영의 실효성이 크지 않고 시설대여 이용자에게 불편을 초래

③ 여전업 등록 제한 사유 완화(안 제 6조)

- 금융회사 및 그 대주주가 최근 3년간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위반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에는 등록 결격요건에서 제외
- * 금융투자, 보험 등 타업권의 경우 경미한 사항은 결격사유에서 제외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기업과, 전화 : 02-2100-2992, 팩스 : 02-2100-2999, 이메일 : yangbg84@korea.kr)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기업과(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62호

「신용협동조합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신용협동조합의 자산규모가 지속적으로 증대되고, 재무상태개선조치 조합수도 전체의 7분의 1 수준에 이르고 있어, 조합 건전성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므로, 법정적립금의 적립기준을 상향하고, 영업행위의 기준 및 금전제재의 수준을 타 금융업권과 유사한 수준으로 개선하며, 중앙회장 비상임 전환에 따른 기존 중앙회장의 직무를 담당할 상임임원 선임을 통해 경영전문가에 의한 책임경영을 제고하는 한편, 조합이 중앙회에 예치하는 여유자금을 운용성과에 따라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게 하여 중앙회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등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합의 지사무소 설치 절차 간소화(안 제9조)

- 1) 현재 조합은 중앙회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지사무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지연을 야기할 수 있으며, 조합의 운영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측면이 있음
- 2) 조합이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사무소를 둘 수 있게 하여 영업에 대한 자율성을 제고하고자 함

나. 조합의 사업범위에 외국환업무 추가(안 제39조, 제95조)

- 1) 현재 조합은 외국환거래법령에 따라 환전업 등을 영위하고 있으나, 신용협동조합법에는 조합의 사업 종류로 외국환업무가 명시되지 않아 이를 명확히 할 필요
- 2) 조합의 사업범위에 외국환업무를 추가하고, 농·수·산림조합에도 적용

다. 상호금융업권 불공정한 여신거래 금지(안 제39조의2, 제95조)

- 1) 현재 상호금융업권은 불공정한 여신거래(일명 ‘썩기’)를 내규로 제한하고 있으나 법령에 근거가 미비한 문제가 있음
- 2) 차주의 의사에 반하는 상품의 가입·매입을 강요하는 행위 및 조합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차주의 권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행위를 제한하여 상호금융을 이용하는 서민 등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금융관행 정착에 기여하고자 함
- 3) 불공정한 여신거래의 세부적인 유형과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불공정한 여신거래 금지 규정을 농·수협 및 산림조합에도 적용하도록 함

라. 고객응대직원(일명 ‘감정노동자’) 보호(안 제39조의3, 제95조, 제101조)

- 1) 금융기관의 고객 대면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는 인격 무시나 폭언 등에 노출되어 있는데, 최근 금융업계가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고객만족’을 강조함에 따라 ‘감정노동’의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조합은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실정

- 2) 조합의 직원에게 특정 고객을 기피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직원에 대한 상담·치료 지원 및 상시적 고충처리기구 운영 등을 통해 직원을 보호하고자 함
- 3) 또한, 직원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거나,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조합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고객응대직원 보호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며, 농·수·산림조합에도 적용함
- 마. 법정적립금 적립기준 상향 및 용도 완화(안 제49조, 제52조)
- 1) 현재 조합은 매년 이익금의 100분의 10 이상을 출자금의 2배가 될 때까지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있으나, 타 상호금융기관에 비하여 자기자본대비 법정적립금이 현저히 낮아 재무상태의 개선이 필요하며, 법정적립금을 손실보전 용도로 사용할 수 없어 적립금을 적절하게 활용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2) 매년 이익금의 100분의 20 이상을 출자금의 2배가 될 때까지 법정적립금으로 적립하도록 하고, 법정적립금을 손실보전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신탁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손실금의 처리를 용이하게 함
- 바. 합병 후 존속조합의 등기비용 등 부담 완화(안 제55조)
- 1) 조합 간 합병 후 피합병 조합의 재산 등에 대하여 존속조합 등이 별도의 이전등기 등의 절차를 통하여 근저당권 등 제반권리를 행사하나, 이 경우 많은 등기비용, 인력 및 시간이 소요되는 문제
- 2) 조합 간 합병 이후 등기부 등 공부에 표시된 소멸된 조합의 명의는 존속하거나 설립된 조합의 명의로 간주하여 명의의 변경등기 만으로도 권리의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여 이전등기에 소요되는 비용, 인력, 시간의 절감을 통해 업무부담 경감 및 존속조합의 건전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사. 중앙회 지배구조 개선(안 제71조, 제71조의2, 제71조의 3, 제72조, 제72조의2, 제73조, 제75조, 제76조의4)
- 1) 현재 중앙회장은 비상임으로 전환되었으나 업무 권한은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 제고'라는 비상임으로의 전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고, 상임임원의 직무대행 관련 규정 미비로 상임임원 궐위 시 중앙회 운영이 불안정해질 우려 상존
- 2) 중앙회장이 '조합과 그 조합원의 권익 증진을 위한 활동 및 그 대외활동'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서, 협회조직의 대표로서의 역할에 충실할 것으로 기대
- 3) 전무이사를 신규로 선임하여, 중앙회장 및 타 상임임원의 직무를 제외한 중앙회의 모든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을 도모함
- 4) 각 상임임원에게 경영목표 설정, 사업계획 및 자금계획 수립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이사회는 상임임원에 대한 경영평가를 수행하게 하여, 상임임원의 책임경영 및 이사회의 경영진에 대한 감시·견제 기능을 제고하고자 함
- 5) 상임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임원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함으로써, 상임임원의 궐위 시에도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 아. 중앙회의 조합 여유자금 운영성과 배분 합리화(안 제78조)
- 1) 중앙회는 조합이 중앙회에 예치하는 여유자금을 운용하여 그 실적에 따라 이익은 조합에 배분하고 손실은 중앙회에 귀속하는 불합리 존재
- 2) 여유자금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을 모두 조합에 공평하게 배분함으로써 중앙회의 경영 정상화를 도모하고자 함

자. 중앙회의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 제한에 대한 법률상 근거 규정(안 제78조)

- 1) 현행 신용협동조합법은 조합에 대해 업무용 부동산 이외의 부동산 소유를 제한하고 있으나, 중앙회에 대하여는 법률에 위임 없이 대통령령으로 제한하여 법령상 근거가 불명확함
- 2) 조합의 부동산 소유를 제한하는 법 제45조를 준용하여 중앙회의 부동산 소유제한에 대한 법령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차. 중앙회에 대한 예탁금 등 대위변제청구권의 소멸시효 단축(안 제80조의2)

- 1) 조합이 예탁금 등을 조합원 등에게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조합원 등의 중앙회에 대한 변제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타 예금보호기관과 달리 민법상 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이 적용됨에 따라 파산재단의 운영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파산재단 소멸 이후에는 중앙회의 대위변제채권에 대한 배당이 불가하여 예금자보호기금이 추가로 소요되는 문제점 발생
- 2) 중앙회에 대한 변제금청구권 소멸시효를 변제금 지급 개시일부터 5년으로 정하고, 변제금청구권의 행사를 촉구하기 위하여 예금자 등에게 안내·통지 등을 하더라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하는 등, 타 금융권과 동일하게 규정하여 예금자보호제도의 통일성 및 안정성을 기하고, 배당이 불가능한 대위변제를 최소화함으로써 예금자보호기금의 손실이 최소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카. 금전제재 개선 및 제재시효 신설 등(안 제30조의2, 제84조, 제85조의2, 제95조, 제99조, 제101조)

- 1) 임직원에 대한 행정처분의 시효를 도입하여 보수적 업무행태의 개선을 유도하고, 감독당국이 오래된 행위의 위법·부당성 입증에 역량을 쏟는 비효율을 해소하고자 함
- 2) 과태료 부과금액을 상향하여 징벌의 효과를 제고하고, 과태료 부과로 제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단순 질서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형사벌인 벌금에서 행정벌인 과태료로 전환하고자 함
- 3) 금융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및 고객응대직원에 대한 보호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여,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조합이 직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도록 함
- 4) 임직원의 수뢰 뿐만 아니라 횡령·배임·사적금전대차 등에도 제재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동 규정을 농·수·산림조합에도 적용
- 5) 퇴임한 임원, 퇴직한 직원, 조합 및 중앙회에 대한 행정처분과 행정처분의 시효, 동일인 대출한도 위반 등에 대한 벌칙 규정 및 과태료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농·수·산림조합 및 각 중앙회에도 적용하여 상호금융업권의 균질한 제재가 가능하도록 함
- 6)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등에서 정하는 조합 또는 중앙회 임원에 대한 제재 종류를 반영하여 ‘견책’을 ‘문책경고’, ‘주의적경고’로 변경
- 7)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업무를 금감원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 협력 강화 및 업무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타. 벌칙 관련 중앙회 임직원의 공무원 의제(안 제99조의2)

- 1) 신탁중앙회 임직원은 금융감독원장 등에게 위탁받은 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임직원이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하더라도 형법상 수뢰죄 등이 적용되지 않는 등 처벌에 한계가 존재
- 2)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장이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 신탁중앙회 임직원의 수뢰죄 등(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 적용에 있어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부패예방 효과를 제고하고자 함

과. 용어 정비(안 제24조, 제89조)

- 1) 일반기업회계기준 등 실무에 널리 쓰이는 용어를 반영하여 '대차대조표'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함
- 2) '시달(示達)'은 우월적 지위에서 명령하는 의미의 권위적 용어이므로 이를 '통보'로 변경하여 국민들의 법령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중소기업과, 전화: 02-2100-2994, 팩스: 02-2100-2999, 이메일 : zero@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일부개정법률안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중소기업과(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63호

「금융지주회사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에서 '기관·금전제재'로 전환하기 위한 「제재개혁 추진방안」(15.9.2)의 내용과 「금융지주 경쟁력 강화방안」(15.6.22) 관련 법률 개정사항을 법률에 반영하는 한편, 퇴직자 제재제도 보완 등 기타 제재제도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한도 인상(안 제64조제1항, 제72조제1항·제2항)

- 1) 금융지주회사법은 36여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부과한도는 1천만원 또는 5천만원으로 제재에 부족한 수준이고 금융지주회사법 상 과태료 부과한도는 업권 규모 및 공정거래법 상 과태료 부과한도와 비교하더라도 매우 낮은 편인 바, 금전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금융지주회사, 대주주 등은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임직원 등 개인은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과태료 부과한도를 인상함
- 2) 금융지주회사법은 대주주와의 신용공여 한도초과 등 20여개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위반금액에 비해 현저히 적은 금액이 부과되어 징벌·제재 효과가 부족한 바, 과징금 부과비율을 약 3배 인상하여 과징금 부과금액이 평균 3배 이상되도록 개정하고 대주주와의 거래한도(신용공여, 증권 취득)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은행지주(40%)와 비은행지주(20%) 간 규제차익이 없도록 부과한도를 위반금액의 100%로 인상함

나.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제재시효제도 도입(안 제57조의4)

금융법에는 공정거래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과 달리 제재시효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금융지주회사등 임직원이 아주 오래된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가능성에 노출되어 보수적 행태가 심화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감독당국도 오래된 행위의 위법·부당성 입증에 역량을 쏟는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지주회사등 임직원(퇴임·퇴직한 임직원 포함)에 대하여 일정기간(5년, 공소시효가 5년보다 긴 형벌조항 위반은 해당 공소시효)이 경과하면 제재하지 않도록 하는 제재시효제도를 도입한다.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제도 도입(안 제64조제2항)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은 영업정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정지에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동 제도의 취지는 공익성이 큰 사업에 영업정지 처분 대신 금전제재를 부과하여 이용자 불편을 방지하고 공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바, 금융위 소관법 중 4개 법률(자본시장법, 여전법, 전자금융거래법, 공인회계사법)에 既 도입되어 있는 동 제도를 금융지주회사법에 도입한다.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 금융감독원 위탁 근거 마련(안 제72조제4항)

금융위/원 간 협력강화, 업무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금융위가 과태료 부과·징수업무를 금융감독원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금감원이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사항을 분기별로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보완방안을 함께 명시함

마. 금융지주의 PEF 투자계약 해소(안 제26조제1항, 제32조제1항·제3항, 제43조의3)

투자활성화를 위해 비은행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이하 'PEF')의 무한책임사원(GP)인 경우 발행주식의 100%를 소유하지 않더라도 해당 PEF를 증손회사로 인정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PEF의 경우 유한책임사원(LP)의 존재로 그 성질상 발행주식 100% 소유가 불가능하여 손자회사가 국내 PEF를 운용할 수 없었던 문제점을 개선함

바. 임직원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공백 보완(안 제57조제1항)

현행 행정 제재처분 근거 조항(제57조)에 금융지주회사등의 소속 임직원 포함 여부가 명시되지 않아 논란이 있으므로 임직원에 대한 처분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함

사. 임원 해임권고와 직무정지의 병과 근거 마련(안 제57조제4항, 제57조의3제4항)

임원 해임권고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원 해임권고시 직무정지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명시함

아. 퇴직자 제재 관련 금감원 위탁근거 정비(안 제57조의2제1항)

퇴임·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조치에 논란이 있으므로 금융지주회사법 상 규정을 보완하고 현직 임직원에 대한 제재와 마찬가지로 퇴임·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 중 일부 권한을 금감원에 위탁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타법(은행법·자본시장법 등)과 마찬가지로 모든 제재조치에 대하여 퇴임·퇴직한 임직원에게 통보가 가능하도록 개정함

자. 과징금의 가산금 상한 설정(안 제69조제1항)

과징금에 대한 가산금 징수기간이 60개월을 넘지 않도록 상한을 설정하여, 과징금 체납자의 과중한 부담을 완화하고 가산금 상한이 있는 다른 제도(공정거래법, 개인정보보호법)와의 형평을 도모함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

제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제도팀, 전화: 02-2100-2842, 팩스: 02-2100-2849, 이메일 : ypyunglee@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제도팀(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64호

금융투자업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 호 : 브레인자산운용(주)

2. 인가업무

인가업무 단위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
3-11-1	집합투자업	증권, 단기금융 집합투자기구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3. 인가일 : 2016. 5. 25.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65호

금융투자업 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인가하였기에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조제6항에 의거 동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1. 상 호 : 아이비케이투자증권(주)

2. 인가업무

인가업무 단위	금융투자업의 종류	금융투자상품의 범위	투자자의 유형
4-1-1	신탁업	종합	일반투자자 및 전문투자자

3. 인가일 : 2016. 5. 25.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66호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에서 '기관·금전제재'로 전환하기 위한 「제재개혁 추진방안」의 내용과 퇴직자 제재제도 보완 등 기타 제재제도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 (안 제4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44개 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부과한도는 1천만원, 3천만원, 5천만원으로 제재에 부족한 수준인 바, 금전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금융회사, 대주주 등은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임직원 등 개인은 현행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과태료 부과한도를 인상함

나.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제재시효제도 도입 (안 제35조의2)

금융법에는 공정거래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과 달리 제재시효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금융회사 임직원이 아주 오래된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가능성에 노출되어 보수적 행태가 심화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감독당국도 오래된 행위의 위법·부당성 입증에 역량을 쏟는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퇴임·퇴직한 임직원 포함)에 대하여 일정기간(5년, 공소시효가 5년보다 긴 형벌조항 위반은 해당 공소시효)이 경과하면 제재하지 않도록 하는 제재시효제도를 도입함

다. 임원 해임요구와 직무정지의 병과 근거 마련 (안 제35조제1항)

임원 해임요구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원 해임요구시 직무정지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명시함

라. 퇴직자 제재 관련 금융감독원 위탁근거 정비 (안 제35조제6항)

퇴임·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조치에 논란이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 현직 임직원에 대한 제재와 마찬가지로 퇴임·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 중 일부 권한을 금감원에 위탁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여타 법률과 마찬가지로 모든 제재조치에 대하여 퇴임·퇴직한 임직원에게 통보가 가능하도록 개정함

마.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의 금융감독원 위탁 근거 마련 (안 제43조제5항)

금융위·원 간 협력강화, 업무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금융위가 과태료 부과·징수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금감원이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사항을 분기별로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보완방안을 함께 명시함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정책과, 전화: 02-2100-2833, 팩스: 02-2100-2849, 이메일 : joons@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67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회사 검사 및 제재개혁의 일환으로 발표된 「제재개혁 추진방안」(15.9.2)의 내용을 법률에 반영하여,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에서 ‘기관·금전제재’로 전환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함

2. 주요 내용

가. 과태료 부과한도 인상 (안 제21조제1항~제2항)

현행 5백만원, 2천만원의 과태료 부과금액을 각각 1천만원, 5천만원으로 상향하여 징벌 효과를 개선 하되, 검사 거부·방해 등 현행 5백만원 또는 2천만원 부과사항 중 다른 법에서 重하게 제재하는 사항(5천만원)은 법률간 제재 형평, 기관제재의 실효성 제고 등을 감안하여 5천만원으로 한도를 인상함
나.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제도 도입 (안 제14조의2제2항)

대부업법상 영업정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제도 도입하여, 과징금 부과한도를 ‘영업정지기간의 이익’으로 규정하고 과징금 부과금액 산정방식 등 세부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함

다. 제재시효제도 신설 (안 제13조의2)

대부업자등의 임직원에 대하여 위반행위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제재하지 않도록 하는 제재시효 제도 도입하여, 제재시효를 5년으로 하되, 공소시효가 5년보다 긴 형벌조항 위반의 경우에는 공소 시효를 적용하도록 함

라. 과태료 부과·징수업무 금감원 위탁 (안 제21조제5항)

금융위 및 금융감독원 간 협력강화, 업무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금융위가 과태료 부과·징수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금감원이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사항을 분기별로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보완방안을 함께 명시함

마. 퇴직자 제재 관련 금감원 위탁근거 정비 (안 제13조제7항)

퇴직한 은행직원에 대한 금감원 제재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오에 따라, 은행법(제54조의2)과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는 대부업법 제13조제7항의 규정을 보완하고, 현직 임직원에 대한 제재와 마찬가지로 퇴임·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 中 경징계 권한을 금감원에 위탁하는 근거를 명확히 함

3. 의견제출

이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전화 : 02-2100-2613, 팩스 : 02-2100-2629, 이메일 : surfin9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주소 : 03171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금융위원회공고제2016-168호

「보험업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금융위원회위원장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제재의 중심축을 ‘개인제재’에서 ‘기관·금전제재’로 전환하기 위한 「제재개혁 추진방안」(‘15.9.2)의 내용을 법률에 반영하는 한편, 퇴직자 제재제도 등 기타 제재제도 사항을 개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과태료 및 과징금 부과한도 인상(안 제209조제1항·제5항·제6항, 제196조제1항)

1) 보험업법은 보험회사 등의 범위반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부과한도는 5천만원으로 효과적인 제재에 부족한 수준이고 보험업법상 과태료 부과한도는 업권 규모 및 공정거래법 상 과태료 부과한도와 비교하더라도 매우 낮은 편인 바, 금전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보험회사,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은 현행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홈쇼핑 보험대리점의 모집광고 관련 준수사항 위반에 대해서는 현행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과태료 부과한도를 인상함

2) 보험업법은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초과 등 위반행위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나 위반금액에 비해 현저히 적은 금액이 부과되어 징벌·제재 효과가 부족한 바, 과징금 부과비율을 약 3배 인상하여 과징금 부과금액이 평균 3배 이상되도록 개정하고 대주주와의 거래한도(신용공여, 증권 취득) 위반에 대한 과징금은 다른 금융업권간 규제 형평성을 위하여 부과한도를 위반금액의 100%로 인상함

나.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제재시효제도 도입(안 제135조의2)

금융법에는 공정거래법·질서위반행위규제법 등과 달리 제재시효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으므로, 보험회사등 임직원이 아주 오래된 행위에 대해서도 제재가능성에 노출되어 보수적 행태가 심화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감독당국도 오래된 행위의 위법·부당성 입증에 역량을 쏟는 비효율을 해소하기 위해 보험회사등 임직원(퇴임·퇴직한 임직원 포함)에 대하여 일정기간(5년, 공소시효가 5년보다 긴 형벌조항 위반은 해당 공소시효)이 경과하면 제재하지 않도록 하는 제재시효제도를 도입함

다. 보험회사 및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에 대한 영업정지 같음 과징금 제도 도입(안 제196조제5항·제6항)

영업정지 같음 과징금은 영업정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정지에 같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써 동 제도의 취지는 공익성이 큰 사업에 영업정지 처분 대신 금전제재를 부과하여 이용자 불편을 방지하고 공익을 보호하거나 크거나 영업정지시 대형 법인보험대리점에 소속된 영세한 보험설계사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인 바, 금융위 소관법 중 4개 법률(자본시장법, 여

전법, 전자금융거래법, 공인회계사법)에 이미 도입되어 있는 동 제도를 보험업법에 도입함
라.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의 금융감독원 위탁 근거 마련(안 제209조제8항)

금융위/원 간 협력강화, 업무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금융위가 과태료 부과·징수업무를 금융감독원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금감원이 과태료 부과·징수 관련 사항을 분기별로 금융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보완방안을 함께 명시함

마. 임원 해임권고와 직무정지의 병과 근거 마련(안 제134조제1항)

임원 해임권고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임원 해임권고시 직무정지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명시함

바. 퇴직자 제재 관련 금감원 위탁근거 정비(안 제135조제1항)

퇴임·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금감원의 제재조치에 논란이 있으므로 보험업법상 규정을 보완하고 현직 임직원에 대한 제재와 마찬가지로 퇴임·퇴직한 임직원에 대한 제재 중 일부 권한을 금감원에 위탁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는 한편, 다른 법률(은행법·자본시장법 등)과 마찬가지로 모든 제재 조치에 대하여 퇴임·퇴직한 임직원에게 통보가 가능하도록 개정함

3. 의견제출

이 법률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7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 (<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금융위원회(참조 : 보험과, 전화: 02-2100-2962, 팩스: 02-2100-2947, 이메일 : iskra21@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 의견과 그 사유 및 기타 참고사항)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금융위원회 보험과(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 자세한 사항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www.fsc.go.kr/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256호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범정부 과학기술 정책 총괄 기능 강화를 위한 과학기술전략회의 출범에 따른 지원체제 체계 마련을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 하부 조직의 일부 기능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 . . 공포·시행)됨에 따라, 과학기술전략본부에 성과평가혁신관, 성과평가혁신총괄과, 성과평가과를 폐지하고, 연구성과평가과를 신설하는 등 미래창조과학부 하부 조직의 일부 기능을 조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참조: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제4동, 미래창조과학부 창조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13809)
- 전화: 02 - 2110-2217, 팩스: 02-2110-0207, 이메일: soojeong@korea.kr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6-258호

「과학기술전략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미래창조과학부장관

과학기술전략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세계적인 과학기술 변화에 대한 범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신속하고도 전략적인 대응을 위해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신설하여 과학기술 전 분야의 혁신과 전략적인 연구개발 등에 대한 의사결정을 체계화 마련하는 한편, 과학기술전략회의를 실무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과학기술전략회의지원단’의 구성과 기능, 공무원 및 관계기관 임·직원에 대한 파견 요청 등 과학기술전략회의지원단의 운영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가. 과학기술전략회의 설치 및 기능 (안 제2조)

- 1) 국가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학기술 혁신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을 위해 대통령을 의장으로 하는 과학기술전략회의를 둠
- 2) 과학기술전략회의는 과학기술 혁신 정책을 총괄하고, 중요·시급한 과학기술 분야 현안 등에 대한 심의·조정 역할을 수행함

나. 과학기술전략회의 구성 및 운영 (안 제2조)

의장은 대통령이 되고 관계 중앙 행정기관의 장과 대통령비서실의 관계 수석비서관이 위원으로 참여하되, 사안에 따라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함

다. 과학기술전략회의지원단 설치 (안 제4조)

과학기술전략회의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의 공무원과 관계 기관·단체의 임직원으로 구

성되는 과학기술전략회의지원단을 미래창조과학부에 설치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미래창조과학부(참조: 과학기술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제4동,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정책과 (우편번호 13809)

- 전화: 02-2110-2525, 팩스: 02-2110-0249, 이메일: kiseok@korea.kr

3. 기 타

입법예고와 관련하여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http://www.msip.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부공고제2016-161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행정자치부장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관광·문화시설 등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에 의한 장기대부 허용과 대부료 감면을 확대하고, 대부료·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을 시중 변동금리를 반영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푸드트럭의 이동영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사용·수익허가 방식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자리창출시설 수의계약 장기대부 확대(안 제29조)

현재 공장 및 연구시설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에 의한 20년 장기대부를 허용하던 것을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관광·문화시설 등에 대해서도 동일혜택을 부여하도록 개선

나. 일자리창출시설 대부료 감면(안 제35조)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일자리창출 시설의 경우 대부료를 5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다. 사용료·대부료·매각대금·교환차금·과오납금 분할납부 이자율 조정(안 제11조의3, 제14조, 제32조, 제39조, 제45조, 제82조)

현재 대부료·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조례로 이자(연 2~6%범위 내)를 정하도록 하던 것을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개선함
라. 대부 입찰시 '지역영향평가 낙찰제' 도입(안 제26조)

최고가 낙찰제를 보완한 '지역영향평가 낙찰제'를 도입하여 지자체에서 가격 외 일자리창출 효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여 계약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마. 푸드트럭 이동영업을 위한 새로운 사용·수익허가 방식 도입(안 제13조, 제14조)

푸드트럭의 이동영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여러 장소를 지정하여 요건에 맞는 여러 사람에게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용료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징수하도록 함

바. 지자체 출차·출연 비영리 공공법인·공법인에 대한 사용·수익허가 시 수익계약 및 사용료 감면
(안 제13조, 제17조)

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규정 등 삭제(안 제30조, 제32조, 제35조)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공유재산 대부규정 등이 대폭 정비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적용하도록 관련 내용 삭제

아.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한 대부료 감면(안 제35조)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만 대부료를 감면하던 것을 유사 성격의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해서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자. 대법원의 권고에 따라 용도지정 매각 시 특약등기 효력이 소멸한 때 토지소유자에게 말소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37조의3, 제46조)

차.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재해복구 등에 필요한 물품을 무상 대부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75조)

카. 불용농기계에 대한 수익매각 근거 마련(안 제78조)

처분단가 500만원 이하, 총액 1천만원 이하의 불용농기계를 해당지역 농민에게 수익계약으로 매각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6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315호(우 03171)
- 전자우편 : ck6931@korea.kr
- 팩스 : 02-2100-35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전화 02-2100-3586, 팩스 02-2100-35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6-149호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무자격 자에 대한 과태료 규정이 신설되는 등 관광진흥법이 개정(법률 제13958호)됨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제도를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무자격자를 관광통역에 종사하게 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안 별표 2 개정)
 - 등록취소 기준 : 4회 위반 시 → 3회 위반 시로 강화
- 자격 없이 외국인 관광객 대상 관광안내를 한자 및 자격증을 패용하지 않고 관광안내를 한자에 대한 과태료 기준 설정(안 별표 5 개정)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사. 법 제38조제6항을 위반하여 관광통역안내를 한자	법 제86조 제2항제4의4	50	100	100
아. 법 제38조제7항을 위반하여 자격증을 패용하지 아니한 자	법 제86조제2항제4의5	3	3	3

- 카지노업의 신규허가 시 공고 규정이 법률에 반영됨에 따라, 시행령 관련 조항을 삭제(안 제27조 제4항)

3. 의견제출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7월 1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행정예고)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사유 포함)

나. 제출자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국제관광기획과(우편번호 30119)
- 이메일 : shvdl@korea.kr
- 전화 : 044-203-2866, 팩스 : 044-203-3480

●산업자원통상부공고제2016-266호

2016년 제18회 대한민국디자인대상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266호(2016.5.25)에 공고된 2016년도 제18회 대한민국디자인대상에 대하여 산업디자인진흥법 제7조 제7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의 명칭 : 제 18회 대한민국디자인대상

2. 사업의 개요

- 21세기 창조경제를 이끌어가는 디자인경영 선도기업, 지자체 및 산업발전의 주역을 찾아 대한민국디자인계 최고의 영예를 수여하고자 합니다.

- 1. 포상부문

구분	포상의 종류	신청자격
디자인경영 부문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대통령표창) ● 최우수상(국무총리표창) ● 우수상(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 경영전략을 수립하여 이의 개발 및 투자, 인재양성 등을 통해 탁월한 경영성과를 거두고 산업 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크게 공헌한 기업 또는 사업부문
지방자치단체 부문 (단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대통령표창) ● 최우수상(국무총리표창) ● 우수상(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을 다양한 도구로 활용하여 괄목할만한 발전을 보여준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 도시의 산업, 교육기관, 디자이너와 해당 도시만이 개별적, 공동체적으로 디자인의 무한한 가능성을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자체(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디자인공로 부문 (개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장 및 포장* ● 대통령표창 ● 국무총리표창 ● 산업통상자원부장관표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디자인 육성에 공헌한 자로서, 기업의 디자인경영 활성화와 진흥에 크게 기여한 자 ● 디자인 연구 저술 등을 통해 산업발전에 크게 기여한자 ● 디자인 정책방향 제시 등 관련정책 수립에 기여한자 ● 한국 디자인의 위상을 널리 알린 자 예) 기업CEO, 임원, 디자이너, 공무원, 정치인, 학계인사, 연예인 등 ※ 국내 디자인산업 진흥에 공헌한 외국인 포함

* 디자인공로부문 훈·포장은 접수단계부터 후보자가 희망 상격을 정해 신청하고 상격별 심사를 거쳐 심사위원회가 공적심사위원회에 추천

** 훈격 및 수상인원은 공적심사위원회 및 정부포상지침에 따라 최종 확정

2. 신청기한 : 2016년 6월 28일(화) ~ 2016년 7월 28일(목)

3. 신청절차 : 직접신청 또는 발굴추진단 추천

4. 선정방법 : 서류심사 및 발표심사

5. 문의접수

- 전 화 : 031-780-2163 / 팩 스 : 031-780-2120 / 이메일 : hlee0227@kidp.or.kr

-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한국디자인진흥원 전시·브랜드팀 (우편번호.13496)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http://www.kidp.or.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6-267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6-266호(2016.5.25)에 공고된 산업디자인진흥법시행령 제7조에 의해 제18회 대한민국디자인대상 포상요령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제18회 대한민국디자인대상 포상요령

1. 포상의 기본방향

- 창의적 디자인경영으로 국가디자인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디자인 개발·관리 및 육성으로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한 우수기업, 지자체, 유공자에 대하여 정부포상을 실시함
- 포상부문은 경영부문과 지자체부문, 공로부문으로 구분하여 포상
 - 경영부문은 디자인을 기업 경쟁력 강화의 주요 전략으로 추진하여 우수한 경영성과를 거둔 기업체(또는 사업부문)를 대상으로 함
 - 지방자치단체부문은 디자인을 다양한 도구로 활용하여 놀라운 발전을 보여준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함
 - 공로부문은 우수 디자인 개발·관리 및 육성을 통해 관련 디자인산업 진흥에 기여한 자로서 산업계 인사를 우선 고려' 함
- 디자인경영 및 진흥활동을 확산하기 위한 기업, 국내 디자인산업 진흥에 공헌한 일반국민 및 현장·실무직원들에 대한 포상기회를 확대함

2. 포상의 종류 (각 부문별 포상분류 및 포상종류)

부 문	포상분류 및 포상종류	비 고
디자인 경영부문	- 대상 (대통령 표창) - 최우수상 (국무총리 표창) - 우수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관계부처 협의 후 최종확정
지방자치단체 부문	- 대상 (대통령 표창) - 최우수상 (국무총리 표창) - 우수상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관계부처 협의 후 최종확정
디자인 공로부문	- 훈장·포장* (산업·근정) - 대통령 표창 - 국무총리 표창,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표창	관계부처 협의 후 최종확정

* 디자인공로부문 훈장·포장은 접수단계부터 후보자가 희망 상격을 정해 신청하고 상격별 심사를 거쳐 심사위원회가 공적심사위원회에 추천

** 훈격 및 수상인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공적심사위원회 및 정부포상지침에 따라 최종 확정

3. 포상신청 자격요건

가. 신청자격

부 문	신 청 자 격 요 건
디자인경영 부문	- 디자인 경영전략을 수립하여 디자인 개발 및 투자, 인재양성 등을 통해 탁월한 경영 성과를 거두고 산업 발전 및 국가 경쟁력 강화에 크게 공헌한 기업 또는 사업부문
지방자치단체 부문	- 디자인을 다양한 도구로 활용하여 괄목할만한 발전을 보여준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 디자인 정책수립으로 디자인의 무한한 가능성을 공동체적으로 실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디자인공로 부문	- 우수디자인 개발·관리 및 육성에 공헌한 자로서 기업의 디자인경영 활성화와 진흥에 크게 기여한 자 - 디자인 연구, 저술 등을 통해 산업발전에 공이 큰 자 - 디자인 정책방향 제시 등 관련정책 수립에 기여한 자 - 한국 디자인의 위상을 널리 알린 자 예) 기업CEO, 임원, 디자이너, 공무원, 정치인, 학계인사, 연예인 등 (외국인포함)

나. 재포상 금지

추천기관은 「상훈법」 제4조에서 정한 “중복 수여의 금지”,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2에서 정한 “같은 종류의 같은 등급 훈장 또는 포장의 수여 금지”와 이 지침에서 정한 포상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표창은 5년 이상 해당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표창의 경우, 단체 포함)에게 수여함. 다만, 퇴직공무원에 대한 포상은 별도의 기준에 따름
- 정부포상을 받은 자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자가 다시 정부포상을 받기 위해서는 훈장은 10년 이상, 포장은 7년 이상, 표창은 3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새로운 공적을 쌓아야 함
 - ※ 다만, 퇴직포상 및 정부시상은 재포상 금지기간 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 ※ 기 수여 받은 훈장(포장)과 동일종류, 동일등급 또는 하위 등급의 훈장은 다시 수여하지 않음 (상훈법 시행령 17조 2)
- 재포상 금지기간

받은 훈장 (표창)	받으려는 훈장(표창)			비 고
	훈장	포장	표창	
훈장	10년	7년	3년	기간) 수여일~추천일
포장	10년	7년	3년	
표창	10년	7년	3년	

- ※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훈·포장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함 (상훈법 제4조, 중서금지)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3년 이내에는 동일분야(디자인산업발전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 다만,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포장을 받은 자는 그 포장과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다. 신청제한

-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을 받은 자
 - 수사 중이거나,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3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포상추천일 전 3년 이내에 1회 벌금액이 200 만 원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법인 및 지자체행정기관)과 그 임원 등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 2, 동법 시행령 제8조의 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 이라 함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 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 제한

『사업상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조회』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함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 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포상결격사유)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3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2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명단이 공개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 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 제43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의4에 의한 체불사업주로서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전국은행연합회)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자 및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체불사업주와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은 체불사업주

* 포상추천일 이전 체불사건이 권리구제로 취하 또는 체불임금을 청산한 경우 추천 가능

○ 「국세기본법」 제85조의5, 「관세법」 제116조의2 또는 「지방세기본법」 제140조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 등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자

* (국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국세가 3억원 이상인 체납자의 인적사항, 체납액 등 공개

* (관세)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 등이 3억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는 그 인적사항과 체납액 등 공개

* (지방세)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가 1천만원 이상인 경우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 공개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언론보도 또는 소송·민원 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제3항 제1호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3항 제1호의 특수경력직공무원 중 선거에 의해 취임하는 공무원
 - 다만,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소속 기관에 단체표창을 추천할 수 있음
- 공적심사위원회 최종의결에 따라 포상이 결정된 자가 수상을 거부 또는 포기할 경우 다음해 신청 및 추천을 제한할 수 있음
- 기타 상훈법(정부포상업무지침 포함) 및 산업통상자원부 포상업무 지침 상 결격사유가 있는 자
 - ※ 정부포상 수여 이후 위 사항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을 회수할 수 있음

라. 외국인포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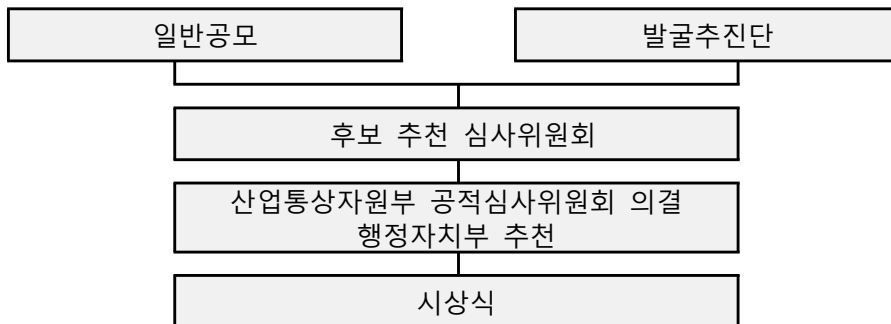
- 우리나라 국익증진 및 국가 디자인산업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

마. 단체표창

- 국가디자인산업발전에 뛰어난 업적을 쌓았거나 국가 사회의 이익과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기관 또는 기업 단체

4. 발굴추진단 운영

- 도입 취지 : 일반공모 외에 ‘발굴추진단’을 구성하여 기업, 숨은 유공자 등을 적극 발굴·추천하여 일반 공모 후보와 함께 심사함으로써 포상의 질 향상을 도모 하고자 함
- 운영 : 발굴추진단으로부터 대상처 및 대상자를 추천받아 심사 진행
- 추진 방법



5. 심사 및 선정방법

가. 후보 추천 심사위원회 심사기준

디자인경영 부문

- 심사항목

구분	심사항목(배점)	세부 심사항목
디자인경영 부문	디자인경영이념 및 전략(20)	- 최고경영자의 디자인경영 마인드 및 기여도 - 기업의 디자인경영 비전 확립정도 - 중장기 디자인경영전략
	디자인경영활동(40)	- 디자인관련 투자실태 - 디자인개발 시스템의 적정성 - 디자인관련 정보수집, 분석, 활용정도 - 디자인인력 능력개발 및 관리체계 - 디자인 보호실태 및 관리체계
	디자인경영성과(40)	- 우수 디자인성과 - 디자인경영실적 및 성장성 - 기업이 속한 국내외 해당시장에서의 경쟁력

- 가산점 부여기준
 - 해당 기업 총 수출액('15년 기준)의 50% 이상을 고유브랜드로 수출하고 있는 기업 (별도자료 제출기업에 한함)
 - 디자인 경영관련 내용으로 국내 *KCI, 해외 *SSCI, A&HCI 등재저널에 소개된 실적 (별도자료 제출기업에 한함)
 - * KCI (Korea Citation Index, 한국학술지인용색인), SSCI (Social Sciences Citation Index), A&HCI (Arts & Humanities Citation Index)
 - 최근 2년간('14년~'15년) 무분규선언 및 실천기업
 - ※ 최근 2년간('13년~'14년) 노사분규(파업) 발생 기업에 대해서는 감점 부여
 - 최근 2년간('14년~'15년) 디자인 인력 신규채용 증가
 - ※ 디자이너 재직관련 별도자료 제출 필수
- 지방자치단체 부문
 - 심사항목

구분	심사항목(배점)	세부 심사항목
지방자치단체 부문	디자인 정책이념 및 전략(30)	- 단체장의 디자인경영 마인드 및 추진의지 - 단체 디자인정책의 비전 확립정도 - 중장기 단체 디자인 계획 및 경영전략
	디자인경영활동 (40)	- 디자인 관련 투자실태 - 지자체디자인 관련 개발사례 및 도시환경 개선실적 - 디자인 지원실적 및 제도 - 디자인 관련 정보수집 및 활용 - 디자인 보호실태 및 관리체계
	디자인경영성과 (30)	- 디자인투자 및 개발을 통한 성과 - 도시환경 개선을 통한 도시민의 만족도 - 국내외 도시환경 개선 관련 수상실적

- 가산점 부여기준
 - 디자인 개발 및 진흥으로 국내외 정부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서 수상한 실적이 있는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 최근 3년간 국내외 우수디자인(GD)에 선정된 상품 또는 브랜드, 캐릭터, 해외유명 디자인공모전에서 수상한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 디자인 경영관련 내용으로 국내 *KCI, 해외 *SSCI, A&HCI 등재저널에 소개된 실적 (별도자료 제출단체에 한함)
 - * KCI(Korea Citation Index, 한국학술지인용색인), SSCI(Social Sciences Citation Index), A&HCI (Arts & Humanities Citation Index)
 - 국민편의시설(전통시장, 유통상가) 및 산업기반시설(산업단지)에 대한 디자인 개선 실적 등
- 디자인공로 부문
 - 심사항목

구분	심사항목(배점)	세부 심사항목
디자인공로	디자인 산업발전 기여도(50)	- 디자인 개발 및 홍보 등 산업 육성 활동 - 디자인 연구 및 저술 등 진흥 활동

인공로부문		- 우수 디자인 관련행사 참가 및 수상 실적
	디자인 정책수립 및 공헌도(30)	- 디자인 발전정책 제시 및 수립의 공헌도 - 국내외 디자인 관련기관의 유기적 협력 - 디자인 인지도 및 위상 강화 활동
	해당분야 공적기간 및 기타공적활동(20)	- 디자인관련 공적기간 및 활동 - 그 외 관련분야에 대한 공헌도

○ 가산점 부여 기준

- 디자인 개발 및 진흥으로 국내외 정부와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에서 수상한 실적이 있는 자
- 최근 3년간 국내외 우수디자인(GD)에 선정된 상품 디자이너 또는 해외유명 디자인공모전에서 수상한 디자이너
- 최근 10년간 대한민국디자인대상 수상업체의 공로자 (임원급이상)
- 대한민국디자인전람회 초대 및 추천디자이너
- 중소기업 소속 디자이너, 여성디자이너

나. 공적심사위원회 심사기준 (2016 정부업무포상지침 기준)

○ 공통지표 모델 (가중치 40%)

지 표 명	지표의 정의	가중치
국가발전기여도	심사대상자(개인, 단체)의 공적이 국가전반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 정도	10
국민생활향상도	심사대상자의 공적이 국민생활(삶의 질) 향상에 미친 긍정적 영향의 정도	10
고객만족도	심사대상자의 공적이 외부고객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한 정도	10
창조적기여도	심사대상자의 공적이 국가제도, 사회관행, 행정관례, 기업 운영 관행 등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기여한 정도	10

○ 특성지표 모델 (가중치 60%) ※ 디자인산업경제발전 및 사회발전

지 표 명	지표의 정의	가중치	비고
공적기간	당해분야에서 종사하거나 운영한 경력의 연수 (예 : 경영책임자경력, 재직기간, 기업경영 년 수 등)	10	15년이상: 훈장 10년이상: 포장 5년이상: 표창
업적도	당해분야의 필수적인 실적정도 및 업적수준 (예 : 수출, 국제대회입상, 기술개발, 봉사실적 등)	20	
기여도	당해분야 발전에 기여한 정도	10	
난이도	업적을 달성하기에 어려운 정도 (전문성, 노력, 전략, 열악한 환경 조건 등)	5	
평판도	당해분야 종사자 집단에 의한 평판 및 지지의 정도	5	
인지도	공적에 대한 국민 및 언론의 인지정도	5	
창조도	당해분야의 패러다임 변환정도	5	

다. 선정방법

- 디자인 관련 학계, 업계, 단체, 정부 및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 자체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최종 선정함
- 경영부문 및 지자체부문은 1차 서류심사 후 2차 PT심사(필요시 현지실사)
- 공로부문은 공적 심사기준에 의거 서류심사(필요시 현지실사)
- 다만, 포상심사위원회에서 추천된 훈·포장 수상 후보자에게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의한 추천 제한 사유가 발생하여 후보자 공백이 발생할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후보자를 추가 선정할 수 있음

6. 신청 접수 및 접수처

가. 신청기한 및 구비서류

부 문	신청기한	제출서류(구비서류)
디자인경영 부분	2016.6.28.(화)~ 2016.7.28(목)	- 신청서 및 업체현황설명서 등 각 9부(원본 1부, 사본 8부) - 정보이용동의서 1부 - 산업재해율 확인서 1부 - 모든 제출서류가 저장된 USB
지방자치단체 부분	2016.6.28(화)~ 2016.7.28(목)	- 신청서 및 단체현황설명서 등 각 9부(원본 1부, 사본 8부) - 정보이용동의서 1부 - 모든 제출서류가 저장된 USB
디자인공로 부분	2016.6.28.(화)~ 2016.7.28(목)	- 신청서(공직조서) 및 공직조서설명서기타(증빙서류) 등 각 9부(원본 1부, 사본 8부) - 정보이용동의서 1부 - 모든 제출서류가 저장된 USB

※ 제출서류 양식은 한국디자인진흥원 홈페이지(www.kidp.or.kr>문화확산>대한민국디자인대상)에서 각 부문별 신청양식을 다운받은 후 작성 제출

※ 모든 서류는 워드파일로 작성, 글자체는 신청양식에 지정되지 않은 경우 휴먼명조 또는 중고딕 10포인트로 작성 제출

나. 접수기관(안내처) : 한국디자인진흥원(문의전화 : 031-780-2163)

전시·브랜드팀	<방문 및 우편접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 322, 코리아디자인센터 7층 730호 (우. 13496) 전 화 : 031-780-2163 팩 스 : 031-780-2120 e-mail : hlee0227@kidp.or.kr ※ 우편접수는 마감일(7.28, 목) 18:00 도착분에 한함 ※ 접수마감일에는 방문접수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전화응대의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 접수 요망
---------	--

다. 신청료 : “없 음”

●국립전파연구원공고제2016-31호

방송통신기자재등 지정시험기관 변경지정

전파법 제58조의5(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1항, 전파법 시행령 제77조의8(시험기관의 지정 등) 제3항 및 방송통신기자재등 시험기관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8조(시험기관의 변경신청 등)의 규정에 따라 지정한 (주)원택의 지정사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국립전파연구원장

시험기관 명 (지정번호)	지정분야 및 시험종목	일자
(주)원택 (KR0013)	<input type="checkbox"/> 전자파적합성 시험분야에 아래의 시험종목을 변경 301-3 KN 11(산업, 과학, 의료용기기류/유도전류 시험 제외) → 301-1 KN 11(산업, 과학, 의료용기기류) 303-3 KN 14-1(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유도전류 시험 제외) → 303-1 KN 14-1(가정용 전기기기 및 전동기기류) 310-2 KN 62040-2(무정전전원장치/EMS공통, 16A 이상 시험 제외) → 310-1 KN 62040-2(무정전전원장치/EMS공통)	2016.05.25. 2016.05.25.

- 317-2 KN 51(전기철도기기류/펄스자기장시험 제외)
→ 317-1 KN 51(전기철도기기류)
- 327-2 KN 301 489-6(디지털 코드없는 전화기/음압시험 제외)
→ 327-1 KN 301 489-6(디지털 코드없는 전화기)
- 328-2 KN 301 489-7(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 및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음압시험 제외)
→ 328-1 KN 301 489-7(이동가입무선전화장치 및 개인휴대전화용 무선설비)
- 333-2 KN 301 489-18(주파수공용 무선전화장치/음압시험 제외)
→ 333-1 KN 301 489-18(주파수공용 무선전화장치)
- 335-2 KN 301 489-24(이동통신용 무선설비/음압시험 제외)
→ 335-1 KN 301 489-24(이동통신용 무선설비)
- 전자파적합성 시험분야에 아래의 시험종목을 추가
309 KN 60(전력선통신기기류)
344 KN 12015(승강기 전자파 장애방지 시험)
345 KN 12016(승강기 전자파 내성 시험)
- 전자파흡수율 시험분야에 아래의 시험종목을 추가
501-1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
501-2 간이무선국용 무선설비(400MHz 이상)
502 산업 및 공공용 무선설비
503-1 무선휘출용 무선설비(100MHz 대역)
503-2 무선휘출용 무선설비(270~470MHz 대역)
503-3 무선휘출용 무선설비(900MHz 대역)
510-1 주파수공용통신용 무선설비(300MHz 대역)
511 생활무선국용 무선설비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공고제2016-36호

사회적기업 인증 취소 공고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아래 기관의 사회적기업 인증을 취소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광주지방고용노동청전주지청장

인증번호	기관명 (대표자명)	소재지	취소사유 (취소일)	비고
제2015-041호	(유)한국전통 예절문화원 (김명희)	전북 정읍시 북면 정읍북로 259-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음 (2016.5.24.)	

●평택지방해양수산청공고제2016-48호

비관리청항만공사 실시계획 변경승인 공고

평택지방해양수산청 제2016-28호(2016.4.29)로 고시한 "동부당진항만운영 고대부두 배후부지 창고시설 신축공사"에 대한 실시계획변경을 항만법 제10조에 따라 변경승인하고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평택지방해양수산청장

1. 사업의 명칭 : 동부당진항만운영 고대부두 배후부지 창고시설 신축공사
2.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가. 성 명 : 동부당진항만운영(주) 대표이사 이춘우
 - 나. 주 소 :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북부산업로 1228
3. 항만명 및 공사의 종류
 - 가. 항만명 : 평택·당진항
 - 나. 공사의 종류 : 건축, 기계, 전기, 소방
4. 사업의 목적 및 개요
 - 가. 목적 : 당진항 고대부두의 관리 및 복지시설을 확보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부두운동을 도모하고 창고시설 확보를 통한 수출입 편의성 제고로 동부제철 및 지역 철강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 나. 사업개요
 - 위 치 : 충청남도 당진시 송악읍 고대리 346번지 외 5필지
 - 총공사비 : 당초 11,246백만원, 변경 : 11,452백만원
 - 내 용 : 창고 2동(A동 당초 : 5,409.33㎡, 변경 : 5,462.51㎡ / B동 3,237.75㎡, 철골조) 노조사 무실 1동(286.59㎡, 철골조)
야적장포장 1식(당초 : 20,000㎡, 변경 : 24,600㎡, 아스콘)
5. 사업시행기간 : 2015. 12. 21 ~ 2016. 5. 31(변경없음)
6. 기타사항 : 관계도서는 평택지방해양항만청 항만건설과(031-680-7256)에 비치하고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관계도서 게재 생략). 끝.

●중앙해양안전심판원공고제2016-58호

시정권고 재결

2016년 4월 28일 부산해양안전심판원에서 시정권고 재결된 사항을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8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

1. 사 건 명 : 닙시어선 오렌지호·어선 일성호 충돌사건(부산해심 제2016-026호)
2. 피 요 청 자 : 김**

시 정 권 고 서

귀하가 소유하고 선장으로 승선 중인 어선 일성호가 2015. 12. 19. 07:11경 부산신항 항계 안의 경남 창원시 진해구 제덕만등표로부터 219도 방향 약 0.39마일 해상에서 닙시어선 오렌지호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협소한 해역에서 항해 중이던 오렌지호와 일성호가 서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시간적 여유를 두고 적절한 피항 동작을 취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하여 협소한 해역에서 항해할 때는 주변 경계를 철저히 하고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하며, 다른 선박과 충돌의 위험이 있으면 시간적 여유를 두고 피항 동작을 취하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오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공고제2016-47호

행정처분

약사법 위반사실에 대하여 행정처분 통보를 하고자 하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1. 업체현황

- 업체명 : 하이테크팜
- 업 종 : 의약외품 제조, 제1023호
- 소재지 : 경기도 김포시 통진읍 대서명로 41-19
- 대표자 : 김 태 희

2. 처분사항

- 제조업 폐쇄(2016. 6. 30.일자)

3. 처분사유

- 허가받거나 신고한 소재지에 해당 시설이 전혀 없음.

4. 근거법령

- 약사법 제31조
- 약사법 제76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95조 관련 [별표 8] 행정처분의 기준 I.일반기준 제9호 및 제11호

5. 본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우리 청 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문의: 운영지원과 김승경 주무관 / 02-2110-8019

●서울전파관리소공고제2016-53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제한 기준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당사자에게 이의제기할 수 있음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송달불능으로 반송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서울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제76조(과태료)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이의제기)
-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15조(송달의 효력발생)

2. 행정처분대상 : 이*영 외 18명

3. 게재(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이의제기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

5. 납부기한 : 게재(게시)기간 만료 후 15일 이내

6.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 건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과태료)
- 산출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 및 별표9
-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1개월 경과할 때마다 1.2% 증가산금을 60개월 동안 붙이고,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행정처분 대상자

번호	대상자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고지주소	법령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원)	스팸URL 전화번호	광고 내용
1	이*영	790120- *****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제4항	3,750,000	010-****-1517	분양
2	전*재	400926- *****	서울특별시 마포구 굴레방로7길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제4항, 제6항	7,500,000	010-****-4188	주식
3	유한회사 드*	131414- *****	경기도 안산시 단원 구 광덕1로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제4항, 제6항	7,500,000	070-****-0508	인터넷 가입
번호	대상자	법인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고지주소	법령 위반사항	과태료 금액(원)	스팸URL 전화번호	광고 내용
4	하나**	120111- *****	인천시 동구 석수로 석수상가아파트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제4항, 제6항	7,500,000	070-****-6024	인터넷 변경
5	이클**웹	170111- *****	경기도 용인시 기흥 구 죽전로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7,500,000	02-****-8126	성인 광고
6	(주)소*요	110111- *****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대로27가길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제4항, 제6항	7,500,000	02-****-3382	약명초 대 앱
7	오*환	661121- *****	서울특별시 동작구 서달로4가길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제4항	3,750,000	010-****-5985	라스트 회원
8	한*수	541019-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64나길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제4항	3,750,000	010-****-7065	조명
9	이*준	570717- *****	서울특별시 서초구 신반포로45길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제4항	3,750,000	02-****-0651	경영 보고서
10	오*택	700405- *****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능대로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제4항	3,750,000	010-****-6701	계측 기기
11	조*숙	640716- *****	경기도 부천시 오정 구 삼작로46번길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제2항, 제4항, 제6항	3,750,000	010-****-7818	분양
12	(주)비엔**	110111- *****	서울특별시 관악구 관악로14길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제4항, 제6항	7,500,000	1899-****	주식
13	(주)스타**	134911-	서울특별시 강남구	정보통신망법제50조	7,500,000	070-****-4578	주식

		*****	선릉로86길	제1항,제4항,제6항			
14	석정모바일(정석)	630708-*****	경기도 파주시 동산8길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제4항	15,000,000	02-****-8461	스마트폰
15	조*석	65080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림로83길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제4항, 제6항	7,500,000	1599-****	대리운전
16	왕*웅	900912-*****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11길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제4항, 제6항	7,500,000	070-****-8302	스마트폰
17	(주)대국***	120111-*****	인천광역시 남구 주안중로 18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제4항	7,500,000	070-****-7357	인터넷가입
18	이*봉	561104-*****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제4항, 제6항	3,750,000	010-****-3238	직장교육
19	최*순	340327-*****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948번길	정보통신망법제50조 제1항, 제4항, 제6항	7,500,000	070-****-3958	휴대폰 교체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36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허가취소 처분 예정)
3. 의견제출 기한 : 2016. 6. 28.(화)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1-20-0000303	300산수호	위더해운(주)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 중구	청문일자 2016.06.28.(화)
2	42-2003-20-0000271	303태진호	김**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청문일자 2016.06.28.(화)

5. 참고사항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6. 6. 28.(화), 14:00에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7~8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37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취인 및 주소불명 등으로 송달되지 않은 행정처분대상 무선국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1. 근거법령 : 전파법 제72조 제2항 제5호
2. 법령위반사항 : 무선국 정기검사 불응(운용정지 2개월 처분 예정)
3. 의견제출 기한 : 2016. 6. 28.(화)
4. 송달대상 및 내역

번호	허가번호	호출명칭	시설자명	위규내역	시설자주소	비고
1	42-2006-20-0000012	301도형호	김**	정기검사불응	경상남도 창원시 진해구	청문일자 2016.06.28.(화)
2	42-2002-20-0000462	308태광호	태창해운	정기검사불응	부산광역시 동구	청문일자 2016.06.28.(화)

5. 참고사항

-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며, 2016. 6. 28.(화), 14:00에 부산전파관리소에서 실시하는 청문에 참석하시어 소명 및 증거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나. 의견제출 기한 내에 아래의 검사기관에 연락하여 정기검사를 받고 검사증명서를 교부받을 경우에는 처분이 면제됨을 알려드립니다.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부산본부 : ☎ 051-440-1040~1043
 -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진주사업소 : ☎ 055-763-4737~8
-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부산전파관리소 전파업무2과(☎ 051-974-5192, FAX 051-974-5189)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38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이사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76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부산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대저1동), ☎ 051-974-5235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6조
- 산출근거 : 방송통신위원회 훈령 제112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 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 1.2% 증가산금을 60개월 동안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 : 원)

순번	성 명	실명번호	체납액	최초부과일자	주 소
1	김병석	840418-1*****	6,300,000	2013-08-14	부산시 연제구 거제천로287번길
2	김영동	670710-1*****	10,500,000	2011-05-17	부산시 북구 만덕3로16번길
3	김혜란	871124-2*****	14,175,000	2012-11-19	부산시 연제구 중앙천로4번길
4	문현동 지역주택조합	617-80-20015	7,875,000	2013-05-10	부산시 수영구 좌수영로
5	박대중	730112-1*****	5,670,000	2013-07-30	부산시 연제구 과정로
6	손동환	810112-1*****	18,900,000	2013-05-06	경기 화성시 남양읍 화성로1081번길
7	손자영(치치)	860826-2*****	5,670,000	2013-12-05	부산시 사하구 괴정로270번길
8	이동진	831024-1*****	3,230,000	2013-04-04	경남 창원시 의창구 도계두리길
9	정문길	700510-1*****	11,340,000	2013-05-21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무학로
10	(주)가온미디어	180111-0818021	7,087,500	2013-08-28	부산 사상구 가야대로255번길
11	(주)골드커머스	180111-0830091	7,875,000	2013-07-30	부산시 남구 황령대로
12	(주)에니폰	180111-0839746	7,087,500	2013-06-18	부산시 수영구 연수로401번길
13	(주)에스엔홀딩스	180111-0655960	12,757,500	2013-10-10	부산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14	(주)에프엘스토어	180111-0812552	7,875,000	2013-05-03	부산시 동구 자성로133번길
15	(주)위너비	170111-0419673	7,087,500	2014-03-19	부산시 영도구 동삼남로
16	(주)푸른호스팅	180111-0572916	7,875,000	2012-10-23	부산시 남구 진남로70번길
17	최영민(스마트세상)	850208-1*****	6,300,000	2013-03-12	부산시 부산진구 가야대로

●부산전파관리소공고제2016-39호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부산전파관리소장

『전파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에게 독촉장을 발송하였으나 이사,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공시송달하오니 대상자는 공고문 게시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시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53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체납,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으며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1. 관련법령

- 행정절차법 제14조, 제15조
- 전파법 제19조의2, 제90조

2. 게시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3. 관련사항 문의 : 부산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부산시 강서구 체육공원로6번길 67-17(대저1동), ☎ 051-974-5235

대상자 명단

- 수입근거 : 「전파법」 제90조
- 산출근거 : 「전파법시행령」 제124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
- 건 명 : 전파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 체납 시 과태료에 5% 가산금과, 매월 1.2% 증가산금을 60개월 동안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합니다.

(단위 : 원)

체납자명	실명번호	체납액	최초 부과일자	주 소
윤병열	610312-1*****	105,000	2010-05-11	부산시 금정구 벽구산로8번길
(주)삼우이앤지	174111-0008703	315,000	2013-02-19	부산시 동래구 충렬대로108번길

●전주전파관리소공고제2016-16호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송달이 불가능한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 송달합니다.

2016년 5월 31일

전주전파관리소장

<전파법령 위반 무선국 행정처분 사전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1. 사유 : 행정처분대상 무선국에 대하여 사전통지서를 송달하려고 하였으나 이사·수취인 불명등으로 송달이 불가함.
2. 대상무선국

시설자명	허가번호	호출명칭	주 소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의견제출 기한
서부건설	94-2011-70-0000297~ 94-2011-70-0000303(7국)	서부건익산500~ 서부건익산506	전북 익산시 왕궁면 광암리	운용정지1개월	2016.06.22.
합동중기	94-2006-70-0000812 94-2006-70-0000813	합동익산501 합동익산502	전북 익산시 고봉로	운용정지1개월	2016.06.22.
오*철	94-2011-70-0000358	*철군산501	전북 군산시 백토로	운용정지1개월	2016.06.22.
채*철	94-2011-70-0000325	*철군산501	전북 군산시 구암동	운용정지1개월	2016.06.22.
명신종합중기	94-2006-70-0000852	명신전주50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운용정지1개월	2016.06.22.
박*길	94-2011-70-0000429 94-2011-70-0000430	*길전주101 *길전주102	전북 전주시 덕진구 와룡로	운용정지1개월	2016.06.22.
아중중기	94-2006-70-0000844	아중전주501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운용정지1개월	2016.06.22.
박*순	94-2011-70-0000340	*순덕진501	전북 전주시 덕진구 한배미로	운용정지1개월	2016.06.22.

3. 처분근거 : 전파법 제72조제2항5호 의한 정기검사 불응

<유의사항>

- 가. 귀하께서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시할 수 있으며, 서면으로 진술하고자 할 때에는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시어 기한 내에 전주전파관리소에 제출(우편 또는 FAX 포함)하여야 합니다.
- 나. 위의 기한내에 정기검사를 받지 않거나, 의견제출 절차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소명여부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관련규정에 따라 행정처분(무선국 운용정지)을 하게 됩니다.

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전주전파관리소 방송통신서비스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063-260-0025, FAX 063-260-0007).

●강릉전파관리소공고제2016-9호

전파사용료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지내역을 공고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전파사용료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6년 5월 31일

강릉전파관리소장

1. 제 목 : 장기 미납 전파사용료 고지서 반송내역 공고
 2. 관련법령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및 제72조(무선국의 개설허가 취소 등), 국고금관리법 제10조
(수입의 징수방법)
 3. 공고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
 4. 공고대상 : 붙임 참조
 5. 공고 확인 및 문의
 - 인터넷 공고 : 중앙전파관리소 홈페이지 공시송달(<http://www.crms.go.kr>)
 - 관련문의 : 강릉전파관리소 운영지원과 전파사용료 담당자(☎033-660-2814)
- (우) 25428 강원도 강릉시 연곡면 성안길 40-31

대상자 명단

- ※ 수입근거 : 전파법 제67조(전파사용료), 제68조(전파사용료의 부과기준 등)
- ※ 산출근거 : 전파법 시행령 제90조(전파사용료의 산정기준 등)
- ※ 전파사용료 및 5%의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합니다.

(단위 : 원)

번호	고지번호	등기번호	시설자명	반송 일자	반송 사유	고지 금액	주소	등기구분
1	20122402250 0129	12162-0115- 0598	용화건설(주)	5.13.	이사불명	209,790	강원 춘천시 석사동114-2 KT 남춘천지점 3층	독촉등기
2	20122402250 0394	12162-0115- 0593	고석정자동차운전 전문학원(이수영)	5.13.	이사불명	178,560	강원 철원군 동송읍 장흥리 25-48	독촉등기
3	20132402000 0316	12162-0115- 0592	주식회사에이엠엔 지니어링	5.13.	이사불명	142,26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 교로 670, A동 501호 삼평동 유스페이스 (삼평동)	독촉등기
4	20133402000 0331	12162-0115- 0596	주식회사에이엠엔 지니어링	5.13.	이사불명	142,26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 교로 670, A동 501호 삼평동 유스페이스 (삼평동)	독촉등기
5	20142402000 0339	12162-0115- 0595	주식회사에이엠엔 지니어링	5.13.	이사불명	126,0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 교로 670, A동 501호 삼평동 유스페이스 (삼평동)	독촉등기
6	20143402000 0357	12162-0115- 0594	주식회사에이엠엔 지니어링	5.13.	이사불명	126,0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 교로 670, A동 501호 삼평동 유스페이스 (삼평동)	독촉등기
7	20144402000 0378	12162-0115- 0597	주식회사에이엠엔 지니어링	5.13.	이사불명	126,00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 교로 670, A동 501호 삼평동 유스페이스 (삼평동)	독촉등기

법

원

광주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 결

사 건 2014재노2 가. 국가보안법위반
 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다. 계엄법위반

피 고 인 1. 가.나. 김결 (370903-*****), 무직
 주거 광주 동구 무등로321번길 ** (계림동)
 등록기준지 전남 보성군 웅치면 용반리***
 2. 가.나. 서의환 (470115-*****), 무직
 주거 광주 남구 대남대로398번길 * (월산동)
 등록기준지 전남 함평군 엄다면 성천리 ***
 3. 가.나. 망 공영석 (450623-*****), 무직
 주거 서울 동작구 동작대로33길 ** (사당동)
 등록기준지 광주 광산구 송도로 ***
 4. 가.다. 최운용 (440206-*****), 무직
 주거 광주 동구 의재로43번길 ***-* (학동)
 등록기준지 광주 서구 마루로 ***-*

재심청구인 피고인 김결, 서의환, 최운용 및 피고인 공영석의 배우자 김선자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남옥(기소), 정광병(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창조 담당변호사 이덕우, 이용우(피고인들을 위하여)

재심대상판결 광주지방법원 1983. 1. 21. 선고 82노1315 판결

원 심 판 결 광주지방법원 1982. 9. 22. 선고 82고단829 판결

판 결 선 고 2015. 10. 29.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최운용 및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김결, 서의환, 공영석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은 각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김결, 서의환, 공영석에 대한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의 점은 각 면소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이 사건의 경과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피고인 김결, 서의환, 공영석은 국가보안법(1991. 5. 31. 법률 제43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국가보안법’이라 한다)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1989. 3. 29. 법률 제40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위반, 피고인 최운용은 구 계엄법(1981. 4. 17. 법률 제34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계엄법’이라 한다)위반, 국가보안법위반의 공소사실로 광주지방법원 82고단829호로 각

공소가 제기되었다.

나. 원심은 1982. 9. 22.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피고인 최운용, 김결, 공영석에게 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자격정지 1년, 피고인 서의환에게 징역 1년 6개월 및 자격정지 1년 6개월, 몰수의 형을 선고하였다.

다. 원심판결에 관하여 피고인들과 검사가 광주지방법원 82노1315호로 항소하였고, 광주지방법원은 1983. 1. 21. 피고인 최운용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을 배척하고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이고, 피고인 김결, 서의환, 공영석에 대한 공소사실 중 집시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별지 공소사실 제3항과 같이 공소장이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 김결, 공영석, 최운용에게 각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압수된 신한민보 복사판 20장은 피고인 최운용으로부터 몰수), 피고인 서의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자격정지 1년을 선고(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하였다.

라. 이에 피고인들이 대법원 83도407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1983. 5. 24.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재심대상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마. 피고인 김결, 서의환, 최운용 및 피고인 공영석의 배우자 김선자는 2014. 1. 14. 이 법원 2014재노2호로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이 법원은 2015. 2. 9. “경찰 수사관들이 피고인 김결을 1982. 3. 23., 피고인 서의환, 공영석을 각 1982. 3. 24. 각 영장 없이 체포한 후 1982. 4. 6. 각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피고인 최운용을 1982. 4. 7. 영장 없이 체포한 후 1982. 4. 15.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불법적으로 감금한 상태에서 수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수사관들의 위와 같은 행위는 형법 제124조(불법체포·불법감금)에 해당하는 범죄인데 그로부터 5년의 공소시효가 경과됨으로써 그에 관한 확정판결을 얻을 수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재심개시결정을 하였고, 그 후 항고기간의 도과로 위 재심개시결정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수사과정의 위법

피고인들은 영장 없이 불법체포·감금된 상태에서 대공분실 등에서 약 15일 동안 고문, 가혹행위, 협박, 자술서의 반복 작성 강요로 허위자백을 강요받았고, 진술거부권 불고지, 변호인 접견권 침해 등으로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였다. 압수수색 과정에서도 영장 없이 피고인들을 체포할 당시 또는 그 직후 야간까지 위법하게 주거에 침입하여 불법압수수색을 하였다.

2) 체증법칙 위반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자술서 등은 불법체포·감금된 상태에서 적법절차가 준수되지 않고, 고문과 가혹행위를 동반하여 수집된 증거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 또한 위 증거들은 위법수사에 따른 허위자백에 불과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09조 자백배제법칙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

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 중 공소외인들에 대한 경찰 작성의 각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조서, 자술서 등도 같은 이유로 증거능력이 없고, 원진술자들에 대한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았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

다) 검사가 제출한 139개의 압수물은 영장주의를 위반하여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따라 증거능력이 없다.

3) 국가보안법위반

피고인들은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도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원심 증인 송건호가 신한민보는 좌익계열의 신문이 아닌 정당한 비판지이고, 일반인들은 신한민보가 반입 금지된 사실도 모를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4) 계엄법위반(피고인 최운용)

증인 홍남순이 송죽계는 단순한 친목모임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피고인 최운용에 대한 계엄법위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5) 집시법위반(피고인 김결, 서의환, 공영석)

햇불회는 단순한 친목모임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김결, 서의환, 공영석에 대한 집시법위반의 점은 범죄사실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또한 위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집시법 해당 규정은 현재 삭제되었고,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아 위 피고인들에 대한 집시법위반의 점은 ‘범죄 후 법률의 개폐에 의하여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의 면소사유에 해당한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3. 직권 판단(피고인 김결, 서의환, 공영석)

피고인 김결, 서의환, 공영석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집시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별지 공소사실 제3항 기재와 같이 변경하고, 적용법조를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989. 3. 29. 법률 제409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4호”에서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989. 3. 29. 법률 제409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3조 제2항”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며, 위 부분의 공소사실은 나머지 공소사실과 함께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으로 처단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 김결, 서의환, 공영석에 대한 부분은 그 전부가 파기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변경된 부분의 공소사실 및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한 피고인 김결, 서의환, 공영석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과 피고인 최운용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4. 피고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별지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¹⁾

나. 피고인들의 원심 법정 진술

1) 피고인 김결

피고인은 원심 제1, 5회 공판기일에서 ‘김대중을 위시한 재야세력이 정권의 담당자가 되어야 한다고 한 것은 사실이나 반정부활동을 한 것은 아니다. 신한민보가 북괴의 활동에 동조한다는 것은 알지 못하였고, 국가에서 반입 금지한 것도 알지 못했다. 신한민보는 우방인 미국에서 발행하는 것으

1) 검사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에 따라 피고인 김결, 서의환, 공영석에 대하여 변경된 공소사실을 반영한다.

로 별생각 없이 취득하였고, 이런 것으로 용공시 단죄하는 것은 억울하다. 햇불회를 조직한 사실은 있으나, 친목계로 상호 인격을 존중 상부상조하자는 모임이었다. 민주 회복을 위해서 이념이 맞는 사람끼리 규합하자고 말하거나, 반정부 의식화 작업에 노력하자고 결의한 사실도 없다. 칠법지대의 14 일간의 상황 속에서 이분들이 이렇게 만들어버렸다'고 진술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

2) 피고인 서의환

피고인은 원심 제1, 5회 공판기일에서 '아람회는 친목단체이고, 아람회 회원들에게 반정부의식을 고취시키거나, 김결의 집에서 김홍균에게 전두환이 김일정보다 무서운 독재를 하고 있다고 말한 사실이 없다. 국가가 신한민보를 반입 금지한 것을 알지 못했다. 같이 고문을 받으면서 나 죽는다고 말하던 기정도가 결국 대학병원에서 죽었다'고 진술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

3) 피고인 공영석

피고인은 원심 제1, 5회 공판기일에서 '민주헌정동지회에 가입한 사실이 있으나 반정부활동을 하지는 않았다. 국가가 신한민보를 반입 금지한 것을 알지 못했다. 건전한 집회가 용공시되는 이런 비극이 없어야 한다'고 진술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

4) 피고인 최운용

피고인은 원심 제1, 5회 공판기일에서 '민주헌정동지회는 국헌을 준수하고 합법적인 정당으로 발족하기 위한 사전조직으로 알고 가입했다. 반정부활동을 하지 않았다. 송죽계는 순수한 친목모임이고, 정치적 집회를 한 기억이 없다. 신한민보를 소지한 것은 사실이나 내용을 읽어보지 않아서 모른다. 구속영장 없이 감금 수사한 것에 대한 헌법 제11조, 형사소송법 제207조 위반 여부를 헌법위원회의 위헌 여부 결정 후 재판을 구한다'고 진술하면서 공소사실을 부인하였다.

다. 인정사실

피고인들의 원심 및 당심 법정 진술, 당심 증인 변동강, 김선자, 박남순, 권미라, 김창훈의 각 증언, 변호인 제출의 증 제3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와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불법체포·감금

경찰 수사관들은 피고인 김결을 1982. 3. 23., 피고인 서의환, 공영석과 기종도를 각 1982. 3. 24. 각 영장 없이 체포한 후 1982. 4. 6. 각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피고인 최운용을 1982. 4. 7. 영장 없이 체포한 후 1982. 4. 15. 구속영장이 발부될 때까지 외부와의 연락을 차단한 채 불법적으로 감금한 상태에서 수사하였다.

2) 고문, 폭행, 가혹행위

가) 위와 같은 불법 구금기간 동안 피고인 김결은 경찰 진술조서 5회, 자술서 7회(1982. 3. 24. ~ 1982. 3. 30.), 피고인 서의환은 경찰 진술조서 3회, 자술서 5회, (1982. 3. 25. ~ 1982. 3. 30.) 피고인 공영석은 경찰 진술조서 7회, 자술서 6회(1982. 3. 24. ~ 1982. 3. 31.), 피고인 최운용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7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회, 자술서 5회(1982. 4. 7. ~ 1982. 4. 14.), 기종도는 경찰 진술조서 2회, 자술서 3회를 각 작성하고, 조사받았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에 대한 진술조서나 자술서 작성 당시 피고인들이 진술거부권이 있음을 고지받은 자료는 찾을 수 없고, 피고인들의 가족인 김선자, 박남순, 권미라, 김창훈도 피고인들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진술거부권이냐 변호인선임권을 고지받지 못한 채, 반정부단체인 송죽계 또는 햇불회, 아람회를 조직하고, 이적 유인물을 소지·배포하는 활동을 하였다는 등의 진술서를 작성하거나 진술하도록 강요받은 것으로 보인다.

나) 피고인 김결, 공영석은 광주 서구 화정동 소재 대공분실에서 경찰 수사관들이 잠을 재우지

아니하고, 다리에 각목을 끼운 채 발길질을 하고, 각목으로 구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서의환은 위 대공분실에서 수사관들이 잠을 채우지 않고 각목으로 구타하고, 욕조에 머리를 집어 넣었고, 설광수 수사관이 담뱃불로 자신의 오른쪽 안검을 지졌다고 진술하고 있다. 피고인 최운용은 위 대공분실에서 몽둥이로 어깨를 맞고, 폭행을 당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 김결, 서의환은 수사관들이 자백하지 않으면 죽여서 강물에 던져버리고 교통사고 처리하면 된다고, 피고인 공영석은 수사관들이 사람이 죽어도 쥐도 새도 모르는 곳이라고 말하며 협박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① 피고인들과 함께 기소된 기종도는 1982. 3. 24. 체포된 이후 광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다가 급성 간염 및 담석증으로 1982. 5. 15. 구속집행정지결정을 받아 치료를 받던 중 1982. 5. 30. 사망하였는데, 기종도의 병상 유언문과 유족인 박유덕의 진술서 내용에 의하면, 기종도는 당시 대공분실에서 고문을 받고 그 후유증으로 위와 같이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재심개시결정 전에도 피고인 김결, 서의환은 원심 법정 및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이와 같은 고문, 가혹행위에 관하여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공영석은 고문에 관한 기고문을 작성하여 신문에 게재하고, 수사관들을 형사고소하기도 한 점, ③ 당시 공범으로 함께 조사를 받았던 변동강과 피고인들의 가족인 김선자, 박남순, 권미라, 김창훈도 당시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들의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한 점 ④ 당시 증인 최종진은 ‘당시 수사관으로서 피고인 최운용과 피고인 공영석을 대공분실에서 대질심문한 적이 있고, 대공분실 내부는 빨간색이 칠해진 것은 기억난다’고 진술하고, 조덕환은 ‘대공분실 지하에 심문실이 있었고, 침대, 세면기, 욕조, 변기 등이 있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하면, 당시 피고인들이 대공분실에서 이와 같은 고문, 가혹행위를 당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다만 당시 경찰 수사관으로 피고인들을 조사했던 설광수, 조덕환, 박성근, 강진태, 김정조, 박동원, 최종진은 당시 법정에서 증인으로 출석하여 피고인들에게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하지 않았다거나, 30년 전의 일로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앞서 본 불법체포·감금과 기종도의 사망 경위 등에 비추어 신빙성이 없다).

라. 검사가 제출한 증거의 증거능력

1)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한 증거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입증을 위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① 검사 작성의 피고인들 및 공소외 기종도, 범인규, 정상근, 김계명, 유복용, 정광진, 이종업, 정태성, 변동강, 김학섭(이하 ‘횡불회 회원들’이라 한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② 경찰 작성의 피고인들과 횡불회 회원들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및 진술조서, ③ 경찰 작성의 이금옥, 고흥석, 이준태, 정수만, 기정남, 윤은숙, 이연순, 천나미, 이재남, 오동연, 김종심, 윤향숙, 김연심, 박민자, 하연화에 대한 각 진술조서, ④ 피고인들 및 횡불회 회원들이 작성한 각 자술서 및 진술서, ⑤ 이금옥, 이준태, 정수만, 이석춘 작성의 각 자술서, ⑥ 압수물(증 제1호 내지 139호), ⑦ 원심 증인 홍남순의 법정 진술이 있다.

2) 증거능력이 없는 증거들

가) 피고인들 및 횡불회 회원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서, 자술서

(1)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유죄의 증거로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 작성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에 있는 다른 피고인이나 피의자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를 당해 피고인에 대한 유죄의 증거로 채택할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당해 피고인과 공범관계가 있는 다른 피의자에 대한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피의자의 법정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더라도 당해 피고인이 공판기일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그 당연한 결과로

그 피의자신문조서에 대하여는 사망 등 사유로 인하여 법정에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예외적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규정인 형사소송법 제314조가 적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5189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인들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서 및 자술서(경찰 조사시 작성)는 피고인들이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이에 대하여 내용부인하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일부 진술서에 대하여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하였으나,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이상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도5040 판결 참조).

또한 피고인 김결, 서의환, 공영석과 공범관계에 있는 햇불회 회원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서, 자술서는 위 피고인들이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부인하면서 이를 증거로 사용함에 부동의하고 있으므로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3항에 의하여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한편 피고인 최운용도 햇불회 회원들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술서, 자술서를 증거로 사용함에 부동의하고 있고, 원진술자들이 원심 또는 당심 법정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였다거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고, 피고인 최운용의 반대신문권도 보장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 최운용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나)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이 검사 이전의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하여 임의성 없는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되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였다면 검사의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의 강요행위가 없었다고 하여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2012. 11. 29. 선고 2010도11788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비록 피고인들이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의 성립 및 임의성을 인정하였고, 검찰에서는 고문, 가혹행위를 당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피고인들은 경찰 수사관들로부터 고문·폭행 등 가혹행위를 당하였고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일관되게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 최운용에 대한 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불법체포·구금 기간인 1982. 4. 12.에 작성되어 위법수집증거인 점 등을 종합하면, 경찰 수사과정에서의 심리적 압박감이나 정신적 강압상태가 검찰 조사단계까지 계속되어 피고인들이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하게 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는 그 임의성을 인정할 수 없고,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제309조, 제317조에 의해 유죄의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다) 압수물

(1)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는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마련된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고, 이를 기초로 하여 획득한 2차적 증거 역시 마찬가지이며(대법원 2007. 11. 15. 선고 2007도3061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한편 법원이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행위에도 불구하고, 그 수집된 증거를 유죄 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려면, 그러한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구체적이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것을 검사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도763 판결 참조).

(2)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기록에 의하면, 경찰 수사관들이 압수물 증

제1 내지 5호는 김학섭으로부터, 증 제6 내지 12, 78, 79호는 피고인 김결로부터, 증 제13 내지 24호는 정상근으로부터, 증 제25 내지 33호는 범인규로부터, 증 제34, 35호는 김계명으로부터, 증 제36 내지 40호는 유복용으로부터, 증 제41 내지 52호는 변동강으로부터, 증 제53 내지 55호는 이종업으로부터, 증 제56 내지 60, 80 내지 94호는 피고인 서의환으로부터, 증 제61 내지 77호는 기종도로부터 각 임의제출 받아 압수하고, 증 제95 내지 139호는 국가안전기획부 광주지부에서 피고인 서의환으로부터 각 압수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주요 증거인 압수된 신한민보 복사판 20장 : 증 제16, 17호(정상근), 증 제33호(범인규), 증 제68 내지 71호(기종도), 증 제81 내지 90호(피고인 서의환)].

그런데 피고인들의 원심 및 당심 법정 진술, 당심 증인 변동강, 김선자, 박남순, 권미라, 김창훈의 각 진술과 변호인이 당심 변론 종결 이후 제출한 범인규의 진술서(1982. 3. 23. 철폐되어 도경에서 1주일 동안 감금된 채 조사를 받았고, 가혹행위를 당하였다는 내용)에 의하면, 피고인 김결, 서의환과 햇불회 회원인 김학섭, 정상근, 범인규, 김계명, 유복용, 변동강, 이종업, 기종도로부터 각 임의제출 받거나 국가안전기획부 광주지부에서 압수한 물건들은 당시 경찰 수사관들이 피고인들을 비롯한 위 햇불회 회원들을 불법으로 체포·구금하여 고문·폭행 등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강요한 상태에서 위법수집증거에 기초하여 획득한 2차 증거에 해당하므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하여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들이 압수물의 현존을 인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절차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한 중대한 위법이 존재하므로 증거능력이 없다.

라) 검사가 제출한 ① 햇불회 회원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② 이금옥(별다방 종업원), 고흥석(송죽계 회원), 이준태(인쇄소 사장), 정수만(인쇄소 사장), 기정님(피고인 김결의 배우자)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③ 윤은숙, 이연순, 천나미, 이재남, 오동연, 김종심, 윤향숙, 김연심, 박민자, 하연화(이상 아람회 회원들)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④ 이금옥, 이준태, 정수만, 이석춘(인쇄소 직원)의 각 자술서는 피고인들이 증거로 사용함에 부동의하고 있고, 원진술자들이 원심 또는 당심 법정에서 그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였거나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도 없고, 피고인들의 반대신문권도 보장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4항에 의하여 모두 증거능력이 없다.

3) 나머지 증거들의 증명력

가) 피고인들의 일부 원심 법정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신한민보를 취득, 소지, 반포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한편 ① 피고인들은 원심 및 당심 법정에서 신한민보가 이적 유인물로 반입 금지된지 몰랐고,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 점, ② 증인 송건호는 원심 법정에서 ‘신한민보가 좌익계열에 동조하는 신문은 아니고 정부를 비판하면 공산주의에 동조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잘못된 판단으로 알고 있다. 신한민보가 반입 금지된지 몰랐고, 일반인들은 더더욱 몰랐을 것이다’고 진술하여 피고인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증언을 한 점, ③ 달리 피고인들이 이적행위를 할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위와 같은 원심 일부 법정 진술만으로 피고인들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증인 홍남순은 원심 법정에서 ‘송죽계는 친목단체이고, 민주헌정동지회는 김대중을 대통령으로 추대하는 정치적 사조직이 아니고 당시 정당이나 국회 활동이 없던 사람들이 모인 민주수호단체로 알고 있다’고 진술할 뿐 피고인 최운용의 계엄법위반 범행과 관련된 구체적인 진술을 확인할 수도 없으며, 이러한 홍남순의 진술만으로 피고인 최운용에 대한 계엄법위반의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

마. 이 사건 공소사실의 인정 여부

1) 국가보안법위반 및 계엄법위반의 점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들의 국가보안법위반 및 피고인 최운용의 계엄법위반의 점에 관하여는 앞서 본 라항과 같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모두 증거능력이 없고, 피고인들의 일부 원심 법정 진술, 원심 증인 홍남순의 증언만으로는 위 공소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위 사실오인 및 범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

2) 집시법위반의 점

앞서 본 제2항과 같이 검사는 당심에서 피고인 김결, 서의환, 공영석에 대한 집시법위반의 공소사실을 별지 공소사실 제3항과 같이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를 음모, 예비’한 것으로, 적용법조를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1989. 3. 29. 법률 제409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2항, 제3조 제2항으로 변경하는 신청을 하였고, 당심은 이를 허가하였다.

그런데 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를 삭제하면서 부칙에 그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에 관하여 아무런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는바, 이는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집회 내지 시위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고(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6도9311 판결 참조),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김결, 서의환, 공영석에 대한 집시법위반의 점은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로 금지된 집회 또는 시위를 할 것을 예비·음모한 것이므로 범죄 후 법률의 개폐에 의하여 형이 폐지되었을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²⁾

따라서 피고인 김결, 서의환, 공영석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 중 피고인 김결, 서의환, 공영석에 대한 부분에는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존재하고, 한편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범리오해 주장도 이유 있으므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무죄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국가보안법위반, 계엄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별지 공소사실 제1, 2항의 기재와 같은바, 이는 위 제4의 라, 마항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범죄사실의 증거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 피고인 최운용에 대한 계엄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각 무죄를 선고한다.

면소 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각 집시법위반의 점의 요지는 별지 공소사실 제3항의 기재와 같은바, 위 각 공소사실에 적용된 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4호는 1989. 3. 29. 법률 제4095호로 개정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폐지되었음이 명백하므로, 피고인 김결, 서의환, 공영석에 대한 집시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에 의하여 각 면소를 선고한다.

판결의 공시

형사소송법 제440조,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재판장	판사	송기석
	판사	김선숙
	판사	추진석

2) 면소판결의 사유가 있을 때는 이에 대하여 먼저 판단하여야 할 것이므로, 변호인의 무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별지

공소사실

피고인 김결은,

1937. 9. 3. 본적지에서 망부 김성중과 망모 문방자와의 사이에서 5남 2녀 중 4남으로 출생, 보성
 응치초등학교를 졸업하고, 1951. 2.경 목포 덕인중학교 1년을 중퇴한 후, 농업에 종사하다가 1961. 11.
 경 광주로 나와 광주 남구 방림동에서 백광세탁소를 경영하다가 1973. 8.경 광주 서구 시1동 81번지
 로 이거, 그곳에서 창성전파사라는 간판을 걸고 고물상을 경영한 자로서,

그의 첫째 형 김선우는 6.25당시 의용군 전남 지구책으로 활동하다가 행방불명 되었고, 둘째 형 김
 선태는 면인민위원회 서기장으로 부역하다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으며, 셋째 형 김대섭은 여순반란 사
 건시 남노당원으로 활약하다가 입산 도피 중 사살된 적이 있는 등 그 배후 사상이 불온하고,

김결 자신은 1979. 5.경부터 통일당에 입당하여 활동하면서, 평소에 흠모하여 오던 김대중을 위시한
 재야 세력이 정권의 담당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반정부 활동을 하여 오던 자이고,

피고인 서의환은,

1947. 1. 15. 본적지에서 부 서상필과, 모 박애순과의 사이에 4남 2녀 중 2남으로 출생, 함평 엄다초
 등학교, 학다리중학교를 각 졸업한 뒤 고등학교 검정고시에 합격하고, 1968. 2.경 육군에 입대하여
 1971. 1.경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한 후, 1975. 3. 28. 전라남도지사로부터 간호보조원 자격을 취득하
 여 광주 동구 대인동 소재 김정형외과 병원에서 근무하다가 1979. 10.경 서울 한양주택 사원으로서 사
 우디아라비아 호포포 현장에서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한 후, 1980. 4. 29. 귀국하여 1980. 7.경부터 1981.
 12. 30.까지 사이에 사단법인 한국간호보조원협회 전라남도지부 사무장으로 종사하였던 자로서, 광주사
 태시에 친구 정수만의 동생 정지영과 자신의 제수 동생 안종필이 희생됨을 계기로 반정부 감정이 고
 조되어, 반정부 의식화 운동을 기도하고자 1980. 12. 7. 광주 동구 충장로 1가 왕자관에서 광주 시내
 병원에 종사한 간호보조원 11명을 선정 “아람회”라는 표면상 친목단체를 조직하여 자신이 회장에 취
 임, 동 회원들에게 반정부 의식을 고취시키는 한편 1982. 1. 31. 위 회원들을 인솔하여 평소 자신이 흠
 모하여 오던 김대중가를 방문, 동인의 처 이희호에게 김대중의 추종세력임을 다짐, 기념사진을 촬영하
 고, 1981. 5. 15. 피고인의 집에서 같은 달 18. 광주시립묘지에 있을 광주사태 희생자 추도식에 사용할
 목적으로 길이 175cm, 폭 14cm의 광목에 매직을 사용 “미국은 광주사태 책임을 지고 물러나라”는 반미
 플래카드를 제작 소지하고, 1982. 3. 23. 15:00경 위 김결의 집에서 공소의 김홍균 등에게 “전두환은 김
 일성 보다 무서운 독재를 하고 있다”라고 언동하는 등으로 반정부활동을 하여 오던 자이고,

피고인 공영석은,

1945. 6. 23. 본적지에서 부 공유환, 모 김래정과의 사이에 3남 1녀 중 장남으로 출생하여 송정동초
 등학교, 송정중학교를 각 졸업한 후, 1969. 5. 3.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하고, 1969. 12. 9.경 법무부
 교도보로 임명되어 서울 영등포구치소에서 근무하다가 1972. 3. 6. 그 직을 그만두고 당시 전남 광산
 군 송정읍 송정리 소재 신진용달사 관리소장으로 종사하던 중, 1978. 12.경 통일당에 입당하여 전남제
 5선거구(나주, 광산) 대의원으로 활동하고, 1980. 4.경 민주헌정동지회(김대중 사조직)에 가입, 반정부
 활동을 하여 오던 자이고,

피고인 최운용은,

1944. 2. 6. 망부 최향기, 모 박차순과의 사이에 4남 4녀 중 3남으로 출생하여 당시 전남 광산군 서
 창면 소재 송학초등학교, 서울 해동학원을 거쳐 서라벌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66. 3. 5. 한양대학교
 공과대학 토목과에 입학, 재학 중, 1966. 6. 30. 육군에 입대하여 1969. 3. 9.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
 한 후 묘목업에 종사하다가 실패한 끝에 일정한 직업 없이 놓고 있던중, 1970. 3.경 신민당에 입당,
 1971년 대통령 선거시 광주을지구 신민당 선거대책위원으로 종사하고, 1979. 11. 말경 민주헌정동지회
 (회장 김종완, 김대중 사조직)에 가입 중앙 실행위원으로 활동하면서, 1980. 3. 22. 위 민주헌정동지회

전라남도 조직책임 홍남순으로부터 중앙 연락책으로 임명받아, 전라남도 각 시, 군 조직책 선정과 조직 확장을 해오는 등 반정부활동을 해온 자인바,

1. 피고인 최운용은,

가. 계엄이 선포되어 일체의 집회는 허가를 받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엄포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현정동지회의 세력 확장으로 김대중의 국민 지지도를 높이고 그의 복권을 추진하기 위하여,

(1) 1980. 2. 28. 11: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광주 동구 공동 소재 공소의 홍남순의 집에서 위 홍남순과 각 시, 군 조직책임 공소의 김창주, 박민기, 최팔균, 박준구, 김남현, 김장옥, 김경의, 박근영, 장종옥, 이의달 등이 모여 그 집회의 은폐를 위하여 “송죽계”라는 모임으로 가장하고, “각 시군 회원들의 확장을 속히 해 나가자”라고 결의하고,

(2) 1980. 3. 30. 11: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위 홍남순의 집에서 위 김창주, 박민기, 최팔균, 박준구, 김남현, 김장옥, 김경의, 박근영 등과 모여, 위 현정동지회 회원 확보책에 관한 토의를 하고,

(3) 1980. 4. 30. 11:00경부터 같은 날 13:00경까지 사이에 위 같은 장소에서 위 홍남순, 김창주, 박민기, 최팔균, 박준구, 김남현, 김장옥, 김경의, 박근영, 장종옥, 이의달 등과 모여, 위 회원 모집상황을 보고받고 그 확보책을 토의하여,

각 허가 없이 정치적 집회를 하고,

나. 반국가단체인 북괴의 활동에 동조된 표현물을 취득하거나 반포 또는 소지하면 처벌된다는 정을 알면서도, 반국가단체인 북괴 활동에 동조하여 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1) 1981. 12. 중순 일자 불상 11:00경 서울 종로구 종로5가 소재 옥호 불상 다방에서 공소의 김윤식으로부터,

표제 “분화가 두려워서”에서 “대한민국 정부는 노동자 농민을 수탈하고 있다. 현정권의 경제상황은 심한 외채에 허덕이고 있고, 파쇼통치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표제 “참으로 잔인한 고문을 중단하라”에서 “전두환 파쇼 정권은 잔인한 고문을 자행하는 등 폭력정치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으로,

표제 “88년 올림픽의 비국민적 성격”에서 “올림픽을 정권 유지 및 연장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미국은 신식민주의자이다”라는 내용으로,

표제 “문제점 많은 서울올림픽”에서 “88년 서울올림픽 유치는 남북 분단과 대립을 양극화시키고 전두환 독재정권을 88올림픽 이후까지 연장시키는 음모이다”라는 내용으로,

표제 “한국의 민중과 학생들의 반파쇼 투쟁에 연대하면서”에서 현정권을 파쇼 정권으로 규정하고, 민중 폭력혁명을 선동하고, 반미 감정을 고양, 주한 미군의 철수를 주장하는 한편 민중과 학생을 혁명세력으로 규정, 반미, 반정부 통일전선 형성을 역설하고, 재미 유학생 및 교포들의 반미 반정부 감정을 고취시키는 내용으로,

표제 “반파쇼 투쟁선언서”에서 남조선 혁명의 전략 전술적 목표를 반파쇼 민주화 투쟁에 집약시키고 있고, 한일관계 정상화 노력을 굴욕 외교라고 비방하는 내용으로,

표제 “반전두환 투쟁의 새로운 전략”에서 반미, 반정부 감정을 고취시키고, 반파쇼, 민주혁명을 선동하고 있는 내용으로 1979년도 이래 북괴 활동에 동조하는 내용이 게재되어 있는 신한민보(재미 반한 단체인 한민련에서 발간)의 복사판을 각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고,

(2) 1981. 12. 중순 일자 불상 17:00경 서울 종로구 청진동 소재 청진다방에서 피고인 공영석에게 위 신문을 복사, 교부하여 이를 반포하고,

(3) 1982. 1. 중순 일자 불상 14:00경 서울 종로구 종로1가 소재 약속다방에서 위 김윤식으로부터,

표제 “반민주 독재 집단을 강타하자”에서 반파쇼 민주혁명을 선동하고 있는 내용으로,

표제 “81년 민주 민족 통일운동의 회고와 전망”에서 반미 반파쇼 민주혁명을 선동하고 있는 내용으로,

표제 “중앙 집행위원장 배동호씨”에서 “전두환 군사 독재를 청산하자, 민중정권을 수립하자, 반외세, 반독재 투쟁을 전개하자”라는 내용으로,

표제 “민주화 투쟁의 회고와 새해 목표”에서 지하당 조직원리를 설명하고, 반외세, 반파쇼 활동을 선동하고 있는 내용으로,

표제 “한민련 시국선언”에서 “전두환 파쇼정권은 미, 일의 이익을 대변하고, 통일을 반대하고 민족분열을 영구화하기 위하여 발악적 책동을 하고 있다. 서울올림픽 유치는 군사독재 기반을 강화하고 분열을 고정화하려는 전두환 파쇼정권의 정치적 음모이다”라는 내용으로 북괴 활동에 동조하는 내용이 게재되어 있는 위 신문을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고,

(4) 1982. 1. 중순 일자 불상 18:00경 위 다방에서 피고인 공영석에게 위 신문을 각 복사, 교부하여 이를 반포하고,

2. 피고인 김결, 서의환, 공영석, 공소외 망 기종도는 북괴 활동에 동조하는 내용의 표현물을 취득, 소지, 복사, 반포하면 처벌받는 정을 알면서도, 북괴를 이롭게 할 목적으로 국가반역죄로 처벌받고 수감중에 있는 김대중의 출소에 대비하여, 동인의 지지 조직체를 미리 만들고, 용공 유인물 및 서적을 압수하는 대로 회원들 간에 배포, 탐독하면서 뜻이 맞는 동지들을 많이 규합, 지하세력을 확장 도모하고자 모의한 끝에,

가. 피고인 공영석은,

(1) 위 1의 나. (2), (4)항의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최운용으로부터 “분화가 두려워서”, “참으로 잔인한 고문을 중단하라”, “88년 서울올림픽의 비극적 성격”, “문제점 많은 서울올림픽”, “한국의 민중과 학생들의 반파쇼 투쟁에 연대하면서”, “반파쇼 투쟁선언서”, “반전두환 투쟁의 새로운 전략”(81. 12. 중순 일자 불상 17:00경 청진다방에서 공영석이 최운용으로부터 교부받음)이라는 표제로, “반민주 독재집단을 강타하자”, “81년 민주민족통일운동의 회고와 전망”, “중앙 집행위원장 배동호씨”, “민주화 투쟁의 회고와 새해 목표”, “한민련 시국선언”(82. 1. 중순 일자 불상 14:00경 종로1가 약속다방에서 공영석이 최운용으로부터 교부받음)이라는 표제로 각 북괴 활동에 동조하는 내용이 게재되어 있는 위 신문 12매를 각 교부받아 이를 취득, 보관하고,

(2) 1982. 1. 10. 10:00경 광주 동구 금남로 5가 소재 울산다방에서 “88년 서울올림픽의 비극적 성격”이라는 표제로 북괴 활동에 동조하는 내용이 게재되어 있는 위 신문 1매를 피고인 김결에게 교부, 반포하고,

(3) 1982. 1. 중순 일자 불상 15:00경부터 1982. 2. 중순 일자 불상 11:00경 사이에 위 울산다방에서 1회에 걸쳐 “분화가 두려워서” 등의 표제로 북괴 활동에 동조하는 내용이 게재되어 있는 위 신문 11매를 피고인 서의환에게 교부, 반포하고,

나. 피고인 김결은,

위 2의 가. (2)항의 일시 장소에서 전항과 같이 피고인 공영석으로부터 “88년 서울올림픽의 비극적 성격”이라는 표제로 북괴 활동에 동조하는 내용이 게재되어 있는 위 신문 1매를 교부받아 이를 취득하고,

다. 피고인 서의환은,

(1) 위 2의 가. (3)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 공영석으로부터 2회에 걸쳐서 “분화가 두려워서” 등의 표제로 북괴 활동에 동조하는 내용이 게재되어 있는 위 신문 11매를 각 교부받아 이를 취득, 소지하고,

(2) 1982. 2. 10. 피고인의 집에서 공소외 기종도에게 “민중의 혁명이 일어나야 한다”는 제목 아래 “미군은 한국에서 철수되어야 한다. 현정권은 파쇼 군부정권으로서 민중을 수탈하므로 이를 타도하고, 민중이 주동이 되어 새로운 정권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요지의 북괴 대남적화통일전략에 동조되는 내용의 용공 유인물을 작성 배포하고,

(3) 1982. 2. 13. 11:00경 위 울산다방에서 위 기종도에게 “88년 서울 올림픽의 비극적 성격”, “민주화 투쟁의 회고와 새해 목표”, “81년 민주민족통일운동의 회고와 전망”, “반민주 독재 정권을 강타하자”라는 표제로 복귀 활동에 동조하는 내용이 담긴 용공 유인물을 교부, 반포하고,

3. 피고인 김결, 서의환, 공영석은 공소외 기종도, 범인규, 정상근, 김계명, 정광진, 변동강, 유복용, 김학섭, 이종열, 정태성 등과 함께,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 있는 집회를 예비, 음모, 선동, 선전하면 처벌을 받는 정을 알면서도,

가. 1981. 9. 8. 15:00경 광주 서구 시1동 81 소재 피고인 김결이 경영하는 창성전파사에서 피고인 김결, 서의환, 공소외 기종도는 회합을 갖고, 김대중이 출소하면 정계에 복귀할 것인데, 그 발판을 만들어 주기 위해 뜻이 맞는 동지들을 규합하여 그의 지지 조직을 만들자고 결의하고,

나. 1981. 9. 10. 16:00경 위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김결, 서의환, 공소외 기종도, 김계명은 회합을 갖고, 위와 같은 뜻을 이룩하기 위하여 이를 조직하기로 결의하고,

다. 1981. 10. 3. 17:00경 광주 남구 월산1동 54-8 소재 피고인 서의환의 집에서, 피고인 서의환, 김결, 공소외 기종도, 김계명, 변동강 등이 모여 위와 같은 뜻을 이룩하기 위하여 회를 조직하기로 하고, “회의 명칭은 햇불회로 한다. 회장에 김결, 총무에 서의환, 모임은 매월 둘째 토요일, 장소와 유사는 그때 그때 총무가 결정 연락한다. 회비는 매월 3,000원씩으로 한다. 위와 같은 활동을 할려면 회원들의 의식화 작업이 필요하다. 뜻이 맞는 동지들을 많이 규합하여 세력을 확장하자”라는 등의 내용을 결의하고,

라. 1981. 11. 3. 17:30경 광주 남구 월산동 소재 대창주유소 옆 옥호 불상 오리탕집에서 피고인 김결, 서의환, 공영석, 공소외 김계명, 정광진 등이 모여 “우리 회원은 서로 인격을 존중하고 신망을 얻어야 한다. 회원 자질 향상을 해야 한다. 현정부의 물가정책이 잘못되어 있다. 좋은 유인물(반정부적인 내용의 유인물)이 있으면 돌려보고 총무는 복사하여 회원들에게 배포하여 읽게 하자”라고 결의하고,

마. 1981. 12. 12. 13:00경 피고인 서의환의 집에서 피고인 김결, 서의환, 공영석, 공소외 범인규, 김계명, 변동강 등이 모여 “과거 이승만 박사도 일제 잔존 관료들을 기용하는 실책을 범했다. 그리하여 우리나라의 국기가 흔들리게 되었다. 반정부 의식화 작업에 필요한 서적 예컨대 송건호의 해방 전후사의 인식을 구입하여 읽어보자”라고 결의하고,

바. 1982. 1. 23. 17:30경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리 소재 위 변동강의 집에서, 피고인 김결, 서의환, 공영석, 공소외 기종도, 범인규, 김계명, 정광진, 변도강 등이 모여 피고인 김결의 제의로 “박헌채의 민족경제론을 보면 물건을 만드는 데는 자본, 기술, 정신이 필요한데 그중에서 정신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회원들도 정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88서울올림픽 유치의 우리나라의 어려운 경제 실정에 맞지 않으니 잘못된 것이다. 민주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이념이 맞는 사람끼리 규합을 하자”라고 결의하고,

사. 1982. 2. 10. 17:00경 광주 동구 금남로 5가 소재 부부식당에서 피고인 김결, 서의환, 공영석, 공소외 기종도, 범인규, 정상근, 김계명, 정광진, 변동강, 유복용, 이종업, 정태성 등이 모여 피고인 공영석의 제의로 “햇불회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 자체로도 수사대상이 될 것인데 다음 모임 안내장에는 민주 회복에 앞장서자라는 말을 표기하지 않도록 하자, 울산다방에 좋은 유인물(오늘의 한국 현실과 그리스도교회의 입장)을 맡겨 놓았으니 모두 찾아가 읽자”라고 결의하고,

아. 1982. 3. 13. 17:30경 위 부부식당에서 피고인 김결, 서의환, 공소외 범인규, 정상근, 김계명, 변동강, 김학섭 등이 모여 “앞으로 빠짐없이 회합에 참석하고, 회합 때 토론할 비밀을 외부에 누설되지 않도록 하자”라고 결의하고,

자. 1982. 3. 19. 13:00경 광주 남구 월산동 파출소 앞 옥호 불상 중국음식점에서 피고인 김결, 서의환, 공영석, 공소외 범인규, 정상근, 이종업, 김계명 등이 모여 피고인 서의환이 배포한 “보라, 민주학생 연맹, 민주 노동연맹 사건 구속자 26명 최후 진술”이라는 제하의 유인물을 각 교부받고, “반정부 의식화 작업에 다 같이 노력하자”라고 결의하여,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를 음모, 예비한 것이다.

지방자치단체

●충청남도고시제2016-154호

예산신소재 일반산업단지계획(지정 및 실시계획) 변경 승인

충청남도 고시 제2015-500호(2015.12.31.)로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고시된 예산신소재 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산업단지 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그 변경 승인내용과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31일

충청남도지사

I.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1) 지구내(변경)

- 가. 명 칭 : 예산신소재 일반산업단지
- 나. 위 치 :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몽곡리, 상몽리 일원
- 다. 면 적 : 기정-480,942㎡, 변경-482,026.8㎡

2) 지구외 진입도로(변경없음)

- 가. 명 칭 : 예산신소재 일반산업단지 지구외 사업 준용
- 나. 위 치 :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몽곡리 667번지 일원
- 다. 면 적 : 112,088㎡ (2개노선)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 인천 서부산업단지내 경인주물조합 업체의 유망중소기업 지방이전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표방한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정책에 부응
- 기존 뿌리산업 집적지 고도화 및 특화단지 조성을 통해 뿌리산업 업종 내, 업종 간 협업을 활성화하여 생산성 제고
- 상호 연계가 가능한 금형, 주조, 열처리업체를 동반 입주시켜 업종 융합에 따른 융합형 단지 조성을 통해 생산성 제고 효과 극대화
- 인접한 서해안의 철강클러스터와 연결되는 내륙거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자족성이 부족한 예산군의 지역 산업기반 확충 및 지역경제 발전 도모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1) 지구내

- 가. 주 소 :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상몽2길 107
- 나. 성 명 : 예산신소재산업단지(주) 대표 박상록

2) 지구외 진입도로

- 가. 주 소 : 충청남도 예산군 예산읍 사직로 33
- 나. 성 명 : 예산군수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 (변경없음)

1) 지구내

가. 개발기간 : 2010년 ~ 2017년

나. 개발방법 : 민간개발방식

2) 지구외 진입도로

가. 개발기간 : 2013년 ~ 2017년

나. 개발방법 : 공영개발방식

5. 주요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 (변경)

가. 주요유치업종(변경없음)

중분류 코드		비고
C23	·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중복
C24	· 1차 금속 제조업	
C25	·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중복
C29	·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38	·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제조업	중복

나. 유치업종의 배치계획(변경)

구 분	면적(m ²)			구성비 (%)	
	기정	증감	변경후		
합 계	313,222	증)2,959	316,181	100.0	
C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4,960	-	4,960	1.6
C24	1차금속 제조업	260,326	감)32,774	227,552	72.0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3,306	증)8,988	12,294	3.9
C29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11,572	감)4,961	6,611	2.1
C38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제조업	33,058	증)10,670	43,728	13.8
C23	비금속광물제품제조업	-	증)21,036	21,036	6.6
C25	금속가공제품제조업				
C38	폐기물수집운반처리및원료제조업				

○ 주물업체 및 연관업체간 집단화를 통해 상호 생산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업종배치계획 변경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 (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면적(m ²)			구성비 (%)		
	기정	증감	변경후			
합 계	480,942	증) 1,084.8	482,026.8	100.0		
산업시설용지	313,222	증) 2,959.0	316,181.0	65.6		
지원 시설 용지	소계	13,395	-	13,395.0	2.7	
	지원시설	10,315	-	10,315.0	2.1	
	R&D	3,080	-	3,080.0	0.6	
기반 시설 용지	소계	154,325	감) 1,874.2	152,450.8	31.7	
	주차장	3,205	-	3,205.0	0.7	
	오수처리장	900	-	900.0	0.2	
	저류지	6,656	-	6,656.0	1.4	
	방수설비	1,804	-	1,804.0	0.4	
	배수지	288	증) 12.0	300.0	0.1	
	하천	6,138	감) 48.0	6,090.0	1.2	
	녹 지	소계	72,160	감) 2,756.0	69,404.0	14.4
		완충녹지	31,596	증) 26,699.0	58,295.0	12.1
		경관녹지	-	증) 8,726.0	8,726.0	1.8
공원		근린공원	29,512	감) 29,512	0.0	0.0
		수변공원	8,669	감) 8,669.0	0.0	0.0
	소공원	2,383	-	2,383.0	0.5	
도로	63,174	증) 917.8	64,091.8	13.3		

- 근린공원내 원형보존지로 인한 공원기능 수행 어려움으로 완충녹지로 변경
- 현황상 수변공원 결정이 부적합하여 경관녹지로 변경하고 식재계획은 기존 수변공원 조성시 계획내용을 반영
- 자연유하를 위한 배수지 위치 변경
- 배수지 위치변경 및 배수지 연결도로 변경에 따른 산업시설용지 일부 변경

나.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1) 교통시설계획(변경)

① 도로계획(변경)

- 도로계획 총괄표(지구내) (변경)

유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 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 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 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 수 (개소)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9	3,603	63,174.0	3	2,196	44,153.0	2	847	14,653.0	4	560	4,368.0
	변경	9	3,720	64,091.8	3	2,196	44,586.3	2	847	14,653.0	4	662	4,852.5
중로	기정	6	3,143	60,158.0	2	2,064	42,599.0	2	847	14,653.0	2	232	2,906.0
	변경	6	3,136	60,591.4	2	2,064	43,032.4	2	847	14,653.0	2	232	2,906.0
소로	기정	3	460	3,016.0	1	132	1,554.0	-	-	-	2	328	1,462.0
	변경	3	584	3,500.4	1	132	1,553.9	-	-	-	2	430	1,946.5

- 도로 결정 조서(지구내) (변경)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1	20.5	보조간선	2,019	산업단지 구역계 남측	저류시설	일반도로		충남도고시 제2011-179호	
변경	중로	1	1	20.5	보조간선	2,019	상몽리 965-9번지	상몽리 산36-68번지	일반도로		충남도고시 제2011-179호	
기정	중로	1	2	20.5	보조간선	45	중로1-1호선	1호 완충녹지	일반도로		충남도고시 제2011-179호	
변경	중로	1	2	20.5	보조간선	45	상몽리 482-13번지	상몽리 482-13번지	일반도로		충남도고시 제2011-179호	
기정	중로	2	1	15.0~17.75	집산도로	604	중로1-1호선	중로1-1호선	일반도로		충남도고시 제2011-179호	
변경	중로	2	1	15.0~17.75	집산도로	604	상몽리 443-3번지	상몽리 산36-62번지	일반도로		충남도고시 제2011-179호	
기정	중로	2	2	15.0	집산도로	243	중로1-1호선	중로1-1호선	일반도로		충남도고시 제2011-179호	
변경	중로	2	2	15.0	집산도로	243	상몽리 966-2번지	상몽리 457번지	일반도로		충남도고시 제2011-179호	
기정	중로	3	1	12.0	집산도로	199	중로1-2호선	폐수종말처리장	일반도로		충남도고시 제2011-179호	
변경	중로	3	1	12.0	국지도로	199	상몽리 482-13번지	상몽리 712-3번지	일반도로		충남도고시 제2011-179호	
기정	중로	3	2	12.0	집산도로	33	중로1-1호선	중로3-1호선	일반도로		충남도고시 제2011-179호	
변경	중로	3	2	12.0	국지도로	33	상몽리 459-8번지	상몽리 459-8번지	일반도로		충남도고시 제2011-179호	
기정	소로	1	1	10.5	집산도로	132	중로1-1호선	산업단지 구역계 서측	일반도로		충남도고시 제2011-179호	
변경	소로	1	1	10.5	국지도로	132	상몽리 산36-68번지	상몽리 산36-68번지	일반도로		충남도고시 제2011-179호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	4.0	집산도로	266	산업단지 구역계 남측	산업단지 구역계 서측	일반도로		충남도고시 제2011-179호	
변경	소로	3	1	4.0	국지도로	368	상봉리 482-13번지	상봉리 산36-121번지	일반도로		충남도고시 제2011-179호	
기정	소로	3	2	6.0	집산도로	62	중로1-1호선	산업단지 구역계 동측	일반도로		충남도고시 제2011-179호	
변경	소로	3	2	6.0	국지도로	62	상봉리 966-8번지	상봉리 710-1번지	일반도로		충남도고시 제2011-179호	

○ 도로계획 총괄표(지구외) (변경없음)

유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 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 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 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 수 (개소)	연장 (m)	면적 (㎡)
합계	2	4,778	53,856	1	2,628	27,356	1	2,150	26,500	-	-	-
소로	2	4,778	53,856	1	2,628	27,356	1	2,150	26,500	-	-	-

○ 도로 결정 조서(지구외) (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	8~25	주간선도로	2,150	고덕면 호음리 18-14	고덕면 몽곡리 928	일반도로	고덕면	충남도고시 제2010-272호	
기정	소로	1	7	10~20	보조간선	2,628	소로 2-1	중로 1-1	일반도로		충남도고시 제2013-295호	

② 주차장계획(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205	-	3,205	-	
기정	1	노외주차장	고덕면 상봉리 482-3번지 일원	1,405	-	1,405	충남도고시 제2011-179호	
기정	2	노외주차장	고덕면 상봉리 산36-67번지 일원	1,800	-	1,800	충남도고시 제2011-179호	

2) 공간시설계획(변경)

① 공원계획(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1,596	증) 35,425	67,021	-	
변경	1	녹지	완충녹지	고덕면 상봉리 482-13번지 일원	8,567	증) 30,810	39,377	충남도고시 제2011-179호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2	녹지	완충녹지	고덕면 상몽리 443-3번지 일원	2,978	증) 15,940	18,918	충남도고시 제2011-179호	
폐지	3	녹지	완충녹지	고덕면 상몽리 443-3번지 일원	20,051	감) 20,051	-	충남도고시 제2011-179호	
신설	1	녹지	경관녹지	고덕면 상몽리 442-12번지 일원	-	증) 8,726	8,726	-	

② 녹지계획(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1,596	증) 35,425	67,021	-	
변경	1	녹지	완충녹지	고덕면 상몽리 482-13번지 일원	8,567	증) 30,810	39,377	충남도고시 제2011-179호	
변경	2	녹지	완충녹지	고덕면 상몽리 443-3번지 일원	2,978	증) 15,940	18,918	충남도고시 제2011-179호	
폐지	3	녹지	완충녹지	고덕면 상몽리 443-3번지 일원	20,051	감) 20,051	-	충남도고시 제2011-179호	
신설	1	녹지	경관녹지	고덕면 상몽리 442-12번지 일원	-	증) 8,726	8,726	-	

3) 수도공급설비(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수도공급 설비	고덕면 상몽리 산36-121번지 일원	288	증) 12	300	충남도고시 제2011-179호	

4) 방재시설계획(변경)

① 하천계획(변경)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km)	폭원 (m)	면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1	하천	소하천	고덕면 상몽리 442-1번지 일원	예산신소재 산업단지 남측구역계	예산신소재 산업단지	0.74	8	6,138	충남도고시 제2011-179호	
변경	1	하천	소하천	고덕면 상몽리 442-1번지 일원	예산신소재 산업단지 남측구역계	예산신소재 산업단지	0.74	8	6,090	충남도고시 제2011-179호	

② 우수지계획(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개소	6,656	-	6,656		
기정	1	우수지	저류시설	고덕면 상몽리 965-6번지 일원	6,656	-	6,656	충남도고시 제2011-179호	

③ 방수설비계획(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개소	1,804	-	1,804		
기정	1	방수설비	고덕면 상몽리 965-9번지 일원	322	-	322	충남도고시 제2011-179호	
기정	2	방수설비	고덕면 상몽리 786-6번지 일원	1,482	-	1,482	충남도고시 제2011-179호	

5) 환경기초시설계획(변경없음)

① 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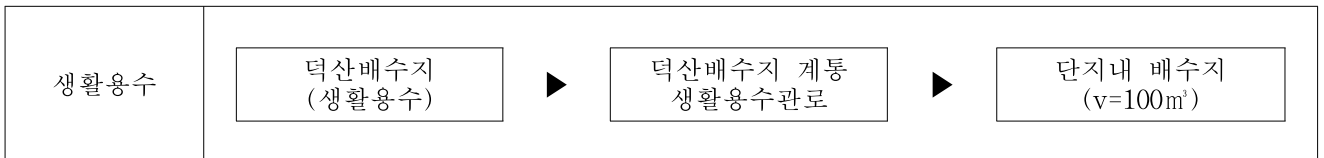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수질오염 방지시설	오수 처리시설	고덕면 상몽리 459-9번지 일원	900	-	900	충남도고시 제2011-179호	

6) 공급처리계획(변경)

① 용수공급계획(변경)

구분	부지면적 (천m ²)		급수인구 (인)		급수원단위 (ℓ/인,일)	일최대계획급수량 (m ³ /일)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합 계	327	337	2,363	2,023	-	189.0	161.8	
산업시설용지	313	331	2,148	1,838	80	171.8	147.0	
지원,R&D시설용지	13	5	214	184	80	17.1	14.7	
기반시설용지	1	1	1	1	80	0.1	0.1	오수처리시설

<용수공급계통도>



② 오수처리계획(변경)

구 분	오 · 폐수량(m ³ /일)						비 고
	합 계		생활오수		지하수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총 계	162.9	129.4	148.1	112.5	14.8	16.9	

③ 폐기물처리계획(변경)

구 분	폐기물 발생량 (톤/년)						비 고
	합 계		처리대상		재활용품+생활폐기물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사업지구	81,321	104,280.5	4193.9	3,190.1	237.2	101,090.4	

④ 전력공급계획(변경)

구 분	전력사용량(MWh/년)		최대전력부하(kw)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전력수요	220,165	208,670	31,620	30,963	예산변전소

⑤ 에너지공급계획(변경)

구 분	년간 총 열수요량 (Gcal/년)		최대열부하 (Gcal/hr)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산업시설용지	123,136	136,563	5.04	5.87	
직접열	107,975	118,940	-	-	
간접열	15,161	17,623	5.04	5.87	
지원 및 공공시설용지	2,021	1,040	2.18	1.30	
합계	125,157	137,603	7.22	7.17	

⑥ 통신공급계획(변경)

구 분	인구 및 면적		산정 원단위	통신수요 (회선)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	-	-	575	505	
산업시설용지	2,363인	1,820인	1.0회선/10인	236	182	상근인구
지 원 시 설	10,315㎡	10,315㎡	0.2회선/10㎡	206	206	
여 유회 선	30%			133	117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변경)

구 분	계획내용(변 경)	사업비(변경없음)
산업단지 진입도로 (변경없음)	면적 : 112,088㎡ 연장-소로1-7(2,628m) 소로2-1(2,150m)	국고지원
배수지 (변 경)	기정 - 면적 : 288㎡ 변경 - 면적 : 300㎡ (D=100mm, L=2.8km)	국고지원

8. 재원조달계획(변경)

1) 총사업비(변경)

구 분	금액(백만원)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합 계	67,695	74,119	100.0	-
보상비(A)	32,749	32,749	44.2	토지, 지장물, 간접보상비
공사비(B)	26,996	36,520	49.3	공사, 설계, 감리 등
금융비용(C)	6,800	4,500	6.1	대출취급수수료 1% 300억원×년5%×2년
기타(D)	1,150	350	0.4	생태계보전협력금, 산지복구예치금

* 사업비는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연차별 자금투자계획(변경)

(단위:백만원)

구 분	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74,119	1,465	2,000	-	-	-	-	41,535	29,119
보 상 비	32,749	-	2,000	-	-	-	-	18,198	12,551
공 사 비	36,520	1,350	-	-	-	-	-	21,102	14,068
금융비용	4,500	-	-	-	-	-	-	2,000	2,500
기타	350	115	-	-	-	-	-	235	-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주소(변경)

: 별첨1

II.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 지구내 : 예산신소재 일반산업단지
- 지구외 진입도로 : 예산신소재 일반산업단지 지구외 사업 준용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변경없음)

- 지구내 : 예산신소재산업단지(주) 대표 박상록
- 지구외 진입도로 : 예산군수

3. 사업의 목적(변경없음)

- 인천 서부산업단지내 경인주물조합 업체의 유망중소기업 지방이전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표방한 수도권 기업의 지방이전 정책에 부응
- 기존 뿌리산업 집적지 고도화 및 특화단지 조성을 통해 뿌리산업 업종 내, 업종 간 협업을 활성화하여 생산성 제고
- 상호 연계가 가능한 금형, 주조, 열처리업체를 동반 입주시켜 업종 융합에 따른 융합형 단지 조성을 통해 생산성 제고 효과 극대화
- 인접한 서해안의 철강클러스터와 연결되는 내륙거점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자족성이 부족한 예산군의 지역 산업기반 확충 및 지역경제 발전 도모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1) 지구내(변경)

- 가. 위 치 :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몽곡리, 상몽리 일원
- 나. 면 적 : 기정-480,942㎡, 변경-482,026.8㎡

2) 지구외(변경없음)

- 가. 위 치 :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몽곡리 667번지 일원
- 나. 면 적 : 112,088㎡ (2개노선)

5. 사업시행기간(변경없음)

1) 지구내

- 가. 개발기간 : 2010년 ~ 2017년
- 나. 개발방법 : 민간개발방식

2) 지구외 진입도로

- 가. 개발기간 : 2013년 ~ 2017년
- 나. 개발방법 : 공영개발방식

6. 사업비 및 채원조달계획(변경)

1) 총사업비(변경)

구 분	금액(백만원)		구성비(%)	비고
	기정	변경		
합 계	67,695	74,119	100.0	-
보상비(A)	32,749	32,749	44.2	토지, 지장물, 간접보상비
공사비(B)	26,996	36,520	49.3	공사, 설계, 감리 등
금융비용(C)	6,800	4,500	6.1	대출취급수수료 1% 300억원×년5%×2년
기타(D)	1,150	350	0.4	생태계보전협력금, 산지복구예치금

※ 사업비는 사업여건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연차별 자금투자계획(변경)

(단위:백만원)

구분	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계	74,119	1,465	2,000	-	-	-	-	41,535	29,119
보상비	32,749	-	2,000	-	-	-	-	18,198	12,551
공사비	36,520	1,350	-	-	-	-	-	21,102	14,068
금융비용	4,500	-	-	-	-	-	-	2,000	2,500
기타	350	115	-	-	-	-	-	235	-

7.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변경)

1) 지구내(변경)

구분	면적(m ²)			구성비 (%)	관리처분계획	
	기정	증감	변경			
합계	480,942	증) 1,084.8	482,026.8	100.0		
처분대상용지	산업시설	313,222	증) 2,959.0	316,181.0	65.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의거 실수요자 분양
	지원시설	10,315	-	10,315.0	2.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의하여 일반 분양
	R & D	3,080	-	3,080.0	0.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의하여 일반 분양
국가/지자체 무상귀속 시설용지	소계	154,325	감) 1,874.2	152,450.8	31.7	
	주차장	3,205	-	3,205.0	0.7	예산군 무상귀속
	오수처리장	900	-	900.0	0.2	예산군 무상귀속
	저류지	6,656	-	6,656.0	1.4	예산군 무상귀속
	방수설비	1,804	-	1,804.0	0.4	한국농어촌공사 무상귀속
	배수지	288	증) 12.0	300.0	0.1	예산군 무상귀속
	하천	6,138	감) 48.0	6,090.0	1.2	예산군 무상귀속
	녹지	31,596	증)35,425.0	67,021.0	13.9	예산군 무상귀속
	공원	40,564	감) 38,181.0	2,383.0	0.5	예산군 무상귀속
	도로	63,174	증) 917.8	64,091.8	13.3	예산군 무상귀속

2) 지구외 진입도로(변경없음)

구분	면적 (m ²)	구성비 (%)	비고
계	112,088	100.0	
국가/지자체 무상귀속 시설용지	112,088	100.0	도로

8. 사업시행 지역 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 해당없음

9.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관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변경)

1) 토지 등의 매수 및 보상계획(변경없음)

가. 사유지

-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의거, 평가한 평가금액의 산술평균치를 사정가격으로 협의 취득 및 보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할 수 없을 때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거 수용재결 신청

나. 국·공유지

- 산업단지내 포함되는 국·공유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거,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은 지자체에 무상으로 귀속

다. 기타의 보상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협의에 의한 매수 및 보상

2) 토지 등의 매수현황 및 추진계획(변경)

구 분		수 량		추진 계획	비고	
		필지	면적(m ²)			
합계		103	482,026.8			
토 지	사 유 지	86	427,059.4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수용		
	국·공유지	소 계	17	54,967.4		◦ 무상: 11필지, 42,765.4m ² ◦ 유상: 6필지, 12,202m ²
		국 토 교 통 부	5	22,302.0		◦ 무상: 5필지, 22,302m ²
		농 립 축 산 식 품 부	6	20,463.4		◦ 무상: 6필지, 20,463.4m ²
		기 획 재 정 부	2	781.0		◦ 유상: 2필지, 781m ²
		예 산 군	4	11,421.0		◦ 유상: 4필지, 11,421m ²
지 장 물	-	-	◦ 보상후 철거			

10.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변경)

◦ 지구내(변경)

1) 사업시행자 무상귀속분(변경)

가. 총괄표

구분	계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필지수		면적(m ²)		필지수		면적(m ²)		필지수		면적(m ²)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1	11	43,309	42,765.4	5	5	22,827	22,302	6	6	20,482	20,463.4
도로	1	1	4,389	4,388.6	-	-	-	-	1	1	4,389	4,388.6
구거	10	10	38,920	38,376.8	5	5	22,827	22,302	5	5	16,093	16,074.8

나. 소관청별 조서

-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m ²)				소유관청	사실상 이 용 현 황
		기정	변경		지 적		편입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	고덕면 상봉리	442-2	442-11	구	9,542	7,702	7,914	7,702	국토교통부	도,구
2	고덕면 상봉리	457-1	457-1	구	5,901	5,901	5,901	5,901	국토교통부	도,구
3	고덕면 상봉리	786-6	786-20	구	7,220	3,163	3,152	3,163	국토교통부	구
4	고덕면 상봉리	산155	산155	구	3,988	3,988	3,988	3,988	국토교통부	도,구
5	고덕면 상봉리	산156	712-3	구	2,215	1,548	1,872	1,548	국토교통부	구
계							22,827	22,302	5필지	

- 농림축산식품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면 적 (m ²)				소유관청	사실상 이 용 현 황
		기정	변경		지 적		편입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1	고덕면 상봉리	710	710-1	구	1,944.0	1,886.0	1,886	1,886.0	농림축산식품부	도,구
2	고덕면 상봉리	711	711	구	1,627.0	1,627.0	1,627	1,627.0	농림축산식품부	도,구
3	고덕면 상봉리	712	712	구	1,706.0	1,706.0	1,706	1,706.0	농림축산식품부	도,구
4	고덕면 상봉리	996	966-1	구	13,319.6	8,559.0	8,578	8,559.0	농림축산식품부	도,구

5	고덕면 상봉리	997	998-1	도	6,644.3	2,296.8	4,389	2,296.8	농림축산식품부	도
6	고덕면 상봉리	998	997-1	구	3,620.0	4,388.6	2,296	4,388.6	농림축산식품부	구
계							20,482	20,463.4	6필지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무상귀속분(변경)

구 분	시 설 수	면적(m ²)		비고
		기정	변경	
계		154,325	152,450.8	
주 차 장	2개소	3,205	3,205.0	
오 수 처 리 장	1개소	900	900.0	
저 류 지	1개소	6,656	6,656.0	
방 수 설 비	2개소	1,804	1,804.0	
배 수 지	1개소	288	300.0	
하 천	1개소	6,138	6,090.0	
녹 지	3개소	31,596	67,021.0	
공 원	1개소	40,564	2,383.0	
도 로	9노선	63,174	64,091.8	

3) 대체시설을 시행할 자 및 시행방법(변경없음)

가. 시행할 자 : 예산신소재산업단지(주)

나. 시행방법 :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에 의한 민간개발

4) 대체시설을 관리할 자 (변경없음)

「마.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에 따라 처리하겠음.

5) 기존 공공시설의 폐지로 인한 인근의 지장 유무 : 해당없음

6) 용도폐지되는 기존공공시설 (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필지수		면 적(m ²)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11	11	43,309	42,765.4	
도 로	1	1	4,389	4,388.6	
구 거	10	10	38,920	38,376.8	

나. 이용상태

- 도 로 : 경작을 하기위한 농기계 이용도로

- 구 거 : 대상지내 농경지를 가로지르는 농수로

7) 대체시설로 새로이 설치되는 공공시설 (변경)

가. 시설의 종류 및 내용

구 분	시 설 수	면적(m ²)		비고
		기정	변경	
계		154,325	152,450.8	
주 차 장	2개소	3,205	3,205.0	
오 수 처 리 장	1개소	900	900.0	
저 류 지	1개소	6,656	6,656.0	
방 수 설 비	2개소	1,804	1,804.0	
배 수 지	1개소	288	300.0	
하 천	1개소	6,138	6,090.0	
녹 지	3개소	31,596	67,021.0	
공 원	1개소	40,564	2,383.0	
도 로	9노선	63,174	64,091.8	

나. 시설의 이용계획

- 주차장 : 근로자 및 지원시설용지 이용자의 주차 편의를 위한 시설(변경)
- 오수처리장 : 단지내 발생하는 오수의 처리(변경)
- 저류시설 : 집중강우시의 재해저감을 위한 저류시설
- 방수설비 : 인근 농지에서 이용하는 농수로를 연결하기 위한 시설(변경)
- 배수지 : 산업단지 내 원활한 용수공급을 위한 시설(변경)
- 하 천 : 기존의 소하천을 재정비하고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시설
- 녹 지 : 산업단지 구성에 따른 외부로의 영향을 최소화 하기위한 녹지시설(변경)
- 공 원 : 근로자 및 주민들의 휴식 및 건강증진과 친환경적 산업단지 구성을 위한 시설
- 도 로 : 개별 공장용지로 진입하는 국지도로

○ 지구외 진입도로(변경없음)

11.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각 호의 사항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480,942.0	증) 1,084.8	482,026.8	100.0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461,488.0	증) 20,538.8	482,026.8	100.0
	준공업지역	19,454.0	감) 19,454.0	-	-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	용적률 (%)	변경사유
		기 정	변 경			
1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 산36-67번지 일원	일반공업 지역	일반공업 지역	482,026.8	250% 이하	• 산업단지계획 변경에 따른 토지의 효율적, 합리적 이용을 위한 일반공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 및 경계측량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2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 산72-1번지 일원	준공업 지역	-	-	-	• 산업단지계획 변경에 따른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도면 표시 번호	구 역 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1	예산신소재 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	충남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 산36-67번지 일원	480,942	증)1,084.8	482,026.8	

○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사유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면 적 (㎡)	결정(변경)사유
변경	1	충남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 산36-67번지 일원	482,026.8	• 산업단지 경계측량에 따른 토지분할면적 반영을 위한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변경

다. 도시·군 계획시설 결정(변경) 조서

1) 교통시설계획

① 도로계획(변경)

○ 도로계획 총괄표(지구내) (변경)

유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 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 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 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 수 (개소)	연장 (m)	면적 (㎡)	
합계	기정	9	3,603	63,174.0	3	2,196	44,153.0	2	847	14,653.0	4	560	4,368.0
	변경	9	3,720	64,091.8	3	2,196	44,586.3	2	847	14,653.0	4	662	4,852.5
중로	기정	6	3,143	60,158.0	2	2,064	42,599.0	2	847	14,653.0	2	232	2,906.0
	변경	6	3,136	60,591.4	2	2,064	43,032.4	2	847	14,653.0	2	232	2,906.0
소로	기정	3	460	3,016.0	1	132	1,554.0	-	-	-	2	328	1,462.0
	변경	3	584	3,500.4	1	132	1,553.9	-	-	-	2	430	1,946.5

○ 도로 결정(변경) 조서(지구내)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1	20.5	보조간선	2,019	산업단지 구역계 남측	저류시설	일반도로		충남도고시 제2011-179호	
변경	중로	1	1	20.5	보조간선	2,019	상몽리 965-9번지	상몽리 산36-68번지	일반도로		충남도고시 제2011-179호	
기정	중로	1	2	20.5	보조간선	45	중로1-1호선	1호 완충녹지	일반도로		충남도고시 제2011-179호	
변경	중로	1	2	20.5	보조간선	45	상몽리 482-13번지	상몽리 482-13번지	일반도로		충남도고시 제2011-179호	
기정	중로	2	1	15.0~17.75	집산도로	604	중로1-1호선	중로1-1호선	일반도로		충남도고시 제2011-179호	
변경	중로	2	1	15.0~17.75	집산도로	604	상몽리 443-3번지	상몽리 산36-62번지	일반도로		충남도고시 제2011-179호	
기정	중로	2	2	15.0	집산도로	243	중로1-1호선	중로1-1호선	일반도로		충남도고시 제2011-179호	
변경	중로	2	2	15.0	집산도로	243	상몽리 966-2번지	상몽리 457번지	일반도로		충남도고시 제2011-179호	
기정	중로	3	1	12.0	집산도로	199	중로1-2호선	폐수종말처리장	일반도로		충남도고시 제2011-179호	
변경	중로	3	1	12.0	국지도로	199	상몽리 482-13번지	상몽리 712-3번지	일반도로		충남도고시 제2011-179호	
기정	중로	3	2	12.0	집산도로	33	중로1-1호선	중로3-1호선	일반도로		충남도고시 제2011-179호	
변경	중로	3	2	12.0	국지도로	33	상몽리 459-8번지	상몽리 459-8번지	일반도로		충남도고시 제2011-179호	
기정	소로	1	1	10.5	집산도로	132	중로1-1호선	산업단지 구역계 서측	일반도로		충남도고시 제2011-179호	
변경	소로	1	1	10.5	국지도로	132	상몽리 산36-68번지	상몽리 산36-68번지	일반도로		충남도고시 제2011-179호	
기정	소로	3	1	4.0	집산도로	266	산업단지 구역계 남측	산업단지 구역계 서측	일반도로		충남도고시 제2011-179호	
변경	소로	3	1	4.0	국지도로	368	상몽리 482-13번지	상몽리 산36-121번지	일반도로		충남도고시 제2011-179호	
기정	소로	3	2	6.0	집산도로	62	중로1-1호선	산업단지 구역계 동측	일반도로		충남도고시 제2011-179호	
변경	소로	3	2	6.0	국지도로	62	상몽리 966-8번지	상몽리 710-1번지	일반도로		충남도고시 제2011-179호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지구내)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1-1	중로1-1	○기·종점 명칭 변경 - 기점 : 산업단지 구역계 남측 → 상몽리965-9 - 종점 : 저류시설 → 상몽리 산36-68	• 명확한 기·종점 확인을 위한 지번 표기
중로1-2	중로1-2	○기·종점 명칭 변경 - 기점 : 중로1-1 → 상몽리482-13 - 종점 : 1호완충녹지 → 상몽리 482-13	• 명확한 기·종점 확인을 위한 지번 표기
중로2-1	중로2-1	○기·종점 명칭 변경 - 기점 : 중로1-1 → 상몽리443-3 - 종점 : 중로1-1 → 상몽리산36-62	• 명확한 기·종점 확인을 위한 지번 표기
중로2-2	중로2-2	○기·종점 명칭 변경 - 기점 : 중로1-1호선 → 상몽리966-2 - 종점 : 중로1-1호선 → 상몽리457	• 명확한 기·종점 확인을 위한 지번 표기
중로3-1	중로3-1	○기·종점 명칭 변경 - 기점 : 중로1-2호선 → 상몽리482-13 - 종점 : 폐수종말처리장 → 상몽리712-3	• 명확한 기·종점 확인을 위한 지번 표기
중로3-2	중로3-2	○기·종점 명칭 변경 - 기점 : 중로1-1호선 → 상몽리459-8 - 종점 : 중로3-1호선 → 상몽리459-8	• 명확한 기·종점 확인을 위한 지번 표기
소로1-1	소로1-1	○기·종점 변경 - 기점 : 중로1-1호선 → 상몽리 산36-68 - 종점 : 산업단지 구역계 서측 → 상몽리 산36-68	• 명확한 기·종점 확인을 위한 지번 표기
소로3-1	소로3-1	○기·종점 변경 - 기점 : 산업단지 구역계 남측 → 상몽리 482-13 - 종점 : 산업단지 구역계 서측 → 상몽리 산36-121 ○연장변경 - 연장 : 266m → 368m	• 산업단지 계획 변경에 따른 연장 변경 및 명확한 기·종점 확인을 위한 지번 표기
소로3-2	소로3-2	○기·종점 변경 - 기점 : 중로1-1호선 → 상몽리 966-8 - 종점 : 산업단지 구역계 동측 → 상몽리 710-1	• 명확한 기·종점 확인을 위한 지번 표기

○ 도로계획 총괄표(지구외) (변경없음)

유별	합 계			1 류			2 류			3 류		
	노선 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 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 수 (개소)	연장 (m)	면적 (㎡)	노선 수 (개소)	연장 (m)	면적 (㎡)
합계	2	4,778	53,856	1	2,628	27,356	1	2,150	26,500	-	-	-
소로	2	4,778	53,856	1	2,628	27,356	1	2,150	26,500	-	-	-

○ 도로 결정 조서(지구외) (변경없음)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	8~25	주간선 도로	2,150	고덕면 호음리 18-14	고덕면 몽곡리 928	일반 도로	고덕면	충남도고시 제2010-272호	
기정	소로	1	7	10~20	보조 간선	2,628	소로 2-1	중로 1-1	일반 도로		충남도고시 제2013-295호	

② 주차장계획(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3,205	-	3,205	-	
기정	1	노외주차장	고덕면 상풍리 482-3번지 일원	1,405	-	1,405	충남도고시 제2011-179호	
기정	2	노외주차장	고덕면 상풍리 산36-67번지 일원	1,800	-	1,800	충남도고시 제2011-179호	

2) 공간시설계획(변경)

① 공원계획(변경)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40,564	감) 38,181	2,383	-	
폐지	1	공원	근린공원	고덕면 상풍리 산36-121번지 일원	29,512	감) 29,512	-	충남도고시 제2011-179호	
폐지	1	공원	수변공원	고덕면 상풍리 442-1번지 일원	8,669	감) 8,669	-	충남도고시 제2011-179호	
기정	1	공원	소공원	고덕면 상풍리 산69번지 일원	2,383	-	2,383	충남도고시 제2011-179호	조성계획 변경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근린공원	폐지 (면적 : 29,512m ²)	• 대부분이 원형보존 녹지로서 근린공원 기능 수행을 위한 이용자 편의시설 설치가 불가하여 완충녹지로 변경
1	수변공원	폐지 (면적 : 8,669m ²)	• 수변공원으로써의 기능 수행 부족 및 하천수량 부족으로 경관녹지로 변경

○ 제1호 근린공원조성계획(폐지)

○ 제1호 수변공원조성계획(폐지)

○ 제1호 소공원조성계획(변경)

- 조성계획 총괄표

구 분	부지면적(m ²)		시설면적(m ²)		건 축 물			공작물		구성비(%)		비 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동수 (동)	바닥면적 (m ²)	연면적 (m ²)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2,383.20	2,383.00	255.83	252.36				8	7	100.0	100.0	시설율 10.58%
기 단 시 설	소계	226.38	222.91	226.38	222.91			1	-	9.50	9.35	
	도로	226.38	222.91	226.38	222.91			1	-	9.50	9.35	
휴양시설	29.45	29.45	29.45	29.45				4	4	1.23	1.23	
녹 지	2,127.37	2,130.64	-	-				3	3	89.27	89.42	

- 세부시설 결정조서

▲ 시설결정조서

구분	위치	시설번호	부지면적(㎡)		시설면적(㎡)		건축물			공작물(기)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규모	바닥면적(㎡)	연면적(㎡)	기정	변경	
합계			2,383.20	2,383.00	2,383.20	252.36				8	7	
기반시설	소계		226.38	222.91	226.38	222.91				1	-	
	주도로(소로)	가-1	226.38	222.91	226.38	222.91				계단-1	-	
휴양시설	소계		29.45	29.45	29.45	29.45				4	4	
	휴게공간	나-1	29.45	29.45	29.45	29.45				원형플랜터-1 앞음벽-3	원형플랜터-1 앞음벽-3	
녹지	소계		2,127.37	2,130.64	-	-				3	3	
	녹지	다-1	2,127.37	2,130.64	-	-				체력단련시설-3	체력단련시설-3	

▲ 도로조서(세부조서)

등급	류별	번호	연장(m)		폭원(m)	면적(㎡)		기능	기점	종점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소로	소계		50.3	51.5		226.38	222.91				
		A-1	50.3	51.5	1.5~6.5	226.38	222.91	주도로	서측진입로	주차장	

② 녹지계획(변경)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시설의종류	위치	면적(㎡)			최초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31,596	증) 35,425	67,021	-	
변경	1	녹지	완충녹지	고덕면 상몽리 482-13번지 일원	8,567	증) 30,810	39,377	충남도고시 제2011-179호	
변경	2	녹지	완충녹지	고덕면 상몽리 443-3번지 일원	2,978	증) 15,940	18,918	충남도고시 제2011-179호	
폐지	3	녹지	완충녹지	고덕면 상몽리 443-3번지 일원	20,051	감) 20,051	-	충남도고시 제2011-179호	
신설	1	녹지	경관녹지	고덕면 상몽리 442-12번지 일원	-	증) 8,726	8,726	-	

○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완충녹지	○면적변경 - 8,567㎡ → 39,377㎡	• 근린공원 폐지에 따른 완충녹지로 변경
2	완충녹지	○면적변경 - 2,978㎡ → 18,918㎡	• 산업단지계획 변경에 따른 완충녹지 면적 변경
3	완충녹지	○완충녹지 폐지	• 산업단지계획 변경에 따른 완충녹지 폐지
1	경관녹지	○경관녹지신설 - 면적 : 8,726㎡	• 합리적인 녹지계획 수립을 위해 기정 수변공원을 경관녹지로 변경

3) 수도공급설비(변경)

○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 경	변경후		
변경	1	수도공급 설비	고덕면 상몽리 산36-121번지 일원	288	증) 12	300	충남도고시 제2011-179호	

○ 수도공급설비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수도공급설비	○면적변경 - 면적 : 288m ² → 300m ²	• 동일지번 내 위치변경 및 정형화에 따른 면적변경

4) 방제시설계획(변경)

① 하천계획(변경)

○ 하천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연장 (km)	폭원 (m)	면적 (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점	종점	주요 경과지					
기정	1	하천	소하천	고덕면 상몽리 442-1번지 일원	예산신소재 산업단지 남측구역계	예산신소재 산업단지	0.74	8	6,138	충남도고시 제2011-179호	
변경	1	하천	소하천	고덕면 상몽리 442-1번지 일원	예산신소재 산업단지 남측구역계	예산신소재 산업단지	0.74	8	6,090	충남도고시 제2011-179호	

○ 하천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하천	○면적변경 - 면적 : 6,138m ² → 6,090m ²	• 소로3-2호선과의 중복 면적 제척에 따른 면적 변경

② 유수지계획(변경없음)

○ 유수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개소	6,656	-	6,656		
기정	1	유수지	저류시설	고덕면 상몽리 965-6번지 일원	6,656	-	6,656	충남도고시 제2011-179호	

③ 방수설비계획(변경없음)

○ 방수설비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개소	1,804	-	1,804		
기정	1	방수설비	고덕면 상몽리 965-9번지 일원	322	-	322	충남도고시 제2011-179호		
기정	2	방수설비	고덕면 상몽리 786-6번지 일원	1,482	-	1,482	충남도고시 제2011-179호		

5) 환경기초시설계획(변경없음)

① 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없음)

○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m ²)			최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1	수질오염 방지시설	오수 처리시설	고덕면 상몽리 459-9번지 일원	900	-	900	충남도고시 제2011-179호	

라.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세분 및 용도지역·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군 관리계획(변경) 결정 조서

○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m ²)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480,942.0	증) 1,084.8	482,026.8	100.0	
도시지역	일반공업지역	461,488.0	증) 20,538.8	482,026.8	100.0	
	준공업지역	19,454.0	감) 19,454.0	-	-	

○ 용도지역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 도 지 역		면 적 (m ²)	용적률 (%)	변경사유
		기 정	변 경			
1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 산36-67번지 일원	일반공업 지역	일반공업 지역	482,026.8	250% 이하	• 산업단지계획 변경에 따른 토지의 효율적, 합리적 이용을 위한 일반 공업지역으로의 용도변경 및 경계 측량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
2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 산72-1번지 일원	준공업 지역	-	-	-	• 산업단지계획 변경에 따른 토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일반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

2)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군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 「11. 도시관리계획결정」에 대한 사항 중 「다. 도시·군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참조

3)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① 산업시설용지(변경)

가구번호		획지번호		가구면적(m ²)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위 치		면적(m ²)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계				313,222	316,181	-		313,222	316,181	
산업1	산업1	-1	-1	70,451	70,451	상몽리 476-2번지 일원	상몽리 457번지 일원	8,566	3,306	
		-2	-2			상몽리 458-1번지 일원	상몽리 456번지 일원	8,261	3,306	
		-3	-3			상몽리 산70번지 일원	상몽리 산70번지 일원	4,960	9,920	
		-4	-4			상몽리 산36-121번지 일원	상몽리 458-1번지 일원	4,960	4,960	
		-5	-5			상몽리 457번지 일원	상몽리 산71-1번지 일원	4,960	3,306	

가구번호		획지번호		가구면적(m ²)		획 지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기정	변경	위 치		면적(m ²)		
						기정	변경	기정	변경	
		-6	-6			상몽리 456번지 일원	상몽리 459-4번지 일원	3,306	4,029	
		-7	-7			상몽리 산69번지 일원	상몽리 454-2번지 일원	2,380	16,529	
		-8	-8			상몽리 산70번지 일원	상몽리 산70-1번지 일원	16,529	8,595	
		-9	-9			상몽리 산70번지 일원	상몽리 476-1번지 일원	16,529	16,500	
산업2	산업2	-1	-1	44,540	45,800	상몽리 산36-121번지 일원	상몽리 산36-121번지 일원	33,058	12,742	
		-2	-2			상몽리 산36-121번지 일원	상몽리 산36-121번지 일원	3,306	33,058	
		-3	-3			상몽리 산36-121번지 일원	-	4,138	-	
		-4	-			상몽리 산36-121번지 일원	-	4,038	-	
산업3	산업3	-1	-1	84,751	84,751	상몽리 산69번지 일원	상몽리 443-3번지 일원	16,529	3,305	
		-2	-2			상몽리 968-3번지 일원	상몽리 443-3번지 일원	13,223	3,306	
		-3	-3			상몽리 443번지 일원	상몽리 443-3번지 일원	3,827	4,960	
		-4	-4			상몽리 산36-67번지 일원	상몽리 443-3번지 일원	3,827	4,521	
		-5	-5			상몽리 산36-67번지 일원	상몽리 968번지 일원	4,960	4,623	
		-6	-6			상몽리 산36-67번지 일원	상몽리 산69번지 일원	3,306	5,120	
		-7	-7			상몽리 산36-67번지 일원	상몽리 산69번지 일원	3,306	6,613	
		-8	-8			상몽리 산69번지 일원	상몽리 443번지 일원	2,715	22,551	
		-9	-9			상몽리 산69번지 일원	상몽리 968-4번지 일원	16,529	6,612	
		-10	-10			상몽리 산69번지 일원	상몽리 967-3번지 일원	16,529	6,611	
		-	-11			-	상몽리 966번지 일원	-	16,529	
산업4	산업4	-1	-1	45,458	45,458	상몽리 산36-68번지 일원	상몽리 443-3번지 일원	33,060	4,133	
		-2	-2			상몽리 산36-67번지 일원	상몽리 산36-68번지 일원	12,398	8,265	
		-	-3			-	상몽리 산36-68번지 일원	-	33,060	
산업5	산업5	-1	-1	11,000	11,000	상몽리 산36-68번지 일원	상몽리 산36-68	11,000	11,000	
산업6	산업6	-1	-1	57,022	58,721	상몽리 산36-68번지 일원	상몽리 산36-68번지 일원	8,660	16,528	
		-2	-2			상몽리 산36-68번지 일원	상몽리 산36-68번지 일원	9,917	3,333	
		-3	-3			상몽리 산36-67번지 일원	상몽리 443-3번지 일원	3,306	2,083	
		-4	-4			상몽리 산36-67번지 일원	상몽리 443-3번지 일원	3,306	3,306	
		-5	-5			상몽리 산36-67번지 일원	상몽리 443-3번지 일원	3,306	3,306	
		-6	-6			상몽리 산36-67번지 일원	상몽리 443-3번지 일원	26,447	4,960	
		-7	-7			상몽리 산36-67번지 일원	상몽리 443-3번지 일원	2,080	9,587	
		-8	-8			-	상몽리 443-3번지 일원	-	15,618	

②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가구번호	획지번호	가구면적(m ²)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m ²)	
계		10,315		10,315	
지원1	-1	4,018	상몽리 산72-1번지 일원	945	
	-2		상몽리 459-4번지 일원	1,023	
	-3		상몽리 459-4번지 일원	1,023	
	-4		상몽리 459-4번지 일원	1,027	
지원2	-1	1,577	상몽리 459-8번지 일원	790	
	-2		상몽리 459-8번지 일원	787	
지원3	-1	4,720	상몽리 산72-1번지 일원	3,254	
	-2		상몽리 산72-1번지 일원	733	
	-3		상몽리 459-4번지 일원	733	

③ R&D시설용지(변경없음)

가구번호	획지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계		3,080	-	3,080	
R&D	1	3,080	고덕면 상봉리 996번지 일원	3,080	

④ 공공시설용지(변경없음)

○ 주차장(변경없음)

가구번호	획지번호	가구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계		3,205	-	3,205	
주1	-1	1,405	상봉리 산69번지 일원	1,405	
주2	-2	1,800	상봉리 459-12번지 일원	1,800	

○ 오수처리시설(변경없음)

가구번호	획지번호	가구면적(㎡)	획 지		비고
			위 치	면적(㎡)	
계		900	-	900	
폐1	-1	900	상봉리 459-9번지 일원	900	

4)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조서

① 산업시설용지(변경)

도면 표시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산업1 ~ 산업6	고덕면 상봉리 산70번지 일원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공장 및 부대시설(한국표준산업분류 (9차개정)에 의한 분류표 C23, C24, C25, C29, C38에 한 함. 단, C24의 경우 선철주물주조업에 한 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참고시설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용도 외 용도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70% 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250% 이하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25m 이하(5층이하)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향 또는 남동향 배치를 권장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천정에 채광부 설치권장 옥상에 스프링쿨 시스템 설치 권장 		
		건축선	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로1-1호선(20.5m) 5m지정 (단, 획지번호 6-5, 6-6, 6-7의 필지는 2m) 중로2-1호선(15m)변 2m지정 소로1-1호선(10.5m)변 3m지정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로1-1호선(20.5m) 5m지정 (단, 획지번호 6-5, 6-6, 6-7, 6-8의 필지는 2m) 중로2-1호선(15m)변 2m지정 소로1-1호선(10.5m)변 3m지정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단, 주물사사용 사업장(C24)에 한해 소규모 초기우수처리를 위한 침전설비를 공장용지내 설치하여야 한다 중로1-1호선(20.5m)의 건축한계선(5m)내 에는 대기정화수중으로 녹지대 조성 		

②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표시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지원1 ~ 지원3	고덕면 상몽리 459-4번지일원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단,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회의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단지내 산업시설용지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8호의 운수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의 의료시설(정신병원, 격리병원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옥외철타이 있는 골프연습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폐차장 제외)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용도 외 용도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60% 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250% 이하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5층이하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향 또는 남동향 배치를 권장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물의 단열강화를 위한 단열강화 법규대비 외벽은 10% 이상, 외창은 30%이상 단열강화 등을 적용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로1-1호선, 중로1-2호선(20.5m)변 2m지정 중로3-1호선, 중로3-2호선(12m)변 2m지정 	

③ R&D시설용지(변경없음)

도면 표시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R&D	고덕면 상몽리 996번지 일원	지정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회의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단지내 산업시설용지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단, 연구목적의 제품생산을 위한 시설에 한함) 	
		불허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정용도 외 용도 	
		건폐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60% 이하 	
		용적률	<ul style="list-style-type: none"> 250% 이하 	
		높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20m 이하 (5층이하)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남향 또는 남동향 배치를 권장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물의 단열강화를 위한 단열강화 법규대비 외벽은 10% 이상, 외창은 30%이상 단열강화 등을 적용 	
건축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중로1-1호선(20.5m)변 5m지정 			

④ 공공시설용지(변경없음)

○ 주차장

도면 표시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주1 ~ 주2	고덕면 상몽리 산69번지 일원	지정용도	• 「주차장법」 및 「예산군 주차장 조례」에 의한 주차장, 노외주차장인 주차전용건축물 및 그 부속용도(부속용도는 관리동에 한함)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 용도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	
		배치	-	
		형태	-	
		건축선	-	

○ 우수처리시설

도면 표시	위치	구분	계획내용	비고
폐1	고덕면 상몽리 459-9번지 일원	지정용도	• 「하수도법」 제2조 9호의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부대시설	
		불허용도	• 지정용도 외 용도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	
		배치	-	
		형태	-	
		건축선	-	

5)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변경없음)

① 교통처리 및 완충녹지 조성

구분	계획내용
차량진출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구단위계획 지침도 상 차량진출입불허구간이 표시된 곳에는 차량 진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음 ○ 산업용지 : 도로모퉁이에서 30m 이내 차량진출입불허구간 지정 ○ 산업용지 중 두 개의 획지가 도로를 사이로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 두 획지의 차량진출입구는 가급적 일치하도록 설치(권장) ○ 지원시설용지는 인접필지와 연접하여 차량진출입구를 설치(권장)
주차장설치	○ 대지내 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예산군 주차장조례」에 따라 설치
완충녹지 녹화	○ 산업단지 내 완충녹지는 녹화면적률 50%이상, 구역계 동측 부분 80% 이상 식재

② 에너지관련 사항

○ 예산신소재 일반산업단지 내 각 시설의 에너지이용 효율향상을 위하여 ‘예산신소재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에너지사용계획’에서 제시된 에너지 효율 향상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구분	대상설비	내 용	설치장소	이행주체	이행방법	이행시기	확인방법
사업시행자 이행분	LED 가로등 및 보안등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인증 제품 또는 동등 이상 설비	가로등 및 보안등 사용처	사업시행자	실시 설계시 반영	실시 설계시	실시 설계서 확인
	LED 신호등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인증 제품 또는 동등 이상 설비	교통 신호등				
의무 사항	외벽 및 외창의 단열강화	건축물의 외벽, 외창을 법규 대비 30% 단열강화	지원시설, R&D	건축주	용지분양 공고 명기/ 건축설계 및 건축허가 시	매매 계약시 /건축 허가시	에너지 절약 계획서 또는 설계도서 확인
	고효율 형광등 SET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의한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건물의 형광등 사용처				
	자동조절 조명기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인증 제품 또는 동등 이상 설비	사업지구 전체 현관 및 비상계단				
	고효율 인증 변압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인증 제품 또는 동등 이상 설비	건물용 수전변압기 (100kVA 이상)				
	역율 개선용 콘덴서	역율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개별 또는 종합 역율 개선용 콘덴서	개별부하				
	대기 전력차단 자동절전 제어장치	「대기전력저감프로그램운용규정」에 의한 대기전력저감 우수제품으로 등록된 자동절전 제어장치	창고시설 내 사무동 및 지원시설 내 전체 콘센트부의 30% 이상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 설비 도입 계획	자연채광	건축물의 천정에 채광부를 설치하여 낮 시간동안 조명부하 저감을 목적으로 하는 채광시설	산업시설 지원시설, R&D	건축주	용지분양 공고 명기/ 건축설계 및 건축 허가시	매매 계약시 /건축 허가시	에너지 절약 계획서 또는 설계도서 확인
	고효율 보일러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고효율 인증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설비	사업지구 전체 보일러 사용처				
	밸런싱 밸브	냉·난방유량을 적정히 분배하여 냉·난방효과의 균일화로 에너지 절감	중앙집중식 냉·난방시설				
	원적외선 가스히터	가스복사 난방장치사용으로 난방이 필요한 공간에만 국부적인 난방이 가능하도록 하여 에너지 절약과 조업 환경개선을 도모	산업시설 국부적인 난방 사용처				
	고효율 공업용 요로설비, 고주파 유도가열장치	폐열회수 설비가 포함된 연소로 로써 기존대비 30% 절감 효과와 전기로 전기변환효율 90% 이상인 요로 설비	산업시설 공업용 요로 설비 사용처				
	인버터 용접기	전원을 저입력, 절전화가 가능하며, 용접작업 중단시의 무부하 전력을 차단, 권선 사용량 감소로 권선의 전력 손실이 크게 감소한다.	산업시설 용접기 사용처				

	옥상스프링쿨 시스템	산업시설 지붕에 설치하여 여름철 냉방부하 저감	산업시설				
	고효율 공기압축기	저온외기흡입 및 흡착식 Air Dryer를 적용한 대용량 공기압축기	산업시설 공기압축기 사용처				
	고성능 판금가공장치	정밀가공을 오차없이 시행하여 절감을 향상	산업시설 판금장치 사용처				
	고효율 건조장치	제품의 수분을 제거하여 품질을 확보	산업시설 건조장치 사용처				
	고효율 농축장치	원액으로부터 증발된 재증발 증기의 잠열 및 현열까지도 전량을 회수하여 증발열원으로 이용하는 폐열이용 구조	산업시설 농축장치 사용처				
	고효율냉동기	Economizer Type의 압축기를 적용한 냉동기	산업시설 냉동기 사용처				
에너지 이용 효율 향상 설비 도입 계획	고효율 펌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 설비	사업지구 건축물의 급수 및 유체이송 일부	건축주	용지분양 공고명기/건축설계 및 건축허가시	매매 계약시/건축허가시	에너지 절약 계획서 또는 설계도서확인
	건물자동제어	공조 및 전기설비를 대상으로 기기의 고효율운전,운전시간의단축화,공조부하의 경감,외기에너지의 활용, 열회수, 불필요 운전방지, 야간전력이용, 계약전력 저감 등 최적제어를 함으로 에너지절감	지원시설, R&D				
	LED 유도등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 설비	사업지구 유도등 사용처				
	컨버터내장형 LED 램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 설비	사업지구 백열전구 사용처				
	컨버터외장형 LED 램프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 설비	사업지구 할로겐램프 사용처				
	LED방전등	LED 방전등으로 기존 고효율방전등보다 효율 및 수명이 우수함.	산업시설 방전등 사용처				
	V.V.V.F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된 고효율 인버터를 적용	사업지구 건축물의의 공조기, 펌프, 쿨링타워 팬 등의 부하변동이 심한 전동기에 적용				
	고효율 전동기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 설비	사업지구 전동기 사용처				

절수 및 폐열 회수 활용 계획	절수형 수도기기	센서의 감지에 의한 자동급수 및 지수	사업지구 전체시설	건축주	용지분양 공고명기/건축설계 및 건축허가시	매매계약시/건축허가시	에너지 절약 계획서 또는 설계도서확인
	폐열회수형 환기장치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 의한 인증제품 또는 동등 이상 설비	사업지구전체의 공조기 및 개별 환기시설				
	응축수 열 회수 시스템	증기를 사용하는 설비의 응축수 열을 회수하는 시스템	산업시설의 증기사용처				
신·재생 에너지 용 계획	태양열 온수 급탕 시스템	태양열 집열관에 의해 축열조에 온수를 저장·사용하는 시스템 (집열판면적: 1,698m ²)	산업시설	건축주	용지분양 공고명기/건축설계 및 건축허가시	매매계약시/건축허가시	에너지 절약 계획서 또는 설계도서확인
	태양광 발전시스템	태양전지를 이용하여 태양광을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시스템 (설치용량 : 479kW)	산업시설, 폐수중말처리시설				
	지열냉난방	지중 50m이하의 일정한 지중 온도를 이용하여 히트펌프로 냉난방하는 시스템(설치용량 : 211RT)	지원시설, R&D				
에너지 부하 평준화 계획	복합기능형 수배전반	지능형 전력계측제어기 탑재로 피크전력, 역률제어로 최대 전기요금절감	산업시설, 지원시설의 100kVA 이상의 수변전시스템	건축주	용지분양 공고명기/건축설계 및 건축허가시	매매계약시/건축허가시	에너지 절약 계획서 또는 설계도서확인
	흡수식 냉동기	도시가스를 이용한 냉방으로 하절기 피크시의 전력수요에 대한 첨두부하를 경감	지원시설				

③ 신·재생에너지 도입기준

구분	적용처 및 도입 기준			예상용량	비고
태양열온수 급탕시스템	산업시설	280대	부지면적 1,000m ² 당 집열판면적 6m ² 1기 적용	(6m ² × 280기) 1,680m ²	부지면적 2,000m ² 이하 도입 제외
	폐기물수집운반처리 및 원료재생업	3대	급탕부하의 약 20% 담당	(6m ² × 3기) 18m ²	
	계	283대		1,698m ²	
태양광 발전시스템	산업시설(부지면적 2,000m ² 당 3kW)			469kW	-
	R&D시설			5kW	옥상녹화 등 제외 설치가능면적 40m ² 이상
	폐수중말처리시설			5kW	-
	계			479kW	-
지열냉난방 시스템	지원시설(냉난방 부하의 30%)			171RT	연면적 3,000m ² 이상 건물
	R&D시설(냉난방 부하의 30%)			40RT	연면적 3,000m ² 이상 건물
	계			211RT	

12. 지형도면 작성 변경 고시내용

○ 산업단지구역 및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작성 조서

지역·지구 등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예산신소재일반산업단지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 산36-67번지 일원	480,942	증) 1,084.8	482,026.8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지형도면	충청남도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 산36-67번지 일원	480,942	증) 1,084.8	482,026.8	

□ 별첨1 :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 주소

<토지세목조서>

구분	지번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비고	
				기정	변경	소유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사항		
계	103필지		482,026.8	480,942.0	482,026.8								
1	442-10	목	10,272.0	10,272.0	10,272.0		김영배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 822					
2	442-11	구	7,702.0	7,702.0	7,702.0		국 (국토교통부)						
3	443	답	5,104.0	5,104.0	5,104.0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역삼동)					
4	444	답	783.0	783.0	783.0		조제현	서울시 중구 신당동 432-1400					
5	454-1	임	403.0	403.0	403.0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역삼동)					
6	454-2	답	1,147.0	1,147.0	1,147.0		예산군						
7	455	답	1,901.0	1,901.0	1,901.0		예산군						
8	456	답	5,190.0	5,190.0	5,190.0		예산군						
9	457	답	3,183.0	3,183.0	3,183.0		예산군						
10	457-1	구	5,901.0	5,901.0	5,901.0		국 (국토교통부)						
11	458-1	답	3,826.0	3,826.0	3,826.0		김영배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 822					
12	458-2	답	2,169.0	2,169.0	2,169.0		정환복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 25					
							정정희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 456					
13	459-3	유	426.0	426.0	426.0		김영배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 822					
14	459-4	목	7,356.0	7,356.0	7,356.0	1/2	윤용상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933 꿈마을아파트 207-1407					
						1/2	윤태실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 459-12					
15	459-5	구	1,539.0	1,539.0	1,539.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6	459-6	답	74.0	74.0	74.0		김영배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 822					
17	459-7	구	92.0	92.0	92.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8	459-8	구	2,369.0	2,369.0	2,369.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19	459-9	전	1,789.0	1,789.0	1,789.0		윤태실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 459-12					
20	459-10	구	70.0	70.0	70.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21	459-11	전	273.0	273.0	273.0		정문돈	예산군 고덕면 몽곡리 19	예산군			압류	
									서울보증보험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연지동 136-74			가압류
22	459-12	대	561.0	561.0	561.0	1/2	윤용상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933 꿈마을아파트 207-1407					
						1/2	윤태실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 459-12					
23	459-13	임	339.0	339.0	339.0	1/2	윤용상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933 꿈마을아파트 207-1407					

구분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비 고
				기정	변경	소유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사항	
						1/2	윤태실	예산군 고덕면 상봉리 459-12				
24	459-14	대	59.0	59.0	59.0	1/2	윤용상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933 꿈마을아파트 207-1407				
						1/2	윤태실	예산군 고덕면 상봉리 459-12				
25	459-15	장	270.0	270.0	270.0	1/2	윤용상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 933 꿈마을아파트 207-1407				
						1/2	윤태실	예산군 고덕면 상봉리 459-12				
26	460-1	임	510.0	510.0	510.0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역삼동)				
27	460-2	전	477.0	477.0	477.0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역삼동)				
28	460-3	구	14.0	14.0	14.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29	460-4	구	81.0	81.0	81.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30	460-5	구	45.0	45.0	45.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31	475-2	임	911.0	911.0	911.0		예산신소재산업단 지주식회사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133-5 2층				
32	476-1	답	2,684.0	2,684.0	2,684.0		김영배	예산군 고덕면 상봉리 822				
33	476-2	답	2,813.0	2,813.0	2,813.0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역삼동)				
34	476-3	구	208.0	208.0	208.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35	477	답	641.0	641.0	641.0		정동화	예산군 고덕면 상봉리 276				
36	482-3	임	478.0	478.0	478.0		정대희	예산군 고덕면 상봉리 276	고덕농업협동 조합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706-1	근저당권, 지상권	
									예산축산업협 동조합	예산군 예산읍 주교리 221-1	근저당권	
37	482-4	대	599.0	599.0	599.0		정대희	예산군 고덕면 상봉리 276	고덕농업협동 조합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706-1	근저당권, 지상권	
38	482-5	임	246.0	246.0	246.0		정대희	예산군 고덕면 상봉리 276	고덕농업협동 조합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706-1	근저당권, 지상권	
39	710-1	구	1,886.0	1,886.0	1,886.0		국 (농림축산식품부)					
40	711	구	1,627.0	1,627.0	1,627.0		국 (농림축산식품부)					
41	712	구	1,706.0	1,706.0	1,706.0		국 (농림축산식품부)					
42	786-20	구	3,163.0	3,163.0	3,163.0		국 (국토교통부)					
43	965	답	1,511.1	1,511.1	1,511.1		이종수	당진시 면천면 문봉리 233				
44	965-1	답	1,199.5	1,199.5	1,199.5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역삼동)				
45	965-2	답	2,975.9	2,975.9	2,975.9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역삼동)				
46	965-3	답	1,205.9	1,205.9	1,205.9		정상희	예산군 고덕면 상봉리 285				
							정종호	예산군 고덕면 상봉리 288				
47	965-4	답	1,213.4	1,213.4	1,213.4	1/3	정수희	예산군 고덕면 상봉리 284				
						1/3	정환영	예산군 고덕면 상봉리 525				
						1/3	정덕희	예산군 고덕면 상봉리 290				
48	965-5	답	2,790.6	2,790.6	2,790.6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역삼동)				
49	965-6	답	2,458.2	2,458.2	2,458.2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역삼동)				
50	965-7	답	1,166.7	1,166.7	1,166.7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역삼동)				
51	965-8	답	1,113.5	1,113.5	1,113.5		송자현	당진시 합덕읍 운산리 321-64 태양빌라 에이-302				
52	965-9	답	2,013.4	2,013.4	2,013.4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역삼동)				
53	966	답	2,655.2	1,570.4	2,655.2		예산신소재산업단 지주식회사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133-5 2층				편입면 적 변경

구분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비 고
				기정	변경	소유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사항	
54	966-1	답	604.1	604.1	604.1		예산신소재산업단 지주식회사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133-5 2층				
55	966-2	답	1,370.6	1,370.6	1,370.6		이래석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 36-1	고덕농업협동 조합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706-1	근저당권	
56	966-3	답	836.3	836.3	836.3		이래석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 36-1	고덕농업협동 조합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706-1	근저당권	
57	966-4	답	1,109.1	1,109.1	1,109.1		예산신소재산업단 지주식회사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133-5 2층				
58	966-5	답	1,812.5	1,812.5	1,812.5		예산신소재산업단 지주식회사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133-5 2층				
59	966-6	답	1,969.0	1,969.0	1,969.0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역삼동)				
60	966-7	답	957.2	957.2	957.2	1/3	이희수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 267				
						1/3	이희찬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 282				
						1/3	이효진	예산군 고덕면 호음리 520				
61	966-8	답	1,178.9	1,178.9	1,178.9		이중수	당진시 면천면 문봉리 233				
62	967	답	1,694.1	1,694.1	1,694.1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역삼동)				
63	967-1	답	1,928.5	1,928.5	1,928.5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역삼동)				
64	967-2	답	675.3	675.3	675.3		예산신소재산업단 지주식회사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133-5 2층				
65	967-3	답	1,898.5	1,898.5	1,898.5		유제준	당진시 당진읍 원당리 1248 그린빌아파트 304-1402				
66	967-4	답	904.3	904.3	904.3		유제준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770-13				
67	967-5	답	596.5	596.5	596.5		유제준	예산군 고덕면 대천리 770-13				
68	967-6	답	1,835.2	1,835.2	1,835.2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역삼동)				
69	968	답	1,251.8	1,251.8	1,251.8		정영래					축탁 등기
							정해열					축탁 등기
							정덕표					축탁 등기
							정광표					축탁 등기
70	968-1	답	1,100.6	1,100.6	1,100.6		정영래					축탁 등기
							정해열					축탁 등기
							정덕표					축탁 등기
							정광표					축탁 등기
71	968-2	답	898.2	898.2	898.2		정창희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 346				
							정환석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 113				
72	968-3	답	2,319.1	2,319.1	2,319.1		김영배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 822				
73	968-4	답	1,466.5	1,466.5	1,466.5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역삼동)				
74	968-5	답	2,291.2	2,291.2	2,291.2		김영배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 822				
75	968-7	답	1,001.5	1,001.5	1,001.5		정창희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 346				
							정환석	예산군 고덕면 상몽리 113				
76	996-1	구	8,559.0	8,559.0	8,559.0		국 (농림축산식품부)					
77	996-2	전	654.0	654.0	654.0		국 (기획재정부)					
78	996-3	답	127.0	127.0	127.0		국 (기획재정부)					

구분	지번	지목	공부면적 (㎡)	편입면적(㎡)		소유자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			비 고
				기정	변경	소유 지분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사항	
79	997-1	도	4,388.6	4,388.6	4,388.6		국 (농림축산식품부)					
80	998-1	구	2,296.8	2,296.8	2,296.8		국 (농림축산식품부)					
81	산36-58	임	4,562.0	4,562.0	4,562.0		이길순	예산군 고덕면 상봉리 272				
							이수영	예산군 고덕면 상봉리 272				
							이광희	예산군 고덕면 상봉리 272				
							이성희	예산군 고덕면 상봉리 172				
							이수하	당진시 석문면 삼화리 150				
82	산36-60	임	1,215.0	1,215.0	1,215.0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역삼동)				
83	산36-61	임	1,323.0	1,323.0	1,323.0		김현중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1가 13-17				
84	산36-62	임	3,570.0	3,570.0	3,570.0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역삼동)				
85	산36-63	임	14,479.0	14,479.0	14,479.0		주식회사홍방물산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0				
86	산36-64	임	694.0	694.0	694.0		예산신소재산업단 지주식회사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133-5 2층				
87	산36-65	임	793.0	793.0	793.0		조제현	서울 중구 신당동 432-1400				
88	산36-66	임	595.0	595.0	595.0		정환복	예산군 고덕면 상봉리 15				
89	443-3	임	97,267.0	97,267.0	97,267.0	2/3	김현중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1가 13-17				
						1/3	윤안민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156 한성아파트 비동807호				
90	산36-68	목	56,000.0	56,000.0	56,000.0		주식회사홍방물산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0				
91	산36-12 1	임	80,364.0	80,364.0	80,364.0		주식회사홍방물산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0				
92	산68-2	임	1,212.0	1,212.0	1,212.0		김영배	예산군 고덕면 상봉리 822				
93	442-12	임	697.0	697.0	697.0		김영배	예산군 고덕면 상봉리 822				
94	산69	목	23,901.0	23,901.0	23,901.0		주식회사홍방물산	서울 중구 충무로1가 24-20				
95	산70	임	12,712.0	12,712.0	12,712.0		김현중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 5-684				
96	산70-1	구	478.0	478.0	478.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97	산71-1	임	4,303.0	4,303.0	4,303.0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역삼동)				
98	산71-4	구	660.0	660.0	660.0		한국농어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487				
99	산71-5	임	160.0	160.0	160.0		정문돈	예산군 고덕면 몽곡리 19	예산군		압류	
									국 (예산세무서)		압류	
100	482-13	임	14,414.0	14,414.0	14,414.0	1/2	최량목	대전시 서구 용문동 237-4				
						1/2	최찬목	대전시 서구 용문동 237-4				
101	482-15	임	10,177.0	10,177.0	10,177.0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24(역삼동)				
102	산155	구	3,988.0	3,988.0	3,988.0		국 (국토교통부)					
103	712-3	구	1,548.0	1,548.0	1,548.0		국 (국토교통부)					

III.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계도면의 게재는 생략하며 관계도서는 예산군 경제통상과(041-339-7276)에 비치하고 지형도면 고시는 국토교통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 가능

●경상북도고시제2016-142호

채석단지 변경지정

산지관리법 제29조 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채석단지 변경지정을 고시합니다.

2016년 5월 31일

경상북도지사

1. 채석단지 변경지정

- 소 재 지 :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하도리 산352외 6필지
- 신 청 자 : (주)대곡산업 대표이사 백경진
- 지정면적(변경)
 - 당초 : 279,202㎡
 - 변경 : 267,519㎡(신규 11,424㎡, 해제 23,107㎡)
- 근거법률 : 산지관리법 제29조 제1항

2. 채석단지 지정 세부내역

(면적 : ㎡)

소 재 지	지번	지목	지적	단지편입면적		비고
				당초	변경	
합 계	7필		448,409	279,202	267,519	
경상북도 경산시 남천면 하도리	산352	임야	154,612	140,227	121,854	
"	산354	"	72 595	32,658	39,348	
"	산355-1	"	57,566	57,566	57,566	
"	산355-2	"	198	198	198	
"	산355-3	"	298	298	298	
"	산356	"	29,355	29,355	29,355	
"	산357-5	"	133,785	18,900	18,900	

●천안시고시제2016-153호

풍세일반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승인

충청남도 공고 제2013-1242호로 부분준공된 풍세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3조의3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19조의2에 따라 승인·고시합니다.

2016년 5월 31일

천 안 시 장

I.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 (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 명 칭 : 풍세일반산업단지
-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보성리, 용정리 일원
- 면 적 : (기정) 산업단지 1,644,529.4㎡, 지구외 진입도로 60,080.0㎡, 부진입도로 19,178.0㎡
(금회) 산업시설용지 63,250.0㎡, 물류시설용지 9,375.0㎡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3.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변경없음)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

- 시행기간 : (기정) 2005년 ~ 2015년 12월
(금회) 2016년 4월 ~ 2016년 7월

- 시행방법 : 민간개발

5.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의 배치계획(변경)

가. 주요 유치업종(변경없음)

유치업종
식료품 제조업(C10),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C14),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1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C2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1차 금속 제조업(C24),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C25),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전기장비 제조업(C2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나.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구분	면적(m ²)			구성비 (%)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679,996.5	-	679,996.5	100.0	
식료품 제조업(C10)	33,614.5	증)15,012.5	48,627.0	7.2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C14)	3,311.4	-	3,311.4	0.5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17)	5,671.9	-	5,671.9	0.8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C20)	134,353.8	-	134,353.8	19.7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87,568.8	감)11,865.8	75,703.0	11.1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C25)	63,079.0	-	63,079.0	9.3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61,967.6	-	61,967.6	9.1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7,529.7	-	7,529.7	1.1	
전기장비 제조업(C28)	52,866.5	감)36,371.7	16,494.8	2.4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122,529.1	증)4,826.5	127,355.6	18.7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27,088.6	-	27,088.6	4.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외)(C2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	증)28,398.5	28,398.5	4.2	업종혼합
1차 금속 제조업(C24),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30,245.4	-	30,245.4	7.4	업종혼합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C25),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50,170.2	-	50,170.2	4.5	업종혼합

※ 변경사유 : 입주희망업체의 업종계획을 반영하고, 미분양용지의 분양성 제고를 위해 변경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없음)

7. 산업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 지원계획(변경없음)

8.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9.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변경없음)

II. 산업단지 실시계획 (변경)

1. 사업의 명칭(변경없음)

2. 사업시행자의 성명(변경없음)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변경없음)

-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변경)
 - 위 치 :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풍세면 보성리, 용정리 일원
 - 면 적 : (기정) 산업단지 1,644,529.4㎡, 지구외 진입도로 60,080.0㎡, 부진입도로 19,178.0㎡
(금회) 산업시설용지 63,250.0㎡, 물류시설용지 9,375.0㎡
- 5. 사업시행기간(변경)
 - 시행기간 : (기정) 2005년 ~ 2015년 12월
(금회) 2016년 4월 ~ 2016년 7월
- 6. 사업비 및 재원조달계획(변경없음)
- 7. 개발되는 토지 또는 시설물의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서(변경없음)
- 8. 사업시행 지역 안에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 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변경없음)
- 9. 사업시행지역의 토지·건물 또는 관리 등의 매수·보상 및 주민이주대책에 관한 서류(변경없음)
- 10. 공공시설물 및 토지 등의 무상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변경없음)
- 11.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에 대한 사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5항 각호의 사항)(변경)
 - 가. 용도지역 결정조서(변경없음)
 - 나. 도시계획시설 결정조서(변경없음)
 - 다.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조서(변경없음)
 - 라.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 (1)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 1) 산업시설용지(변경없음)
 - 2) 물류시설용지(변경)

도면번호	가구번호	면적(㎡)	획지				비고
			위치		면적(㎡)		
			기정	변경	기정	변경	
Z1	Z1	48,975.5	Z1-1	Z1-1	48,975.5	48,975.5	변경없음
Z2	Z2	14,336.1	Z2-1	Z2-1	4,414.7	9,375.0	변경
			Z2-2		4,960.3		
			Z2-3	Z2-3	4,961.1	4,961.1	
Z3	Z3	53,055.6	Z3-1	Z3-1	53,055.6	53,055.6	변경없음
Z4	Z4	27,127.4	Z4-1	Z4-1	27,127.4	27,127.4	

○ 물류시설용지 가구 및 획지에 대한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Z2	○ Z2가구 : 3획지 → 2획지로 변경	○ 물류시설용지 중 Z2-1, Z2-2블록 사업계획 반영에 따른 획지 합병

- 3) 주거시설용지(변경없음)
- 4)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 5) 공공시설용지(변경없음)

(3)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

1) 산업시설용지(변경)

○ 기정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A1 ~ A23	A1 ~ A23	건축물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부대시설 포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획지번호	입주허용업종
			A2-3, A2-4, A2-5, A7-1	식료품 제조업(C10)
			A15-2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C14)
			A20-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17)
			A1-1, A1-2, A1-3, A1-4, A1-5, A1-6, A1-7, A3-1, A3-2, A3-3, A3-4, A3-5, A4-1, A4-2, A4-3, A5-1, A5-2, A5-3, A5-4, A5-5, A9-1, A9-2, A9-3, A9-4, A9-5, A11-1, A11-2, A11-3, A23-1, A23-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A8-1, A8-2, A8-3, A8-4, A12-2, A20-4, A20-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A15-3, A21-1, A22-1, A22-2, A22-3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
			A6-1, A7-3, A17-2, A17-3, A17-4, A17-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A17-1, A17-5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A2-1, A2-2, A8-5, A19-2, A20-1, A20-2	전기장비 제조업(C28)
			A7-2, A8-6, A9-6, A12-1, A13-1, A13-2, A13-3, A13-4, A13-5, A13-6, A16-1, A16-2, A16-3, A16-4, A16-5, A16-6, A16-7, A16-8, A16-9, A16-10, A18-1, A18-2, A18-3, A19-1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A15-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A14-1	1차 금속제조업(C24),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A6-2, A6-3, A6-4, A6-5, A6-6, A10-1, A10-2	금속가공제품제조업(C25),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C29)	
불허 용도	• 허용용도의 용도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 최고층수 4층 이하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향 또는 동남향 배치를 권장 • 건축선이 지정된 대지는 외벽면이 당해선의 수직면으로 돌출하여서는 아니됨 			
색채 및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색채는 원색을 지양하도록 함 • 옥상조경을 권장함 			
건축한계선	• 주간선도로(폭22M)변은 10m, 기타 중로변은 5m			

○ 변경

도면번호	위 치	구 분	계획내용																														
A1 ~ A23	A1 ~ A23	건축물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부대시설 포함)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의 창고시설 																														
			<table border="1"> <tr> <th>획지번호</th> <th>입주허용업종</th> </tr> <tr> <td>A2-3, A2-4, A2-5, A7-1, A7-2</td> <td>식품 제조업(C10)</td> </tr> <tr> <td>A15-2</td> <td>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C14)</td> </tr> <tr> <td>A20-3</td> <td>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17)</td> </tr> <tr> <td>A1-1, A1-2, A1-3, A1-4, A1-5, A1-6, A1-7, A3-1, A3-2, A3-3, A3-4, A3-5, A4-1, A4-2, A4-3, A5-1, A5-2, A5-3, A5-4, A5-5, A9-1, A9-2, A9-3, A9-4, A9-5, A11-1, A11-2, A11-3, A23-1, A23-2</td> <td>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td> </tr> <tr> <td>A8-1, A8-2, A8-3, A12-2, A20-4, A20-5</td> <td>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td> </tr> <tr> <td>A15-3, A21-1, A22-1, A22-2, A22-3</td> <td>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td> </tr> <tr> <td>A6-1, A7-3, A17-2, A17-3, A17-4, A17-6</td> <td>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td> </tr> <tr> <td>A17-1, A17-5</td> <td>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td> </tr> <tr> <td>A8-5, A19-2, A20-1, A20-2</td> <td>전기장비 제조업(C28)</td> </tr> <tr> <td>A2-1, A8-6, A9-6, A12-1, A13-1, A13-2, A13-3, A13-4, A13-5, A13-6, A16-1, A16-2, A16-3, A16-4, A16-5, A16-6, A16-7, A16-8, A16-9, A16-10, A18-1, A18-2, A18-3, A19-1</td> <td>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td> </tr> <tr> <td>A15-1</td> <td>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td> </tr> <tr> <td>A2-2, A8-4</td> <td>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C2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td> </tr> <tr> <td>A14-1</td> <td>1차 금속제조업(C24),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td> </tr> <tr> <td>A6-2, A6-3, A6-4, A6-5, A6-6, A10-1, A10-2</td> <td>금속가공제품제조업(C25),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C29)</td> </tr> </table>	획지번호	입주허용업종	A2-3, A2-4, A2-5, A7-1, A7-2	식품 제조업(C10)	A15-2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C14)	A20-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17)	A1-1, A1-2, A1-3, A1-4, A1-5, A1-6, A1-7, A3-1, A3-2, A3-3, A3-4, A3-5, A4-1, A4-2, A4-3, A5-1, A5-2, A5-3, A5-4, A5-5, A9-1, A9-2, A9-3, A9-4, A9-5, A11-1, A11-2, A11-3, A23-1, A23-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A8-1, A8-2, A8-3, A12-2, A20-4, A20-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A15-3, A21-1, A22-1, A22-2, A22-3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	A6-1, A7-3, A17-2, A17-3, A17-4, A17-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A17-1, A17-5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A8-5, A19-2, A20-1, A20-2	전기장비 제조업(C28)	A2-1, A8-6, A9-6, A12-1, A13-1, A13-2, A13-3, A13-4, A13-5, A13-6, A16-1, A16-2, A16-3, A16-4, A16-5, A16-6, A16-7, A16-8, A16-9, A16-10, A18-1, A18-2, A18-3, A19-1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A15-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A2-2, A8-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C2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A14-1	1차 금속제조업(C24),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A6-2, A6-3, A6-4, A6-5, A6-6, A10-1, A10-2	금속가공제품제조업(C25),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C29)
			획지번호	입주허용업종																													
			A2-3, A2-4, A2-5, A7-1, A7-2	식품 제조업(C10)																													
			A15-2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C14)																													
			A20-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17)																													
			A1-1, A1-2, A1-3, A1-4, A1-5, A1-6, A1-7, A3-1, A3-2, A3-3, A3-4, A3-5, A4-1, A4-2, A4-3, A5-1, A5-2, A5-3, A5-4, A5-5, A9-1, A9-2, A9-3, A9-4, A9-5, A11-1, A11-2, A11-3, A23-1, A23-2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C20)																													
			A8-1, A8-2, A8-3, A12-2, A20-4, A20-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A15-3, A21-1, A22-1, A22-2, A22-3	금속가공제품 제조업(C25)																													
			A6-1, A7-3, A17-2, A17-3, A17-4, A17-6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A17-1, A17-5	의료·정밀·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A8-5, A19-2, A20-1, A20-2	전기장비 제조업(C28)																													
			A2-1, A8-6, A9-6, A12-1, A13-1, A13-2, A13-3, A13-4, A13-5, A13-6, A16-1, A16-2, A16-3, A16-4, A16-5, A16-6, A16-7, A16-8, A16-9, A16-10, A18-1, A18-2, A18-3, A19-1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A15-1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A2-2, A8-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C20)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C22)																													
			A14-1	1차 금속제조업(C24),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C29)																													
			A6-2, A6-3, A6-4, A6-5, A6-6, A10-1, A10-2	금속가공제품제조업(C25),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C29)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허용용도의 용도 																													
			건폐율	• 80% 이하																													
		용적률	• 250% 이하																														
		높이	• 최고층수 4층 이하																														
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향 또는 동남향 배치를 권장 • 건축선이 지정된 대지는 외벽면이 당해선의 수직면으로 돌출하여서는 아니됨 																																
색채 및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색채는 원색을 지양하도록 함 • 옥상조경을 권장함 																																
건축한계선	• 주간선도로(폭22M)변은 10m, 기타 중로변은 5m																																

○ 산업시설용지 건축물에 관한 결정(변경)사유서

도면번호	변경내용	변경사유
A2, A7, A8	○ A2-1 : 전기장비제조업 →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 A2-2 : 전기장비제조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A7-2 :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 → 식료품제조업 ○ A8-4 :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업 →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제조업,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입주희망업체 업종계획 반영 및 미분양용지의 분양성 제고를 위해 건축물 허용업종 변경

2) 물류시설용지(변경없음)

3) 주거시설용지(변경없음)

4) 지원시설용지(변경없음)

5) 공공시설용지(변경없음)

(4)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도면 : 게재생략

(5)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 : 게재생략

III. 관련도서의 열람방법

○ 관련도서는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천안시 기업지원과(☎ 041-521-5470)에 비치하고 지형도면 고시는 국토해양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공고제2016-624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경기도지사

상 호	대표자	영업장 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주)이엠솔루션	박훈민	성남시 분당구 정자로 13, 507호(정자동, 월드비터)	대기 (제281호)	2016.05.24

●경기도공고제2016-625호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환경전문공사업 신규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경기도지사

상 호	대표자	영업장 소재지	등록분야 (등록번호)	등록일자
(주)탑에너지솔루션	정양식	군포시 번영로28번길 37-12, 301호(부곡동)	대기 (제282호)	2016.05.24

인 사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검사

김명희(金明熙)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6.5.19.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

경정

최대규(崔大奎)

경찰공무원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총경에 임함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2016.5.27.

기획재정부 국고국장

일반직고위공무원

이원식(李遠植)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에 따라 그 직을 면함

2016.5.26.

경찰청

경정

이임결(李壬杰)

총경에 임함

2016.6.1.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경정

유승렬(柳承烈)

총경에 임함

2016.6.1.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경정

정창욱(鄭畠沃)

총경에 임함

2016.6.1.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경정

최영철(崔榮喆)

총경에 임함

2016.6.1.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

경정

강기택(姜奇宅)

총경에 임함

2016.6.1.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

경정

현춘희(玄春姬)

총경에 임함

2016.6.1.

강원도지방경찰청 경정 총경에 임함 2016.6.1.	서완석(徐完錫)
강원도지방경찰청 삼척경찰서장 경정 총경에 임함 2016.6.1.	이창형(李昌炯)
강원도지방경찰청 철원경찰서장 경정 총경에 임함 2016.6.1.	이화섭(李和燮)
충청북도지방경찰청 경정 총경에 임함 2016.6.1.	박수영(朴洙泳)
충청북도지방경찰청 단양경찰서장 경정 총경에 임함 2016.6.1.	오지용(吳至鏞)
충청북도지방경찰청 보은경찰서장 경정 총경에 임함 2016.6.1.	김형섭(金亨燮)
충청남도지방경찰청 경정 총경에 임함 2016.6.1.	양윤교(梁潤敎)
전라북도지방경찰청 경정 총경에 임함 2016.6.1.	최성규(崔成圭)
전라북도지방경찰청 순창경찰서장 경정 총경에 임함 2016.6.1.	최규운(崔奎雲)
전라남도지방경찰청 경정 총경에 임함 2016.6.1.	한원횡(韓元鎭)

전라남도지방경찰청 무안경찰서장	
경정	이삼호(李杉鎬)
총경에 임함	
2016.6.1.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	
경감	조준영(曹俊榮)
경정에 임함	
2016.6.1.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경감	김영태(金榮泰)
경정에 임함	
2016.6.1.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경감	남동식(南東植)
경정에 임함	
2016.6.1.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경감	박희동(朴熙冬)
경정에 임함	
2016.6.1.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경감	오균택(吳均澤)
경정에 임함	
2016.6.1.	
부산광역시지방경찰청	
경감	최해영(崔海英)
경정에 임함	
2016.6.1.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경감	김선희(金旋熙)
경정에 임함	
2016.6.1.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경감	김왕진(金王鎭)
경정에 임함	
2016.6.1.	
대구광역시지방경찰청	
경감	이홍수(李洪守)
경정에 임함	
2016.6.1.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경감 경정에 임함 2016.6.1.	봉선우(奉宣佑)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경감 경정에 임함 2016.6.1.	이종장(李鍾璋)
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 경감 경정에 임함 2016.6.1.	황규정(黃圭貞)
광주광역시지방경찰청 경감 경정에 임함 2016.6.1.	공철규(孔哲圭)
대전광역시지방경찰청 경감 경정에 임함 2016.6.1.	김동철(金東喆)
울산광역시지방경찰청 경감 경정에 임함 2016.6.1.	변지희(卞智熙)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경감 경정에 임함 2016.6.1.	강정석(姜正錫)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경감 경정에 임함 2016.6.1.	강태관(姜泰寬)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경감 경정에 임함 2016.6.1.	고혁수(高赫秀)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경감 경정에 임함 2016.6.1.	김미향(金美香)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경감	김병한(金炳漢)
경정에 임함 2016.6.1.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경감	김수희(金秀姬)
경정에 임함 2016.6.1.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경감	박은순(朴恩順)
경정에 임함 2016.6.1.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경감	박종석(朴鍾錫)
경정에 임함 2016.6.1.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경감	박주현(朴柱賢)
경정에 임함 2016.6.1.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경감	신영숙(辛英淑)
경정에 임함 2016.6.1.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경감	신용철(申勇哲)
경정에 임함 2016.6.1.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경감	이관훈(李寬勳)
경정에 임함 2016.6.1.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경감	이교진(李敎鎭)
경정에 임함 2016.6.1.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경감	전석호(全錫鎬)
경정에 임함 2016.6.1.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경감	조한권(趙漢權)
경정에 임함 2016.6.1.	
경기도남부지방경찰청 경감	한석희(韓錫熙)
경정에 임함 2016.6.1.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 경감	김학근(金學根)
경정에 임함 2016.6.1.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 경감	박무재(朴武在)
경정에 임함 2016.6.1.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 경감	신겸중(申謙鍾)
경정에 임함 2016.6.1.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 경감	이창민(李昌珉)
경정에 임함 2016.6.1.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 경감	정한용(鄭漢容)
경정에 임함 2016.6.1.	
경기도북부지방경찰청 경감	황홍락(黃弘樂)
경정에 임함 2016.6.1.	
강원도지방경찰청 경감	박노균(朴魯均)
경정에 임함 2016.6.1.	
강원도지방경찰청 경감	이창희(李昌熙)
경정에 임함 2016.6.1.	

강원도지방경찰청 경감	정인승(鄭仁承)
경정에 임함 2016.6.1.	
강원도지방경찰청 경감	천준철(千俊喆)
경정에 임함 2016.6.1.	
충청북도지방경찰청 경감	고응진(高應鎭)
경정에 임함 2016.6.1.	
충청북도지방경찰청 경감	박재향(朴在享)
경정에 임함 2016.6.1.	
충청북도지방경찰청 경감	이규성(李圭成)
경정에 임함 2016.6.1.	
충청북도지방경찰청 경감	정기영(鄭基泳)
경정에 임함 2016.6.1.	
충청북도지방경찰청 경감	한기수(韓基洙)
경정에 임함 2016.6.1.	
충청남도지방경찰청 경감	김상기(金相基)
경정에 임함 2016.6.1.	
전라남도지방경찰청 경감	정병만(鄭炳萬)
경정에 임함 2016.6.1.	
경상북도지방경찰청 경감	강성수(姜聲洙)
경정에 임함 2016.6.1.	

경상북도지방경찰청 경감	박동철(朴東哲)
경정에 임함 2016.6.1.	
경상북도지방경찰청 경감	이영우(李英雨)
경정에 임함 2016.6.1.	
경상남도지방경찰청 경감	박춘식(朴春植)
경정에 임함 2016.6.1.	
경상남도지방경찰청 경감	오창현(吳昌炫)
경정에 임함 2016.6.1.	
경상남도지방경찰청 경감	이종현(李宗賢)
경정에 임함 2016.6.1.	
경상남도지방경찰청 경감	최정림(崔正林)
경정에 임함 2016.6.1.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경감	김병선(金秉宣)
경정에 임함 2016.6.1.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경감	김병수(金炳秀)
경정에 임함 2016.6.1.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경감	임희재(林希在)
경정에 임함 2016.6.1.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경감	천문영(千文英)
경정에 임함 2016.6.1.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경감	홍근영(洪槿榮)
경정에 임함 2016.6.1.	

제주특별자치도지방경찰청

경감

장영식(張榮植)

경정에 임함

2016.6.1.

(대통령)

상

훈

‘제51회 발명의 날 유공’ 관련 서훈 수여

소 속	성 명	훈 격
주식회사 만도	성 일 모	금탑 산업훈장
삼성중공업 주식회사	박 대 영	은탑 산업훈장
주식회사 코리아나화장품	이 건 국	은탑 산업훈장
엘에스산전 주식회사	김 지 영	동탑 산업훈장
윤엔리특허법률사무소	윤 동 열	동탑 산업훈장
주식회사 탐엔지니어링	김 진 락	철탑 산업훈장
사단법인 한국여성발명협회	조 은 경	철탑 산업훈장
주식회사 하베런메디엔뷰티	김 상 두	석탑 산업훈장
주식회사 예건	노 영 일	석탑 산업훈장
주식회사 수산아이엔티	박 형 배	산업포장
코웨이 주식회사	박 찬 정	산업포장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이 시 훈	산업포장
연세대학교	최 윤 식	근정포장
한국발명진흥회	김 용 규	산업포장
로터스프로슈밍매니지먼트	길 주 형	대통령표창
현대중공업 주식회사	김 형 춘	대통령표창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김 휘 용	대통령표창
한국과학기술원	김 일 두	대통령표창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장 태 중	대통령표창
한국기계연구원	(단체)	대통령표창
한국도로공사	(단체)	대통령표창
주식회사 에너지컨설팅	이 범 근	국무총리표창
한국기계연구원	김 관 태	국무총리표창
한국철도기술연구원	김 길 동	국무총리표창
한국진기연구원	하 동 우	국무총리표창
한국철도공사	정 종 호	국무총리표창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원 미 선	국무총리표창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단체)	국무총리표창

2016. 5. 19.

(대통령)

기

타

○공 고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이법원에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소년 심판규칙 제36조 규정에 의하여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6년 5월 31일

대구가정법원 판사

사건번호	압수번호	보호소년	사건명	환부인	물 건		
					번호	물건명	수량
2015푸2133	2015년 압제14-1호	한강현	절도	성명불상자	증 제1호	공매처분대금 (31,600원)	1
2016푸118~119	2016년 압제1-1호	육현준, 최수빈	절도 등	성명불상자	증 제1호	공매처분대금 (109,800원)	1

1. 다음 물건을 환부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당청으로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위 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에 의거 국고귀속 또는 폐기됩니다.

2016년 5월 31일

서울동부지방검찰청 검사장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또는 피 고 인	죄 명	환부인	압수물건		
					증제 번호	물건명	수량
2016 형제 10054	2016년압제4 42호	김○○	상습절도, 준강도미수, 점유이탈물횡령		3	검은색 열쇠지갑(열쇠1개포 함)	1 점
			상습절도, 준강도미수, 점유이탈물횡령		37	홍콩화폐 일십달러	1 매
			상습절도, 준강도미수, 점유이탈물횡령		5	은색 사각 열쇠	1 개
			상습절도, 준강도미수, 점유이탈물횡령		6	열쇠고리(은색 사각 열쇠 1개 및 구리색 사각 열쇠 1개 포함)	1 개
			상습절도, 준강도미수, 점유이탈물횡령		21	CK 손목시계	1 점
			상습절도, 준강도미수, 점유이탈물횡령		22	CK 손목시계	1 점
			상습절도, 준강도미수, 점유이탈물횡령		23	아이폰5(A1429, IMEI: 013416004103779, 흰색, 유심칩미포함)	1 대
2016 형제 10054	2016년압제4 42호	김○○	상습절도, 준강도미수, 점유이탈물횡령		24	미화 일달러	11 매
			상습절도, 준강도미수, 점유이탈물횡령		25	미화 이달러	2 매
			상습절도, 준강도미수, 점유이탈물횡령		26	미화 오달러	1 매
			상습절도, 준강도미수, 점유이탈물횡령		27	미화 이십달러	1 매
			상습절도, 준강도미수, 점유이탈물횡령		28	중국화폐 일백위안	5 매
			상습절도, 준강도미수, 점유이탈물횡령		29	중국화폐 오십위안	1 매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또는 피 고 인	죄 명	환부인	압수물건		
					증제 번호	물건명	수량
			상습절도, 준강도미수, 점유이탈물횡령		30	중국화폐 이십위안	1 매
					33	페루화폐 오천 INTIS	1 매
					34	볼리비아화폐 일만 BOLIVIANOS	1 매
					35	러시아화폐 일십 루블	1 매
					36	브라질화폐 오천 CRUZADOS	1 매
2016 형제 10054	2016년압제4 42호	김○○	상습절도, 준강도미수, 점유이탈물횡령		4	예수모양 팬던트 열쇠고리(은색 등근 열쇠 1개 및 구리색 열쇠 1개 포함)	1 개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피해자 또는 소유자)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당청에 환부 청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공매 후 국고귀속 또는 폐기처분 됩니다.

2016년 5월 31일

인천지방검찰청 검사장

압수물공고목록표(4월)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또는 피 고 인	환부인	압수물건		
				증제 번호	물건명	수량
16-11020	16-416	허지안리	성명불상	1	휴대전화(삼성 VE210S)	1
16-11020	16-416	허지안리	성명불상	2	휴대전화(OPPOR7SM)	1
16-11020	16-416	허지안리	성명불상	3	서류철 여정표	1
16-11020	16-416	허지안리	성명불상	4	KE002편 탑승권	1
16-11020	16-416	허지안리	성명불상	5	KE853편 탑승권	1
16-28166	16-1183	최재남	성명불상	1	시계 (카시오 G-SHOCK 스포츠시계, 검은색)	1
16-23538	16-992	임완섭	성명불상	1	LG G3	1
16-11349	16-444	안형근	성명불상	1	빨간색 후드티	1
16-11349	16-444	안형근	성명불상	2	장갑	2
16-11349	16-444	안형근	성명불상	3	야구모자	2
16-11349	16-444	안형근	성명불상	4	목두건	1
15-87356	15-4805	최윤실	성명불상	1	주유기 기판	3
15-87356	15-4805	최윤실	성명불상	2	USB(POS)	1
15-87356	15-4805	최윤실	성명불상	3	하드디스크	2
15-87356	15-4805	최윤실	성명불상	4	CCTV 본체	1
15-87356	15-4805	최윤실	성명불상	5	세금계산서	2
15-87356	15-4805	최윤실	성명불상	6	거래처별 외상집계표	1
15-87356	15-4805	최윤실	성명불상	7	판매일보	1
16-23205	16-968	심재봉	성명불상	1	LG 옵티머스 뷰 스마트폰	1
16-22233	16-935	심공섭	성명불상	1	베가 LTE M	1
15-104109	15-5402	이우재	성명불상	2	50원 주화	1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또는 피고인	환부인	압수물건		
				증제 번호	물건명	수량
15-104109	15-5402	이우재	성명불상	3	100원 주화	99
15-104109	15-5402	이우재	성명불상	4	500원 주화	2
15-104109	15-5402	이우재	성명불상	5	1천원권 지폐	2
16-4777	16-173	김정훈	성명불상	5	500원 동전	11
16-4777	16-173	김정훈	성명불상	6	100원 동전	99
16-4777	16-173	김정훈	성명불상	7	50원 동전	11
16-4777	16-173	김정훈	성명불상	8	담배9더위)	1
16-4777	16-173	김정훈	성명불상	9	담배(던힐)	1

압수물공고목록표(5월)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또는 피고인	환부인	압수물건		
				증제 번호	물건명	수량
16-39475	16-1666	박진용	성명불상	3	차량열쇠(KIA)	1
16-15326	16-647	류보	류보	1	아이폰	1
16-29904	16-1496	박광순	불상	1	카메라(PENTAX, 일련번호4049579)	1
16-29904	16-1496	박광순	불상	2	카메라 렌즈(KENOX)	1
16-34351	16-1469	이용찬	국원희	1	번호판(01거4128)	1
16-33415	16-1413	조민도	불상	1	오백원권 동전	9
16-33415	16-1413	조민도	불상	2	중국산 담배	1
16-33415	16-1413	조민도	불상	4	롯데 껌	1
16-33415	16-1413	조민도	불상	5.1	일백원권 동전	6
16-33415	16-1413	조민도	불상	6	오십원권 동전	1
16-33415	16-1413	조민도	불상	7	일십원권 동전	1개
16-32426	16-1373	김윤덕	박홍준	1	주민등록증(박홍준)	1
16-31304	16-1339	강용환	강용환	1	커터칼	1
16-31304	16-1339	강용환	강용환	2	가위	1
16-31257	16-1329	리리페이	불상	1	삼성 노트북(흰색)	1
16-31257	16-1329	리리페이	불상	2	삼성 노트북(검정색)	1
16-31257	16-1329	리리페이	불상	3	LI LIFEI 명의 여권 사본	1
16-31257	16-1329	리리페이	불상	4	외화송금신청서	2
16-31257	16-1329	리리페이	불상	5	휴대폰 요금 납부 영수증	4
16-31257	16-1329	리리페이	불상	6	달력	2
16-30061	16-1293	윤성원	이종호	4	오만원권(현금)	9
16-30061	161293	윤성원	이종호	5	일만원권(현금)	25
16-25501	16-1099	김기홍	불상	1	삼성갤럭시 노트 핸드폰	1
16-11831	16-460	최만석	최만석	1	부엌칼	1
16-11349	16-444	안형근	안형근	1	빨간색후드티	1
16-11349	16-444	안형근	안형근	2	장갑	2
16-11349	16-444	안형근	안형근	3	야구모자	2
16-11349	16-444	안형근	안형근	4	목두건	1
15-98006	15-5055	고강민	불상	30	MCM지갑	1
15-46843	15-2233	송영일	권인용	5	에펠탑 그림 영업장부(스프링형)	1
15-46843	15-2233	송영일	권인용	6	KOOKY영업장부(스프링형)	1
15-46843	15-2233	송영일	권인용	7	손님이름과 번호가 적힌 장부 (스프링형, 회색)	1
15-46843	15-2233	송영일	권인용	8	지출 등이 기재된 메모지	1
15-46843	15-2233	송영일	권인용	9	받는 사람 최성동 편지 및 편지봉투	1
15-46843	15-2233	송영일	권인용	10	손님연락처가 적힌 수첩(노랑)	1
15-46843	15-2233	송영일	권인용	11	애니콜 슬라이드폰 (SEC-SCHC280, 일련번호:0117480)	1
15-46843	15-2233	송영일	권인용	12	애니콜 슬라이드폰 (SEC-SCHB850, 일련번호:0066660)	1
15-46843	15-2233	송영일	권인용	13	경찰수사 대응요령	3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또는 피 고 인	환부인	압수물건		
				증제 번호	물건명	수량
15-46843	15-2233	송영일	권인용	14	5/29 정산용지	1
15-46843	15-2233	송영일	권인용	32	영업용 휴대폰(010-8343-1021, SM-N900L,일련번호:692580)	1
15-46843	15-2233	송영일	권인용	33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1
15-26062	15-1195	이제훈	진첵리	1	갤럭시노트2 휴대전화	1
15-26062	15-1195	이제훈	김연규	4	유심카드	7
15-26062	15-1195	이제훈	불상	5	티머니 교통카드	3
15-26062	15-1195	이제훈	불상	6	오천원권 지폐	1
15-26062	15-1195	이제훈	불상	7	일천원권 지폐	4
15-20409	15-928	민병남	신진철 김길자	1	일만원권	120
12-64540	12-1968	이현수	이선열	12	롯데카드(동양조금 W-CMA / 4214-6805-1284-8963)	1
12-64540	12-1968	이현수	이선열	13	동양종합금융증권 보안카드 (No,74-750-39)	1
12-64540	12-1968	이현수	이선열	14	하드디스크(Seagate 500GB, S/N:Z2A4GJP9)	1
12-64540	12-1968	이현수	이선열	15	하드디스크(Seahate 120GB, S/N:4MS0Z95Y)	1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피해자 또는 소유자)은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당청에 환부 청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규정에 의거 공매 후 국고귀속 또는 폐기처분 됩니다.

2016년 5월 31일

춘천지방검찰청 속초지청장

①사건번호	②압수번호	③피의자 또는 피고인	④죄명	⑤환부 받을 자	압 수 물 건		
					⑥번호	⑦물건명	⑧수량
2016형제 263호	2015압제 174호	권형준	야간주거침 입절도	불상	증16호	일천원권	8매

1.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 압수 물건에 대하여 환부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대전지방검찰청 사건과로 환부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48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국고로 귀속됩니다.

2016년 5월 31일

대전지방검찰청 검사장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	죄명	환부인	압수물건		
					증제 번호	물건명	수량
2016형15379	2016압503	정관진	절도	불상	1	드림카카오초콜릿	1
					2	한국은행 오백원주화	2
					3	한국은행 일백원 주화	6
					4	한국은행 일십원권 주화	2
2016형15754	2016압490	노거성	특수절도	불상	2	알톤 아베오 접이식 미니벨로 자전거 환가대금	100,000원
					4	레스포스팅거SF 자전거 환가대금	100,000원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	죄명	환부인	압수물건		
					증제 번호	물건명	수량
				불상	5	아파란치아xrs16 환가대금	87,000원
				불상	6	레스포 스팅거 자전거 환가대금	100,000원
				불상	7	로드마스터 환가대금	100,000원
				불상	8	시애틀 모던 환가대금	100,000원
				불상	12	자이언트	100,000원
2015형47353	2015압1651	김영규	특수절도미수	불상	2	자전거(SMART WINDRUNNER) 환가대금	13,500원
2015형43422	2015압제1555	주린	특수절도미수	주린	1	애플아이폰6(모델명 MG472KH/A)	1
2015형28773호	2015압제1002	김진수	절도 등	한장규	6	농협카드(한장규 9411-1601-6111-5999)	1
				김동규	7	농협카드(김동규 9440-1143-6111-5999)	1
				최정우	9	농협카드(최정우 5461-1210-6031-4627)	1
				윤상희	10	국민카드(윤상희 5021-2373-4923-0120)	1
				윤상희	11	국민카드(윤상희 5021-2384-0385-7124)	1
				불상	12	국민카드 (5021-2361-6801-5125)	1
				김희진	13	전북은행카드(김희진 5282-6809-0040-9779)	1
				조현성	14	신한카드(조현성 9410-6185-7150-4020)	1
				박채연	15	신한카드(박채연3562-9737-780 3-4001)	1
				서정규	18	우리카드(서정규 5480-2057-4781-1753)	1
				홍관석	20	외환카드(홍관석 4119-0466-5429-0314)	1
				불상	21	새마을금고 (9440-4504-1037-1260)	1
				이은국	22	농협카드(이은국 5424-1600-8160-6518)	1
				진익성	27	농협카드(진익성 5430-1700-8120-7433)	1
				김필수	29	삼성카드(김필수9410-1080-010 2-3023)	1
				불상	30	신협카드(9490-4801-5740-3108)	1
				불상	31	우체국카드(9440-7100-3034-55 68)	1
				이진희	32	우리카드(이진희5596-2000-076 0-9311)	1
				김두연	37	교보자동차카드(김두연 701019-140****, 대전 32나 4527호)	1
				불상	39	갤럭시 S5 (시리얼번호 R39F700NDDM)	1
				불상	40	남자용지갑	1

1. 다음 물건을 환부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 환부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기간 내 청구가 없을 때에는 형사소송법제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에 귀속됩니다.

2016년 5월 31일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또는 피 고 인	죄 명	피환부인	압수물건		
					증제 번호	물건명	수량
2016형제 5086호	2016압제 182호	배애란	게임산업진흥에관 한법률위반	배애란	7	휴대전화(LG-F480S)	1

1. 다음 물건의 환부를 받을 사람은 이 공고일로부터 3개월 내에 우리 청에 환부 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2. 공고 기간 내에 환부청구가 없을 때는 형사소송법 제 486조의 규정에 의거 국고귀속 및 폐기합니다.

2016년 5월 31일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장

사건번호	압수번호	피의자또는 피 고 인	죄 명	환부인	압 수 물 건		
					번호	물 건 명	수량
2015형제 2570	2015압제8 0	김재춘외 12	강도상해	오석봉	증1	가방(구찌)	1점
"	"	"	"	"	증3	남성지갑(검정색)	1점
2015형제4 095	2015압제1 43	이성철외 4	도박	이민기	증7	한국은행 발행 일만원권 지폐	4매
2015형제4 094	2015압제1 44	정병호외 4	도박	김상규	증4	일만원권 지폐	3매
"	"	"	"	"	증11	일천원권 지폐	2매
2015형제1 1429	2015압제4 44	박우태외 4	도박 등	최달용	증5	일천원권 지폐	1매
"	"	"	"	"	증6	오천원권 지폐	1매
2015형제1 2946	2015압제5 14	구명열외 4	도박 등	이태섭	증4	일만원권 지폐	3매
"	"	"	"	"	증5	일천원권 지폐	7매
2015형제1 2947	2015압제5 15	정용길외 4	도박 등	조현찬	증4	일만원권 지폐	1매
"	"	"	"	"	증5	일만원권 지폐	2매
2015형제1 3778	2015압제5 36	박유열외 1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 률위반 등	박유열	증1	코샷 크레인기	1대
2015형제1 7081	2015압제6 34	정현우외 3	아동·청소년의성보호 에관한법률위반 (성매수등) 등	정현우	증1	오만원권 지폐	3매

광주고등법원
제1형사부
결 정

사 건 2016초기11 비용보상
(2015노280 공직선거법위반 등)
청 구 인 김재구 (630307-*****), 언론인
주거 나주시 봉황면 철야2길 13-13
등록기준지 충북 영동군 영동읍 하가길 65-10

무 죄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5. 9. 10. 선고 2015노280 판결

주 문

청구인에게 형사비용보상금으로 2,400,000원을 지급한다.

이 유

1. 인정사실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공직선거법위반,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광주지방법원에 공소가 제기되었고, 제1심 법원은 2015. 4. 24. 청구인에게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및 일부 공직선거법위반의 점과 출판물에의한 명예훼손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광주지방법원 2014고합552).

나. 청구인과 검사가 이에 불복하여 각 항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2015. 9. 10. 청구인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청구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광주고등법원 2015노280).

다. 위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검사가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5. 12. 10. 상고가 기각되어 청구인에 대한 위 무죄판결은 확정되었다(대법원 2015도15217).

2. 이 사건 형사비용보상 청구의 내역

청구인은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으로 청구인 일당 895,660원(제1심 626,962원 + 항소심 268,698원)과 제1심 변호인 보수 3,300,000원(항소심은 국선변호인 선임) 합계 4,195,660원을 청구한다.

3. 판단

가. 형사비용보상청구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형사소송법 제194조의2 제2항이 정한 사유가 없으므로, 청구인은 국가에 대하여 같은 법 제194조의2 제1항에 따라 위 재판에 소요된 비용의 보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

나. 비용보상의 범위

1) 비용보상의 대상 및 기준

형사소송법 제194조의4 제1항은 국가가 피고인이었던 자 또는 그 변호인이었던 자가 공판준비 및 공판기일에 출석하는 데 소요된 여비·일당·숙박료와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고, 이 경우 보상금액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형사소송비용법’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피고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증인에 관한 규정을,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하여는 국선변호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2) 청구인 일당

형사소송비용법 제3조 제2항은 “증인 등의 일당의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규칙(이하 ‘형사소송비용규칙’이라 한다) 제2조는 “증인 등의 일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형사사건의 증인 등에 대하여 지급하는 일당은 2014년도와 2015년도의 경우 1일 50,000원 이내이므로, 제1심과 항소심에서의 청구인 일당을 400,000원[= 50,000원 × (2014년도 1회 출석 + 2015년도 7회 출석)]으로 정한다.

3) 변호인 보수

형사소송비용법 제8조 제2항은 “국선변호인에게 지급할 보수의 기준 및 금액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범위에서 법원이 정한다.”, 형사소송비용규칙 제6조 제1항은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매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정하며 그 보수는 심급별로 지급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국선변호인의 보

수는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당해 재판장이 이를 증액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국선변호에 관한 예규 제14조 제1항은 “재판장은 사안의 난이, 국선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시간 등을 참작하여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매년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보수액의 5배의 범위 안에서 국선변호인의 보수를 증액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관회의에서 정한 국선변호인의 보수는 2014년도와 2015년도 제1심 형사합의공판사건의 경우 400,000원인바, 위 무죄판결 사건의 난이도, 변호인이 수행한 직무의 내용, 사건처리에 소요된 기간 등을 참작하면, 제1심 변호인에 대한 보수를 최대한인 2,000,000원으로 증액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청구인의 변호인이었던 자에 대한 보수를 2,000,000원으로 정한다.

4. 결론

그렇다면 국가는 청구인에게 형사비용에 대한 보상으로 2,4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6. 4. 26.

재판장	판사	노경필
	판사	견종철
	판사	김성주

배 당 공 고

사건번호 98하 27
 파산자 기장신용협동조합

위 사건에 관하여 본 파산관재인은 추가배당을 실시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다 음

1. 배당에 참가시킬 채권의 종류 및 금액
 - 채권의 종류 : 일반채권(예금대지급금 등)
 - 채권의 금액 : 금 2,609,405,337원
2. 배당할 수 있는 금액
 - 금 69,498,656원

2016. 5.

파산자 기장신용협동조합
 파산관재인 나 기 현